

벤처 투자

표준계약서 및 해설서

2026년 개정판

투자 계약서(SPA) + 주주 간 계약서(SHA) 분리형 기준

한국벤처투자,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법무법인 이후 공저

창업자와 투자자를 위한 실전 벤처 투자 계약 가이드북

사전동의권·상환권·전환권·IPO·연대책임 등
주요 계약조항별 중요도 등급 해설



벤처투자 표준계약서 및 해설서

2026년 개정판

— 투자 계약서(SPA) + 주주 간 계약서(SHA) 분리형 기준 —

벤처투자 표준계약서 및 해설서

초판 1쇄 인쇄일 2026년 6월 30일

초판 1쇄 발행일 2026년 7월 10일

지은이 한국벤처투자,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법무법인 이후(공저)

펴낸이 조명구

펴낸곳 지식상자

마케팅 조명구

출판등록 2025년 6월 20일 제2025-00008호

주소 파주시 산남로 5-86 2층

전화 (0507)2712-8269 팩스 (031)2179-9023

ISBN 979-11-993333-7-6 (03320)

- 책값은 뒷표지에 있습니다.
- 잘못된 책은 교환해 드립니다.

벤처 투자

표준계약서 및 해설서

2026년 개정판

투자 계약서(SPA) + 주주 간 계약서(SHA) 분리형 기준

한국벤처투자,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법무법인 이후 공저



벤처투자 표준계약서 및 해설서의 활용법

1. 본 해설서는 창업자 및 벤처기업 종사자들에게 참고자료로서의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제공된 것으로 기타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본 해설서의 내용과 관련한 정보는 한국벤처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복사, 공개 또는 유포가 불가능하다는 명확한 상호의 이해와 신뢰에 근거해 제공되는 것입니다. 당사는 본 해설서에 포함된 정보에 대한 정확성 및 완전성에 대해 어떤 의견이나 보증을 제공하지 않으며, 귀하 또는 귀사가 본 해설서에 포함된 정보, 의견 및 추가적인 질의와 관련해 제공된 정보에 근거한 의사결정으로 손실이나 피해를 입을 경우 어떤 종류의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2. 본 해설서는 벤처캐피탈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벤처투자 표준계약서」(벤처캐피탈협회 발간, 2026년)를 벤처기업 입장에서 각 조항의 쟁점과 조정 가능성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반영, 기술한 것입니다.

3. 본 해설서의 기재 내용은 2026년 4월 말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령 및 지침 등을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이후 법령의 제·개정, 지침의 변경 등에 따라 의견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본 해설서는 2018년 초판 발간 이후 변화된 벤처투자 생태계, 법령 개정

사항 및 글로벌 투자계약 관행을 반영해 전면 개정한 것입니다.

5. 본 개정판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투자계약서 체계의 변경입니다. 기존에 하나의 계약서에 SPA(주식인수 계약)와 SHA(주주 간 합의) 내용을 혼합해 기재하던 방식에서, SPA와 SHA를 분리하는 ‘분리형’ 계약서 체계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며, 투자 라운드가 반복됨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의무의 충돌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둘째, 조항별 레이어 체계를 도입했습니다. 투자유치기업 관점에서 각 조항의 중요도·리스크 수준에 따라 **⚠주의**, **💡유의**, **☑점검** 으로 구분해 중요성을 차별화했습니다.

셋째, 각 조항별 해설은 ① 조항 개요, ② 법적 의미, ③ 기업 리스크 포인트, ④ 협상 시 유의사항, ⑤ 체크리스트의 ⑥분쟁 사례 및 시사점 구조로 체계화했습니다. 넷째, 2026년 현재 시점의 최신 법령(상법, 벤처 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법 등) 및 판례를 반영했습니다.

I 기업의 자금조달과 벤처캐피탈 투자계약서

1 들어가며	12
2 기업의 자금조달 구조와 투자계약서의 유형	13
3 투자계약서의 종류	17
4 분리형 투자계약서 체계의 이해	19
가. SPA(투자계약서)와 SHA(주주 간 계약서)의 구분	19
나. 분리형 도입의 배경 및 장점	20
다. 분리형 계약서의 상호관계	20

II 투자계약서의 기본 구조와 체결 절차 구조

1 투자계약서의 구조와 이해관계인의 책임	24
가. 투자계약서의 구조	24
나. 연대책임 또는 연대보증책임의 완화	27
(1) 벤처 투자의 특성과 이해관계인 연대보증의 역할	27
(2) 시장의 확대와 이해관계인 연대보증의 완화	28
(3) 정부의 정책 방향 및 이해관계인 연대보증의 지양	29
2 자금조달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31
3 투자계약 체결 절차	35
가. 투자 전 준비 단계	35
나. 계약서 문안 협상 단계	35
다. 거래완결 및 사후 운영 단계	36

III 우선주 및 보통주 투자계약서

1 조항별 구분 체계 안내	38
가. 구분 체계	38
나. 해설 구조 안내	39
2 우선주 투자계약의 일반론	40
3 우선주 투자계약서의 구성	41
4 우선주 투자계약서(SPA) 주요 조항별 해설	46
(1) 신주의 발행 사항 💡 유의	51
(2) 투자의 선행조건 💡 유의	56
(3) 회사의 진술과 보장 ⚠️ 주의	63
(4) 거래의 완결 ☑️ 점검	78
(5) 거래완결 전 해제 💡 유의	85
(6) 기타: 통지, 비밀유지, 세금, 일부무효, 준거법 및 분쟁 해결, 특약 등 ☑️ 점검	92
(7) 종류주식[(상환전환)우선주]의 내용 ⚠️ 주의	104
5 주주 간 계약서(SHA) 주요 조항별 해설	151
(1) 목적 ☑️ 점검	151
(2) 본 계약의 효력 ☑️ 점검	151
(3) 투자금의 용도 및 제한 ⚠️ 주의	152
(4) 기술의 이전, 양도, 겸업 및 신회사 설립 제한 💡 유의	159
(5) 경영사항에 대한 동의권 및 협의권 ⚠️ 주의	164
(6) 중요 경영사항에 대해 투자자에게 보고할 의무 💡 유의	173
(7) 회계 및 업무감사: 시정조치 💡 유의	180
(8)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 점검	185
(9) 임원의 지명 💡 유의	190

(10) 주주총회 및 이사회 개최 요구	☑ 점검	197
(11) 기업공개 의무	💡 유의	200
(12) 투자자의 주식 처분	💡 유의	205
(13) 이해관계인의 주식 처분	💡 유의	210
(14) 투자자의 우선매수권(Right of First Refusal) 및 투자자의 공동매도참여권(Tag-along right)	⚠ 주의	213
(15) 주식매수청구권	⚠ 주의	225
(16) 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	⚠ 주의	235
(17) 지연배상금	💡 유의	242
(18) 이해관계인의 책임	⚠ 주의	245
(19) 계약의 종료	💡 유의	250
(20) 계약내용의 변경	☑ 점검	257
(21) 권리 및 의무의 양도/승계	💡 유의	258
(22) 통지	☑ 점검	262
(23) 비밀유지	☑ 점검	266
(24) 세금	☑ 점검	268
(25) 일부무효	☑ 점검	268
(26) 분쟁 해결 및 관할, 준거법	☑ 점검	269

6 보통주 투자계약서	271
1 보통주 투자계약서의 일반론	271
2 보통주 투자계약서의구성내용	271

IV 채권형 및 조건부 투자계약서

1 전환사채 투자계약서	276
1 전환사채 투자계약서의 일반론	276

2 전환사채 투자계약서의 구성내용	277
가. 주요 조항	280
(1)사채의 발행과 인수	280
(2)사채의 상환에 관한 사항	281
(3)전환권에 관한 사항	282
(4)기한의 이익 상실	282
나. 기타 조항	286
2 신주인수권부사채 투자계약서	287
1 일반론	287
2 구성내용	288
가. 주요 사항	291
나. 기타 조항	292
3 조건부지분투자 및 조건부지분전환사채	292
1 새로운 투자 방식에 대한 업계의 요구	292
(1) SAFE에 대한 이해	293
(2) 컨버터블노트에 대한 이해	294
2 조건부지분투자자 와 조건부지분전환사채의 도입	295
3 주요 투자방식의 비교 및 요약	296
V 맺음말	
참고 자료	301
1 사례해설	302
2 RCPS 투자계약서 기본 조항 구성 및 Check-list (협의 가능성, 협의 유의점 등)	309
3 투자자의 회수조항 비교표	314
4 투자자 vs 기업 협상 조건 유의사항 정리	317

들어가며	4
1 전환우선주식(분리형) 계약서	7
가. 투자계약서	8
나. 주주 간 계약서	29
2 상환전환우선주식(분리형) 계약서	53
가. 투자계약서	54
나. 주주 간 계약서	76
3 보통주식(분리형) 계약서	99
가. 투자계약서	100
나. 주주 간 계약서	116
4 전환사채 계약서	139
5 신주인수권부사채 계약서	177

I

기업의 자금조달과 벤처캐피탈 투자계약서



1 들어가며

창업을 하고 벤처기업을 성장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기업은 수많은 법률행위를 하게 된다. 벤처기업은 자금조달과 관련된 법률행위에 있어 이해가 부족하거나 이와 관련된 조직적, 법률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자금조달 과정에서 당해 투자유치가 장래 기업에 또는 창업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하여 고민하지 않고 쉽게 간과되는 경향이 있다.

본 해설서에서는 전문적인 지식의 전달보다는 벤처캐피탈 업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투자계약서와 관련하여, (i) 기업¹의 자금조달 구조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투자계약서의 유형에 대한 이해), (ii) 기업의 자금조달이 향후 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iii) 벤처캐피탈 투자계약서를 이해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법률적 지식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벤처캐피탈 투자계약서 이해를 위한 용어의 해설 등), (iv)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벤처캐피탈 투자계약서는 어떠한 구조를 갖고 있고 그 내용은 어떠한지, (v) 투자자와 협상 과정에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및 (vi) 벤처캐피탈 투자계약서와

1 주식회사를 기본형으로 한다.

관련하여 투자자와 벤처기업과의 분쟁 사례 등을 중심으로 벤처기업이 비전문가임에도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과 유의사항 등을 다루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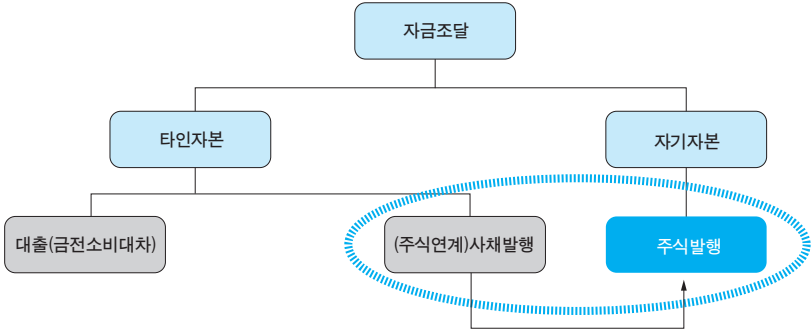
2018년 초판 해설서 발간 이후 벤처투자 생태계는 크게 변화하였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정(2020년), 상법 개정,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투자계약서 체계의 개편, 창업자 연대보증 폐지를 위한 법률 개정 등 제도적·실무적 변화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본 개정판은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투자유치기업이 실제 계약 검토 및 협상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활용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투자계약서는 투자자와 투자대상기업 측이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로운 교섭 절차를 통해 그 내용이 확정되는 것이며, 기업 입장에서도 많이 아는 만큼 협상의 결과물도 신속하게 도출할 수 있으며, 벤처캐피탈 투자자와 벤처기업 상호 오해로 인한 투자계약서를 둘러싼 분쟁의 소지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 기업의 자금조달 구조와 투자계약서의 유형

기업은 전통적으로는 자금조달을 위하여 상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주식을 발행할 수도 있고 사채를 발행할 수도 있다. 또한 이와 별도로 대출을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타인자본으로서 대출(금전소비대차)은 투자의 종류로 분류하지는 않는다. 간략하게 도식화 하면 아래와 같다.

【기업의 자금조달】(그림1)



위 그림1에서, 기업은 사업을 하면서 은행 또는 제3자로부터 돈을 빌려올 수 있으며 이 경우 약정된 지급기일이 도래하였을 때 원리금 상환의무를 부담한다. 이러한 대출(금전소비대차)은 일반적으로 ‘투자’로 분류되지 않는다.

‘투자’는, (i) 기업이 상법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고 투자자가 기업이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하여 ‘주주’로서 권리를 득하는 절차와 (ii) 기업이 상법에 따라 주식연계형 사채를 발행하고 투자자가 기업이 발행하는 위 사채를 취득하여 ‘사채권자’로서 권리를 득하는 절차 2가지를 크게 일컫는다.

여기서 구분하여야 할 개념은 사채와 주식연계형 사채의 구분이다. 기업은 상법에 따라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으며 이는 일반 사채로서 대출과 동일한 성질을 갖는다. 주식연계형 사채는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등을 통칭하는 것으로서 사채와 동일하게 채권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으나 전환사채권자는 전환권을 신주인수권부사채권자는 신주인수권을 교환사채권자는 교환권이라는 권리를 사채와 함께 결합하여 보유하고 있으며 이 권리를

사채권자가 행사기간 내에 행사할 경우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권리(Option)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 차이점이다. 즉 사채로서의 권리와 주식으로 변환할 수 있는 권리를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투자자가 투자대상기업에 주식 인수 방식 또는 사채 인수 방식으로 투자를 하기로 하고 투자금을 납입하면, 『상법』 등 법률에 따라 주주 내지 채권자로서의 지위 및 권리가 인정된다.

【투자자의 주주의 지위와 채권자의 지위】

구분	(주식연계형)사채	주식(보통주주)
지위(권리)	채권자	주주
이자	○	X
원금상환	○	X
회사 경영참여 (의결권)	X	○
주식전환가능성 (리픽싱: Refixing ²)	○	—

한편 가장 단순한 사채권자와 주주(보통주주)가 가진 권리의 차이를 살펴보면 위 표와 같다. 하지만 이러한 일반적 구분은 양자를 비교하는 절대적 기준이 될 수는 없다. 벤처캐피탈 투자계약서는 사채권자도 일정 사항에 대하여 계약에 의하여 경영관여를 하게 되고, 또한 주식으로 변환할 수 있는 권리(Option)를 행

2 리픽싱(Refixing)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지분희석 방지이며 둘째 기업가치 조정 기능이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사할 경우에는 주식으로 변환 이후 주주의 지위에서 상법과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게 된다. 또한 주주의 지위도 이 구분이 절대적일 수 없다. 벤처캐피탈 투자계약서는 기업이 주식을 발행할 때 일반 보통주를 발행하여 인수하는 경우도 있지만 특별한 권리가 부가된 종류주식(일반적으로 상환전환우선주, 이하 'RCPS'³라 한다)을 발행하여 인수하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사채권자와 주주는 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투자자, 기업 및 이해관계인 등 당사자 사이의 투자계약서에 의하여 각 투자수단에 변형을 가미함으로써 벤처캐피탈 투자 유형은 다양하게 존재하게 된다.

【투자자의 주주의 지위와 채권자의 지위의 변형】

구분	(주식연계형)사채	주식(상환전환우선주)
지위(권리)	채권자	주주
이자	○	(상환이익으로 상환의무) ○
원금상환	○	
회사 경영참여 (의결권)	(의결권은 보유하지 못하나 투자계약에 의한 경영관여 조항) ○	○
주식전환가능성 (리픽싱: Refixing)	○	○ ⁴

위와 같이 주식연계형사채 투자계약서와 주식 투자계약서는 법과 당사자의 약정(계약)에 따라 다양한 유형이 존재할 수 있게 된다.

3 본 해설서에서는 이하 상환전환우선주를 중심으로 다루게 된다.

4 상환전환우선주주는 전환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환권을 행사하는 경우 우선주에서 보통주로 전환을 하게 된다. 이 경우 전환조항에 따라 전환가격의 조정(Refixing)이 일어나게 되며 투자자가 보유하게 되는/될 주식 수가 변동된다.

한편 초기 벤처기업(Start up) 지원을 위한 또는 이에 적합한 새로운 유형의 투자계약서 도입이 되었으며, 그러한 논의는 위 그림1에서 『대출(금전소비대차)』이 주식으로 전환될 권리를 변형적으로 보유할 수 있을 것인가와 연계된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3 투자계약서의 종류

투자계약은 주식을 취득하는 자본적 투자와 채권을 취득하는 채권적 투자로 대별된다.

상법은 2011. 4. 14. 대폭 개정⁵이 되어 2012. 4. 15.부터 시행되었는데, 해당 개정상법(이하 “개정상법” 이라고 한다)에 의해 종류주식 발행의 자율성이 넓어졌지만, 아직까지 국내 벤처 투자 업계에서는 여전히 상환전환우선주(또는 상환권을 제외한 전환우선주⁶) 투자와 보통주 투자가 대부분이다.

상환전환우선주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배당 및 잔여재산분배에 있어 우선하는 주식에 상법상 상환주식의 성격과 전환주식의 성격을 혼합한 주식이다.

채권적 투자는 투자자가 회사가 발행하는 사채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5 이후 2025년 이후 상법 개정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6 한편 창업초기기업 입장에서는 활용성이 낮은 상환권을 제외한 전환우선주의 활용을 권고하고 있으며, 투자유치기업 입장에서도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면에서 전환우선주식이 이론적으로 좀더 유리하다. 여기서 이론적으로 유리하다는 의미는 상환주식의 경우에는 발행할 당시부터 회사의 상환이익으로써만 소각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주식으로서 상환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적으로 상환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

어지는데⁷, 국내 벤처 투자 업계에서는 대부분 향후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 전환사채(Convertible bond)와 사채권자에게 신주 인수권을 함께 부여하는 신주인수권부사채(Bond with warrant) 방식의 투자가 활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향후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 사채를 ‘주식연계사채’라고 하기도 한다.

【벤처캐피탈 투자의 유형】

채권적 투자	자본적 투자
전환사채(CB)	보통주
신주인수권부사채(BW)	상환전환우선주(RCPS)
프로젝트투자	전환우선주(CPS)
교환사채(EB)	기타 다양한 종류주식
(새로운 유형)SAFE, CN 등	

7 콘텐츠 투자에 많이 활용되는 프로젝트 투자계약도 채권적 투자의 성격을 갖는다.

4 분리형 투자계약서 체계의 이해

가. 투자계약서(SPA)와 주주 간 계약서(SHA)의 구분

2026년 개정 벤처투자 표준계약서는 투자계약서(SPA)와 주주 간 계약서(SHA)로 구성된다.

투자계약서(SPA)에는 주식인수의 기본 사항이 규정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신주의 발행과 인수(종류, 수량, 발행가액, 인수가액, 납입기일 등), 제2조 투자자의 선행조건, 제3조 진술과 보장, 제4조 거래의 완결, 제5조 거래완결일 전 해제, 제6조 본 계약의 효력, 제7조 계약의 내용 변경, 제8조 통지, 기타 비밀 유지, 세금, 일부 무효, 준거법 및 분쟁 해결, 특약사항, 그리고 별지 1(본건 신주의 종류 및 내용)과 별지 2(진술과 보장)로 구성된다.

주주 간 계약서(SHA)에는 거래완결 후의 경영 참여·주식 처분·계약위반 책임 등이 규정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총설(목적, 본 계약의 효력), 제2장 회사 경영에 관한 사항(투자금 용도·제한, 기술이전·겸업 제한, 경영사항 동의권·협의권, 보고 및 자료 제출, 회계·업무감사,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임원 지명, 주주총회·이사회 개최 요구, 기업공개·M&A 관련), 제3장 주식의 처분에 관한 사항(투자자·이해관계인의 주식 처분, 우선매수권·공동매도참여권), 제4장 계약위반에 따른 책임(주식매수청구권, 손해배상·위약벌, 지연배상금, 이해관계인의 책임), 제5장 일반 사항(계약의 종료, 계약 변경, 권리·의무 양도·승계, 통지 등)으로

구성된다.

나. 분리형 도입의 배경 및 장점

미국의 NVCA(National Venture Capital Association) 모델 계약서를 비롯한 글로벌 벤처투자 계약 관행에서는 Stock Purchase Agreement, Investor Rights Agreement, Voting Agreement, Right of First Refusal and Co-Sale Agreement 등 목적별로 분리된 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국내에서도 투자 라운드가 반복됨에 따라 통합형 계약서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실무적으로 분리형 계약서의 활용이 점차 확대되어 왔다. 2026년 벤처투자 표준계약서 개정은 이러한 시장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분리형의 주요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식인수 조건(SPA)과 경영 참여·처분 조건(SHA)의 명확한 구분으로 계약 관리가 용이하다. 둘째, 후속 라운드 시 SHA의 수정·갱신을 통해 다수 투자자 간 권리를 효율적으로 조율할 수 있다. 셋째, 글로벌 투자자의 국내 벤처투자 참여를 촉진한다. 넷째, 회사 및 이해관계인의 의무 충돌을 예방하고 법적 안정성을 제고한다.

다. 분리형 계약서의 상호관계

분리형 체계에서 SPA와 SHA는 상호 독립적이면서도 밀접하게 연결된 관계에 있다. SHA 제2조 제3항에서는 “본 계약과 각 신주인수계약서에서 정한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 주식의 본질적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은 본 계약이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거래완결 후 경영 참여 및 주식 처분 등에 관해서는 SHA가 우선 적용됨을 명확히 하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SPA와 SHA의 각 조항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특히 의무의 근거가 어느 계약서에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진술과 보장 위반에 따른 책임의 근거는 SPA에 있으나, 그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구체적 절차와 매매대금 산정은 SHA에 규정되어 있다.

구분	기존 혼합형 이해	2026 분리형 구조	실무 의미
문서 구조	신주인수·경영관여 조항이 혼재	신주인수계약서 + 주주 간 계약서	주식의 본질적 내용과 계약상 의무를 분리해 관리
계약 우선순위	한 문서 내 내부 충돌 문제	주식의 본질적 내용 외에는 주주 간 계약 우선	정관·종류주식·주주 간 약정의 기능을 구분할 필요
후속 라운드 대응	기존 투자자와 신규 투자자 간 충돌 우려	동일 라운드/기존 투자자 관계를 분리 문서(SHA)로 조정	개정·가입·승계 설계가 쉬워짐
기업 내부관리	의무의 관리 범위가 불명확	투자금 집행, 동의사항, 보고사항, 지분변동 제한 등을 분리 관리	사내 체크리스트 수립이 용이

II

투자계약서의 기본 구조와 체결 절차 구조



1 투자계약서의 구조와 이해관계인의 책임

가. 투자계약서의 구조

기업이 투자를 유치하게 되면 두 가지의 계약이 존재할 수 있다. 즉 (i) 기업과 투자자 사이의 투자계약서(투자 유형에 따라 주식인수계약서⁸ 또는 사채인수계약서가 될 것이다)와 (ii) 주주인 이해관계인과 주주가 될 투자자 사이의 주주 간 계약서⁹(또는 경우에 따라 대표이사나 핵심인력이 당사자가 될 수도 있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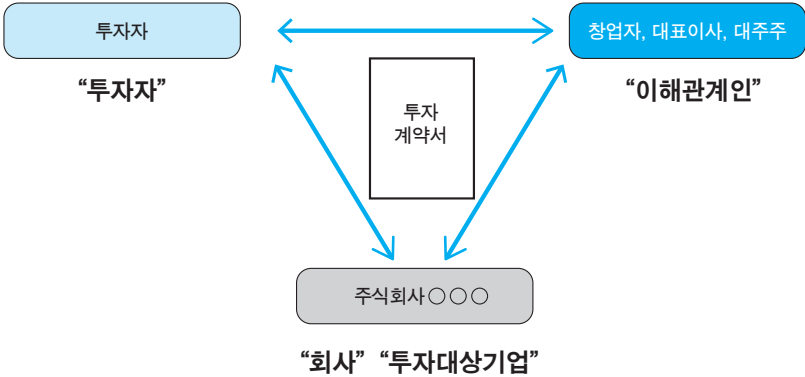
현재 하나의 투자계약서 주식인수계약서(SPA)와 주주 간 계약서(SHA)가 함께 혼용되어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투자가 반복되어 감에 따라 기존 투자자와 신규 투자자 및 이해관계인 사이에 권리관계의 조정을 위해 주주 간 계약서(SHA)의 필요성이 실무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신규 투자자가 투자할 때 새롭게 작성하거나 기존 주주 간 계약서에 추가·변경하는 형태로 작성되고 있다.

양자는 분리되어 원칙적으로 분리되어 사용을 권고하며, 본 해설서는 양자가 분리되어 사용되는 계약서를 기본형으로 한다.

⁸ 보통 'SPA'(Share Purchase Agreement)라 한다.

⁹ 보통 'SHA'(Share Holder's Agreement)라 한다.

【투자계약서의 구조】(그림2)



주주 간 계약서의 기본 내용을 살펴보면, (i) 회사가 준수해야 할 의무, (ii) 회사의 지배주주 또는 이해관계인이 준수해야 할 의무, (iii) 회사와 지배주주 또는 이해관계인이 공통으로 준수해야 할 의무 등^{10,11}이다. 위 규정들을 대별해 보면, (i) 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사항¹², (ii) 지분의 양도제한과 관련한

10 위 (i) 내지 (iii)에 관련된 사항은 ① 투자금의 용도 및 제한, ② 기술의 이전, 양도, 검업 및 신회사 설립 제한, ③ 임원의 지명, ④ 경영사항에 대한 동의권 및 협의권, ⑤ 보고 및 자료 제출, ⑥ 증자 참여의 우선권에 관한 사항, ⑦ 기업공개 및 M&A에 관한 사항, ⑧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⑨ 주주총회 및 이사회 개최 요구, ⑩ 회계 및 업무감사, ⑪ 시정조치, ⑫ 투자자의 주식 처분, ⑬ 이해관계인의 주식 처분, ⑭ 투자자의 우선매수권(Right of First Refusal) 및 공동매도권(Tag-along), ⑮ 주식매수청구권, ⑯ 계약의 해지 및 해제와 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 ⑰ 이해관계인의 책임, ⑱ 특약 등

11 이를 회사의 의무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무만으로 할 수도 있고, 양자의 공통된 의무 형태로 그 성질에 따라 구분되어 기재

12 ① 주주총회와 관련한 사항(주주총회 개최지, 소집횟수, 통지기간 및 방법, 정족수, 특별결의사항 등), ② 이사회 구성과 관련한 사항(이사총수, 이사 선임권, 정족수, 통지기간 및 방법, 주주로서 의결권 행사 약정, 이사회 특별결의사항 등), ③ 대표이사 선임에 관한 사항; *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소수주주들의 거부권(veto power)을 보장하는 의미에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사항 및 이사회 특별결의사항이 많이 협의되며, 특별결의사항과 관련한 교착상태(dead lock)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규정을 두고 있음

사항¹³, (iii) 해지 및 해지의 효과에 관한 사항¹⁴, (iv) 경업금지, 자금조달, 배당정책 등 기타 부수적 사항 등이다.

벤처투자계약서는 단순한 지분인수조건이 담긴 계약서(SPA) 외에 기업가치 제고, 위험관리 등 다양한 목적으로 일정 수준의 투자자의 경영관여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위 경영관여조항은 이해관계인과 SHA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회사 사이에 특약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따라서 벤처투자계약서는 내용적으로 【SPA + [특약(회사) + SHA(이해관계인)]】 형태로 일반화되어 있다.

과거 【SPA + [특약(회사) + SHA(이해관계인)]】 형태의 하나의 계약서가 통용되는 배경에는 『특약(회사) + SHA(이해관계인)』로 표기된 회사의 의무와 이해관계인의 의무가 중첩되는 영역이 발생하고 이를 간이하게 하나의 계약서로 표현한다는 장점 외에 주주 간 합의서의 집행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다만 이러한 형태의 계약서는 투자 Round가 반복되어 갈 때 다른 Round 투자자 사이에 동일 취지의 규정이 기재됨으로써 우선순위 충돌 및 회사·이해관계인의 의무 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현재 실무적으로는 이러한 충돌을 해소하기 위해 Round가 반복되어 가는 경우 별도의 SH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있다.

2026년 개정 벤처투자 표준계약서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분리형’ 체계를 채택했다. 분리형 체계에서는 SPA에는 신주의 발행·인수에 관한 기본 사항(신주 인수조건, 선행조건, 진술과 보장, 거래완결, 종류주식의 내용 등)을, SHA에는 거래완

13 ① 일정 기간 상대방의 동의가 없이는 지분양도가 제한된다는 내용(lock-up), ② 우선매수권(right of first refusal), ③ 우선청약권(right of first offer), ④ 동반매도참여권(tag-along right), ⑤ 동반매각청구권(drag-along right), ⑥ 주식매수청구권(Put Option)

14 ① 주주 간 계약의 해지 사유(일방 당사자의 지분률이 일정률 이하인 경우, 상대방 의무 위반의 경우 등), ② 해지의 효과(위약금, 할인된 가격의 콜옵션, 할증된 가격의 풋옵션 등)

결 후 경영 참여·주식 처분·계약위반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한다.

분리형 체계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후속 투자 라운드 시 SHA만 갱신하면 되므로 기존 SPA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계약 관리가 용이하다. 둘째, 다수의 투자자 사이의 권리·의무 조율이 SHA를 통해 일원화되어 효율적이다. 셋째,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해 크로스보더(Cross-Border) 투자 유치에 유리하다.

주주 간 합의서는 기본적으로 회사법의 다수결의 원칙에 대한 수정의 의미를 내포한 조항을 담고 있다. 이는 주주(투자자)에게 상법이 해당 주식에 부여한 권리 외에 부가적 권리를 부여하는 형태 + 이를 위해 이해관계인 주주가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형태¹⁵로 나타나게 된다.

나. 연대책임 또는 연대보증책임의 완화

(1) 벤처 투자의 특성과 이해관계인 연대보증의 역할

벤처투자 업계의 초기에는 모험투자라는 성격에서 최소한의 리스크 분산의 취지, 대표이사의 모럴해저드를 방지하는 심리적 효과, 법률적 타당성이 인정되는 투자회수 전략의 한계, 제도적 지원의 미비 등의 점에서 부득이 투자 대상기업의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창업자 내지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 경영자인 대주주(이하 통칭해 “이해관계인”이라고 함)가 투자계약의 당사자로 참여해 투자 대상기업과 함께 투자자에게 투자계약서상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연대책임’ 또는 ‘연대보증책임’ 약정을 포함하는 경우가 있었다.

15 이러한 특정 투자자인 주주에게 계약에 의해 권리를 부여하는 약정의 적법성이 다투어졌으며, 판례(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다293213 상환금 청구의 소)는 이에 대해 대법원에서 합리적 차별의 이유가 있는 경우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연대책임이란 민법 제413조에서 정하는 책임으로서 수인의 채무자가 각자 채무 전부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되 채무자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되는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를 말하고, 연대보증이란 보증인이 채권자에 대해 주채무자와 연대해 채무를 부담하는 형태의 보증채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민법 제428조 제1항¹⁶에서 정하는 보증채무의 특수한 형태이다.

연대보증은 보증책임과 비교해, 보충성이 없고, 연대보증인에게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분별의 이익이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실무에서는 연대보증과 연대책임 사이에 실질적 차이는 없다고 할 수 있다.

(2) 시장의 확대와 이해관계인 연대보증의 완화

벤처투자업계는 성장기를 거쳐 2010년대 초중반에 이르러 사회적 역할이 커지면서 이해관계인의 책임을 현실화하자는 요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투자대상기업에 따라서는 성실한 경영활동을 했음에도 사업이 잘 되지 않아 폐업을 하게 되어 이해관계인의 연대책임 내지 연대보증책임으로 인해 가계 경제가 부실해지고, 다시 창업에 도전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부작용이 축적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정부 관계부처는 2012년 제1금융권부터 대표자의 연대보증을 점차적으로 폐지해 나갔다¹⁷.

벤처투자업계에서는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해 이해관계인의 포괄적 연대책임 내지 연대보증책임을 축소해 나아가고 있으며, 2025년 12월 30일 벤처투자법은 이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면 금지하는 입법을 했다.

16 [민법] 제428조(보증채무의 내용) ①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②보증은 장래의 채무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17 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등 제2금융권은 2013년 7월부터 구체화되었다.

(3) 정부의 정책 방향 및 이해관계인 연대보증의 지양

이해관계인의 포괄적 연대보증이 2025년 12월 30일 벤처투자법 개정¹⁸을 통해 법률로써 폐지 확정되었다. 물론 2023년 4월 벤처투자법 관련 고시¹⁹에서 현재 입법과 유사하게 연대보증을 제한하였으나, 위 고시 규정이 이번 법

18 [벤처투자조합의 경우]: 벤처투자법 제52조; 기타 위와 동일한 취지의 조항이 벤처투자회사, 창업 기획자 등 자금운용 조항에도 동일하게 반영되어 있다.

제52조(벤처투자조합 업무의 집행 등) ① 업무집행조합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벤처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② 업무집행조합원은 벤처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벤처투자조합의 자산 운용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 12. 30.>

1.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벤처투자조합의 재산을 사용하는 행위
2. 자금차입, 지급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투자하는 행위
4.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담보권 실행으로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예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의2. 투자계약에 따라 벤처투자조합이 투자한 업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의무를 제3자가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제3자에게 의무를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가. 투자계약에서 정한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금을 납입하게 함으로써 투자자의 효력을 발생하게 한 경우

나. 투자계약에서 정한 진술과 보장 사항이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

다. 투자금의 사용 용도를 위반한 경우 라. 투자계약에 반하여 이해관계인이 주식을 처분한 경우

마.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투자계약 위반이 있는 경우

5. 그밖에 설립목적을 해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업무집행조합원은 제2항제4호 단서에 따라 담보권 실행으로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④ 업무집행조합원은 벤처투자조합과의 계약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그 벤처투자조합의 유한책임조합 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9 벤처투자회사의 등록 및 관리규정, 벤처투자조합의 등록 및 관리규정 등에 선행적으로 도입이 되었으며, 최종적으로 2025년 12월 30일 벤처투자법에 반영이 되게 되었다.

를 개정을 통해 법률 입법화되었다.

2026년 개정 투자계약서에서는 이해관계인의 포괄적 연대보증책임을 전면 폐지하고, 이해관계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해 자기책임의 원칙 하에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체계를 확립했다.

이는 2018년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온 정부 정책 방향 및 업계 합의의 결과물이다. 벤처투자 업계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면적인 연대보증 폐지가 창업 및 벤처 생태계에 긍정적인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업계의 전반적 의견이 모아졌으며, 이는 민사상 대원칙인 ‘과실책임주의’에도 부합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예: 선행조건 불충족 상태에서의 투자금 납입 유도, 진술과 보장 위반, 투자금 사용용도 위반, 이해관계인의 무단 주식 처분 등²⁰)에는 투자자의 이해관계인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및 위약벌 청구권 등 이해관계인의 책임이 인정된다. 이러한 구조는 이해관계인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면서도 과도한 개인적 부담을 지양하는 균형 잡힌 접근이다.

【수정된 이해관계인 책임 조항의 예시】

제18조 이해관계인의 책임

(중략)

④ 본 계약의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에 따라 이해관계인이 회사가 부담해

20 한편 이해관계인이 타인인 회사의 의무가 아니라 이해관계인 고유의 의무 약정에 대해서 약정 위반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별개의 책임이 되게 된다.

야 하는 의무를 연대해 부담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그 사유 발생에 해당 이해관계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로 제한한다.

1. 각 신주인수계약에서 정한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금을 납입하게 함으로써 투자의 효력을 발생하게 한 경우
2. 각 신주인수계약에서 정한 진술과 보장 사항이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
3. 제3조 및 별지 1. 투자금의 사용 용도를 위반한 경우
4. 본 계약에 반해 이해관계인이 주식을 처분한 경우

이해관계인의 책임조항은 통상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투자자의 이해관계인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하지만 주식매수청구권 조항 또한 그 범위와 관련해 행사사유가 광범위할 경우 실질적으로 이해관계인에 대한 연대보증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야기할 수 있는바, 그 범위는 연대보증 제한의 취지에 배치되지 않도록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이다.

2 자금조달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기업이 자금조달을 하는 경우 자금조달의 유형에 따라 기업의 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진다. 기업이 자금조달을 함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고려할 사항은, (i) 『본건 자금조달로 인해 회사 및 이해관계인이 부담하게 되는 의무는 어떤 것이 있는가?』, (ii) 『본건 자금조달 이후 이해관계인의 지분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iii) 『본건 자금조달 관련 계약으로 인해 후속 자금조달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이 있는가?』 등이다.

투자계약서 주식(주식연계형사채)인수계약 및 주주 간계약 등을 통해 단순한 회사와 투자자 사이의 주식인수조건만에 관한 약정이 아니라 회사와 이해관계인에게 각종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개별적인 의무의 내용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거나 간과할 경우 회사와 이해관계인은 투자계약 위반에 따른 책임을 부담할 수밖에 없게 된다. 통상적으로 투자계약서에서 주식인수 조건 외의 의무사항으로는 거래완결 후 회사 경영에 관한 사항 또는 거래완결 후 지분의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분류되어 나타난다. 그 내용을 예시해 보면, ① 투자금의 용도 및 제한, ② 기술의 이전, 양도, 겸업 및 신회사 설립 제한, ③ 임원의 지명, ④ 경영사항에 대한 동의권 및 협의권, ⑤ 보고 및 자료 제출, ⑥ 증자 참여의 우선권에 관한 사항, ⑦ 기업공개 및 M&A에 관한 사항, ⑧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⑨ 주주총회 및 이사회 개최 요구, ⑩ 회계 및 업무감사, ⑪ 시정조치, ⑫ 투자자의 주식 처분, ⑬ 이해관계인의 주식 처분, ⑭ 투자자의 우선매수권(Right of First Refusal) 및 공동매도권(Tag-along), ⑮ 주식매수청구권, ⑯ 계약의 해지 및 해제와 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 ⑰ 이해관계인의 책임, ⑱ 특약 등이다. 벤처기업은 위 각 개별조항의 정확한 의미와 의무의 내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한편 투자계약서는 기업의 지배구조에 관한 변경을 예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액면가 500원인 기업이 투자계약을 통해 1주당 가치를 5,000원으로 인정받고 투자를 유치하였다고 한다면 10배수의 투자를 받게 된 것이다. 즉 1주당 500원인 기업이 자본금 5,000만 원으로 설립하였다고 하고 A가 1인 창업자라고 가정할 경우 A는 100,000주(발행주식 100%)를 가지고 있다. 이후 10배수(X10)로 1억 원을 유치하면 회사는 투자자에게 20,000주(1주당 500원은 자본금으로 4,500원은 주식발행초과금이 된다)만을 발행하면 된다. 결국 지분률은 A는 83.33%(100,000/120,000)를 투자자는 16.66%(20,000/120,000)를 보유하게 된다.

만일 발행주식이 기업가치가 확정된 보통주라고 한다면 이러한 지분률의 변동은 단순하게 예상 가능하기 때문에 기업의 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 하지만 벤처캐피탈 투자계약서는 통상적으로 리픽싱(Refixing) 권리를 포함한 투자수단을 통한 투자를 한다. 즉 투자자의 지분희석을 방지하기 위한 지분희석 방지조항과 기업가치 변동에 따른 가격 조정 조항을 일반적으로 요구한다. 또한 이러한 요구는 수용을 거절하기 어렵다²¹. 만일 상환전환우선주 형태로 투자를 유치하면서 리픽싱(Refixing) 조항에 전환권 조항의 내용 중에 장래 기업의 매출, 영업이익 등에 연동되는 조항이 있는 경우 기업가치 산정의 전제가 된 매출 또는 영업이익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투자자가 전환권을 행사할 때 위 합의된 1주당 가격 5,000원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1주당 행사가격이 조정되어 투자자가 더 많은 주식을 보유할 수 있게 된다. 극단적으로 위 사례에서 투자자가 전환권을 행사할 때 투자자의 주식이 1주당 액면가 500원으로 조정이 된다고 한다면 A는 그대로 100,000주를 보유하고 있으나 발행주식 총수는 300,000주가 되며 투자자는 200,000주의 보통주를 보유하게 되어 기업의 최대주주가 변동되게 된다. 이는 기업이 자금조달을 하면서 목적인 결과가 아닐 것이다. 이와 같이 벤처캐피탈 투자는 기본적으로 기업의 기업가치 산정의 어려움에 따른 위험의 분산과 지분희석 방지라는 목적하에 리픽싱(Refixing)을 포함한 투자(상환전환우선주,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모두 동

21 리픽싱(Refixing) 권리를 포함하는 투자수단이 초기 매출이 없거나 사업이 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Valuation 이 어려워 고전적인 기업평가 방식으로 주당 인수가격 확정이 어렵고 투자가 어려운 상태에서 투자자와 기업이 상호 장래 특정 변수(기업가치를 어느 정도 확정할 수 있는 합의사항 등)를 조건으로 해 기업가치를 재평가해 가격조정을 하는 수단으로 사용됨으로써 투자자와 기업이 서로 Valuation 확정에 대한 Risk를 합리적으로 분산하는 기능을 수행해 초기 단계에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을 열어줌; 미국의 경우 초기 단계에서 SAFE와 CN이 점진적으로 폭넓게 사용되는 것만 보아도 이를 예상할 수 있다. 단 SAFE와 CN은 Valuation 자체를 하지 않는다.

일하다)를 선호하고 있으며, 이러한 투자 방식 자체를 거부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리픽싱(Refixing) 조항을 둘 것인가 말 것인가²²라는 부분은 협의의 대상물보다는 만일 리픽싱(Refixing) 조항을 두어야 한다면 그 범위를 얼마나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기업에 불리하지 않게 불공정한 기업가치 산정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에 방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업은 자금조달을 함에 있어 후속투자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본건 투자 자금조달로 인해 약정된 사항 때문에 후속투자가 간혹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이 자금조달을 함에 있어 자본의 증감은 투자자의 사전 동의 사항으로 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많이 보인다. 이러한 동의 사항은 사실 투자자의 양보를 득하기가 어렵다. 기업 입장에서는 후속투자 유치시에 그 기업가치 평가에 따라서 기존 투자자의 증가되는 지분률이 어느 정도에 이를 것인지에 대해 충분한 Simulation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지나치게 높은 기업가치로 투자를 받을 경우 기존 투자계약서 상의 리픽싱(Refixing) 조항 등²³으로 인해 결국 더 많은 주식을 발행해야 하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초기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투자자의 투자 단가 보다 높은 가격으로 증자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한 없이 자금조달을 가능하도록 하거나 내부 기여자의 기여에 대한 평가 등을 위해 일정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주식 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22 초기 벤처기업(Start up)의 경우 모험적 자본으로서 보통주 투자를 권고하고 있으나, 해외에서도 초기 벤처기업(Start up)의 경우에도 전환우선주 등(상환권은 축소 경향) 투자가 많고 리픽싱(Refixing) 개념을 포함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23 지분희석방지조항이 그러하다.

3 투자계약 체결 절차

가. 투자 전 준비 단계

- 필수적인 서류 정리 및 회사의 현황이 잘 정리되었는가
- (i) 정관, 주주명부(보통주 및 종류주식의 현황), 스톡옵션 부여 현황,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현황 등 주주의 지분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 등을 정리
- (ii) 기존 투자자와의 계약상 동의권·우선권·회석방지 조항을 검토 필요
- (iii) 핵심 기술과 지식재산권의 권리귀속, 공동개발, 라이선스 관계를 확인 검토
- (iv) 주요 소송·분쟁·세무이슈·근로이슈 등 진술과 보장 관련 disclosure 대상으로 정리 필요
- 투자조건을 반영해 자금조달이 가능²⁴하도록 현재 정관이 작성되어 있는가

나. 계약서 문안 협상 단계

- 신주인수계약서와 주주 간 계약서 및 기타 다른 투자자의 계약 시 상호 모순되지 않는가
- 동의권과 협의권의 범위가 회사 규모와 성장단계에 비해 과도하지 않은가
- 주식매수청구권 발동 사유 등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책임조항은 과도하지 않게 반영되어 있는가

24 정관에는 발행할 종류주식의 내용과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규정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 상환권 및 리픽싱 조항의 장래 지분에 미치는 효과를 시뮬레이션해 보았는가

다. 거래완결 및 사후 운영 단계

- 투자금 별도계좌 개설 및 사용증빙 관리체계를 마련하였는가
- 연차·분기 보고서 작성 등 보고의무 이행과 관련해 책임자를 명확히 하였는가
- 투자자 동의 또는 협의가 필요한 항목을 사전 점검할 체계를 만들었는가
- 대표이사, CFO, 법무담당, IR담당 등이 각 조항별 책임주체를 명확히 하고 있는가
- 후속투자, 자회사 설립, M&A 제안, 주요 인력 이동 등 투자계약상 사전 동의절차가 필요한 사항을 선행적으로 확인하는가

(유의) 거래완결 직후 회사 내부에 '투자계약 운영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각종 사전 동의사항, 보고사항, 이사회 및 주주총회 안건 검토, 투자금집행 내역 관리 등 투자계약서 준수사항에 대한 체크리스트와 조항별 담당자를 지정해 역할 분담을 분명히 함으로써 투자계약 위반을 사전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내부관리 정비를 해 분쟁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지금까지 투자계약의 기본 구조와 체결-운영 과정에서 확인할 사항을 살펴보았다. 이하에서는 주식형 투자계약을 우선주와 보통주로 나누어 주요 조항의 의미와 유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III

우선주 및 보통주 투자계약서



1 조항별 구분 체계 안내

가. 구분 체계

본 해설서는 투자유치기업 관점에서 각 조항의 중요도·리스크 수준에 따라 중요도를 구분해 해설을 차별화하는 구분 체계를 적용했다. 다음의 3가지로 구분된다.

【구분 체계】

구분	의미	해당 조항 예시
⚠ 주의 (집중검토 필요)	- 기업에 중대한 법적·재무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조항. - 분쟁 발생 빈도가 높거나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큰 조항.	- 상환권 ²⁵ - 전환권(리픽싱) - 주식매수청구권, - 이해관계인의 책임 - 진술과 보장, - 경영사항 동의권 - 투자금 용도 제한, - 우선매수권·공동매도참여권 - 손해배상 - 위약벌

25 기본 권고안은 상환권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나, 상환권을 포함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상환권은 주의 조항으로 분류한다.

<p>💡 유의 (조건·범위 확인 필요)</p>	<p>- 계약이행과정에서 기업운영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항. - 분쟁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으나 운영 방식에 따라 부담 발생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고·자료제출 - 기술이전·겸업 제한 - 계약상 지위 승계 - 이해관계인 주식 처분 - 투자 선행조건 - 거래완결 전 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원 지명 - 계약의 종료 - 지연배상금
<p>🔍 점검 (누락·오해 방지 확인)</p>	<p>- 형식적으로 보이나 분쟁 시 중요 기준이 될 수 있는 조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지 - 비밀유지 - 준거법·분쟁 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무효 - 계약의 효력 계약 내용의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금 - 거래의 완결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 주의 집중검토 조항 (9개):

진술과 보장(SPA 제3조), 전환권/리픽싱(SPA 별지1), 상환권(SPA 별지1), 투자금 용도 제한(SHA 제3조), 동의권·협의권(SHA 제5조), 우선매수권·공동매도참여권(SHA 제14조), 주식매수청구권(SHA 제15조), 손해배상·위약벌(SHA 제16조), 이해관계인의 책임(SHA 제18조)

💡 유의 조건확인 조항 (12개):

신주발행·인수(SPA 제1조), 투자 선행조건(SPA 제2조), 거래완결 전 해제(SPA 제5조), 배당·잔여재산분배(SPA 별지1), 기술이전·겸업 제한(SHA 제4조), 보고·자료제출(SHA 제6조), 회계·업무감사(SHA 제7조), 임원 지명(SHA 제9조), 이해관계인 주식 처분(SHA 제13조), 계약의 종료(SHA 제19조), 권리·의무 양도(SHA 제21조), 지연배상금(SHA 제17조)

☑ **점검** 확인 조항 (10개):

거래의 완결(SPA 제4조), 본 계약의 효력(SPA 제6조, SHA 제2조), 통지(SPA 제8조, SHA 제22조), 비밀유지(SPA 제9조, SHA 제23조), 세금(SPA 제10조), 일부 무효(SPA 제11조), 준거법·분쟁 해결(SPA 제12조), 주식매수선택권(SHA 제8조), 투자자 주식 처분(SHA 제12조), 기업공개·M&A(SHA 제11조), 계약 내용의 변경(SHA 제20조)

나. 해설 구조 안내

각 조항별 해설은 다음의 구조로 작성되어 있다.

- ① 조항 개요: 조항의 의미, 목적, 구조, 기능 등
- ② 법적 의미: 법령·판례·실무상 해석
- ③ 기업 리스크 포인트: 재무적 영향, 지배구조 영향, 분쟁 가능성 및 유의사항
- ④ 협상 시 유의사항: 조정 가능한 범위, 실무 협상 포인트
- ⑤ 분쟁 사례 및 시사점: 실제 발생 사례 요약, 원인 분석, 예방 가이드
- ⑥ 계약 체결 전 체크리스트: 반드시 확인할 항목 요약

구분에 따라 해설의 정도 차등 적용된다. **⚠ 주의** 조항은 모든 항목을 상세히 서술하며, **💡 유의** 조항은 핵심 사항을 중심으로, **☑ 점검** 조항은 간략한 확인 포인트 위주로 서술한다.

기업 입장에서도 각 조항의 중요도에 따라 기업과 창업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투자계약서 협의 등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2 우선주 투자계약의 일반론

벤처캐피탈 업계에서 활용되는 (상환²⁶ 전환)우선주 투자계약서는 그 사용비중²⁷을 볼 때 매우 중요하다²⁸고 할 것이다.

(상환전환)우선주를 포함한 주식을 인수하는 형태의 투자계약서는 투자계약 위반사유 발생시에 그 투자금 회수와 관련된 법률적 구조에 따라 크게 대별하면, ① 계약의 해제와 손해배상청구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안, ② 주금납입 전에는 계약의 해제와 손해배상으로, 주금납입 후에는 주식매수청구권 또는 위약금/위약벌로 회수하는 방안으로 구분되며, 각 계약서가 약간씩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으로 판단된다.

각 법률적 구조에 따른 장단점 및 논리적 타당성 논의가 있을 수 있으나, ① 방안은 주금납입 이후에는 회사법의 단체법적인 성질 및 자본충실의 원칙상 원상회복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법률상 의미의 “계약 해제”는 부적법하다는 한계가 있어 본 해설서에서는 ②방안²⁹에 기초해 서술하도록 한다.

26 상환권을 삭제한 전환우선주를 권고함은 기 설명한 바와 같다. 상환권은 하나의 옵션으로 선택적으로 활용한다.

27 현재 약 4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에서 많이 활용되어 온 투자형태가 국내로 유입된 것이다.

28 2012년 4월 15일 개정상법시행시 상환전환우선주의 발행이 가능한지 여부가 실무상 쟁점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개정상법 조항이 상환주이면서 전환주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규정되어 있고, 이에 대한 학자들도 상환주이면서 전환주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었다. 우선 대법원의 입장은 추후에 확인될 수밖에 없겠지만, 법무부는 결론적으로는 가능한 것으로 행정해석을 했다.

29 ②방안은 ①방안의 한계를 인지하고, 주금납입 이후에는 채무불이행의 경우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규정 또는 위약금(위약벌) 규정을 통해 투자금 회수를 보전하는 방안이다 (다만 회사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은 자기주식 취득의 요건을 갖추어야 적법하게 평가되므로 그 실익이 문제될 수 있다).

3 우선주 투자계약서의 구성

이 장에서는 먼저 투자대상기업(이하 문맥상 오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편의에 따라 '피투자기업' 또는 '회사'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한다)이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하는 방식의 투자를 주로 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상 벤처투자회사(이하 문맥상 오해가 없는 한에서, 편의에 따라 '벤처투자회사', '벤처사', '투자자', '투자회사', 또는 '인수인' 등의 용어를 사용하도록 한다)의 경우를 상정해, 그 내용은 현재 업계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식, 즉 이익배당 및 청산 잔여재산분배에 있어 보통주보다 그 순위에 있어 우선하는 우선주(상법 제344조의 2)에 상환주식(상법 제345조) 및 전환주식(상법 제346조)의 성격이 혼합되어 있는 이른바 “상환전환 우선주”³⁰ 투자계약서를 기준으로 해설³¹을 하기로 한다. 단 기본 권고안은 상환권을 결합하지 않는 전환우선주를 기본안으로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해설서는 2026년 개정 벤처투자 표준계약서의 투자계약서(SPA)·주주 간 계약서(SHA) 분리형 체계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에서는 우선주 투자계약의 전체 구성을 제시한 뒤 투자계약서(SPA)와 주주 간 계약서(SHA)의 주요 조항을 순서대로 살펴본다.

상환전환우선주의 조항 기본 체계의 예시를 들면 다음과 같다.

30 전환상환우선주라고 하기도 하고, Redeemable Convertible Preference Shares의 약자로 “RCPS”라고도 한다. 국내의 우선주는 대부분 상환전환우선주 방식으로 발행되므로, 실무에서는 “우선주”라고 약칭하더라도 오해가 없다.

31 한편, 계약서의 조, 항 및 호의 기감에 있어서는 본 조 삭제, 본 항 삭제, 본 호 삭제 또는 [*]조[*]이라는 기재 형태를 통해 실무적으로 각 옵션이 변경되더라도 각 투자회사별로 특정 투자계약서(안)의 어느 내용이 추가되고 삭제되었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런 방식을 사용할 경우 각 투자계약서 본문의 인용조문의 인용체계를 흐트리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상환전환우선주인수계약서(SPA)】

- 제1조 (신주의 발행사항)
- 제2조 (투자의 선행조건)
- 제3조 (진술과 보장)
- 제4조 (거래의 완결)
- 제5조 (거래완결일 전 해제)
- 제6조 (본 계약의 효력)
- 제7조 (계약의 내용변경)
- 제8조 (통지)
- 제9조 (비밀유지)
- 제10조 (세금)
- 제11조 (일부 무효)
- 제12조 (준거법 및 분쟁 해결)
- 제13조 (특약)

별지1. 본건 신주의 종류 및 내용

1. 본건 신주의 종류
2. 1주당 액면가액
3. 의결권에 관한 사항
4. 존속기간에 관한 사항
5.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6. 배당에 있어서 우선권에 관한 사항
7. 잔여재산 분배에 있어서 우선권에 관한 사항

8. 전환에 관한 사항

9. 상환에 관한 사항

별지2. 진술과 보장

제1장 총설

제1장 종류주식(우선주)의 내용

제1조 (목적)

제2조 (본 계약의 효력)

제2장 회사 경영에 관한 사항

제3조 (투자금의 용도 및 제한)

제4조 (기술의 이전, 양도, 겸업 및 신회사 설립 제한)

제5조 (경영사항에 대한 동의권 및 협의권)

제6조 (보고 및 자료제출)

제7조 (회계 및 업무감사, 시정조치)

제8조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제9조 (임원의 지명)

제10조 (주주총회 및 이사회 개최 요구)

제11조 (기업공개 및 M&A에 관한 사항)

제3장 주식의 처분에 관한 사항

제12조 (투자자의 주식 처분)

제13조 (이해관계인의 주식 처분)

제14조 (투자자의 우선매수권(Right of First Refusal) 및 공동매도참여권(Tag-along))

제4장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

제15조 (주식매수청구권)

제16조 (손해배상 및 위약벌)

제17조 (지연배상금)

제18조 (이해관계인의 책임)

제5장 계약의 일반 사항

제19조 (계약의 종료)

제20조 (계약의 내용변경)

제21조 (권리 및 의무의 양도, 승계)

제22조 (통지)

제23조 (비밀유지)

제24조 (세금)

제25조 (일부 무효)

제26조 (준거법 및 분쟁 해결)

제6장 특약사항

제27조 (특약사항의 효력)

제28조 (특약사항의 구체적 내용)

별지1 투자금의 사용용도 및 실사 약정

(첨부) 퇴사제한 및 경업금지 약정서

위 조항의 구성은 예시에 불과하고, 실무에서는 다양한 투자계약서 양식이 활용되고 있다.

이하 해설은 2026년 벤처투자 표준계약서를 기초로 해 벤처기업 입장에서 투자계약서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각 조항별 해설을 하도록 한다.

4 우선주 투자계약서(SPA) 주요 조항별 해설

【계약서 일반사항】

■ 제목

계약서에는 일반적으로 최상단에 그것이 계약서임을 나타내는 제목(Title)을 붙인다. 계약서 제목 안에 그 계약의 특징을 나타내는 단어를 포함시키는 것은 다른 특징의 계약서들과 구별하는 편의성 측면에서 유용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큰 의미가 있지

는 않다.

그러므로, (상환전환)우선주 투자계약을 체결할 때, 명칭을 반드시 『(상환전환)우선주 투자계약서』라고 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투자계약서』, 『투자합의서』, 『투자약정서』 또는 단순히 『계약서』나 『약정서』라고만 표시해도 무방하다. 또한 계약서의 제목을 이보다 구체적으로 명기하기도 하는바, 회사 및 해당 우선주의 내용을 간단히 명기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주)의 (상환전환)우선주 투자계약서』라고 기재해 제목만으로도 피투자회사 및 투자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 전문/종결문, 계약체결일자

전문(前文, Recitals)이란, 계약서의 각 조항을 구성하기에 앞서 그 계약의 당사자³², 배경³³이나 체결일자³⁴, 취지나 적법한 합의의 선언 등을 기재하는 문언을 말한다. 계약서가 당사자 간에 합의에 의해 성립되었음을 명시하는 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 즉, 계약은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에 의해 성립하는바, 계약의 주체를 제3자와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을 하고, 양 당사자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러한 투자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지 그 동기³⁵를 설명하며, 이러한 배경 하에서 당사자의 완전한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졌음을 밝혀 계약의 성립을 선언하고 그 성실한 이행을 확인하는 의미가 있다.

계약서 작성에 있어서 반드시 전문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종결문으로 대신할 수도 있다. 종결문에는 통상 계약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라는 문구를 기재하고 계약의

32 법인의 경우, 해당법인의 주소, 대표이사, 법인등록번호 등을 명기해 주체를 분명히 하기도 한다.

33 전문에는 계약체결의 취지/배경을 간단히 기재하기도 하는바, 회사는 어떤 목적으로 투자를 받기를 원하며 투자자는 어떤 목적으로 투자를 하기를 원하는지를 간략히 기재한다.

34 계약체결일자는 후일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가능성을 대비해 이를 명백히 하는 의미가 있다. 날짜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 등의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

35 이는 후일 계약의 합목적적으로 해석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의미로 작용하기도 한다.

당사자, 계약서 작성 원본의 수, 보관자를 밝힌다.

실무적으로는 계약서 본문의 맨 마지막 장에 『[이하 날인을 위해 여백]』이라는 문구를 기재한 후, 장을 바꾸어서 다음 장 첫 단에 아래와 같은 종결문, 계약체결일자 및 당사자 날인란을 기재³⁶한다.

【예시】

계약 당사자 간에 이상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 2부를 작성해 ‘갑’과 ‘을’이 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20 년 월 일

“갑”

[]투자조합

주소 []

업무집행조합원 []

주소 []

대표이사 [] (인)

“을”

주식회사 []

주소 []

대표이사 [] (인)

이러한 계약서의 전문, 종결문과 대비해 각 조항 형태의 규정내용을 계약 본문이라 부를 수 있다.

36 참고적으로 간인의 필요성이 문제된다. 간인은 계약서의 효력 발생 요건은 아니며, 계약서의 일체성을 증빙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된다. 투자계약서에 공증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현재 실무상으로 간인을 해야 하나, 그 외의 경우에는 천공 등의 방법을 활용하기도 한다.

■ 당사자

계약체결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법적 주체인 당사자 표시를 정확히 해야 한다. 투자를 받는 회사가 대개 주식회사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어느 경우이든, 당사자가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을 체결할 권능이 있는지, 계약체결 대리인이 이러한 권능의 수권을 받았는지 확인해야 한다(특히 대표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권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³⁷, 당사자의 표시에 있어 주소와 법인등록번호 및 대표자³⁸의 기재가 정확히 되어 있는지 확인 한다.

또한 회사의 대표와 관련해 주식회사의 경우 간혹 대표이사가 2인 이상인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대표이사의 지위가 각자 대표인지 공동대표인지 여부는 당사자의 표시 및 수권의 확인에 있어서 반드시 확인하는 절차³⁹이다.

37 수권에 대한 확인서류로는, 위임장,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수임인의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확인한다. 다만, 실무적으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 이상 회사의 대표이사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8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의 경우 대표이사를 말한다.

39 일반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 ① 회사의 실재 확인 :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법인격 유무, 대표권 제한 여부,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의 진행 여부, 회사의 주소지의 동일성 여부 확인, ② 정관목적 확인 : 주식회사의 권리능력도 법령과 정관의 목적 범위 내로 제한되므로 정관을 확인해 회사가 본 계약의 체결과 관련해 정관의 목적 범위 내의 행위인지 확인, ③ 대표기관의 확인 : 주식회사의 대표기관의 대표이사이다. 이와 관련해 가급적 대표이사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며,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대표이사의 동일성, 대표이사가 2인 이상인 경우 각자 대표인지 공동대표인지 여부, 대표권이 제한되어 있는지 여부, 직무수행대행자가 있는지 여부, 경영지배인이 선임되어 있어 경영지배인이 계약체결권을 갖는지 여부 등에 대해 확인해야 한다.

■ 이해관계인

투자대상기업의 경영을 지배하는 창업자 내지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 경영자인 대주 주 등을 투자계약의 당사자로 참여하게 해 책임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특정을 위해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를 기재 한다.

통상 투자대상기업의 경영을 지배하는 창업자 내지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 경영자인 대주 주 등을 이른바 “이해관계인”이라는 명칭으로 계약의 당사자로 편입되는 방법으로는, ① 투자계약서의 당사자로서 이해관계인란을 별도 추가 기재해 이에 약정을 하는 방안(이에는 이해관계인이 투자대상기업의 약정사항을 수인하고 이를 담보하는 내용을 포함하게 된다), ② 벤처투자회사와 회사 간의 투자계약서에 부속하는 별도의 확약서 또는 부속합의서 형태로 약정을 하는 방안(이에는 구체적으로 이해관계인이 투자대상기업의 투자계약서상의 약정사항 중 이행을 담보하는 범위와 내용을 포함하게 된다)이 있다.

(1) 신주의 발행 사항 유의

(가) 조항개요

본 조항은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의 종류, 수량, 액면가액, 발행가액, 총 인수가액, 납입기일, 각 투자자별 배정 수량과 인수가액 등 투자의 기본 조건을 확정하는 규정이다. 2026년 개정 계약서에서는 신주의 종류 및 내용을 별지 1로 분리해 규정하고 있다. 납입기일에 대해 “회사와 투자자가 별도로 합의하는 날”이라는 선택 조항을 두어 유연한 조정이 가능하다.

본 조항은 유의 조항으로 구분을 하였으나, 기본적으로 합의된 조건이 정확하게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보면 어느 조항보다 중요하며 명확하게 합의된 발행조건(1주당 단가, 발행주식 수, 납입기일 등)이 정확하게 기재되었는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제1조 (신주의 발행 사항)

① 회사는 본 계약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신주(이하 “본건 신주”)를 발행하고
투자자는 본건 신주를 인수한다.

1. 본건 신주의 종류 및 내용: 별지 1.에 의함
2. 본건 신주의 발행 총수: 00,000주
3. 본건 신주의 1주당 액면가액⁴⁰: 금 000원

40 면가는 정관이 정하는 1주당 금액을 발행가는 기업가치 변동에 따라 해당 발행시점에 기업의 가치를 반영한 1주당 가치를 말한다. 발행가는 통상 배수로 표현되며 액면가 × [*] 배수로 사용된다. 이 경우 액면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주식발행초과금이 된다.

4. 본건 신주의 1주당 발행가액: 금 000,000원
5. 본건 신주의 총 인수가액: 금 000,000,000원
6. 본건 신주의 납입기일: 20[]년 []월 []일
7. 각 투자자별 본건 신주의 배정 수량과 인수가액

투자자명	배정수량	인수가액
[]	[]주	[]원
[]	[]주	[]원
합계	[]주	[]원

- ② 회사는 납입기일⁴¹로부터 3영업일 전까지 투자자에게 주금의 납입을 위한 은행의 별단예금 계좌⁴²를 통지해야 한다.

이외 발행회사의 현재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발행된 주식의 총수 등을 추가적으로 기재해 투자자의 지분을 등을 해당 조항만으로 알 수 있도록 기재할 수도 있다.

한편 본 계약서의 경우 상환전환우선주의 내용을 별지1.에 분리해 기재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 계약서 본문에 별지1.의 내용을 포함해 기재하는 형식을 취하기도 한다.

(나) 법적 의미

위 조항은 투자계약서의 가장 기본이 되는 발행조건을 정하는 것으로 그 정

41 청약일로 하기도 한다.

42 별단계좌를 개설해 납입하는 경우 투자자는 은행 담당자를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확성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회사로서는 합의된 발행조건대로 정확하게 기재되었는지를 점검해야 하며, 이러한 발행조건이 정관과 발행결정기관의 의사결정과 일치하고 이에 따라 법인등기부등본⁴³에 정확하게 그 내용이 기재되도록 해야 한다.

한편 신주의 발행은 상법과 정관이 정하는 절차와 내용에 따라야 하며, 제3자 배정의 경우 정관에 근거를 두거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상법 제418조). 1주당 발행가액은 협의된 기업가치를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값으로 산정되며, 액면가액과의 차이는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자본준비금에 편입된다.

(다) 기업 리스크 포인트

과도하게 높은 기업가치로 투자받을 경우 후속투자 유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창업자 등 대주주의 지분이 과도하게 희석될 위험이 있다. 발행가액과 지분을 등이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하며, 납입기일이 미확정되면 납입 지연 위험이 있으므로 최대 납입기한을 별도로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투자자가 자금인출에 대한 통제(자금사용 용도에 대한 검증 등)를 위해 에스크로(Escrow)계좌 등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투자금은 회사의 계정에서 운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부득이하게 자금 관련 통제 권한이 필요할 경우 인출과 관련해 거래은행 등과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라) 협상시 유의사항

43 납입 이후 법인등기부등본에 자본의 증감 내용이 정확하게 반영되었는지 사후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기업가치 산정 방법 및 발행가액의 근거에 대해 투자자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납입기일은 가급적 확정일로 기재하되, 불가피한 경우 최대 납입기한을 명시하는 것이 유리하다. 별도예금 계좌 통지 기한(납입기일로부터 3영업일 전)을 준수할 수 있도록 내부 절차를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신주발행사항 조항은 투자자 또는 기업 어느 일방에게 특별하게 불리한 조항은 아니다. 다만 기업은 그 발행조건을 정함에 있어 투자유치 이후 지분률에 미치는 영향, 전환권의 행사로 인해 변동될 지분률, 후속투자의 규모, 후속투자를 유치함에 있어 장애가 되는 조항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양자 다 위 사항을 고려해 협의해 수용이 가능하리라 본다. 위 조항은 가장 기본적인 주식인수조건으로서 투자계약서의 가장 핵심만큼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야 한다.

(마) 계약체결 전 체크리스트

- 합의된 발행조건이 정관의 범위 내 발행조건인지 여부 확인
- 정관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발행 근거 규정 여부 확인
- 발행가액 산정 근거의 합리성 확인
- 납입기일의 확정 여부 및 최대 납입기한 설정 확인
- 별도예금 계좌 통지 절차 이행 가능성 확인
- 각 투자자별 배정 수량의 합계 정확성 확인

조항 개요	발행할 신주의 종류, 수량, 액면가, 발행가액, 총 인수가액, 납입기일, 투자자별 배정수량을 정하는 조항이다.
법적 의미	투자계약의 핵심 발행조건이 확정되는 부분이다. 투자유치 이후 전환비율·이익배당·상환의무·지분희석 등 지분변동의 조건이 된다.
기업 관점 리스크	발행가액과 지분율 계산이 정관·cap table과 불일치하면 후속 라운드나 전환 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협상·운영 포인트	기업가치 산정 방법 및 발행가액의 근거에 대해 투자자와 충분한 논의 필요하다. 납입기일을 특정일로 고정할지 '별도 합의일' 옵션을 돌지, 복수 투자자 배정표가 최종 cap table과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한다.
체크리스트	발행가액, pre/post money, 발행주식총수, 납입일, 주당가액, 투자자별 배정 수량이 모두 서로 맞는지 점검한다.

(2) 투자의 선행조건 유의

(가) 조항개요

선행조건(Conditions Precedent, CP)이란 주식투자계약(SPA, Subscription Agreement, 신주인수계약 등)에서 투자자가 투자대금을 납입할 의무가 발생하기 위해 거래종결일(Closing Date) 이전에 충족되어야 하는 일정한 조건을 말한다.

민법 제147조 제1항의 정지조건에 해당하는 법적 성격을 가지며, 선행조건이 모두 충족된 때에 비로소 투자자의 납입 의무 및 회사의 신주발행 의무가 발생한다.

투자자의 신주 인수는 납입기일 현재 다음 조건이 충족되는 것을 선행조건으로 한다

선행조건의 종류	
(i) 회사-이해관계인의 의무 이행	(v) 제3자 동의 획득
(ii) 진술과 보장의 진실성·정확성	(vi) 상법 제418조 등 법령 절차 및 내부 절차 이행
(iii) 투자를 방해하는 소송·절차의 부존재	(vii) 투자자 동의 없는 정관·내부규칙 변경·결의의 부존재
(iv) 정부 인허가 획득	(viii) 통상적이지 않은 자본구조·경영상태·재무상황 변동의 부존재

제2조 (투자의 선행조건)

본 계약에 따른 투자자의 본건 신주 인수는 인수금액의 납입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조건이 충족되는 것을 선행조건으로 한다.

1. 회사 및 이해관계인이 본 계약에 따라 이행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였을 것
2. 회사 및 이해관계인이 본 계약에서 행한 진술과 보장이 진실되고 정확할 것
3. 본 계약에 따라 투자자가 인수하기로 예정된 본건 신주의 발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등 본 계약의 이행을 방해하는 소송 또는 기타의 절차(행정절차, 감사 등 포함)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우려가 없을 것
4. 회사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해 필요한 정부의 인허가 등을 획득하였을 것
5. 회사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해 필요한 제3자의 동의 등을 획득하였을 것
6. 회사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해 필요한 관련 법령의 절차(상법 제418조 등) 및 회사 내부 절차(정관 및 내부규칙 변경, 주주총회결의, 이사회결의 등 포함)를 이행하였을 것
7. 회사가 투자자의 동의 없이 정관 및 내부규칙을 변경하거나 투자자와 협의 없이 이사회 결의, 주주총회결의를 하지 않았을 것
8. 회사가 본 계약의 체결 이후 자본구조, 경영상태, 재무상황의 통상적이지 않은 변동 내지 부정적 변동, 통상적인 영업활동에서 벗어난 행위가 없을 것

이를 분설해 보면 아래와 같다.

① 계약상 의무의 이행 (“회사 및 이해관계인이 본 계약에서 정한 거래종결 전에 이행해야 할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을 것”), ② 진술 및 보장(Representations & Warranties)의 정확성 (“계약 체결일 및 거래종결일 현재 회사 및 이해관계인의 진술 및 보장이 모든 중요한 측면에서 진실하고 정확할 것”, 이른바 Bring-down Condition으로, 계약 체결 시점에 한 진술·보장이 거래종결 시점에도 여전히 유효함을 확인하는 조건이다.), ③ 내부 의사결정 절차의 완료(신주발행 이사회 결의 정관 변경이 필요한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 종류주식 발행 시 종류주주총회 결의,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 포기 또는 동의서 청구), ④ 정부 인허가 및 신

고(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신고(해당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산업별 인허가(방산업체, 금융업, 통신업 등), ⑤ 제3자 동의(기존 투자계약상 우선매수권·동의권 보유자의 동의 또는 권리 포기, 주요 계약상 변경통제(Change of Control) 조항에 따른 거래상대방 동의), ⑥ 부수 계약의 체결(주주 간계약(SHA) 체결, 이해관계인의 경업금지약정 체결, 핵심 임직원의 근로계약 또는 Key-man 약정 체결 등), ⑦ 회사의 상태에 관한 조건(중대한 부정적 변경(Material Adverse Change, MAC)이 발생하지 않을 것, 진행 중인 중요 소송이 없을 것, 핵심 임직원의 이탈이 없을 것, 주요 자산·계약의 현상 유지), ⑧ 자본구조 관련 조건(약정한 발행주식총수, 자본금, 주주명부 상태의 유지, 기존 우선주의 전환 또는 정관 변경 완료), ⑨ 서류 교부(법무법인 법률의견서(Legal Opinion), 주주명부, 정관,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 대표이사 및 이사회 결의서 사본) 등에 대해서 사전 협의된 범위 내에서 조건 충족이 되어야 한다.

(나) 법적 의미

선행조건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계약상 안전장치로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거래 안정성 확보: 계약 체결 시점과 실제 자금 납입 시점 사이의 시차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한다. 실무상 신주 인수계약은 통상 계약 체결 후 수일 내지 수주 후⁴⁴에 납입이 이루어지므로, 그 사이의 변동 위험을 통제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실사(Due Diligence) 결과의 반영: 실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항이 거래종결 시

44 원칙적으로 납입기일 2주 전에 기존 주주에게 통지의무를 부담하는바(상법 제418조), 주주 전원의 동의가 없는 이상 필연적으로 2주 이상의 시간적 간극이 발생한다.

점까지 유지되거나 시정되도록 강제한다.

거래 철회권(Walk-away Right) 확보: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투자자는 납입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계약에서 이탈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갖게 된다.

회사 측 협조 의무 강제: 회사로 하여금 선행조건 충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시키게 된다.

투자회사는 자금 지급에 필요한 투자선행조건으로서 일정한 조건을 부가한다. 투자 실사 이후 투자금 납입 전에 해결되어야 하는 사항이 있다면 본 규정에 추가해 투자금 납입의 선행 조건으로 삼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와 별도로 “거래완결 전 의무” 규정⁴⁵을 별도로 두기도 한다. 결국 선행조건은 투자계약 체결일과 투자금 납입일 사이의 간격으로 인한 것이나 벤처기업 입장에서 선행조건은 그 범위가 좁을수록 자금조달의 안정성을 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위 예시된 선행조건 사항은 일반적 사항으로서 통상적으로 기재되고 있는 예시 조항들이다. 이 외에 기타 선행조건의 부가를 요청하는 경우 개별적으로 판단을 해야 할 것이다.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투자자는 투자금 납입 의무가 없다. 선행조건은 투자계약 체결일과 투자금 납입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에서 발생하는 위험

45 제[*]조 거래완결 전 의무

- ① 회사는 본건 우선주식을 발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절차(정관 및 내부규칙 변경, 주주총회결의, 이사회결의 등 포함)를 이행한다.
- ② 회사는 자본구조, 경영상태, 재무상황 등에 통상적이지 않은 변동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또한 통상적인 영업활동에서 벗어난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투자자의 사전 동의를 얻거나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행위는 예외로 한다.
- ③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제[*]조에서 정한 진술 및 보장 사항에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을 관리하기 위한 장치이다. 제6호에서 상법 제418조(신주배정일 공고) 등의 이행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기존 주주들에 대한 통지·공고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선행조건의 의미는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법률효과에 중심이 있다.

① **투자자의 권리**: 선행조건이 거래종결 예정일까지 충족되지 않은 경우, 투자자는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통상 규정한다.

선택사항	내용
거래종결 강행	미충족 조건을 포기하고 납입 진행
거래종결 연기	일정 기간 내 충족을 조건으로 종결 연기
계약 해제	계약을 해제하고 책임 추궁

② **최종기한(Long-stop Date)**: 선행조건 충족의 최종기한을 명시해, 동 기한까지 충족되지 않으면 어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재 권고안도 이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

③ **조건 포기**: 선행조건은 통상 투자자의 이익을 위한 조건으로 설정되므로, 투자자가 일방적으로 포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다만 회사 측 이익을 위한 조건(예: 투자자 측 진술·보장 정확성)은 회사가 포기 가능하다.

(다) 기업 리스크 포인트

선행조건 불충족은 투자 무산 사유가 될 수 있다. 특히 기존 투자자의 동의 획득(제5호)을 간과해 투자 유치가 지연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제7호(투자자 동의 없는 정관 변경 등)도 주의를 요한다. 또한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투자금을 납

입하게 한 경우, SHA상 주식매수청구권 발생 사유가 된다(SHA 제15조 제1항 제1호).

제5호 제3자의 동의와 관련해 선행투자자의 동의를 요하는 경우 투자자 확인 및 동의서를 청구하기도 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기존 투자자가 있는 경우 기존 투자자의 동의가 필요한 계약이 무엇이 있는지를 사전에 준비하고 확인해야 한다.

제6호 제3자 배정 시 주주에 대한 공시제도의 도입과 관련해 신주배정일 공고/제3자 배정 시 주주에 대한 공시를 마친 것으로 투자의 선행조건으로 할 수도 있고 진술과 보장사항으로 기재할 수 있다. 신주배정일 공고 규정(상법 제418조)의 준수는 기업 입장에서도 유의해야 한다. 기존 주주들이 있는 경우 기존 주주들에 대한 통지 등을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를 간과해 투자 유치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라) 협상시 유의사항

기업 입장에서는 선행조건이 범위가 좁을수록 자금조달의 안정성을 기할 수 있다. 기존 투자자가 있는 경우 기존 투자자의 동의가 필요한 계약이 무엇인지를 사전에 파악하고 준비해야 한다. 상법 제418조에 따른 주주 통지·공고 절차를 간과하지 않도록 내부 체크리스트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선행조건 조항은 투자자 또는 기업 어느 일방에게 특별하게 불리한 조항은 아니다. 양자 다 위 사항을 고려해 협의해 수용이 가능하리라 본다. 다만 투자자가 법률실사, 회계실사 등을 기초로 투자의 선행조건을 개별적으로 부기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새로이 반영되는 선행조건에 대해

서는 충분한 협의를 해야 한다.

(마) 계약 체결 전 체크리스트

- 각 선행조건의 충족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
- 기존 투자자의 동의 필요 여부 확인
- 상법 제418조 신주배정일 공고 절차 이행 여부 확인
- 선행조건 불충족 시 법적 결과(투자 무산, SHA상 주식매수청구권) 인지

조항 개요	투자자가 납입하기 전에 충족되어야 할 조건을 정한다. 의무이행, 진술과 보장의 정확성, 인허가 및 제3자 동의, 내부절차 이행, 통상적 범위를 벗어난 부정적 변동의 부재 등이 포함된다.
법적 의미	조건부 거래 구조이므로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투자자는 납입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기업 관점 리스크	실무상 가장 자주 간과되는 부분은 정관변경, 이사회·주주총회 결의, 주요 계약상 제3자 동의 , 규제기관 인허가 여부다.
협상·운영 포인트	기업은 선행조건을 '실질적으로 통제 가능한 항목'과 '외부 의존 항목'으로 나누어 조건 충족을 위한 사전 체크리스트를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체크리스트	발행결정기관(이사회 또는 주주총회)결의서, 정관, 주주명부, 주요 계약 동의서, 인허가 상태 등을 종결 체크리스트로 관리한다.

(3) 회사의 진술과 보장 ⚠ 주의

(가) 조항 개요

진술 및 보장(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R&W)이란 주식투자계약의 당사자(주로 회사 및 이해관계인)가 계약 체결 시점 및/또는 거래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회사·사업·자산·법률관계 등에 관한 일정한 사실이 진실하고 정확함을 상대방(투자자)에게 진술하고 그 진실성을 보장하는 조항을 말한다.

이러한 진술과 보장에는,

① 회사의 법적 주체성을 갖추었으며 필요한 인·허가 사항을 마쳤다는 조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파산절차, 회생절차 및 기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의 기업구조조정대상회사에 포함되지 아니해 이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이 개시되려는 상태에 있지 않다는 취지의 조항,

② 회사가 유효하게 벤처투자회사의 투자를 받을 수 있으며 이에 어떤 법적 제한 사항도 없을 뿐 아니라 벤처투자회사가 투자금을 회수 하는데 있어 법령 또는 제3자와 계약상의 어떤 제한도 없다는 취지의 조항,

③ 회사가 지금까지 투자를 받기 위해 벤처투자회사에게 제출한 제반 자료(재무제표, 자본구조, 사업계획, 목표달성 가능성 등)는 진실에 부합하며 이와 다른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조항,

④ 현재 진행중이거나 장래 예상되는 소송 또는 법적 제한 조치가 없거나 소송 또는 법적 제한 조치로 인해 본 계약 또는 거래관계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분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조항⁴⁶,

46 만일 회사가 특정 소송이 계류중인 상태에서 투자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동 소송을 명시해 이를 제외하고는 어떤 법적 분쟁도 계류중이 아님을 진술하고 보장해야 한다.

⑤ 회사가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제반 관련법령(환경에 관한 행정단속 법률 등), 규정 및 명령을 준수했으며,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어떤 불이익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조항 및 투자계약 체결일 현재 제3자와 거래관계에서 계약 불이행의 내용이 없다는 취지의 조항,

⑥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동산(기계), 차량 및 사무실기기는 적법하게 회사의 소유이거나 회사가 사용권을 가지고 있으며, 위 소유권 및 사용권을 방해할 어떤 사유도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조항,

⑦ 벤처투자회사가 투자한 투자금 회수에 우선해 어떤 제3자의 우선권보장에 대한 약정이 없다는 취지의 조항,

⑧ 회사의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회사의 의무부담 약정이 없다는 취지의 조항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된다⁴⁷.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거래완결일까지 별지2의 진술과 보장 사항이 진실되고 정확함을 진술하고 보장한다. 진술과 보장의 위반은 거래완결일 전 해제 사유(SPA 제5조)이자 SHA상 주식매수청구권 발생 사유(SHA 제15조)가 된다.

47 한편, 기술적으로는 진술과 보장 조항이 과다하게 많을 경우 '피투자기업'의 불만과 투자계약의 성사가 투자계약서의 문구로 인해 혼란에 빠져 주객이 전도되는 결과가 된다는 점에서 진술과 보장 사항을 별지로 기재해 첨부하는 형식을 취하기도 한다. 다만, 이에 대해서 설명해야 함은 물론이다.

제3조 (진술과 보장)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거래완결일까지 각자 별지 2. 진술과 보장 사항이 진실되고 정확함을 진술하고 보장한다.

별지2.

진술과 보장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본 계약 체결일 현재 및 거래완결일 현재 아래 사항이 진실되고 정확함을 진술하고 보장한다.

제1장 공통사항

제1조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회사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어 유효하게 존속 중인 주식회사로서 회사에 대해 파산, 회생 등 도산절차와 관련된 어떤 신청도 제기된 바 없으며, 지급불능, 지급유예, 워크아웃 절차 등 회사의 주주 및 채권자의 권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 없음을 본 계약 체결일 및 거래완결일을 기준으로 진술하고 보장한다. (이하 진술 및 보장 전체에 대한 기준시점은 본 계약 체결일 및 거래완결일이다).

제2조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본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법률적, 사실적인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주주총회 및 이사회 의 승인을 비롯해 본 계약의 체결 및 유지를 위해 회사가 이행해야 하는 모든 조치를 취하였음을 진술하고 보장한다.

제3조 본 계약의 체결 및 신주의 발행은 법률이나 규정 기타 관계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며, 회사의 정관에 부합하고, 회사 및 이해관계인이 당사자인 계약 또는 기타 의무의 위반을 가져오지 아니함을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진술하고 보장한다.

제4조 본 계약에 의한 회사 및 이해관계인의 의무는 본 계약에서 정한 바 그대로 적법, 유효하고 구속력이 있으며 회사 및 이해관계인에 대해 집행 가능한 법적 의무를 구성함을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진술하고 보장한다.

제5조 투자자가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하는 주식은 적법하며 유효하게 발행될 것이며, 투자자의 본 계약상의 권리 혹은 주식에 대한 권리 행사를 실질적으로 방해할 만한 행정절차(행정처분, 조사, 감사, 수사 포함), 법령, 또는 보전처분을 포함한 법원의 재판에 의한 어떤 제한이나 회사와 이해관계인이 당사자이거나 구속을 받는 계약상의 어떤 제한도 존재하지 아니함을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진술하고 보장한다.

제2장 회사에 관한 사항

제6조 (자본에 관한 사항)

① 회사의 발행주식은 본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1주당 액면가액이 금 []원인 보통주식 []주, 종류주식 []주이고, 그 이외의 발행 주식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주주별 지분율, 전환사채 발행내역, 신주인수권부사채, 주식매수선택권, 주식배당, 기타 장래 회사의 지배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반 권리의 주요 내용 및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내역, 조건부지분인수계약 체결 내역은 아래 주식 등의 현황 기

재와 같으며 아래 기재 사항 이외에 회사의 주식 지분을 기타 장래 회사의 지배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사항도 없다.

1. 주주별 소유주식 수

주주명	주식 수	지분율(%)	기타 (담보권설정여부,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여부)
합계	[]주	100.0%	

2. 전환사채

회수	총 발행가액	미 전환금액	전환가격	전환기간

3. 신주인수권부사채

회수	총 발행가액	미 행사금액	행사기간	행사방법

4.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받은 자	주식 수	행사가액	행사기간	행사방법

5. 조건부지분인수계약, 조건부지분전환계약 및 그 밖에 주식으로 전환 또는 교환 될 수 있는 계약 체결 내역

계약 체결일	투자자	투자금	가치한도	할인율	기타 주요 조건

- ② 회사는 설립 이후 본 계약 체결일 현재까지 주식의 발행에 있어서 가장납입을 한 사실이 없다.
- ③ 회사는 계열회사 또는 특수관계인에 대해 통상의 범위에서 벗어날 정도로 회사에 불리한 매출거래, 보증 또는 담보제공 등을 한 사실이 없다.

제7조 (자산에 관한 사항)

- ① 회사는 현재 사용중인 부동산, 동산, 기계, 차량, 사무실 기기 및 기타 영업에 필요한 모든 권리, 물건 등은 적법하게 회사의 소유로 되어 있거나, 회사가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을 진술하고 보장한다.
- ② 회사는 현재 보유 사용하고 있는 모든 특허권을 포함한 지식재산권 기타 무형자산은 회사가 적법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제3자로부터 권리를 침해 받고 있지 않음을 진술하고 보장한다.
- ③ 회사는 통상적인 사업경로에 따른 제품의 판매 등을 제외하고 회사의 자산이나 권리를 매매, 교환 또는 기타 방식으로 처분하지 아니하였음을 진술하고 보장한다.

제8조 (부채에 관한 사항)

- ① 회사의 차입금, 담보제공 및 입보 내역은 아래 기재와 같다.

금융기관 등 (채권자)	채무금액	제공담보		입보내역		비고
		담보종류	설정액(실현가)	한도	사용액	

② 회사의 금융기관 차입, 회사 발행 사채 등과 관련된 계약에는 본 거래로 인해 해당 계약에서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거나 해당 계약의 상대방이 회사에 대해 즉각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회사는 진술하고 보장한다.

제9조 (재무제표에 관한 사항)

- ① 투자자에게 제공된 회사의 20[]년 []월 []일 기준 재무제표는 대한민국에서 통용되는 기업회계기준을 포함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 및 관행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회사의 재무상태 및 영업현황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음을 회사는 진술하고 보장한다.
- ② 투자자에게 서면 고지된 것을 제외하고 상기 재무제표 기준일 이후에, 회사의 재무상태, 자산 및 부채, 영업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변경이나 변동 사항은 없음을 회사는 진술하고 보장한다.
- ③ 회사가 최선의 노력으로 파악한 결과 상기 재무제표에 기재되지 아니한 부외부채(우발채무 포함) 및 부외자산은 실사자료로 제시한 바와 같고, 실사자료에 나타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투자자의 본 계약체결 및 거래완결에 영향을 줄 만한 중대한 부외부채 및 부외자산은 없다.

제10조 (관계회사에 관한 사항)

회사의 관계회사는 아래 기재와 같다. 여기서 “관계회사”란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이

주식 또는 주식연계사채를 보유하고 있거나 기타 추후 주주로 인정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를 말한다.

회사명	소재지	업종	관계	주주 구성

제11조 (법령 위반, 소송 등에 관한 사항)

- ① 회사는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업에 필요한 정부 인허가 등을 모두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으며, 이 인허가 등이 취소될 위험에 처해 있지 않다.
- ② 회사는 회사의 자산(부동산, 설비, 임차물 및 장비 등) 및 사업활동과 관련해, 지역제한, 안전, 공해 및 환경, 노동,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포함해 회사와 그 생산 과정 및 제품에 적용되는 제반법령, 규정 및 명령을 준수했으며, 부당하게 임금, 퇴직금 등을 미지급한 사실이 없다.
- ③ 투자자에게 서면 고지된 것을 제외하고, 회사의 사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현재 진행되는 소송(보전소송 포함), 중재 또는 행정절차 기타 분쟁은 없음을 회사는 진술하고 보장한다.
- ④ 회사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과 관련해 소송, 중재 또는 기타 분쟁이 없으며, 추후 분쟁의 위험에 처해 있지 않다.
- ⑤ 회사는 주주총회 및 이사회 관련 제반 서류를 작성 비치하고 있으며, 그와 관련된 법규 위반사항이 없다.

제12조 (세금, 보험 등에 관한 사항)

- ① 회사는 국세, 지방세 등 고지된 납세 의무를 이행하였고,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

으로 미납된 세금은 없음을 진술하고 보장한다.

- ② 회사는 회사 운영과 관련해 필요한 제반 보험(4대 보험, 기타 영업 관련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거나 해당 업계에서 회사와 유사한 기업들이 통상적으로 가입하고 있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진술하고 보장한다.

제13조 (기타)

회사는 투자자 또는 그 실사관련 자문사들에게 제공한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정관 및 각종 계약서, 사업계획서 등 일체의 서면, 서류, 정보 기타 자료는 제공일 현재 회사에 관한 사항을 정확히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진실되고 거짓이 없으며, 중요한 사항을 생략하지 않았고, 중대한 면에서 의미를 오도하지 않는다. 회사의 임직원이 실사 과정에서 구두로 답변한 내용에 관해서도 고의 또는 과실로 허위 답변한 사실이 없음을 진술하고 보장한다. 단, 사업계획서 상에 미래에 대한 예측 및 기타 사업관련계획 사항은 경영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제3장 이해관계인에 관한 사항

제14조 이해관계인은 투자자에 대해 본 별지의 진술과 보장 사항이 본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서 모두 진실되고 거짓이 없음을 보장하고, 나아가 동 진술과 보장 사항이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 이에 대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이해관계인은 이로 인해 투자자가 입게 되는 모든 손해, 손실 및 비용을 본 계약에 따라 회사와 함께 배상 또는 보상한다.

제15조 이해관계인은 위 제14조에 추가해 다음 사항에 대해 진술하고 보장한다.

- ① 이해관계인이 가지고 있는 회사의 주식은 첨부하는 주주명부의 기재와 같고, 이해관계인은 이를 자신의 계산으로 취득하였고 가장납입한 바가 없다.
- ② 위 주주명부는 이해관계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들의 이름, 관계 및 그 소유 주식 수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다.
- ③ 이해관계인이 본 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이행함에 있어 법령상 또는 계약상의 제한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 ④ 이해관계인은 본 계약 체결일 현재 회사의 주주 또는 종업원으로서의 지위와 관련해 제3자와 분쟁을 하고 있지 아니한다.

제16조 이해관계인은 본 진술과 보장 사항에 영향을 미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시 투자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투자자의 요청에 따라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나) 법적 의미

진술과 보장 조항은 영미법 개념이 국내에 도입된 것이다. 국내법상 진술과 보장 위반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 약정의 유효성이 인정된다. 진술한 사실이 허위인 경우 진술자는 원칙적으로 고의·과실을 불문하고 책임을 부담하나, 이해관계인의 경우 SHA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제한⁴⁸하고 있다.

투자를 받는 회사는 투자사에 대해 일정한 사실과 상황, 법적 관계에 대해 진술하고 이상이 없다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투자사 입장에서는 이러한 회

⁴⁸ 벤처투자법은 이해관계인의 책임(연대책임) 관련해서는 고의 또는 중과실의 주관적 요건을 요구한다. 다만 이는 연대책임(회사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3자의 책임)에 국한되며, 이해관계인이 고유의 의무 약정을 위반한 경우는 별론이다.

사의 진술이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투자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한편 진술 및 보장 조항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① **정보 제공 기능**: 회사가 자신에 관한 중요 정보를 계약상 명시적으로 진술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가 실사(Due Diligence)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사항까지 포함해 정보비대칭을 해소한다. 회사는 진술 및 보장 항목을 검토·작성하는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내부 점검을 수행하게 된다.

② **위험 배분 기능**: 거래 종결 후 발견되는 회사의 잠재적 문제(우발채무, 미공시 소송, 세무 리스크 등)에 관한 위험을 어느 당사자가 부담할지 사전에 배분한다. 진술 및 보장의 범위가 넓을수록 회사가 위험을 부담하고, 좁을수록 투자자가 위험을 부담한다.

③ **가격 조정의 근거**: 진술 및 보장 위반으로 회사 가치가 실제와 다른 것으로 밝혀진 경우, 손해배상(Indemnification)을 통해 사후적으로 투자가격을 조정하는 효과를 발휘한다.

④ **거래 철회 사유**: 선행조건(CP) 중 “진술 및 보장의 정확성”이 통상 포함되므로, 거래종결 전 진술·보장의 부정확성이 발견되면 투자자가 거래에서 이탈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⑤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 거래종결 후 진술·보장 위반이 발견된 경우, 손해배상 조항과 결합해 금전적 보전을 청구할 수 있는 계약상 근거가 된다.

진술과 보장은 위반의 경우 법적 책임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거래종결 전 위반 발견 시에는, (i) 선행조건 미충족을 이유로 한 거래종결 거부, (ii) 계약 해제 (Long-stop Date 도과 시), (iii)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된다. 거래종결 후

위반 발견 시에는, 손해배상 청구가 핵심 구제수단⁴⁹이 되며, 실무상 계약 해제는 거의 인정되지 않으며, 금전배상으로 갈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 기업 리스크 포인트

① **광범위한 책임 노출**: 진술 및 보장 조항이 넓을수록, 회사의 잠재적 책임 부담 가능성이 커진다.

② **과실 없는 책임**: 진술 및 보장 위반은 통상 무과실 책임으로 구성되므로, 회사가 위반 사실을 몰랐더라도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③ **우발채무의 사후 발현**: 거래종결 시점에는 인지하지 못했던 세무, 노동, 환경, 소송 리스크가 사후에 발현되어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④ **공개목록(Disclosure Schedule) 누락 위험⁵⁰**: 공개목록(Disclosure Schedule)에 기재해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그 자체가 진술 및 보장 위반이 된다.

진술과 보장 위반은 가장 빈번한 분쟁 원인 중 하나이다. 재무제표의 정확성(부의부채, 우발채무, 세무 리스크), 지식재산권의 적법한 보유(제3자 침해 가능성), 소송·분쟁의 부존재 등에서 위험이 크다.

(라) 협상시 유의사항

진술과 보장의 중요성 기준(Materiality Threshold)에 따른 제한 협의, 이미 공개된 사항(Disclosed Matters)의 예외 처리 등을 협의할 수 있다. 권고안은 투자

49 한편 대법원은 M&A 거래에서 진술 및 보장 위반에 대해 진술 및 보장 조항은 유효한 계약 조항으로서 그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즉 약의의 매수인(Sandbagging) 문제: 매수인이 위반사실을 알고도 거래를 종결한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될 수 있다(사안에 따라 판단)고 판시했다.

50 예를 들어 진행 중인 소송이 3건이 있었으나, 1건이라고 계약서에 기재한 경우 등

자와 기업 양 측에 합리적 범위 내로 조정된 권고안으로 보이나, 기업 입장에서는 아래와 같은 점을 유의해 예외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명확히 기재⁵¹해 협의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업 입장에서는 아래 내용을 협의할 수 있다.

① **한정 문구 활용**: (i) **중요성 한정** (“...모든 중요한 측면에서 진실하고 정확하다”, “...회사의 사업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등), (ii) **인식 한정** (“회사가 알고 있는 한...”), (iii) **공시목록 한정** (Disclosure Schedule) (“별첨 공시목록에 기재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사실을 공개목록에 기재해 진술·보장 위반에서 제외시키는 것이다.)

한편 창업자인 이해관계인 입장에서는 창업자 보호를 위해 책임 분리(회사의 책임과 창업자의 책임을 구분, 창업자는 자신의 인식 범위에서만 책임 부담)를 고려해 협의할 수 있다.

실무적으로는 아래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② **공개목록(Disclosure Schedule) 작성의 부실**: 공개목록은 진술·보장 위반 책임의 면제 조건이 되므로, 작성 단계에서 모든 사실을 누락 없이 기재해야 한다. 이는 투자자가 인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③ **자본구조 진술의 정확성**: 자본구조 진술은 근본적 진술로서 사후 허위 사실 발견 시 큰 책임 부담이 따른다. 모든 주식으로 변동할 가능성이 있는 옵션을 포함해 명확하게 공개해야 한다.

진술과 보장 조항은 그 사항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진술과 보장을 하는 자에게 부담이 되는 조항이다. 통상적으로 투자 업계에서 위와 같은 형태의 정형화된 수준의 진술과 보장이 사용된다. 위 예시안을 기준으로 가감

51 진술과 보장 조항 위반 여부는 상대방이 그러한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가 아니라 계약서에 기재된 사실을 기준으로 해 사실 위반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책임 귀속이 달라지게 된다.

해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보인다. 다만 진술과 보장이라는 제목 하에 회사나 이해관계인의 의무를 부가하는 경우가 가끔 발생한다. 원칙적으로는 체계상 진술과 보장은 과거 및 현 시점에서의 상황에 대한 진술과 보장이라는 점에서 회사나 이해관계인의 장래 준수 의무와는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이나 혼용되어 기재되는 경우가 가끔 발생한다. 이 경우 기업 입장에서 진술과 보장 사항에 기재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개별적인 의무 부과로 해석될 수 있는바, 이러한 조항이 혼용되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

한편 기업은 진술과 보장이 정형화 되어 있다고 해 이를 간과해서는 아니된다. 만일 명백하게 진술과 보장에 어긋나는 사실이 있을 경우 이를 반드시 계약서에 예외사항으로 명시해야 한다. 또한 투자자에게 실사 과정에서 또는 구두로 해당 사항에 대해 예외에 해당함을 고지하였거나 자료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이다. 판례는 자료가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라 하더라도) 책임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점에 유의해 기업 입장에서는 진술과 보장의 예외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투자계약서에 명기 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마) 계약 체결 전 체크리스트

- 별지2 진술과 보장 사항 각 호를 기업 현황과 대조 확인
- 재무제표 정확성, 지식재산권, 소송 부존재 등 핵심 항목 점검
- 중요성 기준, 공개사항 예외, 존속기간 제한 조항의 존부 확인

(바) 분쟁 사례 및 시사점

[사례] 기술 기반 벤처기업이 핵심 특허와 관련하여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진술·보장했으나, 거래완결 후 특허침해 소송이 제기된 사례

[사례 개요] 회사는 투자계약 체결 당시 핵심 특허가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진술·보장했다. 그러나 거래완결 후 특허침해 소송이 제기되자 투자자는 진술과 보장 위반을 이유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다.

[주요 쟁점] 투자자에게 관련 자료가 제공되었거나 잠재적 위험을 인식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회사의 진술과 보장 책임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회사가 알고 있는 예외사항이나 잠재적 분쟁은 투자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사점] 회사는 진술과 보장에 앞서 채무·세무·지식재산권·소송 등 주요 사항을 자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불확실하거나 예외가 필요한 사항은 투자자에게 사전에 공개하고, 투자계약서 또는 별도의 공개목록에 예외사항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조항 개요	회사와 이해관계인이 별지 2의 진술과 보장 사항이 진실·정확하다고 확인하는 조항이다.
법적 의미	투자자는 진술과 보장을 기초로 투자 의사결정을 하며, 허위가 확인되면 손해배상 또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연결될 수 있다.
기업 관점 리스크	자료 제출 단계에서 미확정 사안이나 잠재 분쟁을 누락하면 허위 진술 문제가 발생한다.
협상 운영 포인트	불확실한 사항은 예외사항으로 명시하거나 disclosure schedule 형태로 정리하는 것이 안전하다.
체크리스트	소송, 세금, IP, 주주관계, 인허가, 근로문제, 관계회사, 부외부채 여부를 빠짐없이 확인한다.

[세부]

공통사항	회사 설립·존속의 적법성, 계약 체결 권한, 주식 및 지배구조의 적법성, 관련 문서의 진실성을 다룬다.
회사에 관한 사항	자본, 자산, 부채, 재무제표, 관계회사, 법령 위반·소송, 세금·보험 등 회사 전반의 상태를 확인한다.
이해관계인에 관한 사항	보유주식의 적법성, 가장납입 부존재, 주주관계의 정확성, 계약 이행 가능성 등을 확인한다.
실무 포인트	진술과 보장은 알고 있는 범위가 아니라 '사실 여부'에 대한 확인에 가까우므로, 예외사항을 문서화하지 않으면 사후 분쟁에서 기업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4) 거래의 완결 점검

(가) 조항 개요

거래완결(Closing, 거래종결, Completion)이란 주식인수계약에서 투자자가 인수금액을 납입하고, 회사가 이에 상응해 신주를 발행·교부함으로써 투자계약의 주된 이행이 완료되는 시점 및 그 절차를 의미한다. 거래완결 조항은 계약상 상호 의무의 구체적 이행 방법, 시점, 순서, 교부 서류를 규정하는 조항으로서, 주식인수계약의 이행 단계의 핵심 조항에 해당한다.

회사는 거래완결일 다음날에 신주를 발행해 주주명부에 변동 사항을 기재하고, 주권 또는 주권미발행확인서, 납입영수증, 주주명부 사본을 교부해야 한다. 회사는 거래완결일로부터 2주 이내에 자본증가의 상입등기를 이행해야 한다.

주식투자 실무에서는 통상 다음과 같은 시간적 흐름을 따른다.

단계	시점	주요내용
계약 체결 (Signing)	T	계약서 서명, 권리의무 확정, 선행조건·진술보장 등 확정
Sign-to-Close 기간	T ~ T+n	선행조건 충족, 인허가 취득, 제3자 동의 등
거래완결 (Closing)	T+n	인수가액 납입, 신주 발행, 서류 교부
후속 절차 (Post-closing)	T+n 이후	자본증가 등기, 주주명부 정리 등

제4조 (거래의 완결)

① 투자자는 납입기일 또는 회사와 투자자가 달리 합의하는 날에 제2조 각 호의 선행조건의 충족을 조건으로 해 제1조 제2항에 따라 회사가 통지한 계좌에 인수가액 전액을 납입해야 하며, 인수가액 전액이 납입된 날(이하 “거래완결일”)에 거래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

② 회사는 거래완결일의 다음날⁵²에 본건 신주를 발행해 주주명부에 변동 사항을 기재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투자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1. 본 계약에 의한 주주권을 표창하는 주권. 단, 주권을 발행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면 주권미발행확인서.

2. 본건 신주의 인수가액의 납입영수증

52 상법 제423조 제1항은, “신주의 인수인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라고 해, 납입기일의 다음날에 주주의 지위가 발생함을 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발행일이라 함은, 주주로서의 효력발생일(납입기일 다음날)을 일반적으로 의미한다. 통상 벤처캐피탈에서 통용되는 계약서를 보면 발행일에 대해 정의규정을 두는 계약서도 있고 그렇지 아니한 계약서도 있다.

3. 변동사항이 반영된 주주명부 사본

- ③ 회사는 거래완결일로부터 2주 이내에 자본증가의 상업등기를 이행하고, 법인등기부등본, 기타 본 계약상의 주식 인수를 적법, 유효하게 하는 것으로서 투자자가 요청하는 자료^{53, 54}를 투자자에게 교부한다.

(나)법적 의미

거래완결일을 기준으로 법률적 효과가 좌우되는 사항이 많으므로 매우 중요한 기준일이 된다. 주권 교부⁵⁵ 여부와 무관하게 거래완결일의 다음날부터 주주로서의 권리의무가 발생한다. 주주명부 기재 및 상업등기는 기업의 의무이므로 적시에 이행해야 한다.

① 이행의 시점 및 방법 확정

계약상 상호 의무의 구체적 이행 시점·장소·방법을 명확히 함으로써 분쟁 소지를 최소화한다. 납입 계좌, 주권 교부 시점, 서류 교부 목록 등을 특정한다.

② 동시이행의 구현

투자자의 납입 의무와 회사의 신주 발행·서류 교부 의무를 동시이행 관계로 연결해, 일방의 선이행에 따른 위험을 제거한다. 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가 적용된다.

53 기타 투자자가 요청하는 자료로 포괄적으로 기재하였으나,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이사회회의록, 회계 관련 자료 등을 기재하기도 한다. 첨부서류 목록을 별도로 제시해 교부받기도 한다.

54 이해관계인, 대표이사 신용조회동의서를 미리 받기도 하며, 미리 양식을 준비해 둘 필요가 있다.

55 상법 상 주권교부가 원칙이나 실무상 주권실물을 발행을 거의 하지 않는다.

③ 선행조건 충족 검증

거래완결 시점은 선행조건(CP)의 충족 여부를 최종 점검하는 시점으로 기능한다. 선행조건이 미충족된 경우 거래완결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④ 위험의 이전 시점 확정

거래완결일을 기준으로 신주에 관한 법률상·경제상 이익과 위험이 투자자에게 이전된다. 이 시점은 배당기산일, 의결권 행사, 손익 귀속의 기준이 된다.

⑤ 후속 의무의 기산점

자본증가 등기, 주주명부 정리, 공시 의무 등 거래완결 후 이행해야 할 의무의 기산점이 된다.

⑥ 진술 및 보장의 Bring-down⁵⁶ 기준 시점

거래완결일 기준으로 진술·보장의 정확성을 확인(Bring-down)하는 기준 시점이 되며, 이 시점 이후 발견되는 위반은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된다.

(다) 기업 리스크 포인트

① 선행조건 충족의 부담

거래완결은 선행조건 충족을 전제로 하므로, 회사가 그 기간 동안 선행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충족 지연 시 투자 자금 유입이 지연될 수 있다.

② 교부 서류 준비의 실무적 부담

교부 서류(주권,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각종 확인서 등)를 적시에 준비하지 못하면

56 Bring-down 이라 함은, 진술과 보장은 개념적으로 과거 사실에 대해 진술과 보장을 하는 것인데, 계약 체결시점 기준으로 거래종결일은 과거가 아니라 장래 기준일이 되게 된다. 다만 근접한 시점이고 단기간의 기간인 점 등을 고려해 진술과 보장 시점을 미래인 거래종결시까지 사실상 확장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이러한 확장은 진술과 보장 주체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 다만 통상적으로 거래관행은 거래종결시까지 진술과 보장을 확장한다.

거래완결 지연 또는 계약 위반이 된다.

③ 변경등기 해태 리스크

2주 이내 변경등기를 하지 못하면 상법 제635조상 과태료(500만원 이하)가 부과된다. 대표이사 개인에게 부과되는 과태료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④ 주권 발행 의무의 부담

상법 제355조상 주권 발행 의무가 있으나, 실무상 많은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는다. 계약상 “주권미발행확인서”로 갈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⑤ 후속 의무 미이행 리스크

변경등기 해태, 명의개서 지연, 주주명부 관리 부실 등은 계약 위반이자 상법 위반이 될 수 있다. 특히 등기는 대표이사 개인 책임으로 연결된다.

⑥ 복수 투자자 동시 클로징 시의 조정

투자자가 여러 명인 경우, 모든 투자자에 대한 거래완결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일부 투자자의 납입 지연이 전체 거래를 지연시킬 수 있다. 실무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다.

(라) 협상 시 유의사항

협상 시 아래 사항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권고안에도 이러한 기업 입장에서 취지가 반영되어 있다.

① 납입기일의 유연성 확보: “납입기일 또는 회사와 투자자가 서면으로 합의하는 날”; 서면 합의 요건을 추가해 분쟁 방지. 또한 회사가 선행조건 충족에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충족이 지연되는 경우 자동 연장 조항을 검토할 수 있다.

② 선행조건 충족 책임의 분담: 선행조건 중 투자자 측 협력이 필요한 사항

(외국인 투자신고,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신고 등)이 있는 경우 투자자가 책임지도록 명시한다.

③ **후속 의무 이행 기한의 현실화**: “거래완결일로부터 2주 이내”, 상법상 2주 기한은 강행규정이나, 실무상 준비 시간을 고려해 “거래완결일로부터 2주 이내에 등기신청” 방식으로 규정해, 등기 완료가 아닌 등기 신청을 기한으로 잡는 것이 안전하다.

④ **Drop-Dead Date 설정**: “거래완결이 [○ ○]일까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어느 당사자든 서면 통지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거래의 무한정 지연을 방지하고, 회사가 다른 투자자를 모색할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한다.

⑤ **주권 미발행회사의 주주권 증빙**

주권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 주권미발행확인서와 주주명부 기재가 주주권의 증빙이 된다. 다만 주권 발행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주권을 발행하지 않으면 상법 제358조의2에 따라 주식의 양도가 제한되므로, 주권미발행회사임을 명확히 하거나 전자등록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⑥ **복수 종류주식 발행 시의 정관 변경**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정관에 해당 종류주식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어야 하며(상법 제344조 제2항), 정관 변경을 거래완결 전에 완료해야 한다. 정관 변경 등기도 자본금 변경 등기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거래의 완결(이른바 “Closing”)은 주금 납입을 완료한 날을 의미하고, 그 날을 기준으로 법률적 효과가 좌우되는 사항이 많으므로 매우 중요한 기준일이 된다. 주권을 교부받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거래완결일의 다음날 주주로서의 권리의무가 있다. 기업은 주권을 통상적으로 발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바,

주권미발행확인서를 교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편 주주명부에 새로운 주주를 기재하고 등기는 기업의 의무인바, 이를 적시에 등기토록 해야 한다. 투자자는 제3항과 관련해 실무적으로 등기신청을 한 상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등기신청 접수증명원을 수령하기도 한다.

거래완결과 동시에 투자자는 위 나열된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청한다. 주권미발행확인서는 유가증권은 아니나 실무적으로 주주임을 확인하는 증거자료로는 활용되고 있다. 기업은 투자유치 이후 자본의 증감과 관련된 등기를 소홀히 해 이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등기는 회사의 의무사항인바, 투자자가 등기 지연 등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등이 문제되거나 계약위반의 책임 등을 주장할 여지가 있는바, 기간 내 등기의무를 이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거래완결 조항은 투자자 또는 기업 어느 일방에게 특별하게 불리한 조항은 아니나, 절차의 이행과 관련해 유의해야 한다. 양자다 위 사항을 고려해 협의해 수용이 가능하리라 본다. 다만 이 외에 지나치게 많은 서류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대해서는 협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마) 계약 체결 전 체크리스트

- 주권 또는 주권미발행확인서 교부 절차 준비
- 주주명부 갱신 절차 확인
- 2주 이내 자본증가 상업등기 이행 일정 확인

조항 개요	투자자의 납입, 회사의 신주발행·주주명부 기재, 관련 서류 교부, 증자등기 의무를 정한다.
법적 의미	거래완결일은 투자금 납입과 권리이전의 기준시점이 되며, 이후 배당·전환·상환 권리 계산에도 영향을 준다.
기업 관점 리스크	납입만 받고 주주명부 정리나 등기를 지연하면 후속 라운드·정기주총·주주권 행사에서 혼선이 생긴다.
협상·운영 포인트	등기 일정과 주권발행 여부, 주권미발행확인서 교부 여부를 명확히 정한다.
체크리스트	납입영수증,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주권 또는 주권미발행확인서 교부 여부를 종결 직후 확인한다.

(5) 거래완결⁵⁷ 전 해제 유의

(가) 조항 개요

거래완결 전 해제 조항이란 주식인수계약의 체결(Signing) 이후 거래완결(Closing) 이전의 기간(이른바 Sign-to-Close 기간) 동안 일정한 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와 그 효과를 규정하는 조항이다.

주식투자 실무에서는 통상 계약 체결과 거래완결 사이에 상당한 시차(수주~수개월)가 존재하므로, 이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예측 불가능한 위험에 대비한 계약 구속력에서 벗어날 권리 보장⁵⁸이 필수적이다.

주식인수계약서의 경우 거래완결 후 계약 해제는 극히 제한적이며, 통상

57 본 계약서 등에서는 '거래완결(일)'은 주금을 납입한 날을 의미한다.

58 이는 민법 제543조 이하의 약정해제권에 해당한다. 즉, 당사자가 계약에 의해 해제권을 유보한 경우로서, 법정해제권(민법 제544조~제546조)과는 별개로 계약상 명시된 사유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해제권이다.

Put Option(주식 환매청구권) 행사 또는 손해배상으로 처리된다.

구분	거래완결 전 해제	거래완결 후 해제
시점	Sign ~ Close 사이	Close 이후
주된 사유	선행조건 미충족, 진술·보장 위반 발견, 당사자 의무 위반	중대한 계약 위반, 진술·보장 중대 위반
효과	계약 해제 + 원상회복 (납입 전이므로 실질 원상회복 불요)	주식 환매, 손해배상 등 복잡한 후속 조치 필요
실무상 빈도	상대적으로 빈번	희소 (통상 손해배상으로 해결)

통상적으로 거래완결일 전 다음 사유 발생 시 귀책사유 없는 당사자에 의해 해제될 수 있다: (i) 일방 당사자의 의무 위반 또는 진술과 보장의 허위·오류가 통보 후 5일 이내 치유되지 않는 경우, (ii) 선행조건 불충족 등으로 일정 기일 까지 거래완결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충족될 수 없는 것이 확실해진 경우. 계약 해제 시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고 전문가 자문료 등 비용을 보전해야 한다.

제5조 (거래완결일 전 해제)

① 본 계약은 거래완결일 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귀책사유 없는 당사자에 의해 해제될 수 있다.

1. 일방 당사자가 본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거나 제3조에 따른 진술과 보장 사항에 허위 또는 오류가 발견되어 상대방으로부터 통보를 받았으나 이를 5일 이내에 이를 치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선행조건 불충족 기타의 사유로 거래완결이 20[]년 []월 []일까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선행조건이 충족될 수 없는 것이 확실해진 경우

② 본 조에 의한 계약 해제 시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하고, 이와는 별도로 상대방이 지출한 모든 비용(회계실사 비용, 법률실사 비용 등 전문가 자문료를 포함)을 보전해야 한다.

(나) 법적 의미

주금 납입 이후에는 상법상 자본충실의 원칙 및 단체법적 성질 때문에 원상회복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계약 해제가 불가능하다. 주금 납입 전 해제는 자본충실을 해하지 않으므로 법률상 문제가 없다. 신주발행의 무효를 주장하려면 상법 제429조에 따라 신주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무효의 소를 제기해야 하며, 법원은 심각한 하자 없이는 이를 인용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50776 판결).

① 예외적 위험 발생 시 이탈 수단 제공

Sign-to-Close 기간 중 예상하지 못한 중대한 상황 변화(경영진 교체, 핵심 자산 손실, 중대 소송 발생 등)가 발생한 경우, 계약에서 이탈할 수 있는 합법적 통로를 제공한다.

② 거래 확실성과 유연성의 균형

계약 체결로 인한 거래 확실성(Deal Certainty)과 돌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Flexibility) 간의 균형을 도모한다. 해제사유를 명확히 한정함으로써 자의적 이탈은 방지하되, 정당한 사유에 기한 이탈은 허용한다.

③ 무한정 대기 방지

거래완결이 무한정 지연되는 경우 Long-stop Date(최종기한)을 설정해 계약 관계를 종결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당사자가 언제까지 계약에 구속되는지를 명확히 할 수 있다. 특히 회사 입장에서는 투자 불발 시 다른 투자자를 모색할 수 있는 출구가 된다.

(다) 기업 리스크 포인트

회사 입장에서 리스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손해배상 및 비용 보전 부담

회사의 귀책으로 해제된 경우, 투자자의 실사 비용, 법률자문료 등을 보전해야 하게 되며, 이는 회사의 부담이 될 수 있다. 다만 통상적으로 귀책사유를 전제로 하므로 일반적으로 기재 되게 된다.

② 진술·보장 위반의 잠재 위험

회사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진술·보장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나면 해제사유가 된다. 공개목록(Disclosure Schedule) 누락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Sign-to-Close 기간 중 의무 위반 리스크

계약에 통상사업 수행 의무, 중요 거래 제한 의무 등이 규정된 경우, 회사가 일상적인 경영 활동 중 이를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중요 거래의 사전 동의 요건은 경영의 유연성을 제약한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

주금 납입 이후에는 상법상 자본충실의 원칙 및 상법의 단체법적 성질 때문

에 원상회복의 효과를 의도하는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가 불가능⁵⁹하다. 신주 발행의 무효를 주장하는 방법은 오로지 상법 제429조에 근거해 신주발행행위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주발행 무효의 소를 제기해서만 가능하고, 법원은 심각한 하자가 없이는 이를 받아주지 않는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신주발행무효의 소에서 무효 판단 기준에 대해, “신주발행을 사후에 무효로 하는 경우 거래의 안전과 법적 안정성을 해할 우려가 큰 점을 고려할 때 신주발행무효의 소에서 그 무효원인은 가급적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그러나 신주발행에 법령이나 정관의 위반이 있고 그것이 주식회사의 본질 또는 회사법의 기본원칙에 반하거나 기존 주주들의 이익과 회사의 경영권 내지 지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주식에 관련된 거래의 안전, 주주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익 등을 고려하더라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정도라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 신주의 발행을 무효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50776 판결 등 참조)라고 일관된 판시를 해오고 있다.

그러나 투자계약서 체결일과 실제 주금 납입일 사이에는 일정 기간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그 사이에 투자대상기업 또는 이해관계인의 진술과 보장 위반 사실 적발 등으로 투자를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투자계약을 해제하고 투자금 납입의무에서 벗어나야 할 필요가 있다. 주금 납입 전 해제는 자본충실을 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법률상 문제가 없다.

기업 입장에서는 거래완결 전 해제가 되지 않도록 투자계약의 유지를 원하는 경우 동 조항의 해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59 일반적인 계약서는 해제 또는 해지가 가능하다. 해제와 해지의 공통적인 효과는 해당 계약을 없었던 것으로 돌린다는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주식 관련 투자계약서는 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금 등 투자금이 납입된 이후에는 해제/해지가 불가능하다. 이를 무효로 돌려 원상회복을 하는 절차는 법원의 판단에만 따르도록 하고 있다.

(라) 협상 시 유의사항

기업 입장에서는 거래완결 전 해제가 되지 않도록 선행조건을 적시에 충족시키고, 진술과 보장 사항에 허위가 없도록 관리해야 한다. 제1항 제2호의 거래완결 기한은 통상 1~3개월로 기재되며, 이 기간을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한다. 5일의 치유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고 판단되면 10일 내지 15일로 연장을 협의할 수 있다. 회사 입장에서는 추가적으로 ① 해제사유의 엄격한 한정(중요성 판단 기준 기재, "...중대한 의무를 위반하거나 진술·보장 사항에 회사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허위 또는 오류가 발견된 경우..."), ② 회사의 해제권 확보(투자자의 해제권만 규정되는 경우가 있으나, 회사도 해제권을 보유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균형상 필요할 수 있다.), ③ 비용 보전의 상한 설정("실사 비용 등의 보전액은 [○원] 또는 투자금액의 [○%]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등 문안으로 미리 소요 비용을 예상해 한정 협의를 할 수 있다)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실무적으로 제1항 제3호는 본 계약 체결 후 거래완결 예정일 또는 최대 투자숙고기간을 고려해 기재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1~3달 정도로 기재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 위 규정과 별도로 면책 규정⁶⁰을 두어 위와 같이 해제된 경우 귀책사유 있는 자가 상대방의 손해와 손실을 면책시키고 배상 또는 보전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기도 하지만, 이는 해제에 따른 법률관계이므로, 위 예시규정 제2항과 같이 함께 규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60 후술한다.

거래완결 전 해제 조항은 위 제1호의 경우는 합의사항이라는 점, 제2호는 계약위반(진술과 보장을 포함한다)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 제3호는 장기 선행조건 불충족으로 인한 long-stop delay를 피하기 위한 조항이라는 점에 비추어 위 3가지 사항은 투자자 또는 기업 어느 일방에게 특별하게 불리한 조항은 아니라고 본다. 다만 위 외의 조항을 새롭게 기재하거나 기업 일방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임의의 의사에 의해 투자계약을 납입 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조항은 배제해야 할 것이다.

(마) 계약체결 전 체크리스트

- 거래완결 기한의 적정성 확인
- 치유 기간(5일)의 적정성 확인
- 해제 시 손해배상 및 비용 보전 범위 확인

조항 개요	거래완결 전 의무위반, 허위 진술, 장기간 미종결 등의 사유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한다.
법적 의미	거래 자체가 성립되기 전 단계에서의 탈출 장치이며, 귀책 당사자의 비용보전·손해배상 문제와 연결된다.
기업 관점 리스크	실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치유기간과 해제권 행사 요건이 분쟁 포인트가 된다.
협상·운영 포인트	기업은 치유 가능한 사유와 치유가 어려운 사유를 구분하고, 비용보전 범위가 과도하지 않은지 살펴본다.
체크리스트	전문가 자문료 포함 여부, 치유기간, 종결기한(long stop date), 귀책사유 범위 점검한다.

(6) 기타, 통지, 비밀유지, 세금, 일부무효, 준거법 및 분쟁 해결, 특약등 점검

(가) 조항 개요

투자계약서의 필수 규정은 아니나, 통상적으로 기재되기도 하는 조항으로 계약의 효력 규정, 세금은 각자 부담한다는 규정, 규정 중 일부가 무효라면 나머지는 영향이 없다는 규정 등이 있다.

① 본 계약의 효력(제6조): 서명날인과 동시에 효력 발생. 전자 또는 수기 형식의 수개 부분 체결이 가능하며 각 부분이 원본으로 인정된다.

② 통지(제8조): 인편, 팩스, 등기우편, 전자우편으로 발송. 통지처 변경 시 즉시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한다. 통지의 도달은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요건이 되므로 통지처 정보의 정확성이 중요하다. 투자자가 벤처투자조합인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이 투자자를 위해 모든 권리 및 사실행위를 행사한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통지 상대방이 업무집행조합원인 점을 유의해야 한다.

③ 비밀유지(제9조):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정보를 비밀로 하며, 계약 효력 상실 후에도 2년간 존속한다. 예외: 당사자 합의 공개, 공지 정보, 이미 적법 취득한 정보, 법률자문·소송·행정절차, 법원·정부기관의 적법한 요구(단, 사전 서면 통지 필요).

④ 세금(제10조): 각 당사자에게 부과된 조세 공과금은 법령상 부담 당사자가 각자 부담한다.

⑤ 일부 무효(제11조): 일부 조항이 무효·위법·집행불능이 되더라도 나머지 조항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조항은 투자계약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의미가 있다.

⑥ 준거법 및 분쟁 해결(제12조):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규율·해석되며, 제1

심 관할법원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지정한다. 상사중재원으로 한정할 경우 법원 소송이 제한되므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⑦ 특약사항(제13조, 제14조): 특약은 본문의 내용을 수정·삭제·추가하는 것으로서, 본문과 상충 시 특약이 우선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특약의 내용과 효력 범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일반조항으로 각 분설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본 계약의 효력 조항은 계약의 구성·성립·효력 발생·해석의 기본 원칙을 규정하는 조항으로서, 계약서 본문의 실제적 권리의무 조항들과 구별되는 일반 조항의 성격을 가진다. 주식투자 실무에서는 통상 계약서 서두 또는 말미의 “일반 조항” 부분에 편제되며, 개별 조항의 실제적 내용보다는 계약 전체의 구조와 해석 원칙을 정립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② 통지 조항이란 계약 당사자 간에 본 계약에 따른 의사표시, 통지, 서류 송부 등 각종 커뮤니케이션이 언제, 어디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그리고 언제 효력이 발생하는지를 규정하는 조항을 말한다. 실무상으로 거의 모든 장기·계속적 계약에 포함되는 표준 일반 조항이다. 민법상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민법 제111조, 도달주의). 통지 조항은 이 원칙을 구체화해, 계약 당사자 간 의사표시의 송부 방법, 송부 주소, 도달 시점을 사전에 약정함으로써 분쟁을 예방한다.

주식인수계약에서 통지 조항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의사표시에 적용된다.

유형	예시
권리 행사	Put Option 행사, 우선매수권 행사, 동의 요청
의무 이행	선행조건 충족 통지, 진술·보장 변경 통지
해제·해지	계약 해제 통지, 해지 통지
치유 요구	계약 위반 치유 요구, 시정 요구
정보 공유	MAC 발생 통지, 중요 사건 발생 통지, 재무 정보 제공
합의 제안	계약 수정 제안, 변경 합의 요청
기타	주소 변경 통지, 연락처 변경 통지

제6조 (본 계약의 효력)

- ① 본 계약서의 별지와 첨부서류는 본 계약서와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서 그에 따른 내용은 본 계약의 일부를 구성한다.
- ② 본 계약상의 내용이 본 계약 체결 이전의 당사자들 사이의 어떤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교섭, 합의 등의 내용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의 내용이 우선한다.
- ③ 본 계약은 투자자, 회사, 이해관계인의 서명날인과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 ④ 본 계약은 전자 또는 수기의 형식을 포함해 수개의 부분으로 체결될 수 있으며, 각 부분은 모두 원본으로 인정되나 하나의 법률문서를 구성한다.

제7조 (계약의 내용 변경)

- ① 당사자는 전원의 서면 합의에 의해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② 투자자가 서면으로 명확한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본 계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이상, 투자자의 어떤 행위도 투자자가 본 계약상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제8조 (통지)

① 본 계약에 따른 당사자들에 대한 통지 및 서류 송부는 아래의 주소에 인편, 팩스, 등기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발송한다. 통지처가 변경된 경우 해당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이를 지체없이 통지하며, 그 이후 상대방은 변경된 통지처로 통지 및 서류 송부를 한다.

1. 투자자1에 대한 통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2. 투자자2에 대한 통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3. 회사에 대한 통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4.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② 전항의 경우 본 계약에 따른 통지처로 발송한 경우 발송일로부터 2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

③ 본 계약에서 정한 투자자의 모든 권리 및 사실행위는 본 계약서의 날인 란에 기재된 업무집행조합원이 투자자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투자자를 위해 재판상 및 재판외에서 행사한다.

제9조 (비밀유지)

본 계약과 관련해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정보는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밀로 하고,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본 조의 의무는 본 계약의 효력이 상실하는 경우에도 2년간 그 효력이 존속된다.

1. 당사자가 공개하기로 합의한 사항
2. 공지된 정보
3. 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제3자로부터 이미 적법하게 취득한 정보
4.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한 법률자문, 소의 제기,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5. 법원 또는 정무기관이 적법하게 공개 또는 제공을 요구한 정보(단, 사전에 상대방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10조 (세금)

본 계약의 당사자에게 부과된 조세 공과금은 법령상 부담해야 할 당사자가 각자 부

담한다.

제11조 (일부 무효)

본 계약 또는 이와 관련해 작성된 서류에 명시된 한 개 또는 수개의 조항이 법령에 따라 무효, 위법 또는 집행불능으로 되더라도 본 계약에 명시된 나머지 조항의 효력, 적법성 및 집행가능성은 그로 인해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12조 (준거법 및 분쟁 해결)

- ① 본 계약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된다.
- ② 본 계약에 따라 발생한 모든 분쟁의 제1심 관할법원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지정한다.

제13조 (특약사항의 효력)

특약사항은 본 투자계약서의 본문의 내용을 수정·삭제·추가하는 사항으로서 본문의 내용이 특약사항의 내용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의 내용이 그 효력에 있어서 우선한다.

제14조 (특약사항의 구체적 내용)

- ①
- ②

(나) 법적 의미

계약의 효력 조항은 다음과 같은 법적 의미를 갖는다.

① 별지·첨부서류의 법적 효력

본 조항에 의해 별지·첨부서류는 본문과 동일한 계약상 효력을 가지며, 그

내용의 위반은 계약 위반이 된다. 민법상 계약의 구성 부분으로 간주되어 해석·이행·구제수단에 있어서 본문과 동일한 취급을 받게 된다.

② 효력 발생의 법적 성격

(i) 낙성계약의 원칙

민법상 계약은 원칙적으로 청약과 승낙의 합치로 성립하며, 서면 작성은 요식행위가 아니다. 따라서 서면 체결 이전에도 구두 합의로 계약이 성립할 수 있다. 그러나 주식인수계약은 통상 서면 체결을 효력발생 요건으로 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이며, 본 조항이 이를 명시적으로 확인한다.

(ii) 서명날인의 방식

상법상 대표이사의 서명 또는 날인으로 법인의 의사표시가 성립된다. 실무상 법인인감 날인이 표준이며, 일부 거래에서는 대표이사 개인 인감을 함께 요구하기도 한다.

(iii) 전자 서명의 효력

2020년 전면 개정된 전자서명법은 공인전자서명뿐만 아니라 일반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을 인정한다. 따라서 DocuSign, Adobe Sign 등 플랫폼을 이용한 전자 서명도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다만 전자 서명의 경우 본인 확인 방법이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에 전자 서명 방식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안전하다.

통지 조항은 다음과 같은 법적 의미를 갖는다.

①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점 확정

통지의 도달 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정함으로써, 계약상 권리 행사 기한·치유 기한·해제권 행사 기한 등의 기산점을 명확히 한다.

② 통지처의 확정

각 당사자의 공식 통지처(주소, 팩스, 이메일 등)를 사전에 지정해, 통지가 올바르게 전달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한다. 이를 통해 “통지를 받지 못했다.”는 방어를 차단한다.

③ 통지 방법의 표준화

허용되는 통지 방법(인편, 팩스, 등기우편, 전자우편 등)을 명시해, 비공식 통지(구두, 일반 이메일 등)와 구별한다. 이는 통지의 진정성·정확성을 확보하는 기능을 한다.

④ 통지처 변경에 따른 책임 소재 명확화

일방 당사자가 주소·연락처를 변경한 경우의 절차를 규정해, 변경 사실 미 통지로 인한 분쟁을 예방한다.

(다) 기업 리스크 포인트

계약의 효력 조항과 관련해 기업 입장에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별지·첨부서류 작성 부실로 인한 계약 위반 리스크

공시목록(Disclosure Schedule) 등 별지를 부실하게 작성하면 진술·보장 위반의 근거가 되어 손해배상 책임으로 연결된다. 특히 공시목록은 진술·보장의 예외 사항을 기재하는 방어선이므로, 누락 시 회사의 책임 노출이 크게 확대된다.

② 계약 범위의 과도한 확장

“별지와 첨부서류는 본 계약과 일체를 이룬다”는 규정에 의해, 의도치 않은 문서까지 계약의 일부로 편입될 위험이 있다. 예를 들어 협상 과정에서 교환된 단순 참고 자료가 계약서에 “첨부”된 것으로 기재되면 계약의 일부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부속서류 중 계약에 편입되는 서류를 계약 체결과정에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통지 조항과 관련해 기업 입장에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통지 수령 관리의 부담

회사는 투자자로부터 오는 다양한 통지(권리 행사, 동의 요청, 정보 제공 요구 등)를 적시에 수령·처리해야 한다. 통지 수령 체계가 미흡하면 중요 통지를 놓쳐 계약 위반 또는 권리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

② 통지처 변경 미통지의 위험

회사의 주소·이메일이 변경되었음에도 투자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투자자가 구 통지처로 보낸 통지가 유효한 것으로 간주되어 회사가 수령하지 못한 통지에도 기속될 수 있다.

③ 이메일 관리의 취약성

회사의 공식 이메일이 담당자 퇴사, 이메일 주소 변경, 스팸 차단 등으로 인해 제대로 수령되지 못하는 경우, 중요 통지가 누락될 위험이 있다.

④ 복수 투자자에 대한 통지 의무

투자자가 복수인 경우(Series A, B, C 등 여러 라운드 투자자 존재), 모든 투자자에게 동시 통지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일부 누락 시 계약 위반 또는 공정성 시비가 발생할 수 있다.

(라) 협상시 유의사항

계약의 효력 조항과 관련해 기업 입장에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공개목록(Disclosure Schedule)의 누락 없는 작성

진술·보장 관련 예외 사항을 누락 없이 공개목록에 기재해야 한다. 특히 다음 사항을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진행 중인 소송·분쟁 (금액 기준 이하도 포함)
- 중요 계약의 변경통제(CoC) 조항
- 기존 투자자에 대한 우선매수권·동의권
- 이해관계인 거래 내역
- 잠재적 세무 리스크
- 노동 분쟁 가능성
- 지식재산권 분쟁 가능성
- 환경 관련 쟁점

② 전자 서명의 구체적 방식 규정(전자서명을 활용하는 경우)

“전자 서명은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뿐만 아니라, 전자 문서에 삽입된 이미지 서명 또는 DocuSign, Adobe Sign, CloseLogic 등 신뢰할 수 있는 전자서명 플랫폼을 이용한 서명을 포함하며, 모두 수기 서명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통지 조항과 관련해 기업 입장에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통지 방법의 현실화

회사가 현실적으로 활용할 통지 방법을 결정해 기재할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어 팩스 삭제, 이메일 증시, 전자 계약 플랫폼 추가 등으로 현대적 통지 방법을 반영할 수 있다.

② 수신자 및 참조자 명시

회사의 담당 부서 또는 담당자를 명시하고, 법무 부서 또는 법률자문을 참조(CC)로 지정해 통지가 확실히 처리되도록 할 수 있다.

“회사에 대한 통지:

주소: [서울특별시 ○○구 ○○로 ○○]

수신: 대표이사 [○○○]

참조: 법무팀장 [○○○], 법률자문 [○○법무법인 담당 변호사]

이메일: [legal@company.co.kr, ceo@company.co.kr]”

복수의 이메일 주소를 지정해 단일 담당자 퇴사 시에도 통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

③ 통지 방법별 도달 시점 차등

경우에 따라 통지 방법 별도 도달 시점을 현실적인 도달 시점 등을 고려해 협의할 수 있다.

④ 통지처 변경의 준수

통지처가 변경된 경우 즉시 변경 통지를 상대방에게 해야 한다. 이 부분이 실무상 가장 유의할 점이다.

(마) 계약 체결 전 체크리스트

- 통지처 정보(주소, 전화, 팩스, 이메일)의 정확성 확인
- 비밀유지 의무의 범위 및 존속 기간(2년) 확인
- 분쟁 해결 방식(법원 소송 vs 상사중재)의 선택 확인
- 특약사항의 내용 및 본문 우선 효력 범위 확인

조항 개요	계약 효력, 내용 변경, 통지, 비밀유지, 세금, 일부 무효, 준거법·관할, 특약 우선효를 정한다.
법적 의미	개별 경제조건 조항은 아니지만 분쟁 시 문언해석의 출발점이 되는 기본 규정이다.
기업 관점 리스크	특약이 본문보다 우선하므로, 별도로 삽입된 특약이 전체 권리구조를 바꾸는 경우가 많다.
협상·운영 포인트	특약사항은 본문에 대한 예외인지, 보충인지, 추가의무인지 분류해서 읽어야 한다.
체크리스트	특약, 별지, 첨부서류 간 충돌 여부와 통지수단, 비밀유지 예외 범위, 전원합의 요건을 확인한다.

(7) 종류주식[(상환전환)우선주]의 내용 ⁶¹

종류주식의 내용 (상환전환)우선주 투자계약서의 주요부분으로서, ① 의결권에 관한 사항, ② 배당에 있어서 우선권에 관한 사항, ③ 청산 잔여재산 분배에 있어서 우선권에 관한 사항, ④ 전환권에 관한 사항, ⑤ 상환권에 관한 사항, ⑥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성된다.

1) 의결권에 관한 사항

(가) 조항개요

상환전환우선주식(RCPS, Redeemable Convertible Preferred Stock)의 의결권 조항은 RCPS가 가지는 의결권의 내용, 범위, 행사 방법을 규정하는 조항으로서, 종류주식의 권리 중 하나인 의결권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① **의결권**: 본건 종류주식은 1주 1의결권을 가지며, 종류주식에 불리한 결의 시 종류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② **존속기간**: 효력발생일로부터 일정 기간으로 하며, 기간 내 보통주로 전환되지 않으면 만료 다음날 자동 전환된다. 단, 상환 청구 후 미상환 시 상환 완료 시까지 존속기간이 연장된다.

③ **신주인수권**: 보통주와 동등한 신주인수권이 있으며, 무상증자 시 같은

61 보통주인수계약은 위 (1)항 내지 (10)항의 사항의 기재로 기본적인 인수계약이 확정된다(별도의 특별한 의무를 부가하는 거래완결 후 경영에 관한 사항, 거래완결 후 지분의 처분에 관한 사항은 논외로 한다). 종류주식인수계약서는 이러한 보통주에 종류주식으로서 보통주와 다른 특별한 권리의 내용을 상법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 위 (11)호 이하 종류주식의 내용을 통해 해당 주식은 상법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한 내용을 부가 받는다.

종류의 종류주식으로, 유상증자 시 회사가 발행하기로 한 종류의 주식으로 배정받는다.

3. 의결권에 관한 사항

- ① 본건 종류주식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 ② 본건 종류주식에 불리한 주주총회 결의 등이 있는 때에는 전체 주주총회와 별도로 그 안건에 대해 본건 종류주식의 종류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나) 법적 의미

통상 벤처캐피탈 업계에서는 의결권을 갖는 우선주를 선택하고 있으며, ‘피투자기업’에 대한 동의권 등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의결권을 제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해외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① RCPS 의결권 조항의 법적 성격

벤처투자에서 활용되는 RCPS는 실무상 통상 의결권을 갖는 것이 원칙이며, 의결권 배제, 제한 주식은 활용되지 아니한다.

② 종류주주총회 결의 요건

상법 제435조 제2항은 종류주주총회 결의 요건을 규정한다.

“상법 제435조 제2항: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그 종류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해야 한다.”

③ 종류주주총회 미개최의 효력

종류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주주총회 결의만 한 경우, 결의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종류주주에 대해서는 효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 기업 리스크 포인트

① 창업자 지분 희석 및 지배권 약화

RCPS 발행으로 투자자에게 완전 의결권을 부여하면, 창업자의 지분율과 의결권이 희석된다. 특히 복수 라운드 투자(Series A, B, C 등)가 진행되면서 투자자 지분이 누적되면, 창업자는 지속적인 지분율 하락이 발생한다.

② 종류주주총회 결의의 절차적 부담

중요 사항 결정 시 일반 주주총회뿐만 아니라 종류주주총회 결의를 별도로 거쳐야 하는 절차적 부담이 발생한다. 특히 복수 시리즈의 RCPS가 발행된 경우(Series A RCPS, Series B RCPS 등), 각 시리즈별로 종류주주총회가 필요할 수 있다.

③ 투자자 간 이해관계 조정의 어려움

복수 투자자가 존재하는 경우, 각 투자자의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으며, 종류주주총회에서 합의 도출이 어려울 수 있다. 이는 회사의 중요 의사결정을 지연시키거나 무산시킬 수 있다.

④ 상환·전환 시 의결권 변동

RCPS가 상환되면 해당 주식은 소멸하고, 전환되면 보통주로 변경된다. 이 과정에서 전체 주식 구성과 의결권 분포가 변동하며, 이에 따른 지배구조 변화를 예측하고 관리해야 한다.

(라) 협상 시 유의사항

기업 입장에서는 이해관계인이나 설립자가 1주당 더 많은 의결권을 갖는 차등 의결권의 도입을 주장할 수 있으나, 벤처기업법에 제한적으로 도입되어 있다.

의결권 조항은 투자자 또는 기업 어느 일방에게 특별하게 불리한 조항은 아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종류주식의 투자를 유치하는 경우 이익배당 우선권을 투자자가 보유하는 만큼 의결권의 배제, 제한을 주장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벤처캐피탈 투자계약의 특징을 고려할 때 양보를 받기가 어려운 부분이다. 만일 경영권 관련해 이사 선임 등에 제한을 가하고자 한다면 이사 선임에 대한 제한을 하는 형태의 의결권 제한 주식을 발행할 수는 있기는 하나, 추후 IPO 등을 고려할 때 의결권 제한 주식의 발행은 어려울 것으로 본다.

① 의결권 제한의 검토

RCPS에 제한적 의결권을 부여하는 구조를 검토할 수 있으나, 이는 투자자가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한국 벤처투자 실무상 완전 의결권이 표준안으로 활용된다.

② 이사 선임권의 한정

투자자의 이사 지명권을 부여하되, 독립이사 성격 및 특정 소수 인원으로 구성해 창업자의 경영권을 보호한다. 한편 집단적 동의권 행사를 통해 회사의 독립적 경영을 보장 받을 필요가 있으며, 현재 권고안도 이러한 취지에서 이사 지명 및 동의권 등 행사 관련해 집단적 동의권 행사를 기본 권고안으로 하고 있다.

“투자자는 본 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명의 이사를 지명할 권리를 가지며, 지명된 이사는 본 회사의 전체 이사 수의 [○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마) 계약 체결 전 체크리스트

- RCPS 발행·전환·상환에 따른 지분을 및 의결권 변동 확인
- 종류주주총회 결의 대상·요건 및 종류별 별도 결의 필요 여부 확인
- 존속기간, 자동전환 시점 및 상환 미완료 시 연장 규정 확인

조항 개요	본건 종류주식은 1주 1의결권을 가지며, 종류주식에 불리한 결의에는 종류주주총회가 요구된다. 또한 존속기간 만료 시 보통주로 자동전환되되, 상환청구 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존속기간이 연장된다.
법적 의미	종류주식 권리는 정관과 별지의 문언에 의해 구체화되므로, 의결권 유무와 존속기간은 주식의 본질적 내용에 해당한다.
기업 관점 리스크	존속기간이 짧으면 장기투자 구조와 맞지 않을 수 있고, 자동전환 시점이 IPO 또는 후속라운드와 충돌할 수 있다.
협상·운영 포인트	기업은 존속기간을 예상 회수시점, 상장 일정, 후속투자 계획과 맞추어 협의할 필요가 있다.
체크리스트	정관에도 동일한 내용이 반영되는지, 자동전환 예외(상환 미완료 시 연장)가 빠지지 않았는지 점검한다.

2) 우선권에 관한 사항: 이익배당 우선권, 청산잔여재산분배 우선권

(가) 조항개요

이익배당우선권 조항이란 RCPS의 우선주(Preferred Stock) 성격을 구체화해, 보통주에 우선해 이익배당을 받을 수 있는 배당의 종류, 방법, 우선권의 내용을 규정하는 조항이다. 벤처투자 실무에서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참가적·누

적적 우선주이다.

배당: 참가적, 누적적 우선주로서 액면가액 기준 연 일정 비율의 배당금을 누적적으로 우선 배당받고, 보통주 배당률 초과 시 함께 참가해 배당받는다. 주식배당의 경우 같은 종류의 종류주식으로 배당받는다. 전환권 행사 시 미지급 배당금이 있으면 별도 지급한다.

분류기준	유형	내용
누적 여부	누적적(Cumulative)	당해 연도 미배당분이 누적되어 차기 이월
누적 여부	비누적적(Non-cumulative)	당해 연도 미배당분은 소멸
참가 여부	참가적(Participating)	우선배당 + 보통주와 함께 추가 참가 배당
참가 여부	비참가적(Non-participating)	우선배당만 수령, 추가 참가 없음
배당률 기준	정률형	액면가 또는 발행가액 기준 고정 %
배당률 기준	정률형	시장금리·기준금리 연동

잔여재산 분배 우선권(Liquidation Preference) 조항은 회사가 청산되는 경우 잔여재산을 주주에게 분배할 때, RCPS 주주가 보통주 주주에 우선해 일정 금액을 분배받을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는 조항이다.

잔여재산분배: 청산 시 1주당 발행가액 및 연 일정 비율 금액을 보통주 주주에 우선해 분배받으며, 보통주 1주당 분배금이 종류주식 1주당 분배금을 초과하면 초과 부분에 참가한다.

영미 벤처투자 실무에서 Liquidation Preference는 RCPS의 가장 중요한 경제적 권리 중 하나로,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투자자 보호의 핵심 메커니즘: RCPS의 세 가지 핵심 권리 중 우선성(Preference)의 궁극적 구현 형태이다. 잔여재산 분배 우선권은 Downside Protection의 핵심 장치로서, 회사가 청산되거나 기대만큼 가치가 상승하지 못한 경우에도 투자자가 최소한 투자원금 수준의 회수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다.

권리	기능	발동시점
이익배당 우선권	통상적 이익 분배에서의 우선권	회사 운영 중
잔여재산 분배 우선권	청산 시 투자금 회수의 우선권	회사 청산 시
상환권(Redemption)	특정 사유 발생 시 투자금 회수	상환 사유 발생 시
전환권(Conversion)	Upside 상승 시 보통주 전환	기업가치 상승 시

Liquidation Preference의 분류: 잔여재산 분배 우선권은 다음 기준에 따라 여러 형태로 구분된다.

분류기준	유형	내용
우선 배수(Multiple)	1x Preference	투자금액의 1배 우선 분배 (가장 일반적)
우선 배수(Multiple)	Multiple Preference	1.5x, 2x, 3x 등 투자금액의 배수
참가 여부	참가적(Participating)	우선분배 + 보통주와 함께 추가 참가
참가 여부	비참가적(Non-participating)	우선분배만 수령, 추가 참가 없음
참가 여부	Capped Participating	참가에 상한 설정 (예: 3x Cap)
이자 포함 여부	발행가액만	투자원금만 우선 분배
이자 포함 여부	발행가액 + 누적 이자	이자 또는 배당금 포함

6. 배당에 있어서 우선권에 관한 사항

① 본건 종류주식은 참가적, 누적적 우선주로서,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는 본건 종류

주식을 보유하는 동안 1주당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연 []%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누적적으로 우선해 배당받고, 잔여배당가능이익에 대해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로 함께 참가해 배당받는다.

- ② 주식배당의 경우 종류주식과 보통주식을 합한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같은 종류의 종류주식 주식으로 배당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단,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받는다.
- ③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주주총회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의 승인 및 배당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해야 한다.
- ④ 본건 종류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전환권이 행사된 경우, 전환된 주식에 대해 전환 전까지의 기간 동안 배당결의 되었으나 그 배당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면 동 미지급 배당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사가 해당 주식의 주주에게 별도로 지급하기로 한다.

7. 잔여재산 분배에 있어서 우선권에 관한 사항

- ① 본건 종류주식은 잔여재산 분배에 있어서 우선적 지위가 부여된 종류주식으로,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는 회사가 청산에 의해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1주당 발행가액 및 이에 대해 연 []%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보통주식 주주에 우선해 분배 받는다. 이 경우 청산 이전까지 미지급 배당금이 있는 경우 동 금액에 대해서도 동일하다.
- ②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에 대해 잔여재산을 우선 분배한 후 보통주식에 대한 주당 분배금액이 본건 종류주식에 대한 주당 분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보통주식의 주주와 동일한 분배율로 함께 참가해 잔여재산을 분배 받을 권리가 있다.

(나) 법적 의미

제1항과 관련해 벤처캐피탈 투자계약서는 참가적, 누적적 우선주가 통상적이며, 우선주식의 경우 “발행가액” 기준 배당률 또는 “액면가액” 기준 배당률을 정하는 것은 선택사항이다.

이익배당우선권 조항은 이익배당을 투자자가 보통주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먼저(先) 받고 또한 ‘참가적’ 우선주로 발행되어 결과적으로 더 많이 이익배당을 받는 만큼 투자자에게 유리한 조항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참가적, 누적적 우선주에 대해 반론을 주장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벤처캐피탈 투자계약의 특징을 고려할 때 양보를 받기가 어려운 부분이다. 다만 이익배당의 기준 가액을 액면가로 할 것인가 발행가로 할 것인가는 실제 배당 부분에 있어 차이를 가져오는 만큼 신중한 협의를 해야 한다. 한편 이익배당은 배당가능이익이 있음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무조건적인 배당은 아니라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① 정관 기재의 필수성

RCPS의 잔여재산 분배 우선권은 정관에 기재되어야 효력이 있다(상법 제344조 제2항, 제344조의2 제2항). 정관과 계약의 내용이 다르다면 정관이 우선한다.

② 계약상 합의의 한계

(i) 주주 전원의 동의 필요

준청산잔여재산분배조항(Deemed Liquidation Event 조항)⁶² 등 주식 수 비례 분배를 벗어나는 약정은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전 주주에게 구속력이 있다. 일부 주주만의 동의로는 다른 주주에게 구속력이 없다.

(ii) 채권자 보호 한계

계약상 우선 분배권이 있어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채권자가 청산 시 우선 변제받은 후 잔여재산에 대해서만 우선권 행사 가능하다.

(iii) 강행규정 위반 금지

상법상 강행규정(예: 잔여재산 분배는 채무 변제 후)에 반하는 약정은 무효이다.

③ 우선 분배 금액의 법적 성격

우선 분배권은 조건부 권리로서 다음과 같은 성격을 가진다.

- 회사 청산 시점에 확정
- 청산 이전에는 잠재적 권리
- 주식의 본질적 권리로서 정관과 주권에 표창

④ 참가적 분배의 법리

참가적 Liquidation Preference는 계약 해석의 문제이며, “계약 자유의 원칙” 상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다만 비례 분배의 예외로서 정관 기재가 필요하며, 현저히 불공정한 참가 구조는 공서양속 위반이 가능하므로 다른 주주의 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⑤ Deemed Liquidation의 법적 의미

62 이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준청산잔여재산분배(Deemed Liquidation Preference) 에 관한 조항】

실무에서는 영업양수도, M&A 등 일정 사유 발생 시 이를 청산으로 간주해 우선주주에게 회사의 재산을 분배하는 내용의 준청산 잔여재산분배(Deemed Liquidation Preference) 에 관한 조항 규정을 두기도 한다. 그러나 상법상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는 회사의 청산 절차가 당사자 사이의 의사에 의해 간주되는 것이 자본충실의 원칙 및 상법상 단체법적 성격에 맞지 않다는 점에서 그 약정의 효력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다. 준청산 제도의 도입은 회수시장의 활성화와 관련해 그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으며, 외국 운영안의 경우 실제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제도 중의 하나이다. 그 규정 형식을 예시하면 아래와 같다.

【정관조항】

【*】 회사는 종류주식을 발행함에 있어서 이사회회의 결의로 잔여재산 분배에 관한 우선주식으로 정할 수 있다.

① 회사는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청산에 의해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아래에 따른다.

i. 잔여재산분배우선 종류주식에 대해 (ㄱ) 발행가액, (ㄴ) 발행일로부터 분배 일까지의 기간동안 발행가액에 대해 연복리 [20]%를 적용해 산출한 금액

을 합산한 금액을 우선적으로 분배한다. 다만, 분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 전사업연도까지 발생하였으나 미지급된 누적 배당액(주식의 분할 내지 병합 등을 포함해 주식 수에 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해 계산된 금액)은 잔여 재산의 분배 이전에 회사의 다른 채권자들과 동등하게 회사의 자산으로 분 제한다.

ii. 잔여재산이 i호의 합산금액을 모두 지급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잔여재산분 배우선 종류주식 수에 비례해 균등하게 분배한다.

iii. i 호에 따른 분배 후 잔여재산이 남는 경우 그 나머지 재산은 보통주식과 잔 여재산분배우선 종류주식에 대해 각 주주의 보유주식 수에 비례해 분배하 며, 이 경우 잔여재산분배우선 종류주식은 보통주로 전환하였을 경우 부여 받을 수 있는 최대 수량의 보통주식을 보유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iv. 회사가 제3자에게 정관에 정한 사유로서 그 영업 또는 자산의 전부 또는 중 요한 일부를 매각, 교환, 현물출자, 양도 기타 처분하는 행위, 또는 주요한 지 적재산권 또는 그 실시권을 양도, 제공 기타 처분하는 행위(이하 총칭해 "매 각 등"이라 한다) 이를 승인하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고 회사가 정관 제[*] 조에 따라 자동 해산되는 경우에 잔여재산의 분배는 i 호 내지 iii호에 따른 다.

② 전환 iv호 적용에 있어서 회사가 매각 등으로 금전 이외의 경제적 가치가 있 는 자산을 취득한 경우 그 가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평가한 공정가액 을 기준으로 한다.

【계약서 조항(예시)⁶³】

제[*]조 잔여재산 분배에 있어서 우선권에 관한 사항

① 회사가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청산에 의해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아래에 따라 잔여재산을 분배받는다.

1. 먼저, 본건 우선주식에 대해 (ㄱ) 발행가액, (ㄴ) 발행일로부터 분배일까지의
기간 동안 발행가액에 대해 연복리 [*]%를 적용해 산출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을 우선적으로 분배한다. 다만, 분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까지
발생하였으나 미지급된 누적 배당액(주식의 분할 내지 병합 등을 포함해 주식
수에 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해 계산된 금액)은 잔여재산의 분배 이전에
회사의 다른 채권자들과 동등하게 회사의 자산으로 변제해야 한다.

2. 만일 잔여재산이 제1호의 합산금액을 모두 지급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각
우선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우선주식 수에 비례해 균등하게 분배한다.

3. 만일 제1호에 따른 분배 후 잔여재산이 남는 경우 그 나머지 재산은 보통주식
과 우선주식에 대해 각 주주의 보유주식 수에 비례해 분배하며, 이 경우 우선
주주는 [*]조에 따라 보통주로 전환하였을 경우 부여받을 수 있는 최대 수량

63 이와 달리 규정하는 형태도 가능하다.

선택: 거래대금 배분 방식 접근: 본문 또는 특약 삽입

(예시)

제[]조 (준청산사유)

- ① 본 계약에서 “준청산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 1. 회사와 타 법인 간의 합병, 분할합병, 포괄적 주식교환 또는 포괄적 주식이전으로서, 그 거래 직후 본 계약 체결일 현재의 주주들이 회사 또는 존속회사/완전모회사의 의결권 있는 지분 50% 미만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 2. 회사의 전부 또는 실질적으로 전부의 영업 또는 자산의 양도, 독점적 전용실시권 설정, 영업양수도 기타 이에 준하는 거래
 - 3. 1회 또는 수회의 거래를 통해 제3자가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50% 초과를 취득하거나 회사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하게 되는 거래
 - 4. 그밖에 전 각 호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해 투자자의 회구조를 본질적으로 변경시키는 거래
- ② 다만, 회사의기업공개(IPO) 및 이에 부수하는 통상적 조직개편은 준청산사유에서 제외한다.

제[]조 (준청산사유 발생 시 대가의 배분)

- ① 준청산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거래로 인해 주주들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매각대금, 합병대가, 주식교환대가, 현금, 증권, 기타 일체의 재산적 대가(이하 “거래대가”)는 회사에 대한 상법상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의 행사로 보지 아니하고, 본 계약 당사자들 사이의 계약상 배분약정에 따라 아래 각 항의 순서로 배분한다.
- ② 우선주식의 투자자는 각자 보유한 우선주식 1주당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른 주주에 우선해 거래대가로부터 지급받을 권리를 가진다.
 - 1. 해당 우선주식 1주당 발행가액[및 약정된 미지급 우선배당금이 있는 경우 그 합계액]
 - 2. 해당 우선주식을 준청산사유 발생 직전에 보통주식으로 전환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그 보통주식 수에 비례해 받을 수 있는 거래대가 상당액
- ③ 제2항에 따른 우선지급 후 거래대가가 남는 경우, 그 잔액은 준청산사유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전환가정(as-converted)한 보통주식 수에 비례해 모든 주주에게 배분한다.
- ④ 거래대가가 현금 이외의 재산으로 지급되거나 Earn-out, Escrow, Holdback이 포함되는 경우, 그 가액은 거래계약에 정한 평가액에 따르고, 거래계약에 명시가 없는 경우 이사회와 투자자 대표가 합의한 공정가액으로 평가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당사자들이 합의해 선정한 외부 평가기관의 평가액을 따른다.
- ⑤ 거래 관련 세금, 중개수수료, 법률자문비 기타 직접비용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각 주주가 최종적으로 수령하는 금액의 비율에 따라 부담한다.

제[]조(지급지시 및 협조업무)

- ① 회사 및 모든 주주는 준청산사유와 관련한 거래가 체결되는 경우, 거래상대방, 지급대리인 또는 에스크로 대리인에게 본 계약 제[]조의 배분순서에 따라 거래대가를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급지시서(disbursement instruction)를 제출해야 한다.
- ② 각 주주는 본 조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주주총회 결의, 종류주주총회 결의, 이사회 결의, 정관 변경, 주식양도, 주식매매계약 체결, 진술·보장 제공, 주권 제출, 인감날인 및 기타 클로징 문서의 체결에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 ③ 어느 주주가 거래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본 계약상의 배분순서와 다르게 수령한 경우, 그 주주는 이를 신의칙상 보관하는 것으로 보며, 수령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본 계약상 정당한 수령권자에게 초과수령분을 지급해야 한다.
- ④ 각 주주는 본 조의 이행을 위해 [대표주주 또는 투자자 대표]를 대리인 및 사실상 수임인으로 지정하고, 배분표, 지급지시서 및 이에 부수하는 서류를 작성·제출할 권한을 부여한다.

제[]조(회사 귀속 대가에 대한 특칙)

- ① 준청산사유에 해당하는 거래의 대가가 직접 주주가 아니라 회사에 귀속되는 경우, 본 계약 제[]조에 따른 금원의 이전은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진다.
- ② 전항의 경우 회사와 주주들은 다음 각 호의 방식 중 법적으로 가능한 절차를 통해 투자자의 회수가 최대한 실현되도록 협의하고 필요한 결의 및 문서작업에 협조한다.

1. 적법한 배당
2. 적법한 상환주식의 상환
3. 적법한 감자 또는 자기주식 취득
4. 해산 및 청산
5. 그밖에 관계 법령상 허용되는 구조

- ③ 전항의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회사에 대한 직접적인 잔여재산분배청구권 또는 즉시지급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아니한다.

의 보통주식을 보유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4. 회사가 제3자에게 정관에 정한 사유로서 그 영업 또는 자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매각, 교환, 현물출자, 양도 기타 처분하는 행위, 또는 주요한 지적 재산권 또는 그 실시권을 양도, 제공 기타 처분하는 행위(이하 총칭해 “매각 등”이라 한다) 이를 승인하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고 회사가 정관 제[*]조에 따라 자동 해산되는 경우에 잔여재산의 분배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다.

② 전항 제4호의 적용에 있어서 회사가 매각 등으로 금전 이외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취득한 경우 그 가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평가한 공정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단, 투자자가 공정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대가의 성격에 따라 투자자가 국내 4대 회계법인 또는 국내 4대 감정평가법인 중 승인한 두 평가법인의 평가금액의 평균금액을 공정가격으로 한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회사의 부담으로 한다.

③ 회사가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라 함은 아래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법정 해산사유 발생일(준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합병, 파산,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상법 제5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주주총회의 결의)

2. 정관이 정한 해산사유 발생일

가. 정관에 정한 사유로서 그 영업 또는 자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매각, 교환, 현물출자, 양도 기타 처분하는 행위, 또는 주요한 지적재산권 또는 그 실시권을 양도, 제공 기타 처분하는 거래에 대해 이를 승인하는 주주총회의 결의

가 있는 때

나. 회사가 일방 당사자가 되거나 기타의 방식으로 관련되는 합병,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로서, 그 거래의 결과 그 직전 발행되어 있던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가 존속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50% 이상이 되지 못하거나 또는 그 비율 이상으로 전환 또는 교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거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 결의가 있는 때

현재 투자실무상으로도 위 예시와 같은 형태의 규정을 두고 투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다. 한편, 위 예시와 같은 규정의 실제 집행가능성에 대해서는 의문⁶⁴이 제기되는 상태이다.

따라서, 권고적으로는 위 형태의 조항을 주주 간 약정서에 포함해 회사의 의무를 다른 이해관계인의 의무사항으로 편입해야 준청산제도와 유사

64 부정적 논거: 1. 해산과 청산을 놓고 보면, 회사는 해산사유가 있을 때 상법 제531조 제1항에 따라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파산(청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산으로 가도록 정하고 있고, 시간적 순서로 볼 때 해산 후 청산 절차를 거치게 되며, 청산에 따라 잔여재산분배라는 개념이 나오도록 정하고 있다는 점, 2. 청산에 관한 규정을 보면, 주식회사의 경우 상법 제542조 제1항에서 상법 제254조를 준용하고 있고, 상법 제254조는 청산인의 업무로 잔여재산 분배를 정하고 있다는 점, 3. 상법 제542조 제1항은 상법 제260조를 준용하고 있고, 제260조는 청산인은 회사의 채무를 완제한 후가 아니면 회사재산을 주주에게 분배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는 점, 4. 규정체계상 상법 제12절 청산에 관한 장에 잔여재산 분배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 특히 청산에 관한 절에 규정된 제538조의 경우에는 잔여재산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분배를 하되 상법 제344조 제1항(잔여재산분배 종류주식)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한다고 규정을 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산 전 단계인 해산사유 발생만에 의해 어떤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을 만들어 내는 법적 유효성(집행가능성)에 대해서 의문: 외국 입법례의 도입과정에서 산입된 것으로 추단된다. 따라서 주주 간약정 형태의 내용은 가능하나 원칙적인 종류주식의 내용으로서의 잔여재산분배우선 조항 효력이 없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보완책을 고려할 수 있다.

한 형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나, 그 사용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실제적으로 준청산잔여재산분배우선조항(Deemed Liquidation Preference)의 도입은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왔다. 일면에서는 이러한 유사한 제도를 국내 상법에 상충하지 않게 활용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고 그렇지 않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이는 경우에 따라 나누어 살펴봐야 된다고 본다. 그 논의의 전제로 상법은 해산과 청산을 구분하고 있다. 해산은 법인격의 소멸을 청산은 소멸된 법인의 재산관계의 정리를 의미한다. 통상적으로 준청산(Deemed Liquidation) 사유를 보면 그 사유가 발생했을 때 위 준청산잔여재산분배권을 보유한 주주가 해당 주식을 발행한 회사로부터 청산에 준해 보통주주 보다 우선적⁶⁵으로 분배 받는 것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이는 경우에 따라 가능한 경우도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정관에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가 준청산(Deemed Liquidation)의 전제가 될 것이며 그 사유로 언급되는 것을 통상적으로 살펴보면, 정관에 정한 사유로서 (i) 그 영업 또는 자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매각, 교환, 현물출자, 양도기타 처분하는 행위, 또는 주요한 지적재산권 또는 그 실시권을 양도, 제공 기타 처분하는 거래, (ii) 회사가 일방 당사자가 되거나 기타의 방식으로 관련되는 합병,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로서, 그 거래의 결과 그 직전 발행되어 있던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가 존속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50% 이상이 되지 못하거나 또는 그 비율 이상으로 전환 또는 교환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살펴보면 (i)의 경우 예를 들어 A사가 보유중

65 이 경우도 채권자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

인 IP를 매각하였고 이 사유가 정관에 해산 사유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회사는 해산을 하게 된다. 그 결과 청산이 발생하게 되고 청산에 따라 잔여재산의 분배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는 원래 상법이 예정한 결과이고 청산잔여재산분배⁶⁶로 이해할 수 있다. (ii)의 경우 예를 들어 A사가 합병에 의해 B법인으로 존속하게 되었고 A사(주주)가 합병존속법인의 50% 이상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취득하게 되지 못한 경우 A사의 주주가 준청산(Deemed Liquidation)을 주장해 주주로서 회사에 대해 우선 배분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는 어렵다고 본다. 위 (iii)의 사유들은 해산은 발생하나 청산은 발생하지 않는 사유들이다. 또한 현행 상법에 따를 경우 이들 사유를 청산에 준해 해당 주주에게 우선적으로 배분할 마땅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본다. 상법이 해산과 청산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고 청산과 관련해 채권자보호의 원칙을 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들이 강행규정인 이상 이러한 권리를 폭넓게 인정하는 것은 현재 상법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고 본다. 이 경우는 주주 간 합의 등을 통해 이해관계인 주주가 보상 등을 하는 방법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라 본다.

청산잔여재산분배권 조항은 외형적으로는 투자자에게 유리하고 기업(이해관계인 주주 등)에게 불리한 조항이다. 하지만 청산잔여재산분배 조항이 작용하는 영역이 크지 않다는 점, 청산에 있어 채권자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점, 국내에서는 준청산잔여재산분배조항을 많이 활용하고 있지

66 준청산(Deemed Liquidation)이라는 개념을 굳이 의제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이다.

않다는 점(만일 변형된 형태의 준청산잔여재산분배우선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⁶⁷라고 한다면 그 배분액 등 조항에 유의를 해야 한다) 등에 비추어 투자자와 기업이 협의의 해야 할 쟁점으로 본다. 다만 기준 가액을 액면가로 할 것인가 발행가로 할 것인가는 실제 배당 부분에 있어 차이를 가져오는만큼 신중한 협의의 해야 한다. 또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준청산잔여재산분배조항을 인정할 것인가 여부이다. 미국식의 준청산잔여재산분배(Deemed Liquidation Preference) 조항은 그 집행력에 의문은 있으나, 같은 제목 하에 이해관계인에게 매수의무를 부담하거나 채무부담의무를 부담하는 형태로 사용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정확하게 조건 및 사안을 이해하고 동 의무를 부담할지 여부를 이해관계인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 현재 국내 투자계약서에 서도 변형된 형태의 준청산잔여재산분배(Deemed Liquidation Preference) 조항은 활용되고 있다.

(다) 기업 리스크 포인트

이익배당우선권과 관련해 기업 입장에서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다만 실무적으로 투자자는 참가적, 누적적 우선주를 대부분 사용⁶⁸한다.

① 누적적 배당의 장기적 부담

누적적 우선주는 회사가 배당을 하지 못한 해의 배당권이 차기로 이월되어 누적된다.

67 국내법상 실행 가능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68 기업 입장에서 이론적으로 부담될 수 있으나, 실제 배당가능이익이 없이 장기화 되는 경우가 많고 전환을 통한 상장 exit 구조가 많은 점이 고려될 수 있다.

② 참가적 배당의 부담

참가적 구조는 우선배당 + 참가배당에 따라 RCPS 주주의 배당 수취가 커지며, 이는 보통주주(창업자)에게 상대적 손실이다.

③ 배당가능이익의 제약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만 배당 가능하므로 이는 회사 입장에서는 배당가능이익이 없을 경우에는 배당을 하지 않는 법적 근거가 된다.

④ 복수 시리즈 RCPS 간 경쟁

여러 시리즈의 RCPS가 발행된 경우, 각 시리즈 간 배당 우선순위가 문제될 수 있다. 이에 따른 조정 협의가 필요할 수 있다.

잔여재산분배우선권과 관련해 기업 입장에서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다만, 준청산잔여재산분배조항을 활용해 반영된 경우를 전제로 하나 통상 권고안은 준청산잔여재산분배 조항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기본안으로 한다.

① M&A 시 창업자·보통주 주주의 실질 수익 감소

참가적 Liquidation Preference 구조에서 회사가 M&A로 매각되는 경우, 투자자가 먼저 우선 분배를 받은 후 잔여재산에 참가하므로, 창업자와 직원(보통주 주주)의 실질 수익이 크게 감소할 수 있다. 특히 매각 금액이 낮을수록 이러한 효과가 두드러진다.

예시: 회사 매각 150억 원, 투자자 총 투자금 100억 원 (Series A~C 누적), 참가적 1x Preference

- 투자자 우선 분배: 100억 원
- 잔여 50억 원을 전체 주식에 Pro rata 분배

- 투자자 지분 40% → 추가 20억 원
- 창업자·직원 지분 60% → 30억 원
- = 결과: 투자자 120억 원, 창업자·직원 30억 원

② Liquidation Preference와 회사 가치 평가의 관계

Liquidation Preference가 높을수록 보통주의 실질 가치가 낮아진다.

③ M&A 협상력의 제약

투자자의 강한 Liquidation Preference는 M&A 시 투자자의 동의가 사실상 필수가 되며, 이는 창업자의 매각 결정권을 제약하게 된다.

④ 투자자 간 이해관계 조정의 어려움

Liquidation Preference 분배를 둘러싼 투자자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M&A 자체가 무산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⑤ 실제 청산 시의 채권자 우선 원칙

회사가 실제 청산되는 경우, 채권자가 주주보다 우선한다. 따라서 회사가 부채가 많은 상태에서 청산되면 Liquidation Preference가 무의미해지는 경우가 많다.

(라) 협상 시 유의사항

이익배당우선권과 관련해 기업 입장에서 협상 시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다만 투자자는 대부분 참가적, 누적적 우선주를 활용하며 협의의 여지가 크지는 않다.

① 비참가적 구조 협상

가장 회사 친화적 구조는 비참가적 우선주이다.

“본건 종류주식은 비참가적 우선주로서, 1주당 [발행가] × 연 [○]%에 해당하는 우선배당을 받은 후, 잔여 이익에 대한 보통주 배당에는 참가하지 아니한다.”

② 비누적적 구조 검토

가능하면 비누적적 구조를 협상한다. 배당 미실시 해의 부족분이 차기로 이월되지 않도록 한다.

“본건 종류주식은 비누적적 우선주로서, 특정 연도에 배당가능이익이 부족해 우선배당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해당 부족분은 차기로 이월되지 아니하고 소멸한다.”

③ 배당률의 최소화

배당률을 낮추기 위한 협의를 한다. 특히 액면가 기준으로 하면 실질적 부담이 적어진다.

(마) 계약 체결 전 체크리스트

- 배당률(액면가액 또는 발행가액 기준)의 수준 확인
- 잔여재산분배 비율의 적정성 확인
- 존속기간의 적정성 및 자동전환 조건 확인
- 종류주주총회 결의 사항의 범위 인지

조항 개요	본건 종류주식은 참가적·누적적 우선주로서 일정 배당률을 우선 배당받고, 보통주가 더 높은 배당을 받는 경우 초과분에도 함께 참가한다. 청산 시에도 발행가액과 약정 수익률 기준으로 우선분배를 받고 초과분배에 참가한다.
-------	--

법적 의미	경제적 하방보호 장치이면서, M&A나 해산 시 보통주와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핵심 규정이다.
기업 관점 리스크	참가적 구조는 exit 대금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보통주보다 우선주가 더 큰 몫을 가져갈 수 있어 창업자 지분회수에 영향이 크다.(준청산조항 등 고려)
협상·운영 포인트	기업은 배당률 수치 자체보다 '참가적·누적적'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M&A 가정표를 통해 경제효과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체크리스트	배당률, 누적 여부, 참가 여부, 청산시 계산기준, 미지급 배당 포함 여부를 시뮬레이션한다.

3) 전환권에 관한 사항

(가) 조항 개요

전환권(Conversion Right) 조항이란 RCPS의 보유자가 자신이 보유한 종류주식을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의 구체적 내용, 행사 방법, 전환 조건, 전환비율 조정 등을 규정하는 조항이다. 이는 RCPS의 “전환주식(Convertible Stock)”으로서의 본질적 권리를 정하는 조항이다.

전환권은 회사의 성장에 따른 주가 상승 이익을 투자자가 향유할 수 있게 하는 장치로서, RCPS가 부채형 증권이 아닌 지분 투자의 성격을 갖도록 하는 핵심 요소이다. 투자자는 회사 성과가 좋으면 전환권을 행사해 보통주로 전환 후 매각 차익을 누리고, 성과가 나쁘면 상환권을 행사해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전환권은 투자자가 보유한 종류주식을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다. 전환비율은 1주 대 1주가 원칙이며, 전환가격은 1주당 발행가액으로 한다.

전환가격 조정(Anti-dilution) 사유: (i) 후속 발행 신주의 발행가액이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 가중평균방식으로 조정(Broad-based 권고, Narrow-based 대안), (ii) 주식 분할·병합 시 비율에 따라 조정, (iii) 무상감자 시 비율에 따라 조정(차등 무상감자 예외), (iv) IPO 공모단가의 70%가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 조정, (v) 합병 시 교환비율 평가가액이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 조정.

2026년 개정의 핵심 변화: Full Ratchet 방식 대신 가중평균방식(Weighted Average)을 표준으로 채택. Broad-based 방식에서 완전회석기준 발행주식 수(A)는 발행 보통주, 우선주 전환가정 주식 수, 주식매수선택권/RSU 등 발행 예정 주식 수,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전환/행사 가정 주식 수를 모두 포함.

【2025년 12월 18일자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 중 투자계약 관련 정책 방향】

- ①주식전환비율(refixing)조항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산식으로 개정 및 다
운라운드 시 투자자 합의에 따른 비율 조정 권리 명문화 검토
- ②이외에도 최근 법령 개정, 최신 판례를 반영, 업계와 함께 표준계약서 개편안을
마련하고, KVIC·KVCA와 함께 해설서 배포(26.1Q~)

8. 전환에 관한 사항

- ①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는 효력발생일로부터 []년이 경과하는 날의 전일까지 본
건 종류주식을 언제든지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 ②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는 전환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 및 수, 청구연월일을 기재해 기명 또는 서명날인한 전환청구서 2통 및 주권이 발행된 경우 주권을 첨부해 회사에 제출한다.
 2.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은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가 제1호에 따라 전환청구서 및 전환될 본건 종류주식의 주권이 제출된 날짜의 영업시간 종료 직전에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3.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가 전환에 의해 보통주식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상기 제2호의 날짜를 기준으로 주주명부상의 주주로 간주된다.
 4. 회사는 전환청구서 또는 전환될 본건 종류주식의 주권을 인도받은 즉시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그가 부여받을 권리가 있는 수만큼의 보통주식에 대한 주권을 발행해 인도하는 등 주식 발행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 ③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 조건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만약 다음 각 호의 전환가격 조정 사유 중 복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순차적으로 중복 적용한다.
1. 본건 종류주식 1주의 전환으로 인해 발행되는 보통주식 수(이하 “전환비율”)는 1주이며, 보통주식의 발행가액(이하 “전환가격”)은 본건 종류주식의 1주당 발행가액으로 한다.
 2.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 전에 회사가 발행한 신주의 발행가액, 전환사채의 전환가격,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이 그 당시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가격은 다음 산식에 따라 조정한다.

단, (i) 투자자가 동의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신주 발행, (ii) 기존 발행된 전환증권의 전환·행사 및 (iii) M&A에 따른 신주발행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조정후 전환가격 = 조정전 전환가격 × (A + B) / (A + C)

A: 신주 발행 직전 발행주식 총수

[(i) 발행된 보통주, (ii) 발행된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가정 주식 수, (iii) 전환사채/신주 인수권부사채 등 전환/행사 가능 증권의 전환/행사 가정 주식 수를 포함해 산정한다.]

B: 신주 발행으로 회사에 납입된 주금총액 ÷ 조정전 전환가격
 (= 신주발행가액 × 신주발행주식 수 ÷ 조정전 전환가격)

C: 신주 발행주식 수

3. 무상증자, 주식배당 등: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통해 무상증자를 하거나 주식배당을 통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조정후 전환가격 = 조정전 전환가격 × (조정전 발행주식 총수) / (조정후 발행주식 총수)

4.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 전에 회사가 주식을 분할 또는 병합하는 경우 전환비율은 그 분할 또는 병합의 비율에 따라 조정된다. 단주의 평가는 주식의 분할 또는 병합 당시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5.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 전에 회사가 무상감자를 하는 경우 전환비율은 그 감자의 비율에 따라 조정한다. 단, 경영과실 등의 사유로 특정 주주에 대해서만 차등적

으로 무상감자를 하는 경우에는 전환비율을 조정하지 않는다.

6. 회사의 IPO 공모단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그 당시의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가격을 회사의 IPO 공모단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정한다.
 7. 회사가 타사와 합병 시 교환비율 산정을 위한 평가가액이 그 당시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가격을 그 평가가액으로 조정한다.
- ④ 회사는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 전까지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이하 “수권주식”)에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으로 발행가능한 주식 수를 유보해야 한다. 만약, 회사의 잔여 수권주식 수가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으로 발행가능한 주식 수에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권주식 수를 증가시켜야 한다.
 - ⑤ 전환주식의 발행, 전환의 청구, 기타 전환에 관한 사항은 상법 제346조 내지 제351조의 규정에 따른다. 단, 전환권을 행사한 종류주식 및 전환으로 발행된 신주의 배당에 관해서는 그 청구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 ⑥ 단주의 처리는 일반 관례에 따르기로 하며,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1주 미만의 단수주가 발생하는 경우 단수주에 해당하는 주식은 발행하지 아니한다. 단, 이에 대해서는 해당 시점의 전환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 ⑦ 본조에 의한 본건 종류주식의 보통주식으로서의 전환 이후에도 투자자는 본 <별지 1>의 본건 종류주식의 내용을 제외하고 회사 및 이해관계인에 대해 가지는 본 계약 상의 권리를 그대로 보유한다.

(나) 법적 의미

전환권은 상법 제346조 내지 제351조에 근거한다. 개정상법은 전환청구권 부주식(투자자 보유)과 전환사유부주식(회사 보유) 두가지 체계를 규율한다.

Broad-based 가중평균방식은 분모에 주식매수선택권 등 잠재주식을 포함하므로 전환가격 하락 폭이 완화되어 기업에 유리하다. Narrow-based 방식은 실제 발행·유통 중인 주식만 포함하므로 투자자에 유리하다.

[선택사항] 가중평균방식 도입(Weighted Average) : [Broad-based 방식 표준안]

선택 1안: Broad-based 가중평균방식 (권고안)

[예시]

회사가 본건 종류주식의 조정 전 전환가격("CP1")보다 낮은 발행가액으로 보통주 또는 보통주로 전환 또는 행사가 가능한 증권을 발행·매각하는 경우("희석발행"),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가격은 아래 산식에 따라 조정된 전환가격("CP2")으로 변경된다.

$$CP2 = CP1 \times (A + (C \times P / CP1)) / (A + C)$$

여기서,

CP2: 조정 후 전환가격

CP1: 조정 전 전환가격

C: 신규 희석발행으로 발행되는 보통주 수(전환/행사 시 발행될 주식은 보통주 전환 기준으로 환산)

P: 신규 희석발행의 주당 인수가액(회사가 수령한 주당 대가)

A: 신규 희석발행 직전 회사의 완전희석기준 발행주식 수, 즉 (i) 발행된 보통주, (ii) 발행된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가정 주식 수, (iii) 주식매수선택권/RSU 등 주식기 준보상제도에 따라 발행이 예정(부여 여부 불문)된 주식 수, (iv) 전환사채/신주 인수권부사채 등 전환/행사 가능 증권의 전환/행사 가정 주식 수를 포함한다.

* RSU: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상 성과조건부주식 등 총칭 의미

**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상 조건부지분투 자, 조건부지분전환사채, 투자조건부 용자 등 포함 여부 명확화

참고: 선언적으로 아래 문안 추가 가능.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가격은 '가중평균방식(Broad-based Weighted Average)'에 따라 조정된다. 조정 시 산식의 분모가 되는 '기존 주식 수'는 본건 종류주식을 포함해 전환 가능한 모든 종류주식, 주식매수선택권,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전환사채 등이 보통주로 전환되었다고 가정할 때의 발행주식 총수(Fully-diluted basis)를 의미한다.

선택2안: Narrow-based 가중평균방식

[예시]

회사가 본건 종류주식의 조정 전 전환가격("CP1")보다 낮은 발행가액으로 보통주 또는 보통주로 전환 또는 행사가 가능한 증권을 발행·매각하는 경우("희석발행"), 본 건 종류주식의 전환가격은 아래 산식에 따라 조정된 전환가격("CP2")으로 변경된다.

$$CP2 = CP1 \times (A + (C \times P / CP1)) / (A + C)$$

여기서,

CP2: 조정 후 전환가격

CP1: 신규 희석발행 직전 전환가격

C: 신규 희석발행으로 발행되는 보통주 수(전환/행사 시 발행될 주식은 보통주 전환 기준으로 환산)

P: 신규 희석발행의 주당 인수가액(회사가 수령한 주당 대가)

A: 신규 희석발행 직전 회사의 완전희석기준 발행주식 수, 즉 (i) 발행된 보통주, (ii) 발행된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가정 주식 수, (iii) 명확하게 하기 위해 단, A는 희석발행 직전의 실제 발행·유통 중인 보통주 수(및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가정 주식 수 포함)를 의미하며, 주식매수선택권/RSU/인센티브 풀 등 미발행·미부여 주식 및 기타 전환/행사 가능 증권에 따른 잠재주식 수는 (희석발행과 동시에 전환/행사되어 실제 발행주식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포함하지 아니한다.

[예시 사례]

(가정1) 투자단가 100,000원/1주, 주식수(확정) 1,000주. If (전환pool 전환가정) 200주 추가
(가정2) 신주 80,000원/1주, 100주 조달

[조정후 전환가격]

1. FULL RATCHET : 80,000원/1주

2. Narrow-based :

$$96,667 = 100,000 \times \frac{1,000 + [200 \times 80,000 / 100,000]}{1,000 + 100}$$

3. Broad-based :

$$97,143 = 100,000 \times \frac{1,200 + [200 \times 80,000 / 100,000]}{1,200 + 100}$$

※ 참고

Broad-based (광범위 방식):미행사스톡옵션, 전환사채 등 모든 잠재적 주식을'기발행주식 수'에 포함. 기존 주주(창업자)에게 상대적으로 유리.

Narrow-based (제한적 방식):현재 발행된'보통주'만을 기준으로 계산. 분모가 작아져 전환가격이 더 공격적으로 낮아지므로 투자자에게 유리.

이와 같은 전환권은 다음과 같은 법적 의미를 갖는다.

① 전환권의 법적 성격

전환권은 형성권으로서, 투자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법률 관계의 변동(종류주식 → 보통주식)을 가져온다.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없다.

② 전환 효력 발생 시점 (상법 제350조 제1항)

“전환주식의 주주가 전환의 청구를 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는 청구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강행 규정에 가까우며, 정관이나 계약으로 달리 정하기 어렵다.

③ 신주 발행의 법적 구조

전환에 의한 신주 발행은 기존 주식의 형태 변경으로서, 일반적 신주 발행 절차(이사회 결의 등)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아래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 정관에 전환 조건 기재 필요 (상법 제346조)
- 수권주식 범위 내 가능
- 변경등기 의무 (상법 제351조)

④ 전환가격 조정 조항의 유효성

대법원은 전환가격 조정 조항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아래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 액면가 하한: 상법 제330조에 따라 액면가 미만 불가
- 정관 명시 필요: 조정 산식이 정관에 반영되어야 함

⑤ 전환권 행사 거부의 효과

- 회사가 적법한 전환권 행사를 거부하는 경우 아래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 채무불이행 책임 (민법 제390조)
- 특정이행 청구 가능 (신주 발행 이행)
- 손해배상 청구 가능

⑥ 변경등기 의무 (상법 제351조)

전환이 이루어진 경우 회사는 2주 이내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

- 본권 종류주식의 감소
- 보통주식의 증가

(다) 기업 리스크 포인트

다운라운드 발생 시 기존 투자자의 전환비율이 조정되어 이해관계인의 지분이 크게 희석될 수 있다. 예를 들어, 1주당 10,000원에 투자를 받은 후 1주당 5,000원으로 다운라운드 발생 시, Full Ratchet 방식에서는 전환 시 주식수가 2배로 증가하나, Broad-based 가중평균방식에서는 기발행주식 수 등을 고려해 조정하므로 희석 폭이 완화된다.

IPO 공모단가 연동 조정(제3항 제5호)은 IPO 시점에서 추가 지분 희석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유의가 필요하다. 또한 수권주식 수 유보 규정(제4항)에 따라 잔여 수권주식 수가 부족하면 즉시 수권주식 수를 증가시켜야 하므로, 정관상 발행예정주식총수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기업 입장에서 고려할 리스크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① 창업자 지분 희석

투자자의 전환권 행사 시 보통주가 증가해 창업자 지분이 희석된다. 특히 전환가격이 조정되어 더 많은 보통주가 발행되는 경우 희석이 가속화된다. 권고안은 이 중 창업자의 지분희석이 가장 낮은 형태의 Broad-based 가중평균방식을 취하고 있다.

② 수권주식 부족 리스크

전환으로 발행할 보통주가 수권주식을 초과하는 경우: (i) 정관 변경(주주총회 특별결의) 필요, (ii) 기존 주주 반대 시 지연 또는 불가능, (iii) 전환권 행사 실행 차질 가능성을 유의해야 한다.

③ 복수 시리즈 RCPS 전환 시 복잡성

Series A, B, C 등 복수 시리즈 RCPS가 모두 전환되는 경우: (i) 각 시리즈의 전환가격이 상이, (ii) 조정 공식 적용의 복잡성, (iii) 단주 처리의 누적 등을 유의해야 한다.

④ 변경등기 해태

전환 후 2주 이내 변경등기를 하지 못하면 과태료 (상법 제635조, 대표이사 개인), 계약 위반이 될 수 있다.

(라) 협상 시 유의사항

추가적으로 기업 입장에서 실무적으로 제안하거나 유지해야 할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Broad-based Weighted Average 유지

가장 희석 효과가 작은 Broad-based WA를 유지한다. 예시 조항은 Broad-based를 채택하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현 권고안을 유지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가장 유리하다.

② Refixing 비율 협상

“회사의 IPO 공모단가의 []%에 해당하는 금액이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

통상 70%로 기재되며 그 범위에 따라 Refixing 발동 가능성과 조정 폭이 감

소한다.

③ 수권주식 충분 확보

전환권 행사에 따른 신주 발행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수권주식을 미리 확보한다.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3~5]배의 수권주식을 정관에 유보한다.”

④ IPO 시 자동 전환

IPO 시 RCPS의 자동 전환을 명시해, 상장 절차의 원활성을 확보⁶⁹한다.

“회사의 IPO 효력 발생과 동시에 본건 종류주식은 보통주식으로 자동 전환되며, 별도의 전환 청구 절차를 요하지 아니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Broad-based 가중평균방식의 채택을 적극 요구해야 한다. 전환가격의 하한(Floor, 예: 액면가액 미만 조정 불가)을 설정하는 협상이 가능하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신주 발행이 전환가격 조정 예외가 되도록 투자자 동의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권고안도 그러한 취지가 반영되어 있다. 다운라운드 시 지분 희석 시뮬레이션을 반드시 사전에 수행해야 한다.

제1항과 관련해 투자자 입장에서는 전환권의 시점을 최대한 빠르게 하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는 다소 늦추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나, 절대적이지는 않다.

제3항 제1호는 원칙적인 전환비율(전환가격)을 의미하고, 제2호 이하에서는 전환비율(전환가격)의 조정 규정(이하 “리픽싱(Refixing) 규정”이라 한다)을 두고 있는데 이는 투자 이후 신주발행, 주식분할, 주식배당 등 투자 당시의 기대가치를 희석화시키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보전해주기 위해 보통주로 전환하는 비율 내지 전환가격을 조정해주는 취지로서, 이를 희석화 방지 규정

69 다만 권고안의 경우 존속기간 규정에 반영되어 있다.

(Anti-dilution Clause)이라고도 한다.

제3항 제2호는 투자업계에서는 그동안 Full Ratchet 방식을 사용하였으나 동 방식은 투자자에게 유리하며 현재 권고안은 가중평균방식을 권고한다. 이는 협의해 선택적으로 운영 가능하다. 기업 입장에서는 동 조항의 수용 여부 및 그 범위에 대해 논의가 필요한 조항이다.

한편, 전환권과 관련해 개정상법은 전환권을 ‘피투자기업’이 보유할 수도 있고, 투자자가 보유할 수도 있는 이원적 체계로 규율하는 것을 명확히 했다.

이와 관련해 투자계약서에는 전환권의 행사와 관련해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자가 전환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전환청구권부주식), 상법에서는 회사가 전환청구권을 갖는 것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전환사유부주식) 전환청구권을 ‘피투자기업’과 ‘투자자’ 어느 당사자가 갖는지에 대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통상 기업 입장에서는 기업이 전환권 또는 후술하는 상환권을 투자자와 마찬가지로 보유하는 것을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상환권과 전환권을 기업이 보유하게 되는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투자자가 이를 수용하는 것은 극히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예를 들어, 투자자는 대부분의 경우 펀드인데, 기업이 잘 성장할 경우 투자자는 주식을 전환해 매각하기를 원할 것이나 기업 입장에서는 이를 상환해 주식 수를 줄임으로써 기존 이해관계인 등 주주의 주식가치를 제고하고자 할 것이다. 만일 기업의 상환권이나 전환권을 일반적으로 허용하게 될 경우 투자자의 펀드 투자 포트폴리오 관리는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등 이유로 상환권과 전환권을 투자자의 판단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부분은 투자자가 쉽게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일부 회사에 대한 전환권 리픽싱(Refixing) 관련해 리픽싱(Refixing) 제도 자체에 대한 비판을 가하는 경우 있다. 하지만, 리픽싱(Refixing)을 통해 기업가치

산정이 어렵거나 미래가치에 대한 고평가를 통한 투자를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제도 자체에 대한 비판보다는 그 범위와 조정 사유의 불공정성을 다루는 것이 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본다.

다만, 리픽싱(Refixing)의 운용과 관련해 과도한 리픽싱(Refixing) 조건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면 이는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로 판단된다. 리픽싱(Refixing)과 관련해 이해관계인이 리픽싱(Refixing)을 통한 경영권 침해의 우려를 제기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주식매수청구권 옵션 등을 통해서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할 것이다. 리픽싱(Refixing) 문제는 규정이나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운용의 문제로 판단되며, 과도한 리픽싱(Refixing)의 경우 개별적인 불공정 계약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리픽싱(Refixing)의 상한이 투자자에게 투자를 유치하지 못할 한계로 작용하거나 적절하지 아니한 사례의 경우 경영권을 유지하기를 원하는 이해관계인인 대주주의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 옵션을 갖는 형태로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보호하거나 적절한 조화점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전환권 조항은 기업에게는 경우에 따라 불리한 조항이다. 전환권 조항은 리픽싱(Refixing)을 통해 투자자의 지분희석을 방지하고 기업가치를 조정하는 기능을 갖는다. 다만 이러한 기능이 투자자에게 과도하게 유리하게 적용될 경우 불공정 계약의 문제를 발생하게 된다. 투자자도 기업도 리픽싱(Refixing) 자체를 반대할 것이 아니라(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제도 자체의 반대에 대해서는 수용이 불가할 것이다) 개별 리픽싱(Refixing) 조항의 불공정성을 살펴야 한다. 또한 전환권, 후술하는 상환권의 보유 주체를 기업도

포함하는 것으로 주장할 수 있으나, 이 부분 또한 펀드의 회수 관리 등 현실을 고려하면 수용이 불가능한 조항일 것이다. 결국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전환권 조항은 개별 전환권 조항의 불공정성으로 접근을 해야 하며, 논의될 수 있는 사항은 (i) 매출 등 연동 전환가격 조정 조항이 과도한 경우, (ii) IPO 공모단가 조정이 과도한 경우 등이라 할 것이다.

(마) 계약 체결 전 체크리스트

- 가중평균방식(Broad-based) 채택 여부 확인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의 전환가격 조정 예외 처리 확인
- IPO 공모단가 연동 조정 비율(70%) 확인
- 다운라운드 시 지분 희석 시뮬레이션 수행 여부 확인
- 수권주식 수 유보 충분성 확인

(바) 분쟁 사례 및 시사점

[사례] 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3다9636 판결 및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11. 19. 선고 2018가합102114 판결

[사례 개요] 전환사채권자 또는 전환주식의 주주가 계약과 정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전환권을 행사한 경우, 전환의 효력이 언제 발생하는지가 문제된 사안이다.

[주요 판단] 대법원은 전환사채권자가 전환청구기간 내에 전환을 청구하면 그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전환의 효력이 발생하고, 사채권자의 지위를 상실하는 대신 주주의 지위를 취득한다고 판단했다. 전환주식에 관한 하급심 판결

에서도 적절한 전환청구가 이루어진 경우 회사의 별도 승낙 없이 전환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시사점] 전환권은 권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법률관계를 변경하는 형성권의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회사는 전환청구서의 접수일, 주권 제출 여부 및 계약상 절차의 충족 여부를 명확히 관리하고, 전환으로 발행될 주식 수만큼 수권주식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

조항 개요	종류주주는 일정 기간 내 언제든지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고, 저가발행, 주식분할·병합, 무상감자, IPO 공모가, 합병평가가액 등에 따라 전환가격이 조정된다.
법적 의미	희석방지와 공정한 경제적 지위 유지를 위한 장치이며, 투자자 지분을 보호의 핵심 조항이다.
기업 관점 리스크	리픽싱이 과도하면 창업자 지분 희석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고, 옵션부여·신규발행 정책에도 직접 제약이 생긴다.
협상·운영 포인트	예외로 둘 주식매수선택권 범위, IPO 리픽싱 기준, 합병평가가액 연동 방식은 회사가 반드시 수치로 검토해야 한다.
체크리스트	희석 가정표, 스톱옵션 한도, 신규 라운드 예상 밸류, 수권주식 잔여수량을 함께 점검한다.

4) 상환권에 관한 사항

(가) 조항 개요

상환권(Redemption Right) 조항이란 RCPS 보유자가 회사에 대해 자신의 종류 주식을 상환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 내용, 행사 기간, 상환가액, 상환 절차 등을 규정하는 조항이다. 이는 RCPS의 “상환주식(Redeemable Stock)”으로서의 본질적 권리를 정립하는 조항이다.

상환권은 RCPS의 “채권(Debt)적 성격”을 부여하는 핵심 요소로서, 회사의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칠 경우 투자자가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Exit 장치로 기능한다.

투자자는 효력발생일로부터 일정 기간 경과 후 존속기간 만료일까지 회사에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회사는 상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상환해야 한다.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상환 완료 시까지 기한이 연장된다.

상환가액 = 1주당 발행가액 + (발행가액 × 연 일정% × 기간) - 이미 지급된 배당금.

회사는 상환 재원 확보를 위해 준비금 감소 등 법률상 가능한 절차를 신속히 이행해야 한다.

9. 상환에 관한 사항

- ①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는 본건 종류주식의 효력발생일로부터 []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본건 종류주식의 존속기간 만료일까지 회사에 대해 본건 종류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 ② 회사는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로부터 상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상법 제462조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이를 상환해야 한다. 투자자의 상환청구가 있었음에도 상환되지 아니한 경우(배당가능이익이 부족해 상환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를 포함함)에는 위 상환기한은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 ③ 본건 종류주식의 1주당 상환가액은 본건 종류주식의 1주당 발행가액 및 이에 대해 본건 종류주식의 효력발생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연 []%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에서 이미 지급된 배당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 ④ 회사는 본건 종류주식의 상환을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회사는 상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준비금 감소 등 법률상 가능한 절차를 신속히 이행해야 한다.
 2.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가 상환권을 행사한 이후, 본건 종류주식의 상환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상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제2항의 절차가 가능함에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제1항의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위약벌로서 투자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나) 법적 의미

상환주식은 상법 제345조에 근거한다. 상환은 반드시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며, 이는 자본충실의 원칙에 따른 강행규정적 제한이다.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이익준비금 총액이 자본금의 1.5배 초과시 주주총회 보통결의로 초과분을 감액해 배당가능이익을 확보할 수 있다.

배당가능이익이 없거나 부족한 상황에서의 상환은 상법 위반이 되므로, “특별상환”이라는 명목으로 배당가능이익 유무를 불문하고 상환하도록 하는 조

항은 법적으로 무효이다.

상환권에 관련된 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기업 입장에서는 상환권의 행사기간을 늦출수록 유리하다고 본다. 한편 특별상환권이라는 부제 하에 『기한 전 상환 청구』 또는 『특별상환』이라는 제목 하에 상환청구 규정의 내용을 추가하는 경우가 있다. 『기한 전 상환 청구』는 특정 사유(대부분의 경우 위약 사유)가 발생했을 때 상환청구기간이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환청구를 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즉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효과가 있다. 이는 협의에 의해 가능하다고 본다. 문제가 되는 것은 『특별상환』이다. 좁게 『상환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상환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즉 일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환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도 상환토록 하는 조항을 두는 경우가 간혹 있다. 이러한 조항은 법률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상환주식은 어떤 경우에도 상환이익을 전제로 해 상환해야 한다) 기업에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본다.

한편 개정상법은 법정준비금 제도를 개선하였는데, 상법 제461조의 2에 따라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회사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보통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회사에 배당가능이익이 없거나 부족한 것으로 산정되더라도 주식발행초과금 등 자본준비금이나 이익준비금이 충분히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감액해 배당가능이익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투자자는 준비금의 감소를 통해 상환이익을 증가시킬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부분은 『회사는 최대한의 노력과 자금으로 상환청구에 응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조항을 뒀으로써 기업에게 투자자의 요청이 있

을 경우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형태로 운용된다. 제도가 도입된 만큼 불합리한 주장은 아니나 기업 입장에서는 상환이익 등을 산정할 때 장래 현금흐름과 함께 이러한 점도 사전에 고려를 해야 한다.

상환금액은 1주당 발행가액과 이에 대한 이자 합계액으로 정한다.

한편, 상환권과 관련해 개정상법(2011년)은 상환권을 ‘피투자기업’이 보유할 수도 있고, 투자자가 보유할 수도 있는 이원적 체계로 규율하는 것을 명확히 했다.

이와 관련해 투자계약서에는 상환권의 행사와 관련해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자가 상환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상환청구권부주식), 상법에서는 회사가 상환청구권을 갖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상환사유부주식) 전환청구권을 ‘피투자기업’과 ‘투자자’ 어느 당사자가 갖는지에 대해 어느 일방의 배제규정을 둬으로써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만약 회사가 상환권을 갖게 될 경우 회사가 벤처캐피탈의 투자 이후 큰 성장을 이룬 후에 악의적으로 상환권을 행사해 투자자를 지분형 투자의 장점으로부터 강제적 배제를 시키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타의적 회수구조는 벤처캐피탈의 투자·회수라는 논리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어 투자자가 현실적으로 수용이 불가능한 조항으로 판단⁷⁰된다.

70 상환권 또는 전환권을 회사가 갖는 것으로 배제하고 투자자만 보유하는 체제로 벤처캐피탈 투자계약실무가 운영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벤처캐피탈의 속성상 혐의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본다. 따라서 개별적 조항의 불공정성 판단에 집중을 더욱 해야 할 것이다.

(다) 기업 리스크 포인트

① 예측 가능한 현금 유출 부담

상환청구권 개시 시점이 도래하면 투자자의 상환청구로 일시에 현금 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상환청구를 한다고 하며 기업이 무조건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적으로 상환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상환의무를 부담한다.

② 재무제표상 부담 증가

K-GAAP(일반기업회계기준)은 RCPS가 자본으로 분류되고, K-IFRS(국제회계기준)은 RCPS가 부채로 분류되어, 이는 부채비율 악화, 재무비율 악화, 신용평가 불이익, 후속 차입 어려움이 될 수 있다. 한편 현재 기준 권고안은 상환권을 제외한 전환우선주식을 권고 하고 있다.

③ 상환 후 지분 구조 재편

RCPS 상환 후 창업자 지분을 상대적 증가한다. 다만 이는 투자자 이탈을 수반하며 신규 유치가 필요할 수 있다.

④ 상환청구권의 부채성 인식

회계기준에 따라 RCPS는 금융부채로 분류된다. 즉 주 상환청구권 있는 RCPS는 통상 부채로 분류됨에 따라 재무제표 왜곡(실질은 에퀴티지만 부채로 표시)이 발생한다.

(라) 협상시 유의사항

상환청구 가능 시점을 최대한 늦추는 것이 유리(통상 3~5년)하다. 상환이율을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하는 협의가 가능하다. 분할 상환 방안을 사전 합의하면 현금유동성 관리에 도움이 된다. 60일 상환기한 및 배당가능이익 부족 시

자동연장 조항을 확인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① 상환청구권 개시 시점 연장

“효력발생일로부터 5~7년 경과 후 상환청구 가능”, 가능한 최대한 연장해 회사에 성장 시간 확보한다.

② 이자율의 최소화

“연 3~5% 수준”, 낮은 이자율로 협의할 경우 장기간 상환 지연 시 부담이 경감될 수 있다.

③ IPO 시 상환권 소멸 명시

“회사의 IPO 효력 발생 시점에 본건 종류주식의 상환청구권은 자동 소멸하며, 본건 종류주식은 보통주식으로 자동 전환된다.”라는 취지의 규정을 두어 IPO를 통한 상환권 해소⁷¹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는 통상 존속기간 규정을 통해 해소되며, 권고안도 그러한 취지로 반영이 되어 있다.

상환권 조항은 기업에게는 불리한 조항이다. 현재 해외의 경우 상환권 조항은 초기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해 생략되어 가는 추세이다. 국내의 경우에도 이러한 현상이 반영되어 가고 있다. 한편 기업 입장에서는 상환권 조항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유의해야 할 것이 있다. 상환의무는 무조건적으로 부담하는 의무가 아니라 전년도 승인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해 상환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상환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이다. 즉 기업이 이익이 창출되어야만 상환이 가능한 것이고 법률이 정한 상환이익으로써만 상

71 존속기간 규정에 두고 있다.

환이 예정된 주식이 상환주식이다. 따라서 상환이익이 없을 경우에는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상환이익이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투자자가 다만, 상환이익이 발생한 기업은 통상 성장성과 회수 가능성이 높은 경우가 많아, 투자자가 상환청구권을 실제로 행사하는 사례는 제한적이다. 따라서 실무적으로 벤처기업 투자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상환권을 제외한 전환우선주식의 사용을 권고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상환권을 포함하는 경우 기업 입장에서는 상환권 조항 관련한 협의가 필요할 수 있다.

(마) 계약 체결 전 체크리스트

- 상환청구 가능 시점(몇 년 경과 후)의 적정성 확인
- 상환이율의 수준 및 복리/단리 여부 확인
- 현재 및 예상 배당가능이익 대비 상환부담 시뮬레이션
- 준비금 감소를 통한 상환재원 확보 가능성 검토
- 이해관계인 상환 협력 의무 위반 시 위약벌 규정 확인

(바) 분쟁 사례 및 시사점

[사례]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7다251564 판결

[사례 개요] 비상장회사가 상환우선주를 발행한 후 투자자가 계약과 정관에 따라 조기상환권을 행사했으나, 상환가액을 둘러싼 다툼으로 상환대금 전액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자의 주주 지위가 유지되는지가 문제된 사안이다.

[주요 판단] 대법원은 정관이나 주식인수계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은 경우, 주주가 상환권을 행사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회사가 상환대금을 지급하고 주식의 이전을 받는 등 상환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는 원칙적으로 주주의 지위가 유지된다.

[시사점] 상환권의 행사와 주주 지위의 소멸은 반드시 같은 시점에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회사는 상환가액의 산정방식, 지급 절차와 시기, 상환 완료 전 의결권과 배당권의 귀속을 계약서와 정관에서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다.

조항 개요	종류주주는 일정 기간 경과 후 존속기간 만료 전까지 상환청구를 할 수 있고, 회사는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상환한다. 상환가액은 발행가액과 약정 수익률에서 기지급 배당을 차감하는 구조이며, 상환재원 확보를 위한 절차 이행의무와 위약벌 규정이 함께 존재한다.
법적 의미	상환권은 투자자의 회수수단이지만,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만 실현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기업 관점 리스크	기업이 상환재원 계획 없이 장기간 운영하면 상환 청구 시 경영진 개인책임·위약벌 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
협상·운영 포인트	기업은 상환권을 '당장 돈을 갚아야 하는 조항'으로만 보지 말고, 장래 배당가능이익·준비금 감소·재무전략과 연결해 관리해야 한다.
체크리스트	상환 가능 시기, 상환가액 산식, 기지급 배당 차감 여부, 준비금 감소 등 재원확보 절차를 내부적으로 점검한다.

5 주주 간 계약서(SHA) 주요 조항별 해설

(1) 목적 점검

(가) 조항 개요

주주 간 계약서(SHA)의 목적(제1조)은 각 투자자의 경영 참여, 주식 처분, 계약 위반 책임 등에 관한 구체적 법률관계를 정하는 것이다. 주주 간 계약서(SHA)는 각 투자계약서(SPA)와 함께 기업·투자자·이해관계인 간의 권리의무를 규율한다.

(나) 계약 체결 전 체크리스트

- 주주 간 계약서(SHA)와 투자계약서(SPA)의 우선관계(SHA 우선, 주식 본질적 내용 제외) 확인
- 주주 간 계약서(SHA)의 투자자 정의에 기존 라운드 투자자가 포함되는지 확인

(2) 본 계약의 효력 점검

(가) 조항 개요

본 계약의 효력(제2조): 서명날인과 동시에 효력 발생. 본 계약과 각 신주인수계약서의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 주식의 본질적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은 본 계약(SHA)이 우선한다. 이 조항은 분리형 체계에서 주주 간 계약서(SHA)와 투자계약서(SPA)의 우선관계를 명확히 하는 핵심 규정이다.

(나) 계약 체결 전 체크리스트

- 주주 간 계약서(SHA)와 SPA의 우선관계(SHA 우선, 주식 본질적 내용 제외) 확인
- 주주 간 계약서(SHA)의 투자자 정의에 기존 라운드 투자자가 포함되는지 확인

조항 개요	주주 간계약의 목적을 정하고, 신주인수계약과 충돌 시 주식의 본질적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은 본 계약이 우선함을 정한다.
법적 의미	정관·종류주식 내용·주주 간계약의 위계를 이해하는 출발점이다.
기업 관점 리스크	신주인수계약의 특약과 주주 간계약의 특약이 서로 충돌하면 해석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협상 운영 포인트	거래종결 후 지속될 의무는 가급적 주주 간계약에 정리해 문서 체계를 단순화하는 것이 좋다.
체크리스트	정관, 투자계약, 주주 간계약, 기존 라운드 SHA 사이의 우선순위를 한 번에 정리한다.

(3) 투자금의 용도 및 제한 ⚠ 주의

(가) 조항 개요

투자금의 용도 및 제한 조항이란 투자자가 회사에 납입한 투자금의 사용 목적을 사전에 특정하고, 특정 용도 외 사용을 금지하며, 사용 내역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리를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조항이다.

주식 인수를 통한 투자는 법적으로 회사의 자본금을 구성하며, 자본금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자유로운 사용이 가능하다. 경영진(이사회)이 회사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자금을 사용할 권한을 가지며, 이는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와 경영판단의 원칙에 기반한다.

그러나 벤처투자 실무에서는 투자자가 특정 목적(예: 제품 개발, 마케팅, 인력 채용, 설비 투자)을 전제로 투자를 결정하며, 회사가 투자금을 다른 용도(예: 기존 주주 구매, 창업자 대여, 무관한 사업 확장)로 사용하면 투자 목적이 훼손된다.

이러한 주주의 자유 사용 원칙과 투자 목적 달성 필요성 간의 긴장을 조율하는 것이 본 조항의 취지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회사는 투자금을 별지1의 사용용도에 따라 사용해야 하며, 특히 제3자에 대한 자금 대여 또는 제3자 주식 매입⁷²에 사용할 수 없다. 용도 변경 시 투자자의 사전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투자금은 별도계좌에서 관리하고, 사용기록부를 작성·비치해야 한다. 투자자는 투자금 사용내역에 대한 실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투자 후 1년 이내에 의무적으로 1회 이상 실사를 받아야 한다.

제3조 (투자금의 용도 및 제한)

- ① 회사는 각 신주인수계약에 의해 투자자로부터 받은 신주의 인수가액(이하 “투자금”)을 별지 1. 투자금의 사용용도의 기재와 같이 사용해야 하며, 특히 투자금으로 제3자에게 자금의 대여 또는 제3자의 주식을 매입해서는 아니된다.
- ②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별지 1. 투자금의 사용용도의 기재와 달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로부터 사전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③ 회사는 투자금을 다른 자금과 구분되는 별도계좌를 개설해 관리해 사용해야 한다.
- ④ 회사는 투자금의 사용기록부를 작성·비치해 두고 투자자의 열람 및 등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이에 응해야 한다.
- ⑤ 투자자는 언제든지 투자금이 사용용도에 맞게 사용되었는지를 투자자가 지정하

72 이를 대상거래라 칭하기도 한다.

는 회계법인을 통해 투자금 사용내역에 대한 실사를 진행할 수 있다. 단, 투자 후 1년 이내의 기간에 회사는 의무적으로 1회 이상 투자금 사용내역에 대한 실사를 받아야 한다.

(나) 법적 의미

① 계약상 의무의 성격

투자금 용도 제한은 투자계약 및 주주 간합의서상의 약정 의무로서, 다음과 같은 성격을 가지며, 이를 위반한 경우 법적 책임의 근거가 된다.

- 회사의 의무: 법인으로서의 의무
- 이해관계인(창업자)의 의무: 개인 자격의 부수적 의무
- 강행적 성격: 위반 시 구제 수단 발동

② 회사법상 경영판단 원칙과의 관계

경영판단의 원칙은 이사가 합리적 정보에 기반한 경영 판단에 대해 법적 책임을 면제받는 원칙이다. 투자금 용도 제한은 이러한 경영 자율권을 계약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③ 주식자본과 용도 제한의 법적 관계

주식 납입으로 조달된 자금은 법적으로 자본금 + 자본준비금으로 구성되며, 회사의 고유 자금으로써 원칙적으로 자유 사용 가능하다. 본 조항은 이러한 자유 사용권을 계약으로 제한하며, 이는 상법상 허용되는 계약 자유의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

④ 위반의 법적 효과

- (i) 계약 위반 책임(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 책임, 손해배상 청구 가능),

(ii) 투자 관련 구제 수단(상환청구권 발동 사유, Put Option(매도청구권) 행사 사유, 이해관계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위약벌 청구)의 발동 근거가 되게 된다. 나아가 (iii) 이사의 개인적 책임이 회사에 대한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으로 문제될 수 있다.

⑤ 형사적 책임

창업자가 회사 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유용한 경우 사안에 따라 업무상 횡령(형법 제356조), 배임(형법 제355조 제2항) 적용될 여지가 있다.

(다) 기업 리스크 포인트

① 경영 유연성의 과도한 제약

엄격한 용도 제한은 시장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곤란하거나 예측 못한 기회 포착 어려움에 당면할 수 있다. 투자자와 유연한 협의가 필요하다.

② 사소한 위반의 함정

별지에 기재된 용도와와의 미세한 불일치도 형식적 계약 위반이 되느바, 모호할 경우 사전에 투자자 협의 등이 필요하다.

③ 투자자 동의 지연으로 인한 사업 차질

용도 변경 시마다 투자자 동의가 필요하면 의사결정 지연, 복수 투자자 조율 부담이 될 수 있어 사전적인 조율이 필요하다.

④ 복수 라운드 투자의 복잡성

Series A, B, C 등 복수 라운드가 진행되면, 각 라운드별 별도 용도 제한, 자금의 혼재로 추적 곤란, 각 라운드 투자자의 별도 동의 필요 등으로 인해 실무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커지게 된다.

투자금 사용용도 위반은 SHA상 주식매수청구권 발생 사유에 해당한다. 투

자금 실사에서 용도 위반이 적발될 경우 중대한 법적 결과가 초래되므로, 투자금의 사용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별도계좌 관리 의무(제3항)는 투자금의 추적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다른 자금과 혼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라) 협상 시 유의사항

기업 입장에서는, ① 별지 기재의 유연성 확보, ② 변경 동의 요건의 완화, ③ 복수 투자자 동의 방식, ④ 금지 행위의 제한적 열거, ⑤ 예외 사유 확보, ⑥ 실사 조건의 합리화, ⑦ 위반 효과의 비례적 조정, ⑧ 치유 기간의 확보, ⑨ 별도 계좌 관리의 실무적 완화, ⑩ 정기 보고로 수시 열람 대체 등을 회사 사정을 고려해 완화 협의를 실무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투자자는 회사에 투자한 투자금이 투자 동기에 따라 투자계약 체결시 정했던 본래 용도에 따라 사용되고 있는지 사후관리를 해야 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투자금 용도 실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러한 투자금 실사는 펀드 운용사의 출자자에 대한 의무이기도 해 협의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제2항과 관련해 회사가 직원들에게 대출을 해 줄 필요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 법인 명의로 회사의 임대주택을 얻어야 하는데 법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문제가 있어, 직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회사가 직원에게 보증금을 대여하는 형식으로 거래하는 경우가 있으며, 그 정당성은 인정 될 수 있는데, 이를 위해 본 규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동 조항은 투자자도 협의가 어려운 조항이다. 투자금 사용용도 등은 펀드 출자자가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인바, 투자자와 조정 등은 어려운 조항의 하나로 본다.

투자금 사용용도를 지나치게 세분화하면 기업의 자금 운용 유연성이 제한되므로, 적절한 수준의 대항목으로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3자 자금 대여 금지 조항과 관련해, 직원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대여 등 불가피한 경우를 예외로 하도록 협의할 수 있다. 투자금 실사의 시기·횟수·비용 부담에 대해 사전에 명확히 합의해야 한다.

(마) 계약 체결 전 체크리스트

- 별지1 사용용도의 적정성 및 유연성 확인
- 별도계좌 개설 및 관리 체계 마련
- 사용기록부 작성·비치 의무 이행 체계 마련
- 투자금 실사 시기·비용 부담 합의 확인

(바) 분쟁 사례 및 시사점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28. 선고 2017가합7243 판결

[사례 개요] 회사가 투자금을 게임 상용화를 위한 개발자금과 운영경비로 사용하기로 약정했음에도, 투자금 중 일부를 가수금 반제 등 약정된 용도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사안이다.

[주요 판단] 법원은 투자금 사용용도 약정 위반을 인정하고, 계약에서 정한

위약벌과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시사점] 투자금의 사용·용도 위반은 단순한 회계처리상의 문제가 아니라 위약벌·손해배상·주식매수청구권 등 계약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 회사는 투자금 전용계좌, 내부 승인절차 및 사용 증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용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계약에서 정한 동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조항 개요	투자금 사용·용도, 별도계좌 관리, 사용기록부 작성, 열람·등사, 회계법인 실사, 위반 시 원상회복과 재실사 구조를 정한다.
법적 의미	투자금 목적 외 사용을 통제하는 핵심 조항이며, 회사의 자금집행 자유를 일정 부분 제한한다.
기업 관점 리스크	제3자 대여나 타사 주식 매입이 금지되는 구조이므로, 전략적 투자나 자회사 설립 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조정이 필요하다.
협상·운영 포인트	사업계획상 M&A, 자회사 설립, 브릿지 대여가 예상된다면 예외 범위를 별지에 미리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체크리스트	투자금 사용계획표, 계좌 개설, 집행 승인 체계, 증빙 보관 체계를 거래완결 직후 마련한다.

(4) 기술의 이전, 양도, 겸업 및 신회사 설립 제한 유의

(가) 조항 개요

기술의 이전·양도, 겸업 및 신회사 설립 제한 조항이란 회사 및 이해관계인(창업자·핵심 임원)이 회사의 기술·영업비밀·노하우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신회사를 설립·운영하거나, 경쟁업종에 종사하는 등의 이해상충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말한다.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투자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기술·영업비밀·Know-how 등을 제3자에게 제공·이전·양도·담보제공할 수 없다. 이해관계인은 경쟁업종 종사, 경쟁사 주식취득, 신회사 설립 등 이해관계 상충 행위를 할 수 없다.

이해관계인의 겸업금지 의무는 퇴사일 또는 주식 전부 처분일부터 2년(예시)간 유효하다(제3항).

구분	대상	금지행위
기술 이전 제한	회사·이해관계인 보유 기술	제3자에 대한 이전, 양도, 담보 제공
겸업 금지	이해관계인 개인	경쟁업종 종사, 경쟁사 주식 취득, 임원 겸직 등
신회사 설립 제한	이해관계인 개인	경쟁 신회사 설립, 개인 사업 운영

제4조 (기술의 이전, 양도, 겸업 및 신회사 설립 제한)

- ①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투자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현재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또는 개발 중이거나 개발계획이 확정(외부기관에 의뢰해

개발하는 경우도 포함, 이하 같음)되었거나 도입 예정인 영업비밀, Know-how, 정보, 기술 등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이전 또는 양도, 담보 제공할 수 없다.

- ② 이해관계인은 투자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현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 개발 중이거나 도입하는 기술의 일부 또는 전부와 관련된 신회사를 설립하거나 인사업을 할 수 없으며, 경쟁업종 종사, 경쟁사 주식취득 또는 회사가 경영하는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법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임원, 기술고문 및 직원으로 참여하는 등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③ 전항에서 정한 이해관계인의 의무는 해당 이해관계인이 회사를 퇴사하거나 본 계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회사의 주식 전체를 처분하였다도 본 계약이 종료되지 않는 한 퇴사일 또는 처분일부터 2년간 유효하다.

(나) 법적 의미

헌법 제15조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한다. 경업금지 약정은 이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합리적 범위 내에서만 효력이 인정된다. 이러한 경업금지 약정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i) 보호 가치 있는 영업비밀 또는 영업이익 존재, (ii) 합리적 기간(통상 1~3년), (iii) 합리적 지역(사업 영역에 한정), (iv) 합리적 직종(현재 사업과 관련된 직종) 등의 요건이 필요하다. 과도한 제한이 되지 않도록 협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i) 계약 위반 책임: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 책임, 손해배상 청구, 손해액 입증 곤란 시 손해배상 예정액(위약금) 활용, (ii) 영업비밀 침해 (부정경쟁방지법): 민사상 구제: 침해금지청구, 손해배상, 신용회복 조치, 형사 처벌: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 벌금), (iii) 형사 책임: 업무상 배임(형법 제356조), 업무상 횡령(형법 제356조), 영

영업비밀 누설(부정경쟁방지법) 등이 문제될 수 있다.

(다) 기업 리스크 포인트

위반 시 SHA SHA 제1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 발생 사유가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① 창업자의 직업 선택 자유 과도 제한, ② 사업 영역의 변화 대응 어려움, ③ 회사 강제 퇴출 시의 부당성, ④ 정상적 사업 활동의 위축, ⑤ 영업비밀의 광범위한 정의 등을 고려해야 한다.

(라) 협상 시 유의사항

기술이전 제한은 투자의 전제조건인 핵심 기술·인력의 존속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투자자가 양보하기 어려운 조항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기술의 범위, 경쟁업종의 범위를 명확히 정의하도록 협의해야 한다. 영업금지 기간(2년)은 합리적 수준이나, 지나치게 광범위한 범위가 설정되면 이해관계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으므로 균형있는 기준이 필요하다.

투자의 경우 인력 및 그 인력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또는 기술개발능력이 투자의 전제조건이 된다. 따라서 이 전제조건을 투자계약의 효력이 유효한 기간 동안 존속시키는 것이 과제가 된다. 이를 위해 투자자는 연구개발자가 해당 과업의 수행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을 요구한다. 따라서 투자자의 사전동의 없이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 또는 회사로부터 취득한 Know-how, 정보, 지식 등 무형의 자산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연구개발자 등이 회사가 수행하는 과업에 영향을 미칠 사업에 법적 또는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명시한다. 또한 과업수행 기간 동안 핵심

기술개발인력의 경우 퇴사를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기도 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핵심인력 및 인력이동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의사결정을 해야 하며 그 대상에 대한 협의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제3항과 관련해 이해관계인의 의무 기간은 통상 1~2년을 기재한다. 투자계약서 첨부서류로 “퇴직제한 및 경업금지약정서”를 작성하기도 하는데 이와 충돌없이 기간 기재(첨부 약정서는 투자자가 선택적으로 징구하지 아니할 수 있음)하는 것에 주의를 요한다.

벤처투자자는 인력을 신뢰하고 투자하는 성격이 강한만큼 투자자는 위와 같은 제한 조항을 두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신회사 설립 등 관련해서는 만일 다른 회사를 운용하고 있거나 다른 회사의 운용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면 그 내용을 사전에 명확하게 밝히고 협의를 해야 한다. 실무적으로 동 조항 위반으로 인해 소송 등이 진행된 사례도 다수 존재한다.

회사나 창업자 등 이해관계인 입장에서는, ① 보호 대상의 합리적 한정(예시: “본 조의 보호 대상은 회사의 핵심 영업비밀(별지에 명시) 및 회사의 주된 사업 영역과 직접 관련된 기술에 한정한다. 일반 업무 정보, 공개 정보, 공공 영역의 기술은 제외한다.”), ② 사업 영역의 별지 특정(“회사의 사업 영역을 별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본 계약 체결일 기준 사업 영역에 한정해 경업금지를 적용한다. 본 계약 체결 후 회사가 새로운 사업 영역에 진출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별도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해당 영역도 경업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③ 정상적 사업 활동의 예외 명시(“다음 활동은 본 조의 경업금지 적용을 받지 않는다: 회사의 통상적 사업 활동의 일환, 공개 정보 또는 공공 영역에 속한 정보의 이용, 학술·연구·교육 활동, 비영리 단체 활동 등”), ④ 경업금지 기간의 단축

(“경업금지 기간은 퇴사일 또는 주식 처분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단, 회사의 IPO 효력 발생일 또는 본 계약 종료일 중 빠른 시점에 자동 소멸한다.”) 등을 협의해 조정할 수 있다.

(마) 계약 체결 전 체크리스트

- 기술·영업비밀의 범위 정의의 명확성 확인
- 경쟁업종의 범위 정의 확인
- 경업금지 기간(2년)의 적정성 확인
- 퇴사 후 잔존 의무의 범위 인지

조항 개요	회사 기술 및 개발예정 기술의 제3자 이전·양도·담보제공을 제한하고, 이해관계인의 경쟁행위와 신회사 설립을 제한한다.
법적 의미	핵심 기술과 인력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사실상 경업금지적 성격을 가진다.
기업 관점 리스크	사업 확장 과정에서 별도 법인 설립, 해외법인 설립, 공동연구, 라이선스 계약이 제한될 수 있다.
협상·운영 포인트	기업은 금지 범위를 절대적 금지로 돌지, 투자자 사전 동의 조건의 승인 체계로 돌지 협의할 필요가 있다.
체크리스트	보유 IP 목록, 공동개발 계약, 핵심인력 검직 여부, 자회사 설립 계획을 사전에 정리한다.

(5) 경영사항에 대한 동의권 및 협의권 주의

(가) 조항개요

경영사항에 대한 동의권 및 협의권 조항이란 회사 및 이해관계인이 일정한 중요 경영 사항을 결정·실행하기 전에 투자자의 사전 동의를 받거나 투자자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이다.

동의사항(제1항): 정관 변경, 자본 증감·주식관련사채 발행·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회생·파산·해산·합병·분할 등 조직 변경,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국내외 회사 설립 또는 50% 이상 지분 취득에 관한 사항을 투자자의 2/3 이상 동의로 전원 동의를 갈음한다.

협의사항(제2항): 대표이사 선·해임, 건당 전년도 자산총계 5% 또는 연간 누계 10% 이상 규모의 거래, 급여 20% 이상 인상, 사업계획과 현저히 다른 사업 착수·중단, 외부감사인 선임·변경의 경우에는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

제5조 (경영사항에 대한 동의권 및 협의권)

①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해 투자자에게 각 사항의 시행일로부터 2주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한 뒤 각 사항의 시행일의 전일까지 투자자로부터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투자자의 서면동의를 본 계약의 투자자의 의결권 주식 총수의 3분의2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 투자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정관의 변경
2. 자본의 증감, 주식관련사채의 발행,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3. 회생신청, 파산신청, 해산, 청산, 합병, 분할, 분할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 영업양수도, 타회사의 인수, 경영임대차, 위탁경영 기타 회사조직의 근본적인 변경

4.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의함), 임직원, 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의함)과의 거래
5.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의 국내외 회사 설립 또는 다른 회사의 50% 이상 지분 취득

②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해 투자자와 사전에 협의하고 투자자에게 업무처리에 따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1.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2. 건당 전년도 자산총계의 [5% 이상 또는 연간 누계액 기준 전년도 자산총계의 [10% 이상]의 규모에 해당하는 자산의 취득 및 처분, 투자(주식 및 사채인수 포함), 자금대여, 담보 제공, 보증, 신규 자금차입 또는 채무의 부담
3. 각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가 전년도 급여와 비교해 [20%] 이상 상승하는 경우
4. 본건 투자 당시 사업계획에 명시한 것과 현저히 다른 사업에 착수하거나, 주요 사업의 중단, 포기
5.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변경

(나) 법적 의미

동의권은 계약상 권리로서, 위반 시 상법상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나 계약 위반으로서 주식매수청구권 등 책임이 발생한다. “협의”는 의사 합치(동의)와 달리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면 충족되나, 3회 이상 협의 없이 진행한 경우 주식매수청구권 발생 사유가 된다(제15조 제1항 제5호).

구분	동의권 (Consent Right)	협의권 (Consultation Right)
법적 효력	투자자 동의 없이 실행 불가	협의만 거치면 실행 가능
거부권 성격	거부권(Veto) 행사 가능	거부권 없음
회사 자율성	크게 제약	상대적 자율성 유지
대상 사항	회사의 본질적 변경, 자본구조 등	일상 경영의 중요 사항
투자자 보호	강력	정보권 중심

본 조항은 계약자유의 원칙상 유효하며, 회사 및 이해관계인의 계약상 채무로서 위반 시 채무불이행 책임(민법 제390조) 발생한다. 본 조항은 사실상 이사회 결의 또는 주주총회 결의의 내용을 규제한다. 이는 의결권 구속 약정의 성격을 갖는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의 법적 효과로서 (i) 계약 위반 책임: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 책임,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며, (ii) 통상 조기 상환청구권 발동 사유, Put Option 행사 사유, 이해관계인에 대한 주식 매수청구권 (Penalty Buyout), 위약벌 부과 사유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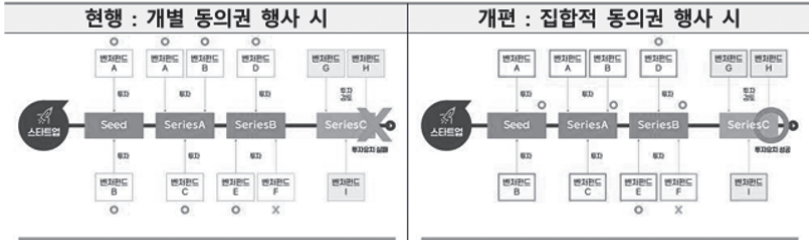
한편 이번 개편안 및 해설서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동의권 조항과 관련해 집합적 동의권의 기본 표준안 도입이다. 2025년 12월 18일자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 발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개별 투자자의 동의권이 사실상 만장일치 동의권이 되어 기업의 경영활동을 상당히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주주 간합의서 등을 통해 투자 라운드 별 투자자들로 해금 집합적 동의권을 일반화하는 것에 큰 변화가

1 표준계약서상 사전동의권 행사 방식을 '개별(전원) 동의'에서 '집합적 동의'로 개편하고 분리형 계약서 사용 유도

* 동일 라운드 또는 우선주 투자자 전체에 대한 집합적 동의 거버넌스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신주인수계약과 주주간계약 분리가 필요하나 한국은 통합형 계약서 활용이 보편화

< 사전동의권 행사 방식 비교 >



- 개별 투자자 모두 사전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어 의사결정 복잡성(↑), 개별 투자자 권리보호(↑)
- 라운드별 집합적 동의로 사전동의권을 행사하여 의사결정 복잡성(↓), 상대적 지분 비례 권리보호(↑)

< 참고: 국내의 벤처투자 표준계약서 현황 >

- 한국벤처캐피탈협회(KVCA)에서 제공하는 표준 투자계약서에는 투자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사전동의권(Veto rights)이 포함

< 표준 투자계약서 상 사전동의(협의)권에 포함되는 주요 경영사항 사항 >

- 정관의 변경
- 자본의 증감 및 증권 발행(유상증자·전환사채·스톡옵션)
- 회사 구조 변화(합병·분할·해산·청산·M&A·영업양수도 등)
- 대규모 자산처분·투자
- 중대한 사업 변경(신규 사업 착수 또는 포기)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 타회사에 대한 투자(자회사 설립 또는 50% 이상 지분 취득)
- 외부감사인 선임·변경
- 대표이사 선임 및 해임

- 현행 표준계약서는 투자자 개별로 사전동의권을 갖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투자자 만장일치 동의로 주요 경영사항을 결정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
- 반면, 미국은 라운드별 주요 투자자가 이사를 선임하고, 이사회 초다수 또는 비경영 이사의 과반으로 사전동의권을 행사하는 방식이 보편화
 - * 라운드별 투자자의 과반 동의로 이사를 선임하고 이사는 주주에 신인의무를 지므로 주요 투자자 그룹이 지분 비율에 따라 집합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구조
- 싱가포르의 주주간계약을 통해, 사전동의권을 라운드별 투자자 과반 동의로 규정하는 방식을 활용

있다. 이러한 집합적 동의권을 반영함에 있어서는 다양한 형태의 옵션⁷³이 시장에서 활용되고 있고 시장 자율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질 것이나, 기본적인 방향은 어느 특정 투자자의 반대로 회사의 행위가 사실상 투자자 주주 전원의 만장일치로 운용되는 불이익은 지양하고자 하는 것이다. 권고안은 동일 라운드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전체 동의로 간주하는 규정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다) 기업 리스크 포인트

동의권 위반은 가장 빈번한 분쟁 원인이다. 경영 현장에서 동의 절차를 누락하고 긴급 의사결정을 진행하는 경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기업 입장에서는, ① 경영 의사결정의 지연, ② 광범위한 동의권 대상으로 인한 일상 경영 마비, ③ 복수 투자자 동의 조율의 부담, ④ 투자자 거부권의 남용 가능성, ⑤ 사업 Pivot의 어려움, ⑥ 긴급 사안 대응 곤란, ⑦ 후속 라운

73 아래와 같은 다양한 경우를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 가지 다양한 Option 가능]

기준1: 「동의」의 종류 기준

- (i) 투자자 전원 동의(unanimous)
- (ii) 투자자 과반/특별다수 동의(majority/supermajority)
- (iii) 각 투자단계별 종류주식 주주별[시리즈별(Class)] 동의(Series A만, Series A+B 등)
- (iv) 리드투자자 동의(Lead investor) 또는 투자자대표(Investor Representative)

기준2: 「다수」산정 기준: 주식 수 기준 통일

- (i) 투자금액 기준(총 인수대금 대비)
- (ii) 우선주 수 기준(발행·유통 중 우선주 수)
- (iii) 전환가정 보통주 수 기준(As-converted)
- (iv) 의결권 수 기준(총 의결권 대비) : 국내법 상 불인정(복수의결권 창업주 외 투자자 없음)

드 투자자와의 충돌 등을 고려해 동의권의 범위 협의를 해야 한다.

다만, 현재 권고안은 동의권의 범위는 기업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조정된 범위 내 동의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통상 제시된 안보다 강화된 형태로 약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라) 협상 시 유의사항

투자자는 투자대상기업의 중요 경영사항에 대해 동의권과 협의권을 보장받음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회사의 경영에 참여를 할 수 있고, 투자자로서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실질적 관리를 하게 된다. 또한 동의권 조항은 사전 서면동의를 원칙적인 형태로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약정위반사유가 됨으로써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계약서에 명기한 권리의 행사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그 범위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실무에서 투자대상기업 및 이해관계인이 투자계약서를 위반해 소송분쟁으로 발전하는 경우의 상당 부분이 본 동의권 규정 위반 사안이라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유상증자와 관련해 투자자 인수단가보다 높은 가격의 유상증자는 동의사항에서 제외하도록 협의 가능하다. 협의사항의 기준 금액이 초기 기업에 적절하지 않으면 정액 기준으로 변경 가능하다.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 10% 이내에서 별도 동의 없이 부여 가능(제8조)하다.

한편 제2항 “협의”의 의미에 대해 실무상 해석이 문제될 수 있다. 제1항에서는 의사의 합치를 의미하는 “동의”에 대한 규정이 있고, 동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해 협의사항으로 정하는 취지로 보아 “협의”는 의사합치에는 이르지 않더라도 의견 교환이 있었다면

“협의”를 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동의권의 행사와 관련해 투자자가 수인인 공동투자의 경우에는 만장일치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비율의 동의가 있는 경우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보는 이해관계의 조절을 하는 경우가 있고, 이는 합리적 의사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현재 권고안도 그러한 방향을 따르고 있다.]. 회사 입장에서는 다수의 투자자가 있는 경우 동의 조항을 어떤 방식으로 운용할지에 대해 충분한 협의를 해야 한다.

한편 시기를 달리해 선행, 후행 투자가 이루어진 경우에 투자자들이 각각 동의권을 보유한다고 하면 각각 거부권(veto power)을 갖는 결과가 되므로, 선행 투자 이후 후행 투자가 이루어질 때에는 주주 및 투자자들 사이에 이러한 권리를 조율하는 주주 간 합의서를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현재 권고안].

기업으로서는 동의권의 대상을 축소하고 동의권 행사를 집합적 동의권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현재 권고안은 과거 투자계약에 비추어 동의권의 대상을 대폭 축소했으며, 집합적 동의권을 기본안으로 삼고 있어 기업과 창업자의 경영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취지에서 조화롭게 규정하고자 하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① 동의권과 협의권의 합리적 구분(협의권의 범위 확장), ② 임계치(Threshold) 설정(일정한도 초과에 대해서 동의), ③ Carve-out 조항(동의권 제외) 등을 추진해 볼 수 있다.

한편 위 동의 조항은 기업에게는 부담이 되는 조항이다. 동의 항목의 범위가 넓을수록 기업은 많은 부담을 갖게 된다. 결국 기업과 투자자는 위 동의 사항의 범위를 조정해야 협의를 해야 하며, 기업도 투자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경영의 자율성 등을 고려해 이 부분 협의에 집중을 해야 한

다. 현실적으로 동의 조항 위반으로 인한 법적 분쟁이 가장 많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한편 현재 권고안은 동의 대상을 축소하고 동의권의 행사 방식을 집합적 동의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마) 계약 체결 전 체크리스트

- 동의사항과 협의사항의 구분 명확성 확인
- 내부 의사결정 프로세스에 투자자 동의 절차 반영
- 다수 투자자 동의 방식(2/3 이상) 확인
- 협의사항 기준 금액의 기업 규모 적합성 확인

(바) 분쟁 사례 및 시사점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4. 4. 선고 2024나53026 판결

[사례 개요] 회사가 투자자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정관을 변경하자, 투자자가 사전동의권 조항 위반을 이유로 위약벌을 청구한 사안이다.

[주요 판단] 법원은 투자자가 납입한 자금이 회사의 존속과 발전을 위해 필요했고, 투자유치를 위해 동의권을 부여할 합리적인 필요성이 있었으며, 다른 주주에게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손해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사전동의권 약정이 유효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시사점] 투자자의 사전동의권이 일률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회사는 동의 대상, 통지 시기, 의사결정 기준 및 다수 투자자의 동의 방식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주요 의사결정 전에 동의절차가 누락되지 않도록 내부 관리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조항 개요	정관변경, 자본정책, 합병·분할, 특수관계인 거래, 계열회사 설립 등은 서면동의 대상이며, 대표이사 선임·해임, 대규모 자산거래, 급여 인상, 사업중단 등은 사전 협의 대상이 된다.
법적 의미	투자자의 veto 성격을 가지는 조항으로,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 자유를 제약한다.
기업 관점 리스크	동의권 범위가 넓고 협의대상이 세밀하면 일상 경영행위도 지연될 수 있다.
협상·운영 포인트	금액기준·횟수기준을 회사 규모에 맞게 조정하고, 정기보고로 갈 수 있는 사안과 사전동의를 필요한 사안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
체크리스트	전년도 자산총계 기준 계산방식, 특수관계인 범위, 협의와 동의를 구분, 긴급예외 규정 여부를 확인한다.

(6) 중요 경영사항에 대해 투자자에게 보고할 의무 유의

(가) 조항 개요

본 조항은 투자자가 투자 이후 회사의 경영 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투자자산의 가치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회사에 정보제공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이다. 벤처투자계약상 정보제공권은 투자자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권리 중 하나로서, 후속 투자자의 동의권 행사, 위험 조기 감지, 회수 시점 판단 등 모든 투자자 권리 행사의 전제가 된다.

기능적으로는 (i) 수시 통지의무(제1항): 회사의 존속·신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발생 시의 즉시 보고, (ii) 정기 보고의무(제2항): 회계 결산 자료의 정기적 제출, (iii) 요청에 따른 제공의무(제3항): 투자자의 개별 자료 요청에 대한 제공의 구조로 작성되어 있다.

본 조항은 단순히 정보 제공에 그치지 않고, 다른 조항(이행강제, 매수청구권, 위약금, 약정 위반 사유)의 trigger가 되는 정보 흐름의 출발점 역할을 한다. 즉, 본 조항을 통해 보고된 사실이 투자자의 사전 동의권 발동, Put Option 행사, 진술·보장 위반 청구 등의 근거가 되므로, 회사 입장에서는 단순한 형식적 의무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① 지체없는 서면 통지 필요 사항 :

부도·은행거래정지, 파산·회생절차 개시, 소송·중재 개시, 정부기관 행정 제재, 주요 기술인력 채용·퇴직, 납기전 납부고지, 휴·폐업.

② 연차보고(다음 회계연도 시작 90일 이내) 필요 사항 :

감사 재무제표, 연간 경영보고서, 주주명부, 세무조정계산서. 분기보고(다음 분기 60일 이내): 분기 재무제표, 분기 경영보고서.

그 외에도 투자자 요청 자료는 10일 이내에 제공해야 하며 보고의무를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주식매수청구권 발생 사유로 규정할 수 있다(선택사항).

제6조 (보고 및 자료 제출)

① 회사는 투자자의 별도 요청이 없더라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단, 본 계약의 다른 약정에 의한 통지의무와 중복되는 항목에 있어서는 어느 경우든 먼저 도래하는 기일까지 통지 또는 보고되어야 한다.

1. 회사가 발행, 배서 또는 보증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거래가 정지된 때
2. 파산, 회생절차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의 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부실징후기업으로 인정되는 때
3. 소송 내지 중재 절차가 시작된 때
4. 정부 및 준정부기관에 의한 행정적 제재
5. 회사의 사업에 필요한 중요 기술인력의 채용 및 퇴직 상황
6. 회사가 제세공과금에 대해 국세징수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납기전 납부고지를 받은 경우
7. 회사의 휴업 또는 폐업

② 회사는 투자자의 별도 요청이 없더라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해진 기일 내에 제출해야 한다.

1. 연차보고 - 다음 회계연도 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
가.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은 결산 재무제표

나. 연간경영보고서(사업계획서)

다. 주주명부(보고일 기준)

라. 세무조정계산서

2. 분기보고 - 다음 분기 시작일로부터 60일 이내

가. 분기 재무제표

나. 분기 경영보고서

- ③ 회사는 투자자가 요청하는 경영자료를 투자자가 요청하는 양식에 따라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투자자에게 제공하기로 한다.

(나) 법적 의미

① 정보제공의무의 법적 성격

본 조항상 의무는 회사가 투자자에 대해 부담하는 계약상 적극적 작위의무이다. 상법상 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상법 제466조), 재무제표 등의 비치·공시(상법 제448조) 등 일반 주주에게 인정되는 정보권과 별개로, 본 조항은 주주 간 계약을 통해 특정 투자자에게 상법상 권리를 초과하는 정보접근권을 부여하는 의미를 가진다.

② 즉시 통지의무의 trigger 시점

제1항의 “발생했을 경우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사건 발생 후뿐 아니라 발생 가능성이 있는 단계에서부터 통지의무가 발생함을 의미한다.

③ 다른 조항과의 연계성

정보제공의무 위반은 단독으로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되기보다는, (i) 진술·보장 위반, (ii) 사전 동의권 회피, (iii) 약정 위반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 발

동 사유와 결합해 작동한다. 특히 부도·회생·소송 등 중대 사건의 미통지는 회사의 존립에 관한 본질적 정보의 은닉으로 평가되어, Put Option 발동의 근거가 된다.

(다) 기업 리스크 포인트

기업 입장에서는, ① 영업비밀·민감정보의 유출 위험(투자자의 자료 요청 범위에 영업비밀, 핵심 기술 사양, 거래선 정보, 가격 정책 등이 포함될 경우 정보 유출 리스크가 발생한다. 특히 투자자가 경쟁사에도 투자하고 있거나(공동투자 펀드), 추후 경쟁사 투자자로 변경되는 경우 정보 유출의 실질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② 통지 누락의 누적적 위험⁷⁴(다수의 통지 대상 항목이 있어 회사가 일부 항목에 대한 통지를 누락하기 쉽고, 이러한 누락이 추후 약정 위반 사유로 누적되어 Put Option 발동의 근거로 활용될 위험이 있다.), ③ 다수 투자자 환경에서의 행정 부담(후속 투자 라운드를 거치며 누적된 투자자가 각자 본 조항에 의한 보고를 요구하는 경우, 보고 양식·일정·전달 채널의 표준화 없이는 행정 부담이 증가한다.) 등의 리스크를 인지하고 관리해야 한다.

다수 투자계약서의 경우 투자자는 회사로 해금 사전 동의사항 및 협의사항에 이르지 않는 중요 경영사항에 대해 보고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 회사의 중요 경영사항, 예를 들어 경영진의 교체, 경제적 대규모 손실, 재정상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유, 주요 기술인력의 이전, 법령, 기타 규정의 위반으로 인해 정부, 관계기관, 기타 단체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제3자로부터 소송을 제기당한 경우 등 사업의 수행 및 지분의 가치평가에 직·

74 실제 실무적으로 보고 누락이 되지 않도록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간접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회사의 중요 경영사항⁷⁵에 대해 투자자는 회사로부터 정보를 수령해 함께 경영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거나 한편으로는 투자금 회수의 시기 내지 방법을 검토해야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기 위해서이다.

다만, 이러한 회사의 중요한 경영사항 보고의무를 사전의무로 부과할지 사후의무로 부과할지에 대해 회사는 투자자와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은 중요 경영사항 중 어떤 사항을 동의사항, 협의사항으로 할지, 보고사항으로 할지 여부는 투자대상기업의 업종, 규모, 성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

제3항은 일반조항으로 기재할 수 있다. 투자자가 요청하는 경영자료로 월별 또는 분기별 경영 계획 대비 실적, 월별 자금 수지 실적 등을 예시할 수 있다. 다만 광범위한 자료제출 요청권은 기업활동에 부담이 될 수 있는바, 기업 입장에서는 협이가 필요할 수 있다. 즉 그 구체적 범위를 미리 한정할 필요가 있다.

보고 및 자료 제출 조항은 기업에게 부담이 되는 조항일 수 있다. 보고 의무 위반으로 인해 제재를 받는 경우가 많지는 않다. 다만 보고의무도 의무에는 분명하나, 회사가 부담하는 의무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이를 조정하고 구체화 하거나 축소 협의하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는 바람직하다.

75 회사가 능동적으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사항 뿐 아니라 회사에 수동적으로 발생한 회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포괄한다.

(라) 협상 시 유의사항

보고의무 자체는 큰 부담이 아니나, 보고기한의 지연이 누적되면 주식매수 청구권 발생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내부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투자자 요청 자료의 범위가 과도하게 광범위한 경우 기업 활동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 범위를 사전에 한정하도록 협의할 수 있다. 현재 권고안은 일정 부분 합리적 수준으로 조율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관련해, ① 보고 대상 사건의 중요성 기준 도입(각 호의 사건에 대해 재무적 중요성 기준을 도입한다. 예시: “소송·중재”: 청구금액이 자본금의 일정 비율(예: 5%) 이상이거나 회사 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한정, “행정적 제재”: 영업정지·인허가 취소 등 중대한 처분이거나, 일정 금액(예: 5천만원) 이상의 과징금·과태료에 한정 등), ② 통지 기한의 합리화(“지체없이”라는 추상적 표현을 “인지일로 부터 영업일 7일(또는 14일) 이내”와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해, 사후적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협의를 할 수 있다.), ③ 정기 보고 기한의 조정(외부감사 의무가 없는 회사의 경우, “외부감사를 받은 경우” 또는 “회사가 작성한 결산 재무제표”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협의), ④ 자료 요청권의 합리적 제한(투자자와 제3항에 “투자자는 합리적인 사유에 한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회사의 통상적 업무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조한다. 등 제한 협의를 할 수 있다.), 그 외 사안에 따라 ⑤ 비밀유지의무의 명시, ⑥ 경쟁사 투자 시 정보 차단(Information Wall) 등을 기업이 처한 상황에 따라 협의할 수 있다.

(마) 계약 체결 전 체크리스트

- 보고 기한(연차 90일, 분기 60일) 준수 가능성 확인
- 투자자 요청 자료의 범위에 대한 사전 합의

□ 보고의무 위반 횟수 누적 방지를 위한 내부 관리 체계 마련

조항 개요	사고 발생 통지, 연차·분기 보고, 투자자 요청자료 제공의무를 정한다.
법적 의미	정보비대칭을 줄이기 위한 조항이며, 위반이 반복되면 주식매수청구권이나 시정조치의 전제가 될 수 있다.
기업 관점 리스크	회사의 자료제출 체계가 없으면 기한 준수 자체가 어렵다.
협상·운영 포인트	연차·분기 보고서 서식을 표준화하고, 대외공시자료와 투자자 보고자료의 일관성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체크리스트	보고 항목별 작성부서, 제출기한, 승인권자, 보관 위치를 사내 프로세스로 정한다.

(7) 회계 및 업무감사; 시정조치 유의

(가) 조항 개요

본 조항은 투자자의 정보접근권 중 외부감사 강제권(제1항)과 투자자 직접 조사권(제2항)을 규정한다. 앞선 제6조(보고 및 자료 제출)가 회사가 능동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의무를 규정한 것이라면, 본 조는 (i) 회사 외부의 독립된 회계법인을 통한 객관적 회계 검증 체계를 구축하고, (ii) 투자자가 회사 내부에 직접 진입해 조사·감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회사의 회계·경영 투명성을 외부적으로 강제하는 장치라 할 수 있다.

기능적으로는 (i) 외부감사 의무화(제1항): IPO 추진을 위한 사전적 회계 인프라 구축 및 회계 신뢰성 확보, (ii) 현장 조사권(제2항): 투자자가 인지한 경영상 문제점에 대한 직접 검증 권한이라는 2단 구조로 되어 있다.

본 조항은 투자자에게 조사권을 부여하는 강한 조항이다. 통상적으로 본 조항은 투자자의 약정 위반 의심이나 진술·보장 위반 조사, Put Option 행사를 위한 사전 점검의 근거로 활용된다.

회사는 투자자 서면동의를 받은 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지정해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한다. 투자자는 회사의 경영·재산 상태 확인을 위해 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를 파견해 조사를 수행할 수 있으며,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투자자는 감사·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을 요청할 수 있고, 회사·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시정 조치를 이행하고 결과를 서면 통지해야 한다.

제7조 (회계 및 업무감사, 시정조치)

- ① 회사는 20[] 회계연도부터 기업공개를 위한 제반 준비절차로서 투자자의 서면 동의를 받은 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지정해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 ② 투자자는 회사의 경영 및 재산 상태를 확인하고 계획된 사업의 수행에 대해 투자자의 입장에서 선의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신의 직원 또는 외부의 전문가를 파견해 회사의 회계 및 업무 전반에 관한 조사 및 기타 투자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고,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이에 대해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 ③ 본 조에 따른 조사 및 감사 등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 ④ 투자자는 회사의 경영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 결과 또는 투자자의 조사 결과에 따라 회사 및 이해관계인에 일정한 기간을 정해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시정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 정해진 일정한 기간 내에 시정 조치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나) 법적 의미

본 조 제1항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상 외부감사 대상이 되지 않는 회사에 대해서도 계약상 외부감사 의무를 부과하는 의미를 가진다. 외부감사법은 자산총액·매출액·종업원 수·부채총액 등의 기준에 따라 외부감사 대상을 한정하므로, 초기 단계 벤처기업은 법률상 외부감사 의무가 없는 것이 일반적이나, 본 조항을 통해 계약적으로 외부감사 의무가 강제된다.

위반의 효과: 회사가 본 조항을 위반해 외부감사 미시행 또는 조사 협조 거부를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i) 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ii) 주식매수청구권(Put Option) 발동 사유, (iii) 사전 동의 의무 회피 또는 진술·보장 위반의 정황

증거로 활용된다.

또한 시정조치 의무 위반은 주식매수청구권 발생 사유(제15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자의 감사·조사 범위가 과도하게 넓지 않도록 협의하되, 합리적 수준의 감사·조사에는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다) 기업 리스크 포인트

투자자는 동의권, 협의권 외에 회사에 대한 통제수단으로 회계 및 업무감사권과 이에 따른 시정조치요청권을 보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기업 입장에서, ① 외부감사 비용 부담(법률상 외부감사 의무가 없는 단계의 벤처기업이 본 조항에 의해 외부감사를 받는 경우, 감사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 ② 외부감사 도입 시점의 부담(“20 [] 회계연도부터”의 시점이 회사의 IPO 추진 일정과 정합되지 않는 경우, 불필요하게 조기에 외부감사 부담이 발생한다. 또한 외부감사 도입 시 회사의 회계처리·내부통제 시스템을 단기간에 정비해야 하므로, 기존 회계 인력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워 추가 인력 채용 및 시스템 투자가 수반된다.), ③ 회계법인 동의 절차의 운영 어려움(다수 투자자가 존재하는 경우 모든 투자자로부터 회계법인 선임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일부 투자자의 동의로 충분한지 절차가 명확하지 않으면 외부감사인 선임 자체가 지연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은 집합적 동의권으로 절충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본다.) 등의 부담이 있다.

(라) 협상시 유의사항

회계 및 업무감사 동의 조항(통상 1년 이내 실시)은 일반적으로 펀드 관리

를 위해 의무적으로 기재되는 조항인바, 조정 삭제가 어려운 조항이다. 기업에게는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는 조항이나,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조항이며, IPO를 위한 외부감사인 선임 등 관련해서는 조정이 가능하다고 본다. 또한 IPO를 위한 외부감사인 지정은 동의사항이 아닌 협의사항으로 도 운용이 가능하리라 본다.

① **외부감사 도입 시점의 합리화**: 외부감사 도입 시점을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회사의 IPO 추진 일정 또는 일정 규모(매출액·자산총액) 도달 시점과 연계해 규정하도록 협의할 수 있다.

② **비용 부담 주체의 명시**: 외부감사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는 것이 일반적이나, 투자자의 직접 조사 비용(투자자 직원 출장비, 외부 전문가 보수 등)은 사전 부담자를 협의할 수 있다. 다만 조사 결과 회사의 중대한 약정 위반·진술 보장 위반이 확인된 경우 회사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단서를 둔다.

③ **비밀유지 명시**: 외부 전문가의 자격을 한정(예: 공인회계사, 변호사, 일정 경력 이상의 전문가)하거나 외부 전문가는 회사와 별도의 비밀유지계약(NDA)을 체결한 자에 한정하도록 협의할 수 있다.

④ **다수 투자자 시 조사권 통합**: 조사권은 투자자 다수결(예: 2/3 이상)의 결의를 거쳐 행사하도록 한다. 조사 결과 보고서는 모든 투자자에게 동일하게 공유되도록 해, 개별 투자자의 반복 조사를 방지한다.

(마) 계약 체결 전 체크리스트

- 외부감사인 지정 시 투자자 동의 절차 확인

- 감사·조사 비용 부담 주체 확인
- 시정조치 기간의 적정성 확인

조항 개요	외부감사인 지정, 투자자의 조사권, 비용 부담, 시정요구 및 결과통지 의무를 정한다.
법적 의미	투자자에게 상당한 모니터링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으로, 단순 회계감사보다 넓은 범위의 실사 성격을 가진다.
기업 관점 리스크	감사 범위가 무제한적으로 해석되면 영업비밀·개인정보·고객정보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
협상·운영 포인트	비밀유지와 조사범위, 빈도, 비용부담, 조사방법에 관한 실무 운영 기준을 함께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체크리스트	데이터룸, 개인정보 비식별화, 외부감사인 선정 절차, 시정조치 보고 체계를 준비한다.

(8)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점검

(가) 조항 개요

본 조항은 회사가 임직원 등에 대해 부여할 수 있는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의 총 한도를 발행주식총수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조항이다. 본 조항은 통상 “사전 동의 사항(제5조 등)”의 일반조항과 함께 작동해, 회사의 인재 확보·유지 수단인 스톡옵션의 발행이 투자자의 지분 희석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해 사전적·정량적 한도를 설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기능적으로는 (i) 누적 한도 설정: 본건 투자 이전에 이미 부여된 스톡옵션과 본건 투자 이후 추가 부여될 스톡옵션을 합산해 10%를 상한으로 설정, (ii) 부여 한도 내 자율성 확보: 한도 내에서는 회사가 임직원 보상 정책에 따라 자율적으로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도록 보장, (iii) 투자자 동의 메커니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투자자의 별도 동의를 요건으로 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벤처기업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50%까지 확대 가능하나, 투자자 입장에서 10%를 초과하면 지분 희석이 과도해질 수 있으므로 10% 이내가 실무상 표준이다.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관련해, 투자자의 인수 단가를 하회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단서 규정을 추가할 수 있다.

제8조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회사는 회사 경영 및 기술개발 등 사업 전반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임직원 등에 대해, 본건 거래완결일 전 이미 부여된 것과 제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투자자의 동의 하에 부여된 것을 포함해 그 행사로 인해 발행될 수 있는 주식 지분율

총계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시점의 발행주식총수의 10% 이내인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나) 법적 의미

창업초기회사, 벤처기업, 중소기업의 경우 임직원에게 근로에 대한 동기 부여를 하기 위해 급여 지급에만 기대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에 회사의 임직원에게 장래 일정한 시기에 이르러 예정된 가격에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 또는 새로 발행하는 신주(또는 차액정산 방식)를 취득 또는 인수하거나 이를 포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가 마련되었다. 이것이 바로 미국에서 기원해 현재 세계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이른바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이다.

주주는 소유하는 주식에 비례해 신주의 인수권을 가지므로(상법 제418조 제1항)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은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희생시키며 부여하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는 임직원에게 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회사 및 주주, 투자자에게 이익을 가져오기 때문에 일정부분 보장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은 (i) 상법 제340조의2(상장회사 등에 적용되는 일반 규정), (ii)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3(벤처기업 특례), (iii) 상법 제340조의4(부여 한도, 부여 절차) 등에 따라 규율된다. 벤처기업법상 벤처기업은 상법상 일반 회사보다 완화된 요건으로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으며(예: 외부 전문가에 대한 부여, 부여 한도 확대 등), 본 조항은 이러한 법정 한도와 별개로 계약상 한도를 부과하는 의미를 가진다.

상법 제340조의2 제3항은 일반회사의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10/100, 상장

회사의 경우 15/100을 한도로 규정한다. 벤처기업법상 벤처기업법 제16조의 3 제1항은 벤처기업의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50/100까지 부여할 수 있도록 확대 규정하고 있다.

본 조항의 한도는 발행주식총수의 10/100으로 설정되어, 벤처기업법상 50% 한도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계약적 제한이 가해지는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본 조항은 회사가 벤처기업법상 행사할 수 있었던 권리를 계약을 통해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효과를 가지며, 이러한 권리 포기의 합리성 검토가 중요하다.

(다) 기업 리스크 포인트

① 한도 설정의 부족 가능성, ② 사전 동의 조항과 본 조항이 중복 적용되어, 한도 내에서 부여하더라도 매 부여 시 사전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 회사의 운영 자율성이 사실상 제한될 수 있는 점, ③ 한도 초과 부여의 트리거 위험(10% 한도를 초과해 부여한 경우 약정 위반에 해당하며, 위반 즉시 주식매수 청구권(Put Option) 발동의 사유로 연결될 수 있어 단순 한도 초과가 회사 존립의 위협으로 비화될 수 있다.), ④ 이미 부여된 스톡옵션의 한도 산입 부담(본건 거래완결일 이전 부여분이 이미 8% 수준이라면, 본건 투자 직후 회사가 추가로 부여할 수 있는 한도는 2%에 불과해 사실상 본 조항의 의미가 형해화된다.), ⑤ 외부 전문가 부여의 제약(벤처기업법은 외부 전문가(자문역, 사외이사, 외부 컨설턴트 등)에 대한 스톡옵션 부여를 허용하나, 본 조항의 10% 한도가 임직원과 외부 전문가를 합산한 것인지 별도 운영되는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외부 전문가 부여 여력이 추가로 제약될 수 있다.) 등 인재 영입의 매력도가 저하될 수 있는 특수한 사정들에 대해서 개별적 협의가 필요할 수 있다.

다만 투자자가 투자대상기업에 투자를 한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한도(10%)를 넘어서는 것은 투자자가 예상하기 어려운 주식 가치의 희석화가 이루어져 투자의 동기가 무색해질 수 있기 때문에 경계를 하고 있고, 실무에서는 투자대상기업에 대해 발행주식총수의 10%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라) 협상시 유의사항

① 한도의 합리적 설정: 10% 한도를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회사의 성장 단계, 산업 특성, 인재 의존도를 고려해 협상을 할 수 있다.

② 한도 산정에서 일부 부여분 제외: 이미 부여된 스톡옵션은 별도 풀(separate pool)로 관리하고, 본건 투자 이후 부여분에 대해서만 새로운 한도 적용을 협의할 수 있다.

③ 한도 확대 절차의 합리화: 한도 확대 시 투자자 다수결(예: 2/3 또는 50% 이상 동의)로 같음하도록 해, 모든 투자자 만장일치 요건을 회피할 필요가 있다(권고안).

④ 외부 전문가 부여의 별도 한도 설정: 임직원 부여와 외부 전문가 부여를 구분해, 별도 한도를 설정(예: 임직원 10% + 외부 전문가 2%)하거나, 외부 전문가 부여를 사전 동의 사항으로 별도 관리할 필요가 있다.

⑤ 다수 투자자 환경에서의 통일된 한도 관리: 후속 투자 시 추가 투자자가 본 조항과 다른 한도를 요구하지 않도록, 본건 투자계약 체결 시점에 미래 라운드까지 고려한 한도를 설정·관리할 필요가 있다.

(마) 계약 체결 전 체크리스트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한도(10%)의 산정 기준 확인
- 기 부여분이 한도에 포함되는지 확인
- 행사가격의 하한 설정 여부 확인

조항 개요	거래완결일 전 부여된 것과 투자자 동의 하의 추가 부여를 포함해, 행사로 발행될 수 있는 총 주식 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 이내에서 스톡옵션 부여를 허용한다.
법적 의미	핵심인력 유치와 희석방지 사이의 균형을 잡는 조항이다.
기업 관점 리스크	회사 성장단계에 비해 옵션 한도가 너무 작으면 채용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
협상·운영 포인트	후속투자자와 상장 준비를 고려해 규모를 사전에 설계하고, 동의요건을 미리 협상하는 것이 좋다.
체크리스트	기존 부여분, 예정 부여분, 행사 가능 시기, 행사가격 조정 문제를 사전 점검한다.

(9) 임원의 지명 유의

(가) 조항 개요

본 조항은 투자자가 회사의 이사회에 자신이 지명한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는 조항이다.

본 조항은 (i) 투자자가 회사 경영에 직접 참여해 모니터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ii) 사전 동의권·보고의무 등 다른 투자자 권리의 실효성을 확보하며, (iii) 투자자 지명이사의 신분 안정성과 보호를 동시에 도모하는 다층적 기능을 수행한다.

기능적으로는 (i) 이사 지명권(제1항): 기타비상무이사 1인의 지명권 부여, (ii) 교체 요구권(제2항): 언제든지 지명이사를 교체할 수 있는 권한, (iii) 이사의 책임 제한 및 면책(제3항): 회사 채무 보증 면제, 고의·중과실 외 손해 면책, 비용 보전, (iv) 임원책임보험(제4항): 기존 임원과 동일 수준의 D&O 보험 가입의 4중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본 조항이 단순한 정보접근권을 넘어 이사회 차원의 의사결정 참여권을 확보하는 기능을 가지며, 회사 내부 정보의 즉시적 입수와 경영 의사결정 통제에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회사 입장에서는 이사회 운영의 부담과 이해상충 관리의 어려움이 증가하는 동시에, 투자자 지명이사에 대한 법적 보호 의무 부담이 함께 발생한다.

투자자는 동일 라운드 투자자들과 협의해 기타비상무이사 1인을 지명할 권리를 가진다. 회사·이해관계인은 투자자 지명이사가 선임될 수 있도록 임시 주주총회 개최 등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투자자 지명이사는 회사 채무에 대한 보증을 하지 않으며, 고의·중과실 없는 한 업무수행 관련 손해에 대해 면

책받는다. 회사는 투자자 지명이사에 대해 임원책임보험을 부보해야 한다.

제9조 (임원의 지명)

- ① 투자자는 동일 라운드에 동반 투자하는 투자자들과 협의해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기타비상무이사) [1]인을 지명할 권리를 가지며,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투자자가 지명한 이사(이하 “투자자 지명이사”) 회사의 이사로 선임될 수 있도록 즉시 임시주주총회 개최 등 이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단 투자자들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투자자 지명이사를 지정한다.
- ② 투자자는 언제든지 투자자 지명이사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와 이해관계인은 이에 응해 투자자 지명이사의 교체를 위한 임시주주총회의 개최 등의 필요한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 ③ 투자자 지명이사는 회사의 채무에 대한 보증을 하지 아니하며, 투자자 지명이사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수행과 관련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회사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책임을 면제받고,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투자자 지명이사가 업무수행과 관련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이 제3자에게 부담, 지급하게 되는 비용을 투자자 지명이사에게 보전해 준다.
- ④ 회사는 본 계약 체결일 현재 회사의 임원에 대한 것과 동일한 수준으로 투자자 지명이사에 대해 임원책임보험을 부보하도록 한다.

(나) 법적 의미

본 조항상 이사 지명권은 계약상의 채권적 권리이다. 즉 투자자가 직접 이사를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이해관계인이 투자자가 지명한 자를 이사

로 선임할 수 있도록 협조할 의무를 부담하는 구조이다.

상법상 이사의 선임은 주주총회 결의 사항(상법 제382조 제1항)이므로, 본 조항이 직접 주주총회 결의를 대체할 수는 없으며, 이해관계인(주요 주주)이 자신의 의결권을 행사해 투자자 지명이사가 선임되도록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위반의 효과는, (i) 이해관계인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계약상 채무불이행 → 손해배상, 약정 위반 제재(주식매수청구권 등), (ii) 이해관계인이 의결권을 행사하였으나 표 부족 등으로 선임되지 않은 경우: 일반적으로 이해관계인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평가되나, 다른 주주를 설득할 의무까지 포함되는지는 해석상 다툼이 가능하게 된다.

본 조항은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기타비상무이사)의 지명을 규정한다. 투자자 입장에서 사외이사보다 자신과의 이해관계가 분명한 자를 지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타비상무이사 형태가 선호된다.

투자자는 투자대상기업의 경영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투자자의 임직원 또는 투자자가 지명하는 자로 해금 투자대상기업의 이사로 선임되어 이사회 결의에 참여하는 등 투자대상기업의 경영에 근접해 참여하는 경우가 있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어 왔으나 감소되는 경향이 있다.

과거에는 투자자 지명이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2가지 이유로 현재는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이른바 “기타 비상무이사)”⁷⁶로 선임하는 경우가 많다.

76 상법 제317조 제2항 제8호는 등기사항과 관련해 1)사내이사, 2)사외이사, 3)그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4)감사, 5)집행임원으로 구분하고 있다.

* 사외이사 :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상법 제382조제3항)

* 그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 상무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사외이사가 아닌 자(통상 비상근이사)

첫번째 이유는, 상법 제382조 제3항 사외이사 결격사유로 “6. 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 감사, 집행임원 및 피용자”가 나열되어 있어 투자자 역시 투자계약에 의해 “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견이 유력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유는, 사외이사의 선임과 관련해, 회사가 IPO가 되는 경우 상법상 사외이사의 겸직제한과 관련해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상법 제542조의8 제2항은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제382조제3항 각 호 뿐만 아니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해야 하며,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항 제7호는 “그 밖에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상장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은 “법 제542조의8 제2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해당 상장회사 외의 2개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집행임원·감사로 재임 중인 자”라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할 경우 투자자가 투자한 회사가 상장되는 경우 해당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상장회사 외의 2개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집행임원·감사로 재직할 수 없는 겸직의 제한을 받게 된다.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6항에서 사외이사의 겸직제한의 예외규정을 마련해 법인인 기관투자자 및 이에 준하는 외국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벤처투자회사 등은 위 예외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다) 기업 리스크 포인트

실무상 투자자 지명이사는 사외이사가 아닌 기타비상무이사로 선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상법 제382조 제3항의 사외이사 결격사유에 투자자가 해당될 수 있고, IPO 시 상법상 사외이사 겸직제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i) **이사회 의사결정의 지연·갈등 위험**(투자자 지명이사가 이사회에 참여함에 따라 이사회 결의 절차의 복잡화, 의사결정의 지연, 이사 간 갈등), (ii) **이사회 권한 사항의 확대 효과**(투자자 지명이사가 이사회에 참여함에 따라, 본래 사전 동의 사항이 아닌 이사회 결의 사항(상법 제393조 등)에 대해서도 사실상 투자자 통제가 미치게 된다. 즉 사전 동의 조항(주주 간계약상)과 별개로 이사회 결의를 통한 통제 채널이 추가된다.), (iii) **정보 흐름의 비대칭**(이사 지위를 통한 정보 입수투자자 지명이사는 이사회 자료, 회사 내부 정보, 임직원 인터뷰 등 이사의 지위에서 합법적으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이는 보고 의무 조항을 우회한 정보 입수, 영업비밀·핵심 기술 정보의 노출, 경쟁사에 대한 정보 유출 가능성을 발생시킬 수 있다.) 등의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

(라) 협상시 유의사항

① **지명권 발동 요건의 합리화**: 최소 지분을 요건(투자자가 일정 지분(예: 5% 또는 1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에만 지명권 행사 가능하도록 규정. 후속 라운드에서 지분이 희석되어 일정 비율 미만이 된 경우 지명권 자동 소멸), 누적 투자금액 기준(일정 투자금액 이상에 한해 지명권 부여), 지명 이사 수의 한정(다수 투자자 환경에서 전체 지명이사 수의 상한 설정(예: 이사회 정원의 1/3 이내)) 등을 협의 고려할 수 있다. 현재 권고안은 집합적 동의로 지명이사 등을 지정할 수 있는 것

을 기본으로 해 조율하고 있다.

② 지명 가능 이사의 자격 요건 명시: 상법상 결격사유 외에 회사의 합리적 자격 요건 부가(예: 회사·계열사·중요 거래처의 임직원이 아닐 것, 경쟁사 임직원·자문역이 아닐 것) 등 부가를 고려 협의할 수 있다.

③ 정보 사용 제한 및 비밀유지 의무 강화: 입수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공유할 수 있는 범위와 조건을 명확히 규정할 수 있다. 경쟁사 정보 차단(Information Wall), 비밀유지 서약 등을 활용 협의할 수 있다.

④ 다수 투자자 환경에서의 통합 지명권: 공동 지명권(동일 라운드 투자자가 협의해 1인을 지명하는 구조 유지) 등 조율 할 수 있다.

⑤ 옵저버권(Observer Right)의 활용: 투자자가 지명이사 대신 또는 추가로 이사회 옵저버(observer) 를 파견하는 옵션을 협의할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자 지명이사의 면책 범위, 임원책임보험 비용 부담 등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임원의 지명과 관련해서는 투자자도 감소해 활용하지 않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업 입장에서는 임원의 지명과 관련해서 다른 보고 조항 등으로 대체하고 생략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협의가 가능한 부분으로 본다.

(마) 계약 체결 전 체크리스트

□ 투자자 지명이사의 지위(기타비상무이사) 확인

- 면책 범위 및 비용 보전 규정 확인
- 임원책임보험 부보 의무 확인
- IPO 시 사외이사 겸직제한과의 관계 검토

조항 개요	동일 라운드 투자자들이 기타비상무이사 1인을 지명할 권리를 가지고, 회사는 선임 절차를 이행하며, 지명이사의 책임면제와 임원책임보험 부보의무를 둔다.
법적 의미	지명이사를 통해 투자자는 정보 접근성과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
기업 관점 리스크	지명이사가 실제로 이사회 자료를 받는 구조가 되면 내부 의사결정 문서의 작성 수준이 달라진다.
협상·운영 포인트	회사 입장에서는 지명이사의 역할, 자료범위, 비밀유지, 이해상충 관리 기준을 명확히 둘 필요가 있다.
체크리스트	정관상 이사 수, 기존 투자자 추천권, D&O 보험 가입 여부, 이사회 운영규정을 점검한다.

(10) 주주총회 및 이사회 개최 요구 점검

(가) 조항 개요

본 조항은 투자자 또는 투자자 지명이사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회의 개최를 요구할 경우, 회사 및 이해관계인이 즉시 이를 개최해야 한다는 임시 주주총회·이사회 개최 청구권을 규정하는 조항이다. 본 조항은 앞선 제9조(임원의 지명) 조항과 결합해, 투자자가 회사 거버넌스에 대한 능동적 통제 채널을 확보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기능적으로는 (i) 투자자의 임시주주총회 개최 청구권: 회사·이해관계인에 대한 직접적 청구권으로, 상법 제366조의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권을 강화·구체화하는 의미, (ii) 투자자 지명이사의 이사회 개최 청구권: 투자자 지명이사가 단독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 부여의 2단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본 조항은 외형상 단순한 절차 조항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i) 사전 동의권 행사를 위한 절차 확보, (ii) 회사의 중요 의사결정에 대한 즉시적 개입 채널 확보, (iii) 회사 측이 의사결정을 지연시키는 것을 방지하는 강제력 확보의 의미를 가지며, 다른 거버넌스 조항(임원 지명권, 사전 동의권, 보고 의무 등)을 실효성 있게 작동시키는 절차적 기반으로 기능한다.

회사 입장에서는 본 조항이 (i) 임시 주주총회·이사회 개최의 빈도 증가, (ii) 회사 일상 업무의 부담 증가, (iii) 투자자의 자의적 권한 행사 가능성 등 운영상의 부담을 초래할 수 있어, 행사 요건과 절차에 대한 합리적 제한 협의가 중요하다.

주주총회·이사회 개최 요구(제10조): 투자자의 주주총회 개최 요구 또는

투자자 지명이사의 이사회 개최 요구 시 회사·이해관계인은 즉시 개최해야 한다. 상법상 소수주주의 소집청구권과 별도로 계약상 권리로서의 의미가 있다.

제10조 (주주총회 및 이사회 개최 요구)

투자자가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주주총회 개최를 요구하거나, 투자자 지명이사
가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이사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즉
시 임시주주총회 내지 이사회를 개최해야 한다.

(나) 법적 의미

본 조항은 위 상법상의 권리에 더해, 계약상 회사·이해관계인이 즉시 개최할 의무를 부과하는 의미를 가진다. 이사회 개최 청구권은 회사·이해관계인의 협조 의무로 투자자 지명이사의 이사회 개최 요구 시 즉시 응할 의무를 부과한다. 이는 회사 내부 절차의 단축 이사회 소집 절차상 분쟁의 여지를 줄이는 의미가 있다.

한편 본 조항이 회사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인에게도 의무를 부과하는 점은 이해관계인의 의결권 행사 의무(임시주주총회 소집 시 이해관계인이 의결권을 행사해 정족수 충족에 협조), 이사 자격에서의 의무(이해관계인이 이사인 경우 이사회 결의에 협조) 등에서 의미가 있다.

투자자가 주주의 지위를 가지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투자자 지명이사로 해금 이사회를 개최해 논의하도록 해볼 필요도 있고, 투자자가 직접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해 주주총회에서 논의를 해볼 필요도 있다. 상법상 인정되는 이사 및 주주의 소집 청구에 관한 권한 이외에 이러한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계

약위반의 책임을 묻게 할 필요도 있어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 대한 개최요구권에 관한 규정을 두기도 한다.

(다) 기업 리스크 포인트

① 회의 개최의 무제한적 빈도: 본 조항은 투자자·투자자 지명이사가 임시 주주총회·이사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는 빈도, 사유, 사전 통지 기간 등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② 다수 투자자 환경에서의 누적적 부담: 후속 투자 라운드를 거치며 누적된 다수 투자자가 각자 본 조항에 따라 회의 개최를 요구할 경우 회사의 부담이 증가된다.

(라) 협상 시 유의사항

① 회의 개최 요구의 합리적 사유 요건 부가: 합리적 사유 명시(“투자자가 회사의 경영상 중대한 사항에 관해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본 계약상 권리 행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 한정 등 협의할 수 있다.

② 회의 개최 빈도 제한: 실무적으로 문제되는 경우는 드물다.

③ 다수 투자자 환경에서의 통합 행사: 동일 라운드 또는 모든 투자자가 일정 비율(예: 2/3 이상) 동의한 경우에 공동으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협의 가능하다.

투자자 또는 기업 어느 일방에 특별하게 불리한 내용은 아니라고 본다.
다만 투자자도 최근 동 조항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추세에 있고 실질적인 조항은 아니라고 본다. 투자자와 기업이 협의해 생략할 수 있다

(11) 기업공개 의무 유의

(가) 조항 개요

본 조항은 투자자의 투자금 회수(Exit) 경로 확보를 목적으로, 회사·이해관계인에게 (i) 기업공개(IPO)를 위한 노력 의무 및 일정 요건 충족 시 IPO 추진 의무(제1항), (ii) M&A 제의가 있을 경우 성실 협의 의무(제2항)를 부과하는 조항이다.

벤처투자는 통상 IPO 또는 M&A를 통한 회수를 전제로 하므로, 본 조항은 투자자의 회수 가능성을 계약적으로 담보하는 기본 회수 조항이다. 다만 본 조항은 직접적 강제력보다는 노력 의무 + 회수 압박의 근거라는 간접적 기능을 수행하며, 위반 시 후속 조항(주식매수청구권 등)과 결합해 실효성이 확보된다. 회사 입장에서는 (i) IPO 시점·비용 부담, (ii) M&A 협의 의무로 인한 경영권 압박, (iii) 회수 전략에 대한 자율성 제약이 주요 쟁점이다.

기업공개·M&A(제11조): 회사·이해관계인은 가능한 이른 시간 내에 기업공개 노력 의무를 부담한다. 기업공개 요건 충족 시 투자자는 구체적 근거를 제시해 기업공개를 서면 요구할 수 있다. M&A 제의 시 투자자와 협의해 성실히 임해야 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기업공개 의무가 성실의무(노력의무)로 기재되어 있는지, 강제의무로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성실의무 형태가 기업에 유리하다.

제11조 (기업공개 및 M&A에 관한 사항)

①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가능한 이른 시간 내에 회사의 주권이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이하 “기업공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회사가 기업공개 요건을 사실상 충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및 이해관계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기업공개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투자자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 기업공개를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②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다른 법인으로부터의 인수·합병의 제약이 있는 경우 투자자와 협의해 인수·합병의 협의에 최대한의 성실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

(나) 법적 의미

“가능한 이른 시간 내에 …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은 결과 달성을 보장하는 의무가 아닌 합리적 노력의 부작위 금지 의무이다. 합리적 수준의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경우 위반에 해당하나, 입증이 어려워 단독 제재 사유로는 약한 편이며, 통상 다른 조항과 결합해 작동한다.

제1항 후단의 “기업공개 요건을 사실상 충족”은 한국거래소 상장규정상 요건(자기자본, 매출액, 영업기간, 시가총액, 경영성과 등)의 사실상 충족을 의미한다. “사실상”이라는 표현이 객관적 판단 기준을 결여해 분쟁 소지가 있으나, 단서의 “구체적인 근거” 요구가 자의적 행사를 일부 제한한다.

제2항의 협의 의무는 M&A 체결 의무가 아닌 협의에 응할 의무이다. 따라서 회사·이해관계인은 합리적 사유로 M&A 거부 가능하나, “최대한의 성실한 자세”가 요구되므로 형식적 거부는 위반이 될 수 있다. 또한 본 조항은 적대적 M&A 시도와 우호적 M&A 제안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본 조항 위반은 일반적으로 (i) 손해배상 청구, (ii) 주식매수청구권(Put

Option) 발동의 정황 증거, (iii) 약정 위반에 따른 위약금 등으로 연계된다. 다만 노력 의무 조항이 직접적 페널티 사유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많다.

(다) 기업 리스크 포인트

① IPO 강제 위협: IPO 요청권이 행사되면, 회사가 충분히 성숙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더라도 IPO 절차 진행을 강제당할 수 있다. “사실상 충족”의 주관적 해석으로 인해 회사가 시장 환경, 기업가치, 경영 전략상의 사유로 IPO를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압박이 가해진다.

② IPO 비용 부담: IPO는 인수인 보수(통상 공모금액의 1~3%), 회계감사·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비용, 법률자문 비용 등 수십억 원 수준의 비용이 발생하며, 이를 회사가 부담한다. 또한 IPO 추진 과정에서 회계·내부통제 시스템 정비, 인력 확충 등 간접 비용도 상당하다.

③ 다수 투자자 간 회수 전략 충돌: 후속 라운드를 거치며 누적된 다수 투자자가 IPO와 M&A 중 선호가 갈리는 경우, 회사가 양립 불가능한 압박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또한 일부 투자자는 조기 회수, 다른 일부는 장기 보유를 선호하는 경우 회수 시점에 대한 분쟁도 발생한다.

(라) 협상 시 유의사항

국내의 M&A 시장이 아직 충분히 활성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한 투자대상기업의 주식이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등에 상장 내지 등록되어 투자자가 공개시장에서 주식을 매각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안은 가장 원활하고 합리적인 회수 방안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투자자는 투자대상기업이 기업공개의 요건을 갖추면 기업공개

절차에 나아가도록 의무 규정을 두는 경우가 종종 있다. 다만 기업공개만이 투자금 회수 방안이라고 할 수는 없고, 무리한 기업공개는 투자대상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오히려 투자대상기업의 안정적 성장이 투자자에게도 이롭다는 점에서 투자대상기업에게 부여하는 기업공개 의무는 성실의무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업 입장에서 의무 조항 형식 보다는 성실의무 조항으로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자본시장법상 “상장” 또는 “기업공개”에 코백스 상장도 포함되므로, 투자계약 체결시 당사자 사이에서 위 “상장” 또는 “기업공개”에 유가증권시장 상장 및 코스닥 시장 등록만을 의미하기로 하였다면, 그 취지를 분명히 해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IPO의무 조항이 선언적인 노력 조항으로 해석될 경우는 문제의 소지가 없다. 다만 위 의무가 법적 의무가 되고 일정 기한 내에 IPO 의무를 부담하게 되면 기업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된다. 이러한 의무조항의 유효성에 대해서는 업계에서도 논란이 많으나 사법적으로 그 유효성은 인정되고 본다. 따라서 기업이 IPO 의무 약정을 쉽게 해줄 경우 이로 인해 큰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한편 펀드 규약에서는 IPO와 관련해 IPO 실패를 이유로 30% 이상 전환가격을 조정하는 행위는 불공정행위로 규율을 하고 있으나 그 외의 행위에 대해서는 규율 조항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즉 반대해석 하면 IPO 의무조항의 유효성은 인정되고 있다고 보며, 공모단가 리픽싱의 경우에도 논란에도 불구하고 유효하다고 본다. 또한 사법적으로 이러한 결론에는 불합리한 점이 없다. 그러함에도

IPO 조항은 이로 인해 기업과 투자자 사이의 많은 이해관계의 충돌의 선상에 있는바 그 반영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고 기업도 투자자와 충분한 협의를 해 반영해야 할 것이다. 권고적으로는 성실의무 조항으로 반영하는 것이 절충안이 될 것으로 본다.

기업 입장에서는, (i) IPO 시점의 합리적 설정, (ii) IPO 요청권 행사 요건의 강화, (iii) IPO 비용 부담의 합리화, (iv) 다수 투자자 간 의사결정 절차 등에 유익해 협의할 수 있다.

(마) 계약 체결 전 체크리스트

- 기업공개 의무의 성격(성실의무 vs 강제의무) 확인
- 기업공개에 “코넥스 상장”이 포함되는지 범위 확인
- M&A 협의 시 투자자와의 협력 절차 확인

조항 개요	투자자 또는 투자자 지명이사의 회의 소집 요구권과, IPO·M&A 협의의무를 정한다.
법적 의미	투자자에게 적극적 회수 준비와 중요 의사결정 참여의 통로를 제공한다.
기업 관점 리스크	IPO 추진 시점, 주관사 선정, M&A 협상 범위에 대한 기대치 차이로 갈등이 생길 수 있다.
협상·운영 포인트	회사와 투자자는 회수전략에 관한 큰 방향을 정기적으로 공유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유리하다.
체크리스트	IPO 목표시점, 필요 재무정비, M&A 제안 접수 절차, 비밀유지 프로토콜을 정리한다.

(12) 투자자의 주식 처분 유의

(가) 조항 개요

본 조항은 투자자가 보유한 회사 주식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적으로 보장하는 조항으로, 투자자의 회수 권리를 직접적으로 담보하는 핵심 조항이다.

본 조항은 (i) 투자자의 자유처분권 보장(제1항 전단), (ii) 회사의 명의개서 등 권리이전 절차 협조 의무(제1항 후단), (iii) 처분을 위한 IR자료 제공 의무(제2항)의 3중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본 조항은 통상 회사·이해관계인의 주식 처분에 대한 제한(제13조 등)이 부과되는 것과 대비되어, 투자자에게는 처분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비대칭적 권리 구조를 형성한다.

이는 벤처투자의 본질이 투자자의 회수에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나, 회사 입장에서는 (i) 적대 세력에 대한 주식 이전 위협, (ii) 영업비밀의 외부 유출 위협, (iii) 후속 라운드 가치산정의 부정적 영향 등의 위협을 수반한다.

회사 입장에서는 투자자 처분의 자유를 인정하되, 회사·이해관계인의 합리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협의하는 것이 핵심이다.

투자자의 주식 처분(제12조): 투자자는 인수주식을 포함해 보유 주식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다. 회사는 명의개서 등 권리이전 절차를 즉시 이행해야 한다. 투자자가 IR자료를 요청하면 응할 의무가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자가 경쟁사 등 적대적 자에게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의 위협을 인식하고, 이해관계인 또는 지정인의 우선매수권(Call Option)을 협의할 수 있다.

투자자는 처음부터 투자금 회수를 위해 투자를 하는 것이므로 투자자의 주식 처분 이 자유로워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제12 (투자자의 주식 처분)

- ① 투자자는 각 신주인수계약서에 의해 인수한 주식(이하 "인수주식")을 포함해 각 신주인수계약서의 거래완결일 이후 투자자가 보유하게 된 회사의 주식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다. 회사는 투자자의 요청에 따라 처분 주식의 명의개서 등 처분에 따른 권리이전에 필요한 절차를 즉시 이행해야 한다.
- ② 투자자가 제1항에 따라 주식의 처분을 위해 회사 IR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

(나) 법적 의미

상법상 주식은 원칙적으로 자유양도성(상법 제335조 제1항)을 가지며, 정관으로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상법 제335조 제1항 단서). 본 조항은 이러한 정관상 양도제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에 대해서는 정관상 제한이 적용되지 않음을 계약적으로 확약하는 의미를 가진다.

명의개서는 상법 제337조에 따라 주주명부에 양수인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는 절차로, 회사에 대한 대항력 발생 요건이다. 본 조항은 회사가 이를 즉시 이행할 의무를 부과한다.

본 조항의 자유처분권은 공동매도권(Tag-along Right) 조항, 우선매수권(Right of First Refusal) 및 드래그얼롱(Drag-along) 조항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다) 기업 리스크 포인트

투자자 주식은 처분이 자유로운 것이 원칙이다. 회사나 창업자 입장에서는 투자자의 주식 처분에 대해서 콜옵션 등을 협의할 수 있다.

(라) 협상 시 유의사항

한편, 투자대상기업 및 이해관계인 입장에서는 투자자가 투자대상기업의 경쟁사 내지 적대적인 자에게 주식 처분을 하는 경우 경영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투자자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가 우선해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고 하거나, 이에 앞서 일정 부분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을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른바 “Call Option”)를 달라는 요구를 하기도 한다.

투자대상기업 및 이해관계인의 위 요구는 부당한 것이 아니고 투자자 입장에서도 긍정적인 취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항일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을 추가할 수 있다.

제[*]조의 2 (이해관계인의 우선매수권)

- ① 전조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회사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는 이해관계인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우선해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 ② 투자자가 회사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는 양도하고자 하는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 양도 또는 이전하고자 한다는 요지의 취지, 해당 제3자의 신원, 양도주식 수, 주당 양도가액, 양도예정일 기타 양도의 주요 조건을 명시해, 양도예정일로부터 [20]일 이전에 이해관계인에게 서면 통지해야 한다.
- ③ 이해관계인은 투자자로부터 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투자자에게 제1항의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조의 3 (이해관계인의 주식매수권(Call Option))

- ① 이해관계인은 거래완결일의 다음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 및 2년이 경과한 날부터 각 2주의 기간동안 투자자가 본 계약에 의해 인수한 본건 종류주식의 [50]% 범위 내(누적 주식 수 기준)에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 ② 이해관계인은 전항의 주식매수권 행사를 위해 매수예정일의 15일 전까지 매수예정주식 수, 매수가격, 매수예정일이 기재된 서면으로 투자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③ 본조의 주식매매가격은 본건 종류주식의 발행가액 및 이에 대한 거래완결일의 다음날부터 매수예정일까지 연 [20]%의 이율에 의한 금원 합계액으로 한다.

투자자가 일반적으로 기재하는 조항이다. 기업 및 이해관계인 입장에서는 투자자의 주식 처분 의 경우 이해관계인의 우선매수권이나 주식매수권(Call Option) 조항을 통해 권리 보호를 해야 할 것이다.

(마) 계약 체결 전 체크리스트

- 투자자 주식 처분의 자유성 및 명의개서 협력 의무 확인
- 이해관계인 주식 처분 시 사전 서면동의 절차 확인
- 양수인의 의무승계 요건 확인
- 위반 시 주식매수청구권 및 연대책임 사유 해당 여부 확인

조항 개요	투자자는 인수주식을 포함한 보유주식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고, 회사는 명의 개서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법적 의미	투자자의 기본적 회수권을 확인하는 조항이다.
기업 관점 리스크	기업은 투자자의 지분이 예상치 못한 제3자에게 이전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협상·운영 포인트	일부 전략상 제한이 필요하다면 상장 전 특정 경쟁사에 대한 양도 제한이나 정보 장벽을 특약으로 검토할 수 있다.
체크리스트	명의개서 절차, 주권 발행 여부, 기존 주주 간계약 가입 절차를 준비한다.

(13) 이해관계인의 주식 처분 유의

(가) 조항개요

본 조항은 제12조(투자자의 자유처분권)와 대비되는 이해관계인의 주식 처분 제한 조항이다. 회사 창업자·주요 주주(이해관계인)가 보유 주식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통제함으로써, 창업자의 회사 잔류 강제(Lock-up) 기능과 주주 구성의 안정성 확보 기능을 수행한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i) 창업자가 회사를 떠나 회사 가치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소위 “Key Man Risk” 통제), (ii) 적대적 제3자에게 경영권이 이전되는 것을 차단, (iii) 양수인을 통한 본 계약 회피를 방지하는 핵심 보호장치이다. 본 조항은 통상 제14조(우선매수권·공동매도권)와 결합해, 이해관계인의 처분 자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사전 동의를 받은 처분에 대해서도 추가 통제를 가하는 다층적 구조를 형성한다.

이해관계인의 주식 처분(제13조): 이해관계인은 투자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주식 처분을 할 수 없다. 동의를 받고 처분하는 경우 양수인에게 이해관계인의 권리의무 일체를 승계시켜야 한다. 위반 시 주식매수청구권 발생 사유(제15조 제2항 제4호)이자 이해관계인 연대책임 사유(제18조 제4항 제4호)에 해당한다.

제13조 (이해관계인의 주식 처분)

- ① 이해관계인은 투자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주식 처분(양도, 이전, 매각, 담보제공 등) 또는 주식 처분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의 체결을 해서는 아니된다.
- ② 본조에 따라 이해관계인이 투자자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고 주식을 제3자에게 처

분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주식을 양수하는 제3자로 해금 본 계약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의무 일체를 승계하도록 해야 한다.

(나) 법적 의미

상법상 주식의 자유로운 양도성(상법 제33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 조항은 계약상 부작위 의무를 통해 이해관계인의 처분을 제한한다. 이해관계인이 동의를 받아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양수인이 본 계약상 이해관계인의 권리의무 일체를 승계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를 위반해 이해관계인이 동의 없이 처분한 경우 주식매수청구권(Put Option) 발동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위약금·손해배상 청구 사유가 된다.

투자자는 그 창업자 내지 대표자의 능력과 가능성을 신뢰하고 투자를 하는 바, 투자 이후에 투자대상기업의 경영에 책임이 있는 이해관계인이 주식을 처분하는 것은 투자자의 투자 동기가 몰각될 수 있어 이해관계인의 주식 처분은 제한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계약 형태이다. 만일 기업 입장에서는 주식 처분의 사유가 있다면 미리 사전에 투자자 등과 그 시기 및 범위 등에 대해 협의를 해야 할 것이다.

(다) 기업 리스크 포인트

- (i) 창업자·이해관계인의 구주 매매를 통한 자금 조달이 어렵게 된다.
- (ii) 다수 투자자 환경에서의 동의 절차 부담으로 후속 라운드를 거치며 누적된 다수 투자자로부터 모두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처분 절차의 비효율이 심해진다.

(라) 협상 시 유의사항

기업 입장에서는 이해관계인의 주식 처분 필요성이 있다면 사전에 투자자와 시기·범위를 협의해야 한다.

투자자는 이해관계인이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사전 서면동의 조항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만약 이를 동의하고자 하는 경우 양수인의 의무승계와 관련해서는 사전적으로 의무승계확인서를 징구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 서면 동의를 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이해관계인의 주식 처분 제한 조항은 이해관계인에게 불리한 조항이나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또한 투자자도 쉽게 양보하지 않는 조항이다. 만일 일부 주식의 처분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사전 협상 과정에서 동의를 득하고 특약을 맺어야 한다.

(마) 계약 체결 전 체크리스트

- 투자자 주식 처분의 자유성 및 명의개서 협력 의무 확인
- 이해관계인 주식 처분 시 사전 서면동의 절차 확인
- 양수인의 의무승계 요건 확인
- 위반 시 주식매수청구권 및 연대책임 사유 해당 여부 확인

(14) 투자자의 우선매수권(Right of First Refusal) 및 투자자의 공동매도참여권 (Tag-along right) ▲ 주의

(가) 조항 개요

본 조항은 이해관계인의 주식 처분 시 투자자에게 (i) 우선매수권(ROFR, Right of First Refusal): 동일 조건으로 우선 매수할 권리와 (ii) 공동매도참여권(Tag-along Right): 지분비율에 따라 함께 매도할 권리를 부여하는 조항이다. 제13조(이해관계인 처분 제한)와 결합해, 이해관계인 처분에 대한 2중 통제 구조를 형성한다.

ROFR는 회사 지분 외부 유출 방지 및 투자자의 지분 확대 기회 제공 기능을, Tag-along은 이해관계인이 우호적 조건으로 처분할 때 투자자에게 동등 조건의 회수 기회 보장(공동 Exit) 기능을 수행한다. 통상 이해관계인이 우호적 조건으로 매각하는 시점은 회사 가치가 인정받는 시점이므로, 투자자는 이를 통해 자신의 회수 기회를 확보한다.

이해관계인이 주식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에게 동일 조건으로 우선매수권(Right of First Refusal)과 공동매도참여권(Tag-along Right)을 보장해야 한다.

이해관계인은 양도에정일로부터 20일 이전에 양도 취지, 제3자 신원, 양도 주식 수, 주당 양도가액, 양도에정일 등을 투자자에게 서면 통지해야 한다. 투자자는 통지 수령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우선매수권 또는 공동매도참여권 행사 여부를 서면 통지해야 한다.

투자자에게 우선매수권과 공동매도참여권이 보장되지 않는 한 이해관계인은 주식을 일부라도 처분할 수 없다. 다수 투자자 간 권리 경합 시 지분비율대로 안분한다.

제14조 (투자자의 우선매수권 및 공동매도참여권)

- ① 이해관계인이 회사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투자자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우선해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우선매수권”)와 동일한 조건으로 지분비율에 따라 함께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공동매도참여권”)를 보장해야 한다.
- ② 이해관계인이 회사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양도하고자 하는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 양도 또는 이전하고자 한다는 요지의 취지, 해당 제3자의 신원, 양도주식 수, 주당 양도가액, 양도예정일 기타 양도의 주요 조건을 명시해, 양도예정일로부터 []일 이전에 투자자에게 서면 통지해야 한다.
- ③ 투자자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일 이내에 이해관계인에게 제1항의 우선매수권 또는 공동매도참여권 행사 여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기로 한 경우 주식을 매수하려는 자의 정보(투자자 또는 투자자가 지명하는 자), 공동매도참여권을 행사하기로 선택한 경우 공동 매도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량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 ④ 이해관계인은 투자자에게 본 조에 따른 우선매수권과 공동매도참여권이 보장되지 않는 한 회사의 주식을 일부라도 처분해서는 아니된다.
- ⑤ 투자자가 본 조에 의한 우선매수권 및 공동매도참여권을 행사하지 않고, 전조에 따른 주식 처분을 동의한 경우 이해관계인은 제2항에 따라 통지한 조건 범위 내에서만 주식을 처분할 수 있고,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다시 전조와 본 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⑥ 다수의 투자자가 우선매수권 또는 공동매도참여권을 행사함에 따라 투자자 간에 권리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 및 이해관계인의 지분비율대로 안분해 거래하기로 한다.

이해관계인의 주식 처분 과 관련해 전술한 Right of First Refusal 대신에 이해관계인이 거래하려고 하는 매수의향자에게 투자자 역시 함께 동일한 조건으로 투자대상기업의 주식을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필요가 있다. 이는 소수주주가 대주주의 주식 처분 에 편승해 함께 투자금을 회수한다는 취지에서 합리성이 인정된다. 이 권리는 동반매도참여권이라고 지칭하기도 하지만 Tag along right이라고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

(나) 법적 의미

ROFR와 Tag-along의 선택적·중첩적 행사: 본 조항은 투자자가 양 권리를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투자자는 통지 수령 후 ① 우선 매수권 행사, ② 공동매도참여권 행사, ③ 양 권리 모두 행사하지 않음 중 선택할 수 있다. 양자는 그 경제적 효과가 정반대(매수 vs 매도)이므로 통상 양자 택일 형태로 행사된다.

우선매수권은 투자자가 이해관계인의 주식을 우선 매수해 지분을 확대할 수 있는 권리이고, 공동매도참여권은 이해관계인의 주식 처분에 편승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해관계인의 주식 처분은 일반적으로 제한되고 있다. 다만 투자자는 경우에 따라서 이해관계인의 주식을 우선해 매수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 영미에서는 먼저 매수를 거절할 권리를 부여한다고 해 Right of First Refusal이라고 하기도 한다.

(다) 기업 리스크 포인트

① 이해관계인의 자금 유동성 제한: 이해관계인이 개인 사정으로 일부 주식

을 처분해야 하는 경우에도 본 조항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신속한 자금 조달이 어렵다.

② 다수 투자자 환경에서의 절차 복잡화: 후속 라운드 누적 투자자가 각자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절차 운영의 행정 부담과 안분 계산의 복잡성이 증가한다.

위반 시 주주 간 계약서(SHA) 제16조 제4항에 따라 가중 위약벌(투자금의 12%와 매매대금의 50% 중 큰 금액)이 부과될 수 있다.

본 조항은 벤처투자의 성격 상 투자자가 필수적으로 요청하는 조항 중 하나이다.

(라) 협상시 유의사항

기업 입장에서는 이해관계인의 주식 유동성이 크게 제한되므로, 창업자의 개인적 자금 필요 시 투자자와 사전 협의가 필수적이다. 우선매수권 행사 기간(20일)이 경과하면 통지된 조건 범위 내에서만 처분할 수 있고, 조건 변경 시 다시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제1항에서 기간은 30일로 예시하였으나, 구체적 상황에 따라 30일의 기간은 조정 가능하다.

한편 투자자가 제3자를 통해 매수하는 경우, [*] 주식회사 또는 [*] 주식회사가 업무집행조합원인 조합 이외에 제3자를 통해 매수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동의를 얻어야 주식매수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절충)할 수 있다.

투자자의 우선매수권 조항은 공동매도참여권과 함께 이해관계인의 주식 처분을제한하는 성격을 갖는다. 투자자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조항이다. 투자자는 벤처투자의 성격상 이해관계인을 신뢰하고 투자를 하는 만큼 이해관계인의 주식 처분에 민감한 고려를 하고 있다.

한편, 이와는 반대로 투자자가 보유주식을 처분할 경우 이해관계인의 주식도 함께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동반매도요구권’ 규정도 종종 활용되고 한다. 이는 실무에서 ‘함께 끌어와 팔 수 있는 권리’라는 의미에서 Drag along right이라고 지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벤처투자 업계에서 Drag along right은 소수주주가 대주주의 주식을 함께 팔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므로, 권리 행사의 요건이 타당해야 한다는 점이 요구된다. Drag along right을 활용함에는 당사자들 사이의 의견조율과 합리적인 조정을 통한 합의가 필요하다.

【예시】

선택사항]: 공동매도요청권(Drag along Right) 선택권 [표준안 삭제]

(예시1)

제[]조 (투자자의 동반매도요구권 (Drag-along right))

- (1) 동반매도요구권. 다음 각호의 사유 중 어느 하나라도 발생하는 경우, 투자자는 투자자 자신이 소유하는 회사 발행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잠재적 매수인”)에게 매도(“동반매도거래”)하면서 이해관계인이 소유한 회사 발행주식 전부 또는 일부를 중요한 점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함께 제3자에게 양도하도록 청

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동반매도요구권”)가 있고, 투자자가 동반매도요구권을 행사한 경우 이해관계인이 소유한 회사 주식 전부 또는 일부를 투자자의 요구에 따라 함께 매도할 의무가 있다.

1. 회사가 제[]조 제[]항에 정한 적격 기업공개기한 내에 적격 기업공개를 하지 못하는 경우
2.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이 제[]조 제[]항에 따른 기업공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3. 회사가 본건(각) 신주인수계약에 따라 상황청구를 하였음에도 상환을 하지 못하거나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이 본건 신주인수계약 또는 본 계약상 기타 확약사항, 합의, 의무를 위반, 불이행하거나 지체한 경우

(2) 동반매도요구권 행사의사 통지. 투자자가 동반매도요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는 동반매도요구권 행사 의사를 서면으로 이해관계인에게 통지(이하 “동반매도요구권 행사의사 통지”) 해야 한다.

(3) 동반매도거래를 위한 협력의무. 이해관계인은 동반매도요구권 행사의사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즉시, 투자자의 동반매도거래를 위해 잠재적 매수인과 협의, 회사 실사, 계약서 협상, 체결하기 위해 필요한 일련의 거래 절차와 관련해, 거래 규모에 비추어 통상적인 기간 내에 투자자와 잠재적 매수인간의 확정적인 계약이 체결될 수 있을 정도의 수준 및 일정으로, 각 단계에서 (i) 투자자 또는 잠재적 매수인이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회사의 자산, 재산, 장부 및 기록, 계약 및

기타 인허가와 관련된 모든 서류, 기록, 작업조서 및 정보를 투자자 또는 잠재적 매수인에게 시의 적절하게 제공하고 동 서류 등에 대한 완전한 접근권을 부여하며, (ii) 회사의 경영진에 의해 통상적으로 작성된 재무정보와 사업운영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를 투자자 또는 잠재적 매수인에게 제공하고, (iii) 회사의 임직원과 면담할 수 있는 기회를 투자자 또는 잠재적 매수인에게 제공해야 하며, 대상 회사로 해금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게 한다.

(4) 동반매도요구권 행사통지. 투자자는 잠재적 매수인과의 합의가 완료되는 경우, 이해관계인에게 잠재적 매수인의 인적 사항, 처분가격(보통주식 기준 1주당 가액 포함), 기타 합의된 주요조건을 포함해 동반매도요구권 행사통지(“동반매도요구권 행사통지”)를 해야 한다.

(5) 동반매도요구권 실행절차. 투자자가 요구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동반매도요구권 행사통지일로부터 []영업일 (“동반매도통지기간”) 내에 투자자에게, 투자자 또는 그 대리인이 (a) 동반매도요구권 행사통지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최대 주주가 보유하는 주식을 양도할 수 있고, (b) 동반매도요구권 행사통지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잠재적 매수인과 거래 관련 서류들을 작성, 협상 및 체결하는 것을 포함해 동반매도 절차에 대한 모든 통제권을 가지며, (c) 동반매도 거래에서 양도되는 주식에 대한 대가를 지분율에 비례해 전신 송금하거나 달리 지급 지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동반매도거래에서의 투자자와 이해관계인 매도 거래의 종결은 동일한 장소 및 시간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해관계인은 동반매도거래와 관련해 협력하고 모든 관련 서류를 교부하며, 본조의 실행을 위해 투자자가 필요로 하거나 요구하는 동반매도거래를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6) 면책 및 비용부담. 이해관계인은 동반매도거래에 따른 양도와 관련해 잠재적 매

수인에 대해 투자자와 동일한 수준의 진술, 보장 및 면책을 제공해야 한다. 최대 주주는 동반매도거래와 관련해 발생한 비용을 자신이 매도한 주식 수에 비례해 안분 지급한다.

(7) 매각대금의 배분. 동반매도거래에 따른 매각대금은 이해관계인과 투자자 사이에서 다음과 같이 배분한다.

1. 동반매도에 따른 매각대금 중 투자자에 귀속되는 매각대금(매각 지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본건 거래에 대해 내부수익률이 연복리 []%(단, 본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동반매도권이 행사된 경우에는 원금으로 한정)가 되도록 하는 금액(“투자자 우선배분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이해관계인과 투자자 사이에 다음 순위로 분배한다.

(i) 먼저, 투자자에 대해, 위 투자자 우선배분금액에 달할 때까지의 금액을 투자자에게 배분.

(ii) 이후, 남은 금액을 이해관계인에게 배분.

2. 동반매도에 따른 매각대금 중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매각대금(매각 지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투자자 우선배분금액 이상인 경우, 매각 지분율에 따라 안분해 이해관계인과 투자자에게 동순위로 분배한다.

(8) 동반매도요구권 조항에 대한 위반. 이해관계인이 본 조를 위반해 동반매도거래를 위한 협력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i) 이해관계인은 자신이 선임한 이사(투자자가 사임을 요청하는 회사의登記임원)로 해금 즉시 사임하도록 해야 하고(사임서 및 사임등기를 위해 필요한登記서류의 징구를 포함함), (ii) 이해관

계인은 위약벌로 []원을 투자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 (9) 주식매수청구권과의 관계. 투자자가 본 계약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과 동반매도요구권을 모두 행사한 경우, 동반매도요구권에 따른 거래 완결시 이해관계인의 주식매수청구권 관련 채무 및 의무는 소멸된다.

예시2

제[*]조 동반매도요구권(Drag along)

- ① 투자자가 제3자로부터 현재 회사의 본질가치의 [*]%를 상회하는 가격으로 아래와 같이 M&A를 위한 매수제안을 받은 경우 투자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본인의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하면서 동일한 조건으로 이해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함께 처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해관계인은 최대한 협의해야 하며, 합리적 이유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1. 투자자가 회사의 주식을 양수할 의사를 가진 제3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이하 포괄해 “매수희망자”라 한다)로부터 투자자가 보유하는 회사의 주식 외에 이해관계인이 보유하는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하고자 하는 제안을 받은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면으로써 그 사실을 통보한다.

2. 이해관계인은 전항의 서면통지를 수령한 날부터 [*]영업일 이내에 “매수희망자”가 양수할 의사를 가진 투자자가 보유하는 회사 주식의 전부를 “매수희망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직접 인수할 의사가 있음을 투자자에게 서면 통보할 수 있다. 투자자가 위 통보를 수령한 날로부터 [*]영업일 이내에 이해관계인은 그 주식의 전부를 그 조건에 따라 매수해야 하며, 투자자는 이를 매도하기로 한다. 만일 이

해관계인 이 그 매수의무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투자자는 그 선택에 따라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가산해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도 있고, 또는 이해관계인과의 상기 매매관계를 해지하고 “매수 희망자”와의 매수거래를 계속 추진할 수 있다.

3. 투자자가 본 조에 의한 동반매도요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제2항에 따른 매수 통지 기한 종료일 또는 이해관계인이 매수의무를 이행할 지체해 매수희망자와 거래를 추진하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해관계인에게 동반매도요구권을 행사한다는 사실, 공동 매도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의 주식의 종류와 수량, 당시 확정된 매도 조건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해관계인은 회사로부터 위 통지를 받으면 동반매도요구의 실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해야 한다.

4. 이해관계인은 1항의 서면통지를 수령한 날부터 6개월째 되는 날 또는 당 매수거래의 완결이 이루어지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그가 보유한 주식의 전부를 양도, 담보제공 기타 처분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투자자가 본 조에 정한 동반매도요구권을 행사한 이후에 어느 이해관계인이 본 조에 정한 의무 기타 조건에 위반함으로써 투자자가 “매수희망자”에게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은 연대해 투자자를 면책시키고 투자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면책 및 배상은 투자자가 가지는 본 계약상의 매수청구권 기타 다른 구제조치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이해관계인도 투자자에 대해 본 조 제1항 내지 제2항과 동일한 권리를 갖는다.

투자자의 공동매도참여권(Tag along right)의 거의 대부분의 투자계약서에 기재되고 있으며 투자자의 양보가 거의 불가능한 조항이다. 다만 경우에 따라 투자자가 동반매도요구권(Drag along right)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동 동반매도요구권(Drag along right)이 위법은 아니나 경영권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라는 점에서 벤처투자에서는 많이 활용되고 있지는 않다. 만일 일반적으로 이러한 조건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이는 협의의 대상이라고 본다.

(마) 계약 체결 전 체크리스트

- 이해관계인 주식 처분 시 투자자 통지 기한 확인
- 우선매수권·공동매도참여권 행사 기간 확인
- 다수 투자자 간 권리 경합 시 안분 방식 확인
- 위반 시 가중 위약벌 규정(제16조 제4항) 확인

(바) 분쟁 사례 및 시사점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1. 선고 2016가합572610 판결

[사례 개요] 주주가 보유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할 때 투자자에게 우선매수권과 공동매도참여권을 부여하기로 한 주식 처분 제한 약정의 효력이 문제된 사안이다.

[주요 판단] 법원은 해당 약정이 주주의 주식 처분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에게 일정한 우선매수권 또는 공동매도참여권을 부여하는 내용이라면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약정을 위반했

다는 사정만으로 제3자에게 이루어진 주식 양도 자체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시사점] 주식 처분 제한 약정 위반에 따른 계약상 책임과 제3자에 대한 주식 양도의 효력은 구분된다. 계약서에는 통지기한, 행사기간, 대상 주식 수, 동일 조건의 판단기준 및 위반 시 손해배상·위약벌 등 제재수단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조항 개요	이해관계인의 지분 처분을 투자자 사전동의 대상으로 두고, 처분 시 투자자에게 우선매수권과 공동매도참여권을 부여한다.
법적 의미	창업자 지분의 무단이동을 막고, 투자자의 동반회수 기회를 보장하는 조항이다.
기업 관점 리스크	창업자의 개인 유동성 확보나 상속·증여·담보제공이 제한될 수 있다.
협상·운영 포인트	예외가 필요한 친족 간 이전, 우리사주조합 이전, 지주회사 설립 등은 미리 예외사유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체크리스트	양도통지 절차, 행사기간, 우선매수권과 tag-along 경합 시 배분기준을 확인한다.

(15) 주식매수청구권 주의

(가) 조항 개요

본 조항은 주주 간계약 전체에서 가장 강력한 제재 조항으로, 회사·이해관계인의 약정 위반·진술보장 위반 시 투자자가 보유 주식을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매수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권리(Put Option)를 규정한다.

본 조항은 (i) 회사에 대한 청구권(제1항): 회사가 직접 매수의무 부담, (ii) 이해관계인에 대한 청구권(제2항): 창업자·주요주주가 개인 자격으로 매수의무 부담, (iii) 매수가격 산정(제3항): 3중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회사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발생 사유(제1항): 선행조건 불충족 투자유도, 진술과 보장 위반, 투자금 사용용도 위반, 기술이전·겸업 제한 위반, 동의권 3회 이상 위반, 회계감사·시정조치 의무 위반, 특약사항 위반. 선택적으로 보고의무 3회 이상 위반 등 추가 가능.

이해관계인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발생 사유(제2항): 이해관계인의 고의·중과실로 상기 제1~4호 사유 발생, 또는 이해관계인 고유 의무(제4조, 제5조, 제7조 제2항, 제9조, 제10조, 제18조 제2항·3항, 제21조 제3항) 위반.

주식매매 대금(제3항): 당사자 합의 불성립 시 다음 중 높은 금액으로 산정: (i) 1주당 발행가액 + 연 12% 이율, (ii) 과거 1년간 최고 매매대금, (iii) 본질가치(2개 회계법인 평가액 산술평균). 이미 지급된 배당금을 차감한다.

이해관계인에 대한 주식매수청구 시 서면 도달 시 주식매매계약 체결 간주(제5항). 회사·이해관계인은 투자자 동의를 받아 제3자를 지정해 매수하게 할 수 있다(제6항).

제15조 (주식매수청구권)

① 회사에게 다음 각 호 사유가 발생한 경우 투자자는 회사에게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본건 신주 또는 전환권의 행사로 인해 발행된 보통주식 및 동 주식에 대한 유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 등으로 인해 투자자가 소유하게 된 주식(이하 통칭해 “본건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회사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을 갖는다.

1. 각 신주인수계약에서 정한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금을 납입하게 함으로써 투자의 효력을 발생하게 한 경우
2. 각 신주인수계약에서 정한 진술과 보장 사항이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
3. 제3조 및 별지 1. 투자금의 사용용도를 위반한 경우
4. 제4조 기술의 이전, 양도 겸업 및 신회사 설립 제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제5조를 위반해 투자자의 동의 또는 3회 이상 협의 없이 각 호 사항을 진행한 경우
6. 제7조에 따른 회계 및 업무감사 협조 또는 시정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7. 제28조에서 정한 특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② 이해관계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회사에게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 사유가 발생한 경우 투자자는 해당 이해관계인에게 본건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해관계인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를 갖는다.

1. 각 신주인수계약에서 정한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금을 납입하게 함으로써 투자의 효력을 발생하게 한 경우
2. 각 신주인수계약에서 정한 진술과 보장 사항이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

3. 제3조 및 별지 1. 투자금의 사용 용도를 위반한 경우
 4. 본 계약에 반해 이해관계인이 주식을 처분한 경우
 5. 기타 본 계약에서 정한 이해관계인 본인의 의무(본 계약에서 회사와는 별도로 이해관계인 스스로 이행할 책임이 있는 본 계약 제4조, 제5조, 제7조제2항, 제9조, 제10조, 제18조제2항 및 제3항, 제21조제3항의 의무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를 위반한 경우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주식매매 대금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다음 각 호 중 높은 금액으로 한다. 단, 인수주식 발행일부터 주식매매 대금 지급일까지 지급된 배당금이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하기로 한다.
1. 주식 인수 당시의 1주당 발행가액 및 이에 대한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주식매매 대금 지급일까지 연 [] 비율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
 2. 주식매수청구일을 기준으로 과거 []년간 있었던 회사 발행 주식의 거래 중 가장 높은 매매대금
 3. 당사자 사이에 합의한 주식가치 평가기관에 의해 평가된 1주당 본질가치(여기서 “본질가치”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5조 내지 제8조의 분석기준에 의해 평가된 주식의 가치를 말하고, 본질가치의 산정은 투자자가 지칭하는 회계법인 및 국내 상위 5개 회계법인 중 하나에 의해 산출된 2가지 평가 액수의 산술평균으로 한다, 이하 동일)
- ④ 투자자의 회사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는 매수청구 대상주식의 종류 및 수, 거래예정일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며, 투자자의 서면통지가 있는 경우 회사는 상법이 정하고 있는 자기주식취득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 ⑤ 투자자의 이해관계인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는 매수청구 대상주식의 종류

및 수, 거래예정일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며 해당 서면이 이해관계인에게 도달한 때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 ⑥ 투자자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은 투자자의 사전 서면동의를 얻어 제3자를 지정해 투자자 소유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하게 할 수 있다.

(나) 법적 의미

① 회사 매수의무의 자기주식취득 한계: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은 상법 제 341조에 따라 배당가능이익의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상법 제462조 준용). 따라서 본 조항 제1항은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라는 단서로 한계를 두고 있으며, 배당가능이익이 부족한 경우 회사는 매수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다. 제4항이 “상법이 정하고 있는 자기주식취득절차를 이행”하도록 한 것도 이러한 강행규정 준수를 의미한다. 따라서 회사는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의무를 부담한다.

② 이해관계인 개인 책임 및 법령 상 제한: 이해관계인 개인의 매수의무에는 자기주식 취득과 같은 법정 한계가 없다. 다만 벤처투자법은 이해관계인에 대한 연대책무 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이해관계인에 대한 책임조항은 유효하다. 따라서 나열된 사유 외 이해관계인이 자신의 고유 의무를 위반한 경우가 아닌 이상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조율되고 있다.

③ 매수가격 산정의 의미: 매수가격은 아래의 3가지 산정 방식 중 최고액을 적용하는 구조이다.

- 제1호 (발행가액 + 연이율) : 주식 발행가액에 약정한 이율을 적용한 금액을

더하여 산정한다.

- 제2호 (직전 1년간 최고 거래가): 후속 라운드 가치산정 시 매수가격이 자동 상승되어 회사 성장 시 부담 가중될 수 있다.

- 제3호 (본질가치 평가): 회계법인 평가에 의한 객관적 평가: 투자자 지정 회계법인 + 상위 5개 중 하나의 산술평균으로 산정 한다.

이는 시가를 반영하는 의도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시가 회수를 위해 필수적 조항 중 하나이다.

④ **Trigger 사유의 제한적 나열**: 현재 나열된 수준은 그 행사 범위를 제한적으로 축소할 경우에 해당한다.

벤처캐피탈 투자계약서 체계는, (i) 해제와 손해배상 체계 또는 (ii) 주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주금 납입 이후 투자대상기업 및 이해관계인의 계약 위반의 경우 주식매수청구권 및 위약벌 청구권의 행사를 통해 실질적으로 투자금 회수를 하는 체계 등을 택하고 있다. 주식매수청구권은 (ii)의 체계의 경우에 큰 의미가 있다. 투자자는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범위는 투자대상기업 및 이해관계인의 위약 사유를 모두 포섭⁷⁷하는 안으로 운용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투자자와 협의를 함에 있어서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범위를 당사자들이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해 협의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회사에 대한 주식매수청구는 상법상 자기주식취득에 해당되어 상법상

77 경우에 따라서는 이해관계인 또는 회사의 귀책사유 없는 부득이한 경우도 포함할 수 있는 바, 이런 경우까지 주식매수청구권을 부담시키는 것은 과중하다는 의견이 있으며, 실제 투자를 진행할 때 장애사유가 될 수도 있다.

의 제한(배당가능이익, 모든 주주에게 균등한 기회와 조건으로 취득 등)이 적용되고,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그 거래가 무효로 평가되므로⁷⁸ 실무에서는 실익이 있는 경우가 매우 드물기는 하지만, 적법 요건을 갖추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으므로 회사도 주식매수청구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투자자는 이에 따라 회사 및 이해관계인을 다 상대방으로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기업 입장에서는 기업에 대한 주식매수청구의 경우에는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인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해관계인에 대한 주식매수청구는 회사의 자기주식취득 이슈가 없다. 다만 이해관계인의 고의, 과실이 개입되지 않았음에도 회사가 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 까지 이해관계인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해관계인의 연대보증책임과 같이 과중한 부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해관계인에 대한 주식매수청구는 이해관계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회사가 계약을 위반했다거나 이해관계인이 직접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 한해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해관계인의 연대보증책임을 지양하는

78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다44109 판결] “주식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해 회사와 주주 및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고 주주평등의 원칙을 해하며 대표이사 등에 의한 불공정한 회사지배를 초래하는 등의 여러 가지 피해를 생기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상법은 일반 예방적인 목적에서 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이 허용되는 경우를 유형적으로 분류해 명시하고 있으므로 상법 제341조, 제341조의2, 제342조의2 또는 증권거래법 등에서 명시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을 허용하는 경우 외에, 회사가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또는 타인의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등과 같이,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거나 주주 등의 이익을 해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유형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자기주식의 취득이 예외적으로 허용되지만, 그 밖의 경우에 있어서는, 설령 회사 또는 주주나 회사채권자 등에게 생길지도 모르는 중대한 손해를 회피하기 위해 부득이 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주식의 취득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금지규정에 위반해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당연히 무효이다.”

입장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부분의 협의의 대상으로 보며 투자자 또한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범위는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해 운용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는바, 기업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그 범위에 대한 협의의 해야 할 것으로 본다.

(다) 기업 리스크 포인트

① 다수 투자자 동시 행사 위험: 후속 라운드 다수 투자자가 동시에 Put Option 행사 시, 매수 부담이 누적되어 회사·이해관계인이 감당 불가능한 수준에 이를 수 있다.

② 위약벌·손해배상과의 중복 가능성: 본 조 + 손해배상 및 위약벌 조항(제16조)이 함께 적용되어 책임 부담이 증가될 수 있다.

(라) 협상 시 유의사항

① **Trigger 사유의 한정**: 중대성 기준(materiality) 도입해 사소한 위반은 trigger에서 제외 협의 등

② **시정 기회(Cure Period) 부여**: 시정 가능한 위반에 대해 일정 기간(예: 30~60일) 시정 기회 부여 협의 등

③ **다수 투자자 동시 행사 제한**: 다수 투자자 행사 시 안분 비례 적용 및 분할 지급 가능성 협의 등

즉 이해관계인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은 고의·중과실 제한 확인, 이율(연 12%)은 시장 금리 대비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 협의, 치유 기회(Cure Period) 도입 검토, 제3자 지정 매수(제6항) 활용 및 본질가치 평가기관 지정의 공정성 확인 등을 기업의 사정에 따라 유의해 협의할 수 있다.

주식매수청구권 발생 사유는 곧 기업 및 이해관계인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조항이므로, 어떤 사유를 주식매수청구권 발생 사유로 할 것인지는 매우 중요하다. 위 예시 이외에도 “회사의 중요자산에 대해 압류,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의 신청이 있고, 회사가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일 이내에 이를 해소하지 못한 경우”, “회사의 중요자산에 대해 압류,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의 신청이 있는 후 [*]일 이내에 그러한 절차가 해소되지 아니한 경우”, “회사에 대해 은행거래정지 등의 부실징후기업으로의 인정 등의 절차가 개시되고 [*]일 이내에 이를 해소하지 못한 경우”, “회사가 영업을 계속할 수 있음에도 고의로 사실상 2개월 이상 계속해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을 추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귀책사유가 없는 사유 등에 대해서는 그 반영에 있어서 충분한 협의를 해야 한다.

주식매수청구권 발생 사유를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한다거나, 가능한 한 많은 사유를 포함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투자자의 권리 보호에 유리할 수도 있겠지만, 그 만큼 투자자의 관리업무에 부하가 발생할 수 있고, 중요한 발생 사유까지도 중요하지 않은 사유와 희석될 수도 있으며, 성실 경영에 이은 부득이한 사업 실패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도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해 적절하지 않은 투자금 회수 상황에 나아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주식매수청구권 발생 사유는 투자자와 기업이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조항은 기업과 이해관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검토 조항 중 하나이다. 전문한 것과 같이 기업과 이해관계인의 귀책사유를

전제로 하는 경우로 축소 운영하는 안을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해관계인에게 그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포괄적으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이해관계인의 책임이 가중되는 결과가 된다. 현재는 법률 개정을 통해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의 경우는 이해관계인에게 기업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책임을 묻는 것은 나열된 한정된 사유로 제한된다. 기업 및 이해관계인 입장에서는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범위는 반드시 중요하게 협의해야 할 대상 중 하나라 할 것이다. 한편 회사를 상대로 한 주식매수청구권은 큰 실익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여기서 논의하는 주식매수청구권은 투자계약서에 따른 계약에 의한 주식매수청구권이고 이는 회사 입장에서는 자기가 발행한 주식을 자기가 취득하게 되게 되는 것인바, 상법에 따라 배당가능이익이 있어야만 그 취득이 가능하며 또한 상법이 정하는 엄격한 자기주식의 취득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회사를 상대로 한 주식매수청구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인지를 따져봐야 할 것이다.

(마) 계약 체결 전 체크리스트

- 주식매수청구권 발생 사유 각 호의 리스크 평가
- 이해관계인 책임의 고의·중과실 제한 확인
- 매매대금 이율의 적정성 검토
- 치유 기회(Cure Period) 조항 존부 확인
- 제3자 지정 매수 규정(제6항) 확인

(바) 분쟁 사례 및 시사점

[사례] 서울고등법원 2024. 11. 6. 선고 2024나2002515 판결

[사례 개요] 투자계약에서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의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으로 주식매수청구권을 정하는 한편, 별도로 위약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의 효력이 문제된 사안이다.

[주요 판단] 법원은 주식매수청구권과 위약벌이 각각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과 채무이행의 확보를 목적으로 별도로 규정된 경우, 두 권리가 함께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시사점] 주식매수청구권은 손해배상 또는 위약벌과 별도로 행사될 수 있어 회사와 이해관계인의 책임이 중첩될 수 있다. 계약 체결 전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의 발생 사유, 시정 기회의 부여 여부, 매매대금 산정방식 및 다른 구제수단과의 병존 가능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조항 개요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의 중대한 계약위반이 발생한 경우 투자자가 보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정한다.
법적 의미	사후 구제수단 중 가장 강력한 장치로, 실질적으로는 조기회수권 또는 exit 강제 장치로 기능한다.
기업 관점 리스크	발동 사유가 넓으면 경미한 운영상 하자도 대형 분쟁으로 번질 수 있다.
협상·운영 포인트	기업은 발동 사유를 '중대성 있는 위반' 중심으로 읽고, 시정기회 제공 여부와 산정방식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
체크리스트	매매대금 산식, 본질가치 평가기관, 연 12% 가산 기준, 회사와 이해관계인 각각에 대한 발동 사유를 점검한다.

(16) 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 주의

(가) 조항 개요

본 조항은 약정 위반 시 (i) 손해배상청구권(제1항)과 (ii) 위약벌(제2항~제5항)을 부과하는 조항으로, 제15조(주식매수청구권)와 결합해 약정 위반 시 회사·이해관계인이 부담하는 삼중 책임 구조를 완성한다. 즉 위반 시 투자자는 ① 주식매수청구권, ② 손해배상청구권(실손해 회복), ③ 위약벌을 병렬적·중복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위약벌은 실제 손해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부과되는 순수한 제재금으로 가능하며, 약정 위반에 대한 강력한 사전적 억제력을 제공한다. 특히 제4항과 제5항은 일반 위반보다 강화된 제재로 설계되어, 처분 통제와 상환 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강하게 담보한다.

제16조 (손해배상 및 위약벌)

- ① 투자자는 본 계약에 따른 각 당사자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회사에게 전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투자자는 회사에게 주식매수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와는 별도로 투자금의 []%에 해당하는 위약벌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이해관계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회사에게 전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이해관계인에게 전조 제2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투자자는 해당 이해관계인에게 주식매수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와는 별도로

투자금의 []%에 해당하는 위약벌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전항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제13조 및 제14조를 위반해 주식을 처분한 경우, 투자자는 이해관계인에게 주식매수청구권 및 손해배상 청구권의 행사와는 별도로 투자금의 []%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해관계인이 주식을 처분하고 지급받은 매매대금의 []%에 해당하는 금액 중 큰 금액을 위약벌로 청구할 수 있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인이 제21조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해 본건 신주의 상환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있음에도 회사로 해금 상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투자자는 그 의무를 위반한 이해관계인에게 주식매수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와는 별도로 상법상 상환의무가 인정되는 금액의 []%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벌로 청구할 수 있다.

(나) 법적 의미

① 위약벌의 법적 성격: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0다56976 판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239324 판결 등)는 위약벌과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위약벌: 채무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제재금으로, 손해배상과 별개로 청구 가능
- 손해배상액의 예정: 손해 산정의 어려움을 회피하기 위한 사전 합의 금액으로, 별도 손해배상 청구 제한

본 조항은 “주식매수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와는 별도로”라는 표현으로 위약벌의 성격을 명확히 해, 손해배상과의 중복 청구를 가능하게 한다.

② 위약벌과 손해배상액 예정의 감액 가능성 차이:

- 손해배상액 예정: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직권 감액 가능

- 위약벌: 민법 제398조 제2항이 직접 적용되지 않으나, 대법원은 공서양속 위반(민법 제103조)을 이유로 일부 무효 판단 가능

이에 따라 손해배상액과 위약벌은 금전적 조정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③ 이해관계인 처분 위반 시 가중 위약벌(제4항)

이해관계인 처분 위반(제13조, 제14조) 시 통상의 처분 위반보다 강화된 제재(이해관계인이 우호적 조건으로 무단 처분해 차익을 얻는 경우, 그 차익을 사실상 환수하는 효과)이다.

(다) 기업 리스크 포인트

위약벌은 손해배상·주식매수청구권과 별도로 병과 가능하다. 위약벌에 대해서는 민법 제398조 제2항의 감액 규정이 직접 적용되지 않으나, 과도하게 무거운 경우 공서양속 위반으로 일부·전부 무효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239324 판결).

(라) 협상시 유의사항

계약상의 진술 및 보장, 의무 또는 확약사항을 위반한 당사자는 이로 인해 다른 당사자들이 입은 제반 손해를 배상하고 다른 당사자들을 면책시킬 책임이 있다. 즉, 투자자는, 회사가 계약서에 규정된 자신의 진술 및 보장의 중요한 면에서 사실이 아니거나 허위인 경우 또는 계약서에 규정된 자신의 확약사항, 기타의 의무사항에 위반한 경우에 모든 손해를 배상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손해배상청구 근거 조항과 별도로 위약금 조항을 마련할 수 있다. 위약금은 손해배상예정의 의미이며, 위 위약금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투자자는 그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원인으로 해 이를 입증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위약금 규정을 마련할 경우에는 입증책임의 완화에 있어 투자자에게 유리한 점이 있다. 위약금의 경우 소송분쟁으로 가면 법원은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다⁷⁹.

또한 위약벌⁸⁰ 조항을 두게 될 경우, 투자자는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의 위반행위로 인해 입은 손해 외에 추가적으로 징벌적 성격의 책임을 회사에 부담시키는 효과가 있다. 위약벌 금액은 그 금액이 클수록 심리적 강제의 정도는 강할 것이나, 그 규정 여부, 액수 등에 대해서는 회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 위약벌에 대해서는 위약금과 달리 법원의 직권 감액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지만, 위약벌이 과도하게 무거운 경우에는 위약벌 약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평가해 사실상 감액하는 경우도 있다. 다만 위약금과 비교해 위약벌 약정을 무효로 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므로⁸¹, 투자

79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②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80 위약벌의 경우에는 법원의 감경이 불가능하다.

81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239324 판결]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정하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 다르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해 그 액을 감액할 수 없고, 다만 의무의 강제로 얻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해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해 무효로 된다. 그런데 당사자가 약정한 위약벌의 액수가 과다하다는 이유로 법원이 계약의 구체적 내용에 개입해 약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하는 것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제약이 될 수 있고, 스스로가 한 약정을 이행하지 않았더라 계약의 구속력에서 이탈하고자 하는 당사자를 보호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자제해야 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위약벌 약정이 공서양속에 반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당사자 일방이 독점적 지위 내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체결한 것인지 등 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위약벌 약정을 하게 된 동기와 경위, 계약 위반 과정 등을 고려하는 등 신중을 기해야 하고, 단순히 위약벌 액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심불리 무효라고 판단할 일은 아니다.”

자로서는 손해배상책임 내지 위약금과 별도로 위약벌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위약벌과 관련해 그 수용 여부와 함께 만일 수용할 경우 징벌적 배상금액을 얼마로 할 것인가에 관해 사전에 투자자와 충분한 협의를 해야 한다.

한편, 손해배상책임 내지 위약금(손해배상금을 미리 정해두는 것)과 위약벌은 그 성격이 다르므로 하나의 계약서에서 양립 가능하다.

기업 입장에서는 위약벌의 수용 여부 및 금액 수준에 대해 사전에 투자자와 충분한 협의를 해야 한다.

위약벌, 위약금과 손해배상 조항은 기업에게는 불리한 조항이다. 위약벌은 징벌적 배상책임이라는 점에서 실손해 전보 외에 추가적인 부담이다. 위약금은 손해배상의 성격을 갖는다. 위약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업과 이해관계인은 위 약정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게 되는데, 위약벌과 위약금의 범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협의를 해야 한다. 다만 투자자도 위약벌과 위약금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쉽게 양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오히려 기업 입장에서는 과도한 위약벌과 위약금의 경우 이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에 방점을 두고 협의해야 할 것으로 본다.

(마) 계약 체결 전 체크리스트

- 위약벌 비율의 적정성 검토
- 가중 위약벌 규정 확인

- 상환 협력 의무 위반 위약벌 규정 확인
- 위약벌과 손해배상·주식매수청구권의 병과 가능성 인지

(바) 분쟁 사례 및 시사점

[사례] 서울고등법원 2024. 11. 6. 선고 2024나2002515 판결

[사례 개요] 투자계약에서 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과 별도로 일정 금액의 위약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의 성격과 효력이 문제된 사안이다.

[주요 판단] 법원은 해당 조항이 그 문언과 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구별되는 위약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위약벌은 민법상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달리 법원이 단순히 금액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감액할 수는 없으나, 채권자가 얻는 이익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시사점] 위약벌은 실제 손해액과 별도로 부담할 수 있는 제재이므로 적용 범위와 금액이 회사 및 이해관계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 계약 체결 시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른 위약벌 수준, 손해배상·주식매수청구권과의 중복 적용 여부 및 시정 기회의 부여 여부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조항 개요	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과 별도로 투자금 일정 비율의 위약벌을 청구할 수 있고, 주식 무단처분이나 상환 방해 등 특정 위반에는 강화된 위약벌이 적용될 수 있다.
법적 의미	실손해 입증의 어려움을 보완하는 기능을 하지만, 금액이 과도하면 감액 또는 집행 위험이 생길 수 있다.
기업 관점 리스크	위약벌 수치가 높을수록 창업자 개인에게 사실상 중대한 압박수단으로 작용한다.
협상·운영 포인트	위반 유형별 위약벌을 차등화하고, 경미한 위반에 대해 곧바로 과도한 제재가 가해지지 않도록 시정구조를 함께 볼 필요가 있다.
체크리스트	투자금 대비 비율, 중복청구 가능 여부, 손해배상과의 관계, 감액 가능성을 검토한다.

(17) 지연배상금 유의

(가) 조항 개요

본 조항은 본 계약상 금전지급의무 이행이 지체된 경우 미지급 금액에 지연배상금을 부과하는 조항이다. 제15조(주식매수청구권), 제16조(위약벌·손해배상)와 결합해수금전 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보조적 제재 장치로 기능한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시 매수대금, 위약벌 청구금, 손해배상금 등 본 계약상 발생하는 모든 금전 채무에 적용되어, 채무자(주로 회사·이해관계인)의 신속한 이행을 강제한다.

계약서에서 정하는 금전 지급의무를 지체하는 경우 이에 적용될 지연배상금 이율을 정하는 것은 중요하다. 만약 지연배상금 이율을 정하지 않으면 상법상 법정이율인 연 6%가 적용이 된다⁸².

제17조 (지연배상금)

본 계약의 당사자가 본 계약에 따라 정해진 지급기일에 금전지급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지체하는 경우, 해당 지급기일 다음날로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미지급 금액에 대해 연 []%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연배상금으로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나) 법적 의미

민법상 법정이율은 연 5%(민법 제379조), 상사 법정이율은 연 6%(상법 제54조)로 규정되어 있다. 본 조항의 12%는 법정이율의 약 2배 수준으로, 약정에 의

82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으로 한다.

한 가중 이율을 적용한 것이다. 이는 단순한 지연배상이 아닌 이행 강제 기능을 강화한 약정 이율로 평가된다.

지연배상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민법 제398조)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다) 기업 리스크 포인트

이율 부담: 12%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이율을 일용의 기준으로 하고 있다.

(라) 협상 시 유의사항

지연배상금 이율을 정하지 않으면 상법상 법정이율인 연 6%가 적용되므로(상법 제54조), 약정 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높은 점에 유의해야 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지연배상금 이율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시장 금리 수준으로 조정을 협의할 수 있다. 즉 연 6~8% 수준으로 인하 협의 또는 시장 금리 연동(예: 한국은행 기준금리 + 일정 spread), 단계적 이율(예: 30일 이내 6%, 그 이후 12%)도 검토 협의해 볼 수 있다.

지연배상금율은 외형적으로는 부담자인 기업에게는 불리한 조항으로 보인다. 다만 지연배상금율이 12%를 초과하는 경우 기업 입장에서는 이를 감축하도록 협의할 수 있다고 본다.

(마) 계약 체결 전 체크리스트

- 지연배상금 이율의 적정성 확인
- 금전지급의무의 구체적 범위 확인

조항 개요	금전지급의무를 지체하는 경우 연 12%의 지연배상금을 가산하도록 한다.
법적 의미	금전지급 지체에 대한 표준적 제재조항이다.
기업 관점 리스크	주식매수대금, 상환금, 손해배상금, 위약벌 등 여러 지급의무에 연동될 수 있어 실제 부담이 커질 수 있다.
협상·운영 포인트	실무상 분쟁이 예상되면 지급기일 계산과 지연기간 산정 기준을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다.
체크리스트	지급기일, 부분지급 시 계산방식, 원금확정 시점을 기록한다.

(18) 이해관계인의 책임 주의

(가) 조항 개요

본 조항은 이해관계인(창업자·주요 주주)의 책임 범위를 규정하는 조항으로, (i) 회사 의무 이행 협력 의무(제1항), (ii) 상환·주식매수청구 시 협력 의무(제2항), (iii) 상환재원 확보를 위한 준비금 감소 등 절차 이행 의무(제3항), (iv) 연대책임의 한정(제4항)의 4중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특히 제4항은 2026년 표준계약 개정의 핵심 변경 사항으로, 이해관계인의 포괄적 연대책임을 폐지하고 (i) 4개 한정 사유 + (ii) 고의·중과실의 경우로 책임을 제한해 창업자 부담을 합리화한 의미를 가진다(2018년 이전 표준계약은 이해관계인이 회사 의무 일체에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구조).

제1항(일반적 주의의무): 이해관계인은 회사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본인의 권한·권리·의무를 다해야 한다.

제2항(상환 협력 의무): 투자자의 상환청구 또는 주식매수청구 시 회사의 대주주·임원으로서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성실히 응할 수 있도록 업무를 집행할 의무.

제3항(상환재원 확보 의무): 배당가능이익 부족 시 준비금 감소 등 법률상 가능한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도록 할 의무.

제4항(제한적 연대책임): 이해관계인이 회사의 의무를 연대해 부담하는 경우는 다음 4가지 사유에 한정되며, 해당 사유 발생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로 제한: (i) 선행조건 불충족 투자유도, (ii) 진술과 보장 위반, (iii) 투자금 사용용도 위반, (iv) 이해관계인의 무단 주식 처분.

제18조 (이해관계인의 책임)

- ① 이해관계인은 회사가 본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모두 이행할 수 있도록 본인의 권한, 권리, 의무를 다해야 한다.
- ② 이해관계인은 투자자가 회사에 대해 인수주식에 관한 상환청구 또는 주식매수청구를 하면 회사의 대주주 내지 임원으로서 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상환 또는 주식매수에 성실히 응할 수 있도록 업무를 집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 ③ 전항의 경우 회사의 배당가능이익이 충분하지 않으면 이해관계인은 회사의 대주주 내지 임원으로서 회사가 상황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준비금 감소 등 법률상 가능한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도록 할 의무를 부담한다.
- ④ 본 계약의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에 따라 이해관계인이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의무를 연대해 부담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그 사유 발생에 해당 이해관계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로 제한한다.
 1. 각 신주인수계약에서 정한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금을 납입하게 함으로써 투자의 효력을 발생하게 한 경우
 2. 각 신주인수계약에서 정한 진술과 보장 사항이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
 3. 제3조 및 별지 1. 투자금의 사용 용도를 위반한 경우
 4. 본 계약에 반해 이해관계인이 주식을 처분한 경우

(나) 법적 의미

종래 포괄적 연대보증에서 과실책임주의로 전환한 핵심 조항이다. 이해관계인의 책임은 두 가지 층으로 구분된다: (i) 이해관계인 고유 의무 위반에 따른 독자적 (제4조, 제5조, 제7조제2항, 제9조, 제10조, 제18조제2항 및 제3항, 제21조제3항의

의무) 회사의 의무 위반에 따른 제한적 연대책임(제18조 제4항). 연대책임은 4가지 사유 + 고의·중과실 요건으로 엄격히 제한된다.

상법 제341조(자기주식 취득)는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만 자기주식 취득을 허용하므로, 회사가 주식매수청구·상환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① **연대책임 사유 한정**: 4개 사유(선행조건 미충족, 진술보장 위반, 자금 사용 용도 위반, 처분 제한 위반)에 한정

② **귀책사유 요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로 한정: 단순 과실은 제외

③ **이해관계인 보호**: 본 조항에 명시되지 않은 위반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인이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소극적 의미도 가짐

(다) 기업 리스크 포인트

연대책임 사유(특히 진술과 보장 위반, 투자금 사용용도 위반)는 실무에서 빈번하게 문제된다. 상환 협력 의무 위반 시 SHA 제16조 제5항에 따른 위약벌이 부과될 수 있다. 퇴사·주식 처분 후에도 기술이전·점업 제한 의무가 2년간 유효하다.

“고의 또는 중과실”의 입증 부담: 이해관계인의 고의·중과실 여부가 분쟁의 쟁점이 되며, 통상 이해관계인이 자신의 무과실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입증책임 분배에 따라 다름).

(라) 협상 시 유의사항

기업 입장에서는, (i) 제2~3항 협력 의무의 합리적 한정, (ii) 제4항 연대책임 사유의 추가 한정, (iii) 이해관계인 책임 한도 설정, (iv) 시정 기회 부여, (v) 행사 기간 제한 등을 협의해 볼 수 있으나, 실무상 투자자가 수용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마) 계약 체결 전 체크리스트

- 연대책임 범위가 4가지 사유로 제한되는지 확인. 단 고유의무 위반은 별론.
- 연대책임 요건이 고의·중과실로 한정되는지 확인
- 상환 협력 의무 및 재원확보 의무 내용 확인
- 위약벌 규정 확인
- 포괄적 연대보증 조항의 부존재 확인
- 퇴사·처분 후 잔존 의무 범위 확인

(바) 분쟁 사례 및 시사점

[사례]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9다271661 판결

[사례 개요] 투자대상회사가 중요 자산의 처분 등에 관한 사전 서면동의 의무를 위반하자, 투자자가 투자계약에 따라 이해관계인을 상대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사안이다. 이 과정에서 계약상 주식매수청구권의 법적 성격과 행사기간이 문제되었다.

[주요 판단] 대법원은 투자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상대방과 주식매매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도록 정한 주식매수청구권은 형성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계약에서 별도의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은 이 사건에서는 상사소멸시효에 관한 상법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행사기간을 5년으로 보았다.

[시사점] 이해관계인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은 계약 위반 사실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제한 없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다. 투자자와 이해관계인은 권리의 발생 요건과 행사기간을 계약서에서 명확히 확인하고, 권리행사

여부를 적시에 판단할 필요가 있다.

조항 개요	이해관계인은 회사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권리·의무를 다해야 하고, 상환재원 확보와 같은 특정 영역에서 협력의무를 부담한다. 다만 회사 의무를 연대해 부담하는 범위는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특정 사유로 제한된다.
법적 의미	포괄 연대책임을 완화하면서도, 창업자·대표자의 협력의무와 귀책 있는 경우의 책임은 유지하는 구조이다.
기업 관점 리스크	회사와 이해관계인 각자의 의무가 문안상 섞여 있으면 책임주체가 불명확해질 수 있다.
협상·운영 포인트	기업은 누가 직접 이행할 의무를 지는지, 누구의 고의·중과실이 문제되는지 조문별로 구분해 관리해야 한다.
체크리스트	대표이사, 최대주주, 핵심인력별 권한 구조와 실제 통제력을 기준으로 책임 범위를 검토한다.

(19) 계약의 종료 유의

(가) 조항 개요

본 조항은 주주 간계약의 종료 사유를 규정하는 조항으로, (i) 개별 투자자의 지분을 하락 시 종료(제1항 전단) — 투자자 보유 지분이 인수 본건 주식의 10% 미만인 경우 해당 투자자에 대해서만 종료, (ii) IPO 시 전체 종료(제1항 중단): 회사 상장 시 본 계약 자체 종료, (iii) 종료의 비소급효(제2항): 종료 전 발생한 권리·의무는 유효의 3중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본 조항은 회사 입장에서 본 계약상 부담스러운 의무(사전 동의권, 보고 의무, 처분 제한 등)에서 해방되는 출구를 의미하므로, 종료 사유의 합리적 설계가 회사의 거버넌스 자율성 회복에 핵심적이다.

SHA는 투자자의 보유 지분이 인수 본건 주식의 10% 미만인 경우 해당 투자자에 대해, 또는 회사가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에 상장한 경우 종료한다. 종류주식의 보통주 전환 여부는 계약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19조 (계약의 종료)

- ① 본 계약은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본건 신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전환권을 행사해 보통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보통주식 지분 포함)이 투자자가 인수한 본건 주식의 [10%] 미만인 경우 해당 투자자에 대해 또는 회사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경우 종료한다. 명확히 하자면, 본건 신주의 보통주식으로의 전환 여부는 본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전항의 계약 종료는 그 이전에 이미 발생한 권리·의무 및 손해배상청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나) 법적 의미

계약 종료 이전에 이미 발생한 권리·의무 및 손해배상청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0%의 비율은 조정 가능하며,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일정 비율 미만”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

IPO는 회사가 자본시장법·거래소 규정의 강한 규율을 받게 되어 주주 간 계약의 사적 거버넌스가 부적절해지는 시점이다. 따라서 본 조항은 IPO 시 본 계약 전체를 자동 종료시켜 상장사 거버넌스 체제로 전환한다. 이는 한국거래소 상장규정상 불공정한 주주 간 약정의 해소 요건과도 부합한다.

“본건 신주의 보통주식으로의 전환 여부는 본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 규정은, 전환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되어도 본 계약상 권리는 유지됨을 의미한다. 이는 투자자 권리의 안정성 확보 측면이다.

비소급효의 의미: 종료 전 이미 발생한 의무 위반·손해배상청구권 등은 종료 후에도 유효해, 종료 전 위반 사유에 대한 사후 청구 가능성이 보장된다. 또한 비밀유지 의무 등은 종료 후에도 유지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 기업 리스크 포인트

종료 trigger 지분율(10%)의 조정 가능성: 10% 소액 지분만 보유한 투자자도 본 계약상 권리를 그대로 유지해, 회사 입장에서 의무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조정 협의가 필요할 수 있다.

(라) 협상 시 유의사항

기업 입장에서는, 종료 trigger 지분을 인상(예를 들어 10% → 25%~50% 수준으로 상향 협의 또는 투자자 인수 본건 주식 기준이 아닌 회사 발행주식총수 기준으로 변경 등) 등을 협의해 볼 수 있다.

한편 계약 종료 사유가 명확한지, 상장 시 계약이 자동 종료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종료 제한 없이 운영하는 경우도 많다.

투자자는 투자한 회사에 대해 관리업무도 부담하는데, 대부분의 주식을 처분하고 미미한 주식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전과 같은 수준의 관리를 해야 한다면 이는 소모적인 관리업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투자자는 경영에 대한 참여권, 주식 처분에 관한 제한 등 일부 투자계약의 내용을 종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벤처 투자 실무에서는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일정 수 미만이 될 경우 및 해당 주식이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경우 경영에 대한 참여권, 주식 처분에 관한 제한 등 일부 투자계약의 내용을 종료하는 것으로 약정하는 경우가 많다.

제1항과 관련해 통상 10% 정도가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으로 보이나, 비율은 조정 가능하다. 한편 이러한 제한을 두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 부분도 투자자와 기업의 입장이 다를 수 있다. 투자자는 주식을 1주라도 보유하고 있는 이상 본 계약의 효력을 유지하고자 할 것이고 이러한 방식이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대부분의 주식을 처분한 경우까지 본 계약서상의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 부분 관련해 보유주식 등을 기초로 한 협의가 필

요할 수 있다.

참고: (중도)해지/해제 ⁸³

계약은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합의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종료되기도 하지만, 계약의 효력발생 이후에 계약 당사자 일방의 의사로써 타방의 의사에 반해 계약을 종료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계약의 종료사유로서 해지/해제 조항은 의미를 갖는다.

법률적 의미의 해지/해제는 계약의 효력을 장래를 향해 또는 소급해 소멸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이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 원상회복의무 등 계약과 관련된 정산의무가 발생한다. 즉, 해지/해제 조항은 계약 당사자 일방은 계약의 효력을 유지하고자 하지만 타방은 이를 유지하고자 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는 경우, 계약의 효력 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⁸⁴

83 동 내용은 본 해설서의 전제인 계약서를 기준으로 볼 때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 주금이 납입된 이후에는 이미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것으로서 해제/해지는 적절하지 않다는 점, 회사법의 단체법적 성질상 신주발행을 무효화 해 납입된 주금을 환급하는 형태의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다만 본 해설서의 전제인 계약서는 주주 간 합의 사항을 하나의 약정에 포함하고 있는 바 이러한 범위 내에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본다.

84 해제/해지권은 법정 해제/해지권과 약정 해제/해지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법정 해제/해지권이라 함은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로서 일방의 이행지체, 이행불능 등 채무불이행사유가 발생한 경우 타방이 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 득하게 되는 권리이며 투자계약서에 특별히 규정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법에 의해 당연히 보장되는 권리이다. 한편, 당사자는 법정 해제/해지권의 요건 충족과 관계없이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일방이 투자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그 권리의 행사방법 등에 대해 미리 약정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약정 해제/해지권이라 한다.

그러나 신주 인수 방식의 투자계약서에서는 상법상 자본충실의 원칙 및 상법상 단체법적 성질 때문에 신주발행무효의 소가 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하는 해지/해제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신주 인수 방식의 투자계약서에서 기재되는 해제/해지는 원상회복의무를 발생시키는 의미 보다는 경영에 대한 참여권리, 주식 처분에 관한 권리 의무 등 투자계약서에서 정한 법률관계에서 벗어난다는 정도의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

벤처투자 업계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투자계약서 중에는 해제/해지 규정이 없는 경우도 많다.

기업 입장에서도 자금을 유치하는 투자계약서가 어떤 구조의 계약서인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예시】

제[*]조

계약의 해제/해지

① 당사자 일방이 다음 각호 사항을 포함해 본 계약을 위반하고 상대방의 시정요구가 있음에도 이를 2주 이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상대방은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제*조의 진술과 보장이 허위 또는 부정확하였다는 것이 사후적으로 밝혀진 경우
2. 투자금을 별지 투자금 사용용도에서 규정한 사용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3.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이 본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본 계약에서 정

한 거래완결 전 의무를 위반하였던 것이 사후적으로 발견된 경우 포함)

4.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이 거래완결 후 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의 제반 법규를 위반해 본 계약의 내용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5. 주금의 가장납입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회사가 중요자산을 사업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유출시킨 경우
6. 회사의 중요자산에 대해 압류,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의 신청이 있는 경우
7. 회사에 대한 해산, 청산, 파산, 회생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워크아웃 등)의 개시 신청이 있거나 개시되는 경우
8. 은행거래정지 등의 부실징후기업으로의 인정 등의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9. 회사가 3개월 이상 계속해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10. 회사와 이해관계인 또는 제3자와의 분쟁 등으로 회사의 사업추진이 불가능할 경우

② 투자자가 전항에 따라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회사는 투자자에게 투자자가 투자한 투자금 및 이에 대한 거래완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해야 한다.

투자계약서의 해지/해제는 법률적으로 많은 쟁점을 포함하고 있다. 단 순한 주식인수계약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제/해지가 불가능함은 전술한 것과 같다. 다만 통상 투자계약서가 주식인수계약서와 주주 간 합의서의 성격을 함께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제/해지 조항의 의미가 있을 수 있다. 한편 위 해제/해지 조항은 손해배상 조항과 연계되어 있으며 해제/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하는 형태로 운용되고 있다. 기

업 입장에서는 각 투자계약서의 구조 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마) 계약 체결 전 체크리스트

- 계약 종료 사유(지분 10% 미만, 상장)의 적정성 확인
- 종료 전 발생한 권리·의무의 존속 규정 확인
- 보통주 전환이 계약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확인

조항 개요	계약 종료, 변경, 양도·승계, 통지, 비밀유지, 세금, 일부무효, 준거법·관할, 특약 우선호, 투자금 사용용도 별지, 경업금지약정을 포함한다.
법적 의미	표면적으로는 일반조항이지만, 후속 라운드 참여자 가입과 지위승계, 계약 종료시점, 특약 우선호는 실제 분쟁에 큰 영향을 미친다.
기업 관점 리스크	투자조합의 존속기간 만료에 따른 지위승계, 경쟁사 이직 금지 범위, 계약 종료 후 생존조항 누락이 문제가 될 수 있다.
협상 운영 포인트	기업은 종료 후에도 살아남는 조항과 승계 가능한 권리를 별도로 표시해 두는 것이 좋다.
체크리스트	지위승계 대상, 계약 종료 기준지분율, 경업금지 대상자와 기간, 특약 부속문서 여부를 점검한다.

(20) 계약내용의 변경 점검

(가) 조항 개요

당사자 전원의 서면 합의를 하면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은 너무나 당연하므로, 이는 선언적 의미를 갖는다.

제20조 (계약의 내용 변경)

- ① 당사자는 전원의 서면 합의에 의해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② 투자자가 서면으로 명확한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본 계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이상, 투자자의 어떤 행위도 투자자가 본 계약상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나) 협상 시 유의사항

한편 투자자가 적극적으로 행위하지 않고 부작위 하는 경우에도 권리포기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조항은 투자자에게 다소 유리한 조항이다. 다만 권리 불포기 조항은 일반적으로 계약서에 많이 기재되는 조항이다.

투자자 또는 기업 어느 일방에게 특별하게 불리하지 않는 조항으로 본다. 통상 계약의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변경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21) 권리 및 의무의 양도/승계 ⁸⁵ 유의

(가) 조항 개요

회사·이해관계인은 투자자 동의 없이 계약상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1조 (권리 및 의무의 양도, 승계)

- ①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투자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에 관한 권리 및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 ② 투자자가 회사의 기업공개 이전에 투자자가 인수한 본건 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제3자(여기서 “제3자”는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및 이들 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될 수 있는 법률상 자격이 있는 자,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함)에게 양도한 경우 및 투자자가 투자조합인 경우 존속기간 만료 등의 이유로 해산되며 투자자의 업무집행조합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수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식 상의 투자자의 본 계약에 따른 권리는 주식매수인에게 승계된다.
- ③ 나머지 투자자,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전항의 계약상 지위 승계를 수인해야 한다.

(나) 법적 의미

투자자가 기업공개 이전에 본건 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일정 자격이 있는 제3자(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게 양도한 경우, 또는 투자조합 해산 시 업무집행조합원 등에게 양도하는 경우, 계약상 권

85 계약상의 권리 양도를 포함한다.

리가 주식매수인에게 승계된다. 나머지 당사자들은 이를 수인해야 한다.

(다) 협상 시 유의사항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자의 계약상 지위가 제3자에게 무제한 승계되면 다수의 주주에 대한 의무 이행 부담이 커지므로, 양도 대상 제3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도록 협의할 수 있다(예: 투자자의 특수관계인, 계열 펀드 등으로 한정).

계약상의 지위의 양도 및 승계는 양도인, 양수인 및 거래 상대방의 3자간 합의를 요한다. 일반적으로 투자계약을 비롯한 계약서에는 당사자에게 구속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이상 계약상의 지위/또는 계약상의 지위에서 발생한 권리의 양도를 금하는 조항을 두게 된다.

이처럼 계약상의 지위양도는 원칙적으로 3자의 합의를 요하는 사항이며, 별도로 계약상의 지위에서 파생되는 권리의 양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계약상의 지위의 양도가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의 승계라면, 계약상의 권리 양도는 투자계약서 자체에서 기 발생해 투자자(양도인)가 보유하고 있는 권리⁸⁶ 또는 장래 채권으로서 투자자(양도인)가 일정 기간 도과 또는 일정 조건 성취 후에 취득할 권리의 양도를 포함하게 된다.

계약상의 권리 양도에 대해 특별한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 채권양도와 동일하게 양도인은 양도를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양도를 금하는 조항을 마련할 수도 있으나, 이는 벤처투자회사를 구속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한편 만일 계약상의 권리 양도제한 규정이 있을 경우 이에 반한 양도의 효력이 문제된다.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경우에도 이러한 당사자 사이의 양도금지

86 통상 투자금, 투자수익금 상환청구권 등은 금전채권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특약의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제3자는 이러한 양도금지특약의 존재에 대해 선의인 이상 유효하게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

제2항과 관련해 투자자가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처분한 경우 주식양수인으로 해금 본 계약상의 권리를 투자자의 결정 및 회사에 대한 통지로 승계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투자자의 선택 조항의 구조이며, 투자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통지를 생략함으로써 주식매수인은 그러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게 된다. 기업 입장에서는 계약의 승계에 대한 사전 동의를 하게 되어 극단적으로 주식이 다수의 양수인에게 귀속될 경우 다수의 주주에게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따라서 계약상의 지위가 승계되는 양도 거래에 대해 제한할 필요성이 있는바 이는 협의 대상이라고 할 것이다.

양도의 대상이 되는 제3자를 “벤처투자 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및 이들 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될 수 있는 법률상 자격이 있는 자,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지 않고, “투자자의 특수관계인 ([*]주식회사와 [*] 주식회사가 법률상 혹은 사실상 업무집행 또는 운용하는 모든 펀드”로 대체해 규정하기도 한다. 이는 합리적으로 계약상의 지위 승계 범위를 제한하기 위함이다.

위 규정이 없는 경우 투자자가 투자대상기업의 주식을 매각하더라도 매수인은 투자대상기업의 동의 없이는 투자계약서상의 지위 내지 권리, 의무를 승계받지 못해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계약상의 의무에서 벗어나게 된다. 투자계약서의 지위 내지 권리, 의무는 주식 인수의 동기가 될 수도 있으므로 위 규정의 유무는 향후 투자자 및 매수인의 법률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편, 투자대상기업 입장에서는 투자계약서상의 투자자의 지위를 누가 인수하느냐에 따라 경영 전반적으로 미치는 파급력이 크므로 모든 매수인이

제한없이 투자계약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을 경계할 수밖에 없다.

기업 및 이해관계인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본 계약상의 지위가 본건 주식의 양수인에게 승계되도록 해서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즉 위 조항의 의미는 사전적으로 계약상의 지위 승계를 동의하는 효과가 있는 바, 이를 100% 반영함에는 신중을 기해야 하며, 펀드 간 거래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에 국한해 본 계약상의 지위가 승계되도록 협의를 해야 할 것이다. 한편 투자자 입장에서는 구주의 매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언 제든지 양도할 수 있고 이 경우 언제든지 투자계약서상의 지위가 승계되 도록 요구할 것인바, 인수 주체 대상과 인수 물량 대상 등 기준을 정한 합 리적 조정이 필요한 경우라 할 것이다.

(마) 계약 체결 전 체크리스트

- 양도 대상 제3자의 범위 확인
- 양도 비율 기준(30%) 확인
- 투자조합 해산 시 승계 절차 확인
- 기업에 대한 통지 의무 확인

(22) ⁸⁷통지 점검

(가) 조항 개요

제22조 (통지)

① 본 계약에 따른 당사자들에 대한 통지 및 서류 송부는 아래의 주소에 인편, 팩스, 등기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발송한다. 통지처가 변경된 경우 해당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이를 지체없이 통지하며, 그 이후 상대방은 변경된 통지처로 통지 및 서류 송부를 한다.

1. 투자자1에 대한 통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2. 투자자2에 대한 통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3. 회사에 대한 통지

87 (22)항 내지 (26)항 서술은 상환전환우선주인수계약 설명 참조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4.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 ② 전항의 경우 본 계약에 따른 통지처로 발송한 경우 발송일로부터 2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
- ③ 본 계약에서 정한 투자자의 모든 권리 및 사실행위는 본 계약서의 날인 란에 기재된 업무집행조합원이 투자자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투자자를 위해 재판상 및 재판외에서 행사한다.

(나) 협상 시 유의사항

통지 및 통지의 도달은 이로 인해 법률과 계약이 정한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요건이 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이와 관련해 통지할 연락처를 미리 계약서에 기재하게 되며, 통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통지자가 본 계약서에 기재된 연락처에 발송하였고 동 통지가 도달하였음을 입증한 경우 동 통지의 수령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 통지를 수령한 것으로

로 간주된다. 한편 기재된 연락처⁸⁸에 통지를 하였으나, 피통지자의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등 기재된 연락처의 변경으로 인해 동 통지가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한 불도달의 불이익은 피통지자가 부담한다.

따라서 각 당사자의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및 이메일 등을 기재⁸⁹하고, 기재된 연락처의 변경이 있을 경우 이를 신고할 의무를 부담케 함으로써 불도달의 불이익을 어느 일방에게 부담시킬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다.

통지처가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아 제때 통지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회사 내지 이해관계인이 본조의 규정을 해태함으로써 투자자로부터의 통지 또는 송부된 서류 등이 연착하거나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통 도착해야 할 때에 도착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회사 내지 이해관계인이 부담하기로 한다.”는 규정을 추가할 수 있다.

통지 및 변경사항은 기업과 투자자 어느 일방에게 특별하게 불리한 내용은 아니라고 본다. 다만 회사의 주소 이전, 담당자의 변경 등으로 인해 통지 등을 받지 못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바, 그 변경 등 신고는 명확하게 해야 한다.

88 모든 계약서에 기재된 연락 가능한 연락수단을 의미하며, 통상 주소지 우편발송, 전화번호로 유선 전화(음성수신기능이 있을 경우 음성녹음), 팩스 발송, 이메일 발송 등을 모두 포함한다.

89 한편 연락 담당자를 기재하기도 한다.

(마) 계약 체결 전 체크리스트

- 통지처의 기재
- 수단 확인
- 도달 간주 규정과 위험 전가 확인
- 기업에 대한 통지 의무 확인

(23) 비밀유지 점검

(가) 조항 개요

제23조 (비밀유지)

본 계약과 관련해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정보는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밀로 하고,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본 조의 의무는 본 계약의 효력이 상실하는 경우에도 2년간 그 효력이 존속된다.

1. 당사자가 공개하기로 합의한 사항
2. 공지된 정보
3. 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제3자로부터 이미 적법하게 취득한 정보
4.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한 법률자문, 소의 제기,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5. 법원 또는 정부기관이 적법하게 공개 또는 제공을 요구한 정보(단, 사전에 상대방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나) 협상시 유의사항

비밀의 범위와 한계에 대해 가급적 기준을 정해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에는 투자대상기업이 투자자의 투자 검토 단계에서부터 비밀유지계약(Non-disclosure agreement) 체결을 요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투자대상기업이 기술기반의 벤처기업인 경우에는 부득이한 요구인 것으로 이해되고, 투자자는 이에 협조할 필요도 있다. 서로의 비밀을 신중히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밀유지 조항은 기업과 투자자 어느 일방에게 특별하게 불리한 내용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다만 경우에 따라 투자자가 비밀유지 조항을 기재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도 있다. 개별적으로 판단할 문제이나 기업 입장에서는 정보보호 차원에서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24) 세금 점검

제24조 (세금)

본 계약의 당사자에게 부과된 조세 공과금은 법령상 부담해야 할 당사자가 각자 부담한다.

(25) 일부무효 점검

제25조 (일부 무효)

본 계약 또는 이와 관련해 작성된 서류에 명시된 한 개 또는 수개의 조항이 법령에 따라 무효, 위법 또는 집행불능으로 되더라도 본 계약에 명시된 나머지 조항의 효력, 적법성 및 집행가능성은 그로 인해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26) 분쟁 해결 및 관할, 준거법 점검

제26조 (준거법 및 분쟁 해결)

- ① 본 계약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된다.
- ② 본 계약에 따라 발생한 모든 분쟁의 제1심 관할법원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지정한다.

투자계약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의 해결 수단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한 약정을 한다. 분쟁의 해결 수단에는 법원의 판단을 받는 소송, 소송이 아닌 상사중재원의 판단을 받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으며, 특별한 정함이 없으며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된다는 점에서 어느 해결 수단을 선택할 지는 제소자의 권리이다.

다만, 분쟁의 해결방법을 상사중재원으로 한정된 경우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부제소의 합의가 있는 것이므로 만일 소를 제기하게 될 경우 각하 판결을 받게 된다. 따라서 분쟁의 절충적 해결이라는 측면에서 상사중재원을 통한 분쟁의 해결이 이점을 갖기는 하나, 최종적 판단권은 법원이 갖는다는 측면에서 분쟁의 해결방법을 상사중재원으로 한정 하는 데는 신중을 요한다.

한편 관할과 관련해서는 통상 투자자인 벤처투자회사의 소재지 관할 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로 하는 합의관할 규정을 둔다. 만일 이러한 합의관할 규정을 두지 않을 경우에는 상대방의 주소지 관할로 법정관할이 형성되기 때문에 소송의 수행과 관련해서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만큼 벤처투자회사의 입

장에서는 소송의 편의를 고려한 합의관할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준거법에 대한 규정을 두기도 하나, 일반적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 국내에서 체결된 대한민국 국적의 법적 주체 사이의 약정이라는 점에서 대한민국법이 준거법으로 기능하게 된다.

본 조항은 기업과 투자자 양측에 특별한 이해관계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기업 입장에서는 기업 소재지 관할로 주장할 수도 있으나, 통상적으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1심 관할로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6 보통주 투자계약서

1 보통주 투자계약서의 일반론

벤처캐피탈 업계에서 활용되는 보통주 투자계약서는 그 사용비중이 (상환전환)우선주와 비교해 줄고 있는 추세이나 투자계약서의 기본형태라 할 것이다.

보통주 투자계약의 경우에도 (상환전환)우선주와 마찬가지로 투자계약 위반 사유 발생시에 그 투자금 회수와 관련된 법률적 구조에 따라 크게 대별하면, ① 계약의 해제와 손해배상청구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안, ② 주금납입 전에는 계약의 해제와 손해배상으로, 주금납입 후에는 주식매수청구권 또는 위약별로 회수하는 방안으로 구분되며, 양자의 계약서가 약간씩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으로 판단된다.

보통주 투자계약서의 경우 우선주 투자계약서의 「별지1. 종류주식(우선주)의 내용」 내용에 관한 장이 생략되는 외에 특별한 점이 없는데, 그 조문 내용에 관한 해설은 본 설명서에서는 생략하도록 한다.

2 보통주 투자계약서의 구성내용

보통주 투자계약서는 기본적으로 (상환전환)우선주 투자계약서와 동일한 체계를 취하며, 우선주의 내용에 관한 장이 제외되어 있는 점이 차이가 있다. 필수적 기재사항, 권고적 선택사항 및 단순 선택사항에 포섭되는 항목은 동일하다.

한편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투자는 보통주 신주 인수 방식에 의하는 경우가

많은데, 통상 활용되는 보통주 투자계약서보다 경영에 있어 투자대상기업의 재량을 더욱 인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보통주 인수 방식의 투자계약에서 활용되는 투자계약서의 구성은 아래와 같다. 이하 구체적인 규정에 대한 해설은 상환전환우선주 부분에서 해설하였으므로 생략하기로 한다.

보통주 투자계약서(SPA)	제1조 (신주의 발행 사항) 제2조 (투자의 선행조건) 제3조 (진술과 보장) 제4조 (거래의 완결) 제5조 (거래완결일 전 해제) 제6조 (본 계약의 효력) 제7조 (계약의 내용 변경) 제8조 (통지) 제9조 (비밀유지) 제10조 (세금) 제11조 (일부 무효) 제12조 (준거법 및 분쟁해결) 제13조 (특약사항의 효력) 제14조 (특약사항의 구체적 내용) 별지. 진술과 보장
----------------	--

보통주 주주 간 계약서(SHA)	제1장 총설
	제1조 (목적)
	제2조 (본 계약의 효력)
	제2장 회사 경영에 관한 사항
	제3조 (투자금의 용도 및 제한)
	제4조 (기술의 이전, 양도, 겸업 및 신회사 설립제한)
	제5조 (경영사항에 대한 동의권 및 협의권)
	제6조 (보고 및 자료 제출)
	제7조 (회계 및 업무감사, 시정조치)
	제8조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제9조 (임원의 지명)
제10조 (주주총회 및 이사회 개최 요구)	
제11조 (기업공개 및 M&A에 관한 사항)	
제3장 주식의 처분에 관한 사항	
제12조 (투자자의 주식 처분)	
제13조 (이해관계인의 주식 처분)	
제14조 (투자자의 우선매수권 및 공동매도참여권)	
제4장 계약 위반에 따른 책임에 관한 사항	
제15조 (주식매수청구권)	
제16조 (손해배상 및 위약벌)	
제17조 (지연배상금)	
제18조 (이해관계인의 책임)	
제5장 계약의 일반사항	
제19조 (계약의 종료)	
제20조 (계약의 내용 변경)	
제21조 (권리 및 의무의 양도, 승계)	
제22조 (통지)	
제23조 (비밀유지)	
제24조 (세금)	
제25조 (일부무효)	
제25조 (준거법 및 분쟁해결)	
제27조 (특약사항의 효력)	
제28조 (특약사항의 구체적 내용)	
별지. 투자금의 사용용도 및 실사 약정 (첨부) 퇴사제한 및 경업금지 약정서	

IV

채권형 및 조건부 투자계약서



1 전환사채 투자계약서

1 전환사채 투자계약서의 일반론

전환사채(Convertible Bond)는 회사가 발행하는 사채권의 한 종류로서, 발행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 특수한 사채를 말한다. 투자자로서는 사채의 확실성과 주식의 확장성을 비교해 선택할 수 있고, 회사로서는 전환에 의해 사채 상환의 효과를 누리는 한편 자금조달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⁹⁰이 있어 사채의 모집을 원활하게 한다.

전환사채의 발행 및 구체적인 발행사항은 정관으로 정한 경우 외에는 이사회가 결정한다(상법 제513조 제2항). 즉 종류주식과 달리 정관에 사채발행에 관해 정한 바 없더라도 일반 사채와 마찬가지로 이사회 결의만으로 발행할 수 있다.

그러나 전환사채는 장래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이므로, 주주 아닌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것과 같아 기존주주의 이익을 해칠 수도 있어, 원칙적으로 주

90 전환사채의 이율은 일반사채에 비해 낮은 것이 일반적이다.

주가 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가지며, 주주 아닌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경우(이른바 ‘제3자배정’)에는 정관에 규정에 근거를 두거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요구된다(상법 제513조 제3항).

2 전환사채 투자계약서의 구성 내용

전환사채 투자계약서는 사채의 상환에 관한 사항 및 전환권에 관한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며 나머지 거래완결 후 회사의 경영에 관한 사항, 계약의 종료 등에 관한 사항은 주식형 투자계약서와 내용이 유사하다.

따라서, 사채의 상환에 관한 사항 및 전환권에 관한 사항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한편, 사채의 경우에는 ‘사채’라는 성격상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게 된다. 따라서 지분매수청구권 규정을 별도로 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으나, 본 해설서에서는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 외에 별도로 지분매수청구권 규정을 두는 형태의 양식을 기초로 서술하도록 한다.

제1장 사채의 인수에 관한 사항

제1조 (사채의 발행 사항)

제2조 (투자의 선행조건)

제3조 (진술과 보장)

제4조 (거래완결일 전 해제)

제5조 (거래의 완결)

제2장 회사 경영에 관한 사항

- 제6조 (투자금의 용도 및 제한)
- 제7조 (기술의 이전, 양도, 겸업 및 신회사 설립 제한)
- 제8조 (경영사항에 대한 동의권 및 협의권)
- 제9조 (보고 및 자료제출)
- 제10조 (회계 및 업무감사, 시정조치)
- 제11조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 제12조 (임원의 지명)
- 제13조 (주주총회 및 이사회 개최 요구)
- 제14조 (기업공개 및 M&A에 관한 사항)

제3장 거래완결 후 지분의 처분에 관한 사항

- 제15조 (투자자의 지분처분)
 - (선택) 제20조의 2 (이해관계인의 우선매수권)
 - (선택) 제20조의 3 (이해관계인의 주식매수권(Call Option))
- 제16조 (이해관계인의 주식 처분)
- 제17조 (투자자의 우선매수권(Right of First Refusal) 및 공동매도참여권 (Tag-along))

제4장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

- 제18조 (기한이익의 상실 등)
- 제19조 (손해배상 및 위약벌)
- 제20조 (지연배상금)
- 제21조 (이해관계인의 책임)

제5장 계약의 일반 사항

- 제22조 (본 계약의 효력)
- 제23조 (계약의 종료)
- 제24조 (계약의 내용변경)
- 제25조 (권리 및 의무의 양도, 승계)
- 제26조 (통지)
- 제27조 (비밀유지)
- 제28조 (세금)
- 제29조 (일부 무효)
- 제30조 (준거법 및 분쟁 해결)

제6장 특약사항

- 제36조 (특약사항의 효력)
- 제37조 (특약사항의 구체적 내용)

별지1 본건 전환사채의 종류 및 내용

1. 본건 전환사채의 표면이율
2. 본건 전환사채의 만기보장수익률
3. 본건 전환사채의 납입기일
4.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일
5. 본건 전환사채의 만기일
6. 본건 전환사채의 원리금 지급 장소
7. 본건 전환사채의 분할 및 병합
8.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
9. 본건 전환사채의 상황에 관한 사항

10.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에 관한 사항

별지2 진술과 보장

별지2 투자금의 사용용도 및 실사 약정

(첨부) 퇴사제한 및 경업금지 약정서

가. 주요 조항

(1) 사채의 발행과 인수

사채의 발행과 관련해서는, 사채의 명칭, 사채의 종류, 사채의 권면총액, 권면금액 및 권중수, 발행가액, 이율(표면이율, 만기보장수익률), 발행일, 만기일, 인수금액 등이 필수조건으로 정해져야 한다.

제1조 (사채의 발행 사항)

① 회사는 본 계약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전환사채(이하 “본건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투자자는 본건 전환사채를 인수한다.

1. 회사의 상호: [회사명]
2. 본건 전환사채의 명칭: 제[]회 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3. 본건 전환사채의 종류: 기명식 전환사채
4. 본건 전환사채의 권면총액: 금 000,000,000원
5. 본건 전환사채의 권면금액 및 권중수: 금 []억 원권 []매, 금 []천만 원권 []매
6.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가액: 본건 전환사채의 권면총액 100%
7.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조건: 별지 1.에 의함

8. 각 투자자별 본건 전환사채의 배정 수량과 인수가액

투자자명	권면금액 및 권종수	인수 가액
[투자자명]	금 []억 원권 []매 금 []천만원권 []매	금[]원
[투자자명]	금 []억 원권 []매 금 []천만원권 []매	금[]원
합계	금 []억 원권 []매 금 []천만원권 []매	

- ② 회사는 납입기일로부터 3영업일 전까지 투자자에게 본건 전환사채의 인수가액 납입을 위한 은행의 별단예금 계좌를 통지해야 한다.

사채의 발행사항은 전환사채인수계약서의 기본 조건이다. 투자자와 기업 어느 일방에게 특별하게 불리한 내용은 없다고 본다. 다만 기업은 전환사채의 발행조건을 협의함에 있어서 전환권 행사 등을 고려해야 하며 예상되는 지분의 변동 등을 가정해야 할 것이다.

(2) 사채의 상환에 관한 사항

사채는 부채 성격의 투자유치로 상환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사채는 기본적으로 채권적 자금조달 방식인바, 기업 입장에서는 상환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자기자본 조달 형식이 기업에게는 유리하며(지배구조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 기업은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분형태의 자금조달을 해야 한다. 한편 상환전환우선주의 경우에도 상환이익

범위 내에서만 상환의무를 부담하고 상환이익이 없을 경우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 상환이익이 있을 경우 대부분의 경우에 투자자는 상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전환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점에서 기업 입장에서는 사채 형태의 자금조달 보다는 지분 형태의 자금조달이 상환의무 부담 측면에서 더 유리하다고 할 것이다.

(3) 전환권에 관한 사항

사채의 전환에 관한 사항은 다양하게 정할 수 있으며, 예시는 아래와 같다.

상환전환우선주 부분에서 전환에 관한 사항 설명부분과 기본적으로는 동일한 취지이다.

전환권 등의 의미에 대해서는 상환전환우선주의 전환권 규정 등 참조.

(4) 기한의 이익 상실

기한의 이익이란 법률행위에 기한이 붙음으로써 당사자가 얻는 이익을 말한다.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 측에 있다고 추정된다(민법 제153조 제1항).

전환사채의 경우에도 만기가 정해지고, 사채를 발행한 회사는 만기가 도래할 때까지 사채권자에게 사채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기한의 이익이 있다. 그러나 투자대상기업 및 이해관계인이 투자계약을 위반하는 등 투자자 입장에서 더 이상 투자대상기업에게 기한의 이익을 보장할 이유가 없어진 경

우 투자자는 투자대상기업 내지 이해관계인에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음을 통지하고 즉시 사채원리금을 상환하라는 청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투자자는 어떤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야 하고 이를 반드시 투자계약서에 규정해야 한다. 전환사채 인수 방식의 투자에서 투자금 회수를 위해 가장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하는 규정이다.

【예시】

제18조 (기한이익의 상실 등)

① 거래완결일 후 회사에게 다음 각 호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투자자는 회사에 대해 본건 전환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조의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금을 납입하게 함으로써 투자의 효력을 발생하게 한 경우
2. 제3조 및 별지 2. 진술과 보장 사항이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
3. 제6조 및 별지 3. 투자금의 사용용도를 위반한 경우
4. 제7조 기술의 이전, 양도 겸업 및 신회사 설립 제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제8조를 위반해 투자자의 동의 또는 3회 이상 협의 없이 각 호 사항을 진행한 경우
6. 제10조에 따른 회계 및 업무감사 협조 또는 시정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7. 제32조에서 정한 특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8. 기타 본 계약에 따른 회사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이해관계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회사에게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 사유가 발생한 경우 투자자는 해당 이해관계인에게 본건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1. 제2조의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금을 납입하게 함으로써 투자의 효력을 발생하게 한 경우
2. 제3조 및 별지 2.의 진술과 보장 사항이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
3. 제6조 및 별지 3. 투자금의 사용용도를 위반한 경우
4. 본 계약에 반해 이해관계인이 주식을 처분한 경우
5. 기타 본 계약에서 정한 이해관계인 본인의 의무(본 계약에서 회사와는 별도로 이해관계인 스스로 이행할 책임이 있는 본 계약 제7조, 제8조, 제10조 제2항, 제12조, 제13조, 제25조 제3항의 의무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를 위반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회사의 상환원리금은 기한이익 상실 당시 남아있는 본건 전환사채 인수가액 및 이에 대해 납입기일부터 만기일까지의 만기보장수익률에 의한 금액과 연 [(예시)12]%에 의한 금액 중 큰 금액을 합산한 액수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지분매매 대금 중 전환사채로 남아있는 부분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하고, 주식으로 전환되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부분은 1주당 매매대금을 다음 각 호 중 높은 금액으로 한다. 단, 해당 주식 발행일로부터 대금 지급일까지 지급된 배당금이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하기로 한다.

1. 전환 당시의 1주당 전환가격 및 이에 대한 본건 전환사채 인수가액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대금 지급일까지 연 12% 이율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
2. 지분매수청구일을 기준으로 과거 [1]년 간 있었던 회사 발행 주식의 거래 중 가

장 높은 1주당 매매대금

3. 당사자 사이에 합의한 주식가치 평가기관에 의해 평가된 1주당 본질가치(여기서 “본질가치”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5조 내지 제 8조의 분석기준에 의해 평가된 주식의 가치를 말하고, 본질가치의 산정은 투자자가 지칭하는 회계법인 및 국내 상위 5개 회계법인 중 하나에 의해 산출된 2가지 평가 액수의 산술평균으로 한다, 이하 동일)

⑤ 투자자의 이해관계인에 대한 제2항의 지분매수청구권 행사는 매수청구 대상 지분의 형태 및 수, 매매대금, 거래예정일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며 해당 서면이 이해관계인에게 도달할 때 지분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는 곧 투자금 회수 사유에 해당되므로, 어떤 사유를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로 할 것인지는 매우 중요하다. 위 예시 이외에도 “회사의 중요자산에 대해 압류,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의 신청이 있고, 회사가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일 이내에 이를 해소하지 못한 경우”, “회사의 중요자산에 대해 압류,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의 신청이 있는 후 [*]일 이내에 그러한 절차가 해소되지 아니한 경우”, “회사에 대해 은행거래정지 등의 부실징후기업으로의 인정 등의 절차가 개시되고 [*]일 이내에 이를 해소하지 못한 경우”, “회사가 영업을 계속할 수 있음에도 고의로 사실상 2개월 이상 계속해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을 추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를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한다거나, 가능한 한 많은 사유를 포함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투자자의 권리 보호에 유리할 수도 있겠지만, 그 만큼 투자자의 관리업무에 부하가 발생할 수 있고, 중요한 발생 사유 까지도 중요하지 않은 사유와 희석될 수도 있으며, 성실 경영에 이은 부득이

한 사업 실패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도 기한의 이익 상실 통지를 해 적절하지 않은 투자금 회수 상황에 나아갈 수도 있다는 점에서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를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상환전환우선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사유를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 것인가와 연계해 살펴 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를 원칙으로 해야 할 것이나 대출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특정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 발생사실만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이러한 면에서는 기업 입장에서는 주식 형태의 투자 유치가 좀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나. 기타 조항

- (상환전환)우선주 투자계약서 해설 참조

2 신주인수권부사채 투자계약서

1 일반론

신주인수권부사채(Bond with Warrant)는 회사가 발행하는 사채권의 한 종류로서, 사채의 발행조건으로서 사채권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특수한 사채를 말한다. 사채는 사채대로 존속해 만기에 상환되므로 보통의 사채와 다름이 없고, 다만 신주인수권이 부여되어 있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이 점이 사채 자체가 소멸하고 주식으로 전환되는 전환사채와 다르다.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사채권자는 사채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주가가 상승하면 신주인수권을 행사해 주식의 양도차익을 얻는 이점을 누릴 수 있다. 대신 회사는 이율을 낮춤으로써 자금조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신주인수권부사채에는 분리형과 비분리형이 있다. 비분리형은 사채권과 신주인수권이 같이 하나의 사채권에 표창된 것이고, 분리형은 사채권에는 사채권만을 표창하고 신주인수권은 별도의 증권(신주인수권증권)에 표창해 양자를 분리해 양도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비상장사의 경우 신주인수권부사채는 분리형, 비분리형 모두 발행 가능하다⁹¹.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및 구체적인 발행사항은 정관으로 정한 경우 외에는 이사회가 결정한다(상법 제516조의2 제2항). 즉 종류주식과 달리 정관에 사채발행에 관해 정한 바가 없더라도 일반 사채와 마찬가지로 이사회 결의로 발행할 수 있다.

91 상장회사가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사모로 발행하는 것은 금지되고 있다.

다만 신주인수권부사채도 전환사채와 같이 주주의 신주인수권의 보호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해 장래에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것이므로, 주주 아닌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것과 같아 기존주주의 이익을 해칠 수도 있어, 원칙적으로 주주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권을 가지며, 주주 아닌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이른바 '제3자배정')에는 정관에 규정에 근거를 두거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요구된다(상법 제 516조의2 제4항).

2 구성내용

신주인수권부사채 투자계약서는 사채의 상환에 관한 사항 및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며 나머지 거래완결 후 회사의 경영에 관한 사항, 계약의 종료 등에 관한 사항은 주식형 투자계약서와 내용이 유사하다.

따라서, 사채의 상환에 관한 사항 및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한편, 사채의 경우에는 '사채'라는 성격상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게 된다. 따라서 지분⁹²매수청구권 규정을 별도로 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으나, 본 해설서에서는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 외에 별도로 지분매수청구권 규정을 두는 형태의 양식을 기초로 서술하도록 한다.

92 주식매수청구권과 유사한 내용을 의미한다.

제1장 사채의 인수에 관한 사항

제1조 (사채의 발행 사항)

제2조 (투자의 선행조건)

제3조 (진술과 보장)

제4조 (거래완결일 전 해제)

제5조 (거래의 완결)

제2장 회사 경영에 관한 사항

제6조 (투자금의 용도 및 제한)

제7조 (기술의 이전, 양도, 겸업 및 신회사 설립 제한)

제8조 (경영사항에 대한 동의권 및 협의권)

제9조 (보고 및 자료제출)

제10조 (회계 및 업무감사, 시정조치)

제11조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제12조 (임원의 지명)

제13조 (주주총회 및 이사회 개최 요구)

제14조 (기업공개 및 M&A에 관한 사항)

제3장 거래완결 후 지분의 처분에 관한 사항

제15조 (투자자의 지분처분)

(선택) 제20조의 2 (이해관계인의 우선매수권)

(선택) 제20조의 3 (이해관계인의 주식매수권(Call Option))

제16조 (이해관계인의 주식 처분)

제17조 (투자자의 우선매수권(Right of First Refusal) 및 공동매도참여권 (Tag-along))

제4장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

제18조 (기한이익의 상실 등)

제19조 (손해배상 및 위약벌)

제20조 (지연배상금)

제21조 (이해관계인의 책임)

제5장 계약의 일반 사항

제22조 (본 계약의 효력)

제23조 (계약의 종료)

제24조 (계약의 내용 변경)

제25조 (권리 및 의무의 양도, 승계)

제26조 (통지)

제27조 (비밀유지)

제28조 (세금)

제29조 (일부 무효)

제30조 (준거법 및 분쟁 해결)

제6장 특약사항

제36조 (특약사항의 효력)

제37조 (특약사항의 구체적 내용)

별지1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종류 및 내용

1. 본건 전환사채의 표면이율
2. 본건 전환사채의 만기보장수익률
3. 본건 전환사채의 납입기일
4.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일
5. 본건 전환사채의 만기일
6. 본건 전환사채의 원리금 지급 장소
7. 본건 전환사채의 분할 및 병합
8.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
9. 본건 전환사채의 상환에 관한 사항
10.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에 관한 사항

별지2 진술과 보장

별지2 투자금의 사용용도 및 실사 약정

(첨부) 퇴사제한 및 경업금지 약정서

가. 주요 사항

(상환전환)우선주 투자계약서와 동일

나. 기타 조항

(상환전환)우선주 투자계약서 해설 참조

3 조건부지분투자 및 조건부지분전환사채

앞서 살펴본 채권형 투자수단에 이어, 이하에서는 초기기업의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활용되는 조건부 투자방식을 살펴본다.

1 새로운 투자 방식에 대한 업계의 요구

한편 초기창업기업의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벤처투자업계에서 SAFE(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 이하 "SAFE" 라고 한다), 컨버터블노트(Convertible Note, 이하 "컨버터블노트" 라고 한다)와 같은 신종 투자 방식이 확산되었으며, 국내 도입 요청에 따라 국내에도 이와 유사한⁹³ 형태의 투자방식⁹⁴이 도입되었다.

93 법제의 차이로 동일한 형태라 할 수 없으며, 본질적으로 유사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국내법에 맞게 변형 도입되게 되었다.

94 한편 회사의 자금조달은 상법을 포함한 법률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상법은 회사의 자금조달과 관련해 주주평등의 원칙, 자본충실의 원칙 등에 따라 엄격한 요건을 요구한다. 신규 투자 방식은 이러한 상법이 예정한 자금조달이 아니며, 벤처투자법 등에 동법이 정하는 요건을 준수해 투자를 하는 경우 하나의 투자유형으로 인정해 주는 것에 불과하다. 엄격하게는 계약 체결 이후 새로이 회사는 투자자와 상법과 정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주식으로 전환 발행하는 증자 절차를 이행해야 하게 된다.

(1) SAFE에 대한 이해

SAFE는 미국의 유명한 Seed Funding 전문 투자업체이면서 Start-up incubator인 Y Combinator 가 2013년도 말에 처음 도입한 투자 방식으로서 미래에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내용으로 한다.

SAFE는 기본적으로 컨버티블노트와 유사하지만 만기상환 및 이자 등 채무의 요소가 없기 때문에 회사의 재무제표상 부채로 기록되지 않으며 대신 warrant나 option과 마찬가지로 회사의 cap table (capitalization table)에 기록한다. 다만 만기일이나 전환시점이 미리 약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SAFE가 아예 주식으로 전환되지 않을 수도 있다.⁹⁵

【우선주와 SAFE의 차이】

	우선주	SAFE
이자 유무	원칙적으로 없으나 계약에 따라 가능(배당)	없음
전환 할인율	없음	15~20% ⁹⁶
전환을 위한 Valuation Cap	없음	있음
상환의무	가능(전환상환우선주)	없음
조건 충족 시 우선주 전환	투자자의 선택	자동전환

95 SAFE는 투자받은 이후에 다음 Round에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전환권(옵션)의 가치가 없지만, 상환전환우선주는 우선주의 주주로서 가치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96 실무적으로는 다양한 할인율이 적용된다. 기업 입장에서는 너무 과도한 할인율이 적용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2) 컨버터블노트에 대한 이해

컨버터블노트는 계약서에 약정한 시점 또는 투자자가 전환권을 행사하는 시점에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주로 Series A round에 전환) 또는, 만기에 투자대상 기업이 투자자에 원금을 상환해야 하는 형태이다.

미국의 경우 대부분 12~18개월 만기에 4% ~ 8%⁹⁷의 이자율로 계약을 하지만 실제로 상환을 하거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는 드물며 equity로 전환이 이루어지는 시점까지 계산된 이자에 대해서도 추가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전환사채와 CN의 비교】

	전환사채(CB)	CN
이자 유무	있음	
만기유무	있음	
전환을 위한 Valuation Cap, 할인율	전환가격이 고정되어 있음	전환을 위한 Valuation Cap 이나 할인율 존재
상환 혹은 전환을 위한 만기	전환권이 행사되지 않는 경우 만기 존재	
조건 충족 시 우선주 전환	투자자의 선택적 전환	조건 충족 시 자동전환

97 통계에 따라 2% 내외 또는 5~10%로 확인되는 자료도 있어, 다양한 이율이 사용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2 조건부지분투자와 조건부지분전환사채의 도입

SAFE, 컨버터블노트는 그 취지가 신주인수권을 부여받는 것과 같이 회사에 대해 권리 행사를 한 때에 그 효력이 당연히 발행하는 국내법상 형성권으로서의 권리를 의도한 것으로 이해되는데, 우리 대법원은 신주의 발행은 특별법 및 상법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의해만 가능하다고 하므로, 법률 개정 또는 판례 변경이 있지 않는 한 그대로 도입은 불가능하다.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73020 판결]

“주식회사가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채권자는 만기까지 대여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사 주식으로 액면가에 따라 언제든지 전환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는 내용의 계약조항을 둔 경우,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전환의 청구를 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기는 형성권으로서의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항이라고 보아야 하는바, 신주의 발행과 관련해 특별법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주의 발행은 상법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의해만 가능하다**⁹⁸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전환권 부여조항은 상법이 정한 방법과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신주발행 내지는 주식으로의 전환을 예정하는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벤처투자법은 SAFE 및 컨버터블노트와 유사한 제도로

98 결국 같은 맥락에서 신규 투자유형은 결국은 상법에 따른 주식발행 및 전환사채발행 절차를 법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해야 하게 된다.

서 조건부지분투자 및 조건부지분전환사채를 엄격한 요건⁹⁹을 정해 도입했다.

창업초기기업 입장에서는 기업가치평가 절차를 생략하고 조기 자금조달을 할 수 있는 수단으로 앞으로 자금조달 수단으로 정착되어가기를 기대한다.

3 주요 투자방식의 비교 및 요약

【주요 투자방식 비교】

RCPS	이익배당·잔여재산 분배의 우선권, 보통주 전환권, 일정 조건에서의 상환권이 결합된 형태이다. 국내 벤처투자 실무에서 가장 널리 활용된다. 다만 현재 권고적으로는 상환권을 제외한 전환우선주를 우선적으로 권고한다.
보통주	주식에 상환권, 전환권, 우선권 등 별도의 특별한 권리가 부가되지 않은 형태의 주식을 말한다.
CB/BW	채권적 투자이며, 권리자가 전환권(C) 또는 신주인수권(W)을 행사할 경우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 투자 형태이다. 투자자 보호와 기업 부담 사이의 조정수단으로 가능하다.
SAFE/CN	해외 초기투자에서 널리 쓰이며 국내 유사 제도로 조건부지분투자, 조건부지분전환사채가 도입되어 있다.

99 기존 주주의 이익 보호, 공시 보완 등의 이유로 (i) 이러한 자금조달을 하는 기업의 기존 주주의 전원 동의를 요건으로 하며, (ii) 이러한 계약 체결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시 보완을 위해 계약 체결 사실의 고지의무 조항을 계약서에 반영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V

맺음말



본 「벤처투자 표준계약서 및 해설서」는 2026년 개정 KVCA 기준 투자계약서의 SPA·SHA 분리형 체계를 바탕으로, 우선주와 보통주 투자계약,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및 조건부 투자방식의 구조와 주요 유의사항을 설명했다. 특히 기업이 중요 조항을 쉽게 식별하고 실제 계약 검토와 운영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항별 중요도, 실무상 영향, 분쟁 사례 및 체크리스트를 함께 제시했다.

투자를 유치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각 투자계약서의 기재내용 중 “거래완결 후 회사의 경영에 관한 사항” 또는 “거래완결 후 지분의 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해 과중한 부담으로 느끼곤 한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서 벤처캐피탈은 벤처캐피탈이 가지는 본질적 속성 측면에서 접근 하고 있다. 즉, ① 벤처캐피탈이 가지는 본질적 속성상 벤처캐피탈은 전통적인 금융기관의 투자가 용이하지 않은 성장 단계 초기 기업에게 위험을 함께 분담하면서 자금지원, 경영관리 등을 지원하고 이들 기업을 육성해 높은 자본이득을 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 활동이라는 점, ② 벤처캐피탈이 비록 엄격한 투자심사 등을 통해 전문가적 입장에서 투자를 하나 본질적으로 고위험이라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바, 이에 대한 위험분산

측면에서의 경영관리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점, ③ 벤처캐피탈이 선순환을 하면서 제 기능을 다 하기 위해서는 초기 기업에 대한 감독기능 등을 통해 회수의 안정성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의 이유로 각 투자계약서에 “거래완결 후 회사의 경영에 관한 사항” 또는 “거래완결 후 지분의 처분에 관한 사항” 등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벤처캐피탈과 벤처기업의 우호적 성장을 위해서는 벤처기업도 벤처캐피탈에서 활용되고 있는 일반적 투자계약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각 조항의 현실적인 협의 가능성 및 협의의 범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벤처캐피탈에서도 정보를 공유하고 명확하게 기업에게 설명의무를 다하고 상호 기본적으로 투자계약서에 대해서 상호 이해가 일치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서로의 발전적 성장을 위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한편 이번 2026년 개정 해설서는 2025년 12월 18일자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 등 현장에서 제기된 투자계약 관련 정책 방향을 반영하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하였다. 크게는 4가지로, (1) 투자자들의 개별 동의권 행사에서 투자 라운드 별 집합적 동의권 행사 방식의 도입, 동의사항의 완화 및 분리형계약서(SPA, SHA)의 도입, (2) 상환권의 관례적 사용 개선 및 전환권 행사에 따른 가격조정(Refixing) 사유 발생의 경우 종래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Full-Ratchet 방식을 지양하고 가중평균방식을 도입하며, 이 중에서도 창업자의 지분회석이 가장 적게 발생하는 Broad-based 가중평균방식을 기본안으로 채택, (3) 연대보증을 지양하고 이해관계인 창업자에 대한 책임 부가 사유의 법령 내 제한 (4) 기업공개(IPO) 관련 조항을 노력의무로 명시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본 『벤처투자 표준계약서 및 해설서』가 벤처기업 입장에서 벤처캐피탈 투

자계약서의 일반적 형태를 이해하고 협의의 과정에서 하나의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 자료



1 사례해설

사례해설에 앞서 기업이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항은 (i) 계약서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와 (ii) 법인인감을 신중하게 날인해야 한다는 점 2가지라 할 것이다. 후술하는 사례는 개별 사례에 앞서 이에 대한 중요성을 환기시키는 사례가 될 것이라 본다.

[사례]

A 업체(최대주주 甲)는 부품 수출업체로서 2000년 후반 금융위기로 인해 가입된 외환파생상품(KIKO) 등으로 인해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입게 되었다. 이 기업은 단기적인 현금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투자업체로부터 대규모 자금조달을 했다. 한편 투자자는 당시 전환사채와 상환전환우선주를 통한 투자를 했으며, 기업성과에 연동해 리픽싱(Refixing) 조항을 두고 있었다. 한편 몇 년 후 A 기업은 정상적인 운영은 가능하였으나, 투자계약에 따른 리픽싱(Refixing)을 적용할 경우 A기업의 최대주주가 기존 甲에서 투자자로 변경되는 상황이었다. 투자자는 A기업과 甲에게 해당 주식을 투자자가 희망하는 가격으로 매수할 것을 협의하였으나 가격 협의가 결렬되어 투자자는 투자계약과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경영진을 변경하고 회사의 경영에 직접 참여

했다. 이 과정에서 甲은 본 투자계약서의 불공정성 등을 법률적으로 다루었으나, 법원은 동 투자계약서는 유효라고 판단했다.

[위 사례와 관련해 계약서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와 검토의 필요성]

사례1에서 A 업체는 외환파생상품(KIKO) 계약을 동 계약서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법인인감도장을 날인했다. 외환파생상품(KIKO)이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계약이라고는 하나 당시 많은 대기업들은 위 상품에 가입하지 아니하였고 상대적으로 법률적 지원이 약한 많은 중소기업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당시 A 업체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계약서에 주변의 말만 듣고 함부로 법인인감도장을 날인해 막대한 손실을 부담하게 된다(제1 법률행위). 위 제1 법률행위는 결국 A 업체의 과실에 의한 것이기는 하나 당시 경제적 사정을 고려했을 때 예측가능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나 A 업체는 동일한 실수를 반복한다. A 업체는 이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투자기관으로부터 막대한 자금조달을 한다. 해당 자금조달 방식은 전환권(Refixing)이 포함된 형태의 투자유치를 한다. A 업체는 제1 법률행위와 같은 동일한 실수를 반복한다. A 업체의 어느 누구도 투자계약서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으며 전환권(Refixing) 조항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약을 체결한다(제2 법률행위). 이로 인해 투자자의 전환권 행사로 A 업체의 최대주주가 변경된다. A 업체와 甲의 입장에서는 제1 법률행위와 제2 법률행위에서 동일한 실수를 동일하게 반복한다.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A 업체는 제3자에게 인수되게 된다.

법률행위 계약서는 기업의 성패를 좌우한다. 적어도 적게는 이윤에 영향을 미치는 적지 않은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법인인감도장은 함부로 날인하는

것이 아니다. 그로 인해 부담할 책임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날인해야 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과 투자자 사이의 관계에서 몰랐다는 부지의 항변은 법원에서 통용되지 않는다. 벤처, 중소기업이 특히 자금조달 등을 위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그 명확한 의미를 이해하고 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호 신뢰적 발전을 위해서 투자자도 기업도 서로 투자계약서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합리적인 이해가 필요하다고 본다. 위 사례에서 만일 A 업체가 사전에 이러한 전환권(Refixing) 조항의 결과를 예견 하였다면 좀 더 제 1 법률행위의 과오를 거울 삼아 좀더 신중하게 계약서를 검토하였다고 한다면 A 업체 또는甲은 투자자에게 전환권(Refixing) 조항의 행사결과 투자자가 초과 취득하게 되는 주식에 대해 반대로 콜옵션(Call Option) 등을 지정된 가격으로 협의할 수 있었을 것이고 양자에게 더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처럼 많은 사례에 있어서 투자계약서에 대한 그릇된 이해 또는 방만한 날인으로 인해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어려움으로 되돌아오거나 경영권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

기업 입장에서도 기업 스스로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도로 법률행위 계약서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해 법인인감을 날인해야 할 것이다.

【투자계약 위반의 분쟁 사례 유형】

1. 발행조건에 관한 위반 사례

Q: 종류주식 발행을 하였는데 등기 과정에서 보통주 등기를 한 경우

A: 등기는 회사의 의무인바, 회사는 경정등기 또는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
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 투자계약서에 다른 책임이 발생한다.

2. 발행조건에 관한 위반 사례

Q: 주식의 발행한도를 초과 한 경우

A: 주식발행한도를 초과해서는 주식 발행이 불가능하며 등기가 되지 않는다. 통상 전환권 행사로 인해 그 결과 발행하는 주식이 정관의 한도를 초과해 문제가 발생한다. 이 경우 정관변경의 특별결의를 해 정관의 발행한도를 증가하는 절차를 먼저 이행해야 한다.

3. 발행조건에 관한 위반 사례

Q: 리픽싱(Refixing) 조건의 일부가 등기 되지 않은 경우

A: 전환권을 수반하는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일부 리픽싱(Refixing) 조항이 등기가 누락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등기의무는 회사의 의무인바 회사는 투자자 또는 이로 인해 불측의 손해를 입은 제3자(구주 양수인 등)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4. 투자금 사용용도 조항 위반 사례

Q: 투자금을 지정된 사용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A: 투자금 사용용도 위반 사례는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례 중 하나이다. 이 경우 투자자는 계약 위반에 따른 민사적 책임 외에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경우도 있다. 특히 그 용처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 등이 문제된다.

5. 진술과 보장에 관한 위반 사례

Q: 진술과 보장에 있어 분식이 된 재무제표가 제공된 경우

A: 투자유치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허위의 재무제표가 제공된 경우에는 투자자는 기업에게 진술과 보장 위반을 이유로 투자계약서상의 민사적 책임 외에 특정경제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형사적 책임을 추궁하는 경우가 많다.

6. 투자계약서의 동의 조항 위반 사례

Q: 증자를 하면서 투자자의 사전 서면동의를 득하지 않은 경우

A: 증자는 일반적으로 투자자의 사전 서면동의 사항으로 기재된다. 이를 위반한 경우 중대한 위반으로 계약 위반 사유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7. 투자계약서의 동의 조항 위반 사례

Q: 이해관계인이 주식을 처분하면서 투자자의 사전 서면동의를 득하지 않은 경우

A: 이해관계인의 주식 처분의 경우 투자자의 사전 서면동의 사항으로 기재된다. 이를 위반한 경우 중대한 위반으로 계약 위반 사유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위 위반행위의 효력이 문제된다. 계약 위반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취득한 제3자는 유효하게 주식을 취득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이해관계인은 투자자에게 계약 위반으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8. 경업 금지 약정을 위반 사례

Q: 이해관계인이 제3의 회사를 설립해 새로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A: 경업금지약정은 일반적으로 금지 사항으로 기재된다. 이를 위반한 경우

중대한 위반으로 계약 위반 사유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경업금지 약정 위반의 경우 생존권과 관련해 일반적인 직원의 경우에는 달리 판단 될 수 있다.

9. 보고 및 자료 제출 약정을 위반 사례

Q: 이해관계인이 보고 및 자료 제출 의무를 일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A: 보고 및 자료 제출과 관련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이를 계약을 종료할 만큼 중대성이 있다고 볼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와 관련해서 확일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중대한 사항에 대한 보고 위반이고 이로 인해 투자자가 불측의 손해를 입었다는 것과 인관관계를 입증할 경우에는 손해배상 등이 문제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보고의무 위반으로 인해 계약 위반에 따른 조치도 문제될 수 있다. 다만 이는 그 사항에 따라 개별적 판단가능성이 있다.

10. 공동매도권(Tag-along Right) 약정 위반 사례

Q: 이해관계인이 공동매도 약정을 위반해 이해관계인의 주식만을 처분한 경우

A: 공동매도권 약정을 한 경우 이는 이해관계인의 의무사항이다. 다만 이를 위반한 경우에도 해당 주식을 취득한 제3자는 유효하게 주식을 취득하며, 투자자는 이해관계인에게 투자계약에 따른 책임을 추궁할 수 있게 된다.

2 RCPS 투자계약서 기본 조항 구성 및 Check-list

(협의 가능성, 협의 유의점 등)

구분	일반벤처 투자 RCPS	Check-list	비고 (협의 대상)
신주의 발행사항 (투자조건)	○	- 투자조건(Tern-sheet)의 정확한 반영 - 투자유치 이후 지분률에 미치는 영향, 전 환권의 행사로 인해 변동될 지분률, 후속 투자의 규모, 후속투자를 유치함에 있어 장애가 되는 조항 등을 검토	
투자의 선행조건	○	- 법률실사, 회계실사 등을 기초로 투자의 선행조건을 개별적으로 부기하는 경우 해당 조건 협의 검토	
진술과 보장	○		- 진술과 보장의 범 위 협의 사항 -기업입장에서는축소
거래완결 전 해제	○	- 투자자의 일방적 해제 조항 유무 검토	
거래의 완결	○	- 주권 미발행확인서 교부 여부 - 등기의무의 이행시한 - 납입 이후 회사의 교부의무 서류 확인 및 이행	- 투자 이후 회사가 교부할 서류 대상 확인 및 그 범위 협 의
의결권에 관한 사항	○	- 의결권의 유무 - 존속기간	
배당에 있어서 우선권에 관한 사항	○	- 우선배당률 - 우선배당률의 산정 기준 가액 - 배당가능이익의 가능성	

구분	일반벤처 투자 RCPS	Check-list	비고 (협의 대상)
청산잔여재산분배에 있어서 우선권에 관한 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산잔여재산분배우선권의 인정 여부 - 준청산잔여재산분배우선권의 인정 여부 및 인정할 경우 그 사유 - 준청산잔여재산분배우선권이 부여될 경우 통상적으로 이해관계인의 책임 보완 조항(회사가 이행하지 못할 경우 이해관계인이 부담토록 하는 조항)을 두는 경우가 일반적인바 해당 조항의 이해와 수용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청산사유 인정 여부 및 그 범위 협의 사항 - 기업 입장에서는 배제 또는 축소 - 준청산사유 인정할 경우 이해관계인의 책임 조항 및 그 범위
전환권에 관한 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환권 행사의 결과 부여되는 투자자의 주식 수에 대한 예상(Simulation) - 투자자의 주식의 증대될 경우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이 가질 수 있는 반대 옵션에 대한 확인 - 논란이 되고 있는 IPO 리픽싱, 매출 등 경영지표 연동 리픽싱 등에 대한 확인 및 그 범위 확인 - 전환권을 부여받는 자가 누구인지 여부 (단, 이 부분의 협의가 사실상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환권 행사 범위 협의 사항 - 기업 입장에서는 축소
상환권에 관한 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환이율 - 기한 전 상환권이 존재할 경우 그 사유 확인 - 상환이익과 무관한 상환권 (특별상환권) 기재 여부 확인/배제해야 함 - 상환청구가 있을 경우 법률적으로 가능한 상환이익을 증가할 의무 확인 - 상환권은 언제나 부담하는 의무가 아니라 상환이익이 있을 경우 부담하는 의무라는 점에서 협의 및 수용 가능 - 상환권을 부여받는 자가 누구인지 여부 (단, 이 부분의 협의가 사실상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환권 인정 여부 및 그 범위(상환이율) 협의 사항 - 기한 전 상환권이 존재할 경우 그 사유 협의 사항 - 기업 입장에서는 축소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구분	일반벤처 투자 RCPS	Check-list	비고 (협의 대상)
투자금의 용도 및 제한	○	- 일반적으로 표준화되어 있어 협의 어려움	
기술의 이전, 양도, 겸업 및 신회사 설 립 제한	○	- 의무의 범위 확인	- 인정 여부 및 그 범위(대상자 등) 협의 사항 - 기업 입장에서는 축소
임원의 지명	○	- 수용 여부 확인	- 인정 여부 협의 사항
경영사항에 대한 동 의권 및 협의권	○	- 동의권 및 협의권은 현실적으로 이행 가 능한 범위 내에서 협의를 해야 함 - 이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음	- 동의권의 범위 협 의 사항 - 기업 입장에서는 축소
보고 및 자료 제출	○	- 보고 및 자료제출은 현실적으로 이행 가 능한 범위 내에서 협의를 해야 함 - 이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음	- 보고 및 자료제출 의 범위 협의 사 항 - 기업 입장에서는 축소
증자 참여의 우선권 에 관한 사항	○		
기업공개 및 M&A 에 관한 사항	○	- 기한을 정한 IPO의무 조항 여부 확 인/협의의 대상이나 기업에게는 큰 부담인바 숙고 필요	- 인정 여부 및 선 언적 조항으로 반 영 여부 등 협의 사항 - 기업 입장에서는 배제 또는 축소

구분	일반벤처 투자 RCPS	Check-list	비고 (협의 대상)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	- 인정 여부 및 추후 기업 운영 등을 고려해 자유롭게 부여할 수 있는 범위와 동의를 득해 부여할 수 있는 범위를 협의할 수 있음	- 그 부여 범위 협의 사항
주주총회 및 이사회 개최 요구	○	- 인정 여부	- 인정 여부 협의 사항
회계 및 업무감사, 시정조치	○	- 일반적으로 표준화되어 있어 협의 어려움	- 인정 여부 및 그 범위 협의 사항 - 기업 입장에서는 축소 - 다만펀드의 경우의 무적으로 반영하도록 되어 있어 투자자의 양보가 어려움
투자자의 주식 처분	○	- 이해관계인의 우선매수권을 추가할 수 있음	
이해관계인의 주식 처분	○	- 일반적으로 표준화되어 있어 협의 어려움	
투자자의 우선매수 권(Right of First Refusal) 및 공동매 도권(Tag-along)	○	- 일반적으로 표준화되어 있어 협의 어려움	- Drag along Right 부여 배제 협의
주식매수청구권	○	- 그 인정 여부는 협의 대상이 되기 어려움 - 그 범위에 대해 협의를 해야 하며, 이해관계인을 포함할 경우 그 행사 범위에 대한 숙고 - 이해관계인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부담하는 형태로 협의 필요(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 반영; 연대보증 제한 입법화(2025. 12. 30.))	-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사유 범위 협의 사항 - 기업 입장에서는 축소 - 가장 중요한 조항

구분	일반벤처 투자 RCPS	Check-list	비고 (협의 대상)
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	○	- 위약벌은 실 손해와는 무관한 위약으로 인한 추가적인 징벌적 배상금인바, 과도하지 않도록 협의 필요(통상 10%) - 손해배상금의 예정(위약금)을 정할 경우 투자원금 + a가 일반적인바 과도한 금액이 지정되지 않도록 협의 필요	- 위약벌 및 손해배상의 범위 협의 사항 - 기업 입장에서는 축소
지연배상금	○	- 12% 이내 적당 권고	- 지연배상금을 협의 사항 - 기업 입장에서는 축소
이해관계인의 책임	○	- 연대책임 배제 -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해 책임 부담 규정[연대보증 제한 입법화(2025. 12. 30.)]	- 연대책임 배제
본 계약의 효력	○		
계약의 종료	○		
계약의 내용 변경	○		
권리 및 의무의 양도, 승계	○	- 투자자의 주식양도로 무조건 본 계약서상의 지위가 승계되는 경우 회사에게 불리하며, 이 경우 매수대상자 또는 매수주식 수 등을 기준으로 협의 필요	- 본 계약의 효력이 승계되는 자의 범위 협의 사항 - 기업 입장에서는 축소
통지	○		

구분	일반벤처 투자 RCPS	Check-list	비고 (협의 대상)
비밀유지	○		
세금	○		
일부 무효	○		
준거법 및 분쟁 해 결	○		
특약	○		

3 투자자의 회수조항 비교표

구분	일반벤처 투자 RCPS	Check-list	비고
연대보증	-	- 삭제	- 삭제 필요
상환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환이율 - 기한 전 상환권이 존재할 경우 그 사유 확인 - 상환이익과 무관한 상환권 (특별상환권) 기재 여부 확인/배제해야 함 - 상환청구가 있을 경우 법률적으로 가능한 상환이익을 증가할 의무 확인 - 상환권은 언제나 부담하는 의무가 아니라 상환이익이 있을 경우 부담하는 의무라는 점에서 협의 및 수용 가능 - 상환권을 부여받는 자가 누구인지 여부 (단, 이 부분의 협의가 사실상 불가) 	- 만일 상환권을 통한 회수를 하게 될 경우에는 주식이 소각되어 다른 회수수단을 통한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단 위약벌은 별개

<p>(회사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p>	<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삭제 수용이 어려운 것이 일반적 - 그 범위에 대해 협의를 해야 하며, 이해관계인을 포함할 경우 그 행사 범위에 대한 숙고 - 이해관계인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부담하는 형태로 협의 필요 - 회사는 귀책사유 불문하고 부담하는 경우가 많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사유 범위 협의 사항 - 기업입장에서는 축소 - 가장 중요한 조항 - 회사를 상대로 한 주식매수청구권은 배당가능이익이 있는 경우에만(상법상 자기주식 취득 절차 이행 필요) 책임을 부담함
<p>(이해관계인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p>	<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수용 - 이해관계인을 포함할 경우 그 행사 범위에 대한 숙고 - 이해관계인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법이 정하는 사유에 한정해 부담하는 형태로 협의 필요. 단 이해관계인 고유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별도 책임 가능 (이 경우에도 광범위하게 확장되지 않도록 유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사유 범위 협의 사항 - 이해관계인 입장에서는 축소 - 가장 중요한 조항
<p>해제/해지 및 손해 배상청구권</p>	<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손해배상청구 규정 기재 - 위약금 외 추가손해가 있을 경우 투자자가 이를 입증해 청구 가능한 것으로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해배상은 투자자 입증이 어려운 것이 일반적 -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투자자가 보전을 받는 경우 손해배상금은 감액 또는 배제될 것임/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 가능

위약금	△	손해배상금의 예정(위약금)을 정할 경우 투자원금 + a가 일반적인바 과도한 금액이 지정되지 않도록 협의 필요	-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투자자가 보전을 받는 경우 위약금은 감액 또는 배제될 것임/법원이 직권으로 감액 가능
위약벌	○	- 위약벌은 실 손해와는 무관한 위약으로 인한 추가적인 징벌적 배상금인바, 과도하지 않도록 협의 필요(통상 10%)	- 위약벌은 별도 운용 - 위약벌이 과도할 경우 법원은 일부 무효로 판단해 과도한 일부에 대해 책임 배제
이해관계인의 책임	○	- 연대책임 배제 -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법이 정한 사유에 한정해 책임 부담 규정	- 일반 조항

※ 회수수단인 권리가 일부 중복되어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실손해 전보의 의미가 있는바 권리중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며, 명확하게 하기 위해 위 회수수단 사이의 관계를 기재 요청할 수 있음

4 투자자 vs 기업 협상 조건 유의사항 정리¹⁰⁰

※ 실제 협의 가능 범위는 라운드(시드~후기)·기업 단계·교섭력·투자자 성격(모태펀드 출자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며, 본 표는 일반적 경향을 정리한 참고자료임. 권고안(2026년)은 다수 항목에서 이미 기업 친화적으로 조율되어 있음.

구분 / 조항	투자자가 통상 요청하는 조건 (국내 관행)	기업이 협의·수용 가능한 범위 / 대안	실무 고려사항
I. 종류주식 형태 및 핵심 경제조항			
종류주식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환전환우선주(RCPS) 발행; 상환권+전환권+우선권 결합 · 참가적·누적적 우선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고안 기본형인 전환우선주(CPS, 상환권 제외) 채택; 상환의무 미부담 · 상환권은 옵션으로만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초기기업은 보통주/CPS가 부담 적음. RCPS는 회계상 부채 인식 위험
상환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력발생일 후 단기간(예: 3년) 경과 시 상환청구 가능 · 상환이율 연 8~12101% · '특별상환(상환이익 불문)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환청구 개시 시점 연장(통상 5~7년) · 이율 연 3~5%로 인하·분할 상환 합의 · 특별상환(이익 불문)은 배제; 위법·무효 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당가능이익 없으면 법상 상환의무 불성립. 준비금 감액(상법 제461의2) 협력 요구에 유의

100 국내 벤처투자 관행상 투자자가 요청하는 조건과 기업이 협의·수용 가능한 범위; 국내 벤처투자(상환전환우선주 기준) 실무 관행에서 투자자가 통상 요청하는 조건과 투자유치기업이 협의를 통해 수용 가능한 범위·대안을 조항별로 정리한 내용으로 실무상 참고자료 활용.

101 이율 숫자는 예시임.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

구분 / 조항	투자자가 통상 요청하는 조건 (국내 관행)	기업이 협의·수용 가능한 범 위 / 대안	실무 고려사항
전환권· 리픽싱 (회석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환가격 하향 조정(Anti-dilution) · 과거 관행상 Full Ratchet · IPO 공모단가 연동·매출/이익 연동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중평균방식(Broad-based) 채택(권고안) · 스톡옵션 행사분은 조정 예외로 · IPO 연동비율(공모단가의 %) 및 전환가 하한(액면가)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road-based가 창업자 희석 최소 리픽싱 자체 거부는 비현실적 → '범위·공정성' 협의에 집중
배당·잔여 재산분배 우선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가적·누적적 우선주 · 1x 이상 Liquidation Preference · 준청산(Deemed Liquidation) 우선 분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참가적·비누적적 구조 협의 · 배당률 액면가 기준·최소화 · 준청산 우선 분배는 신중(상법상 해산/청산 구분, 채권자 우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고안은 준청산 분배 조항 미채택이 기본. M&A 시 창업자 실수의 영향 시뮬레이션 필요
II. 경영 참여·통제(거버넌스)			
의결권 / 이사 지명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전 의결권 우선주 · 기타비상무이사 지명권 · 교체요구권·D&O 보험·면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사 수 상한(예: 이사회 1/3) · 지명권 발동 최소 지분율(예: 5~10%) 요건 · 읍저버권으로 대체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실무상 의결권 보유가 표준. 사외이사 아닌 기타비상무 이사가 일반적(검직 제한·결격 회피)

구분 / 조항	투자자가 통상 요청하는 조건 (국내 관행)	기업이 협의·수용 가능한 범 위 / 대안	실무 고려사항
동의권· 협의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범위한 사전 동의사항 · 개별 투자자 동의(사실상 만장 일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의 대상 축소·임계치 (Threshold) 설정 · 집합적 동의(라운드별/전 체 2/3)로 전환 · 협의권 범위 확장·Carve-ou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집합적 동의를 표준안. 유상증자(투자단가 초과) · 스톡옵션 10% 내는 동의 제외 협의
보고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시·정기(연차/분기) 보고 · 광범위한 자료 요청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고대상 중요성 기준 도입 · '지체 없이'→'인지일로부터 7~14일' 구체화 · 자료 요청 합리적 사유 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고 누락 누적이 매수청구 사유화될 수 있어 내부 관리체계 필수
회계· 업무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감사 강제·투자자 직접 조사권 · 조사비용 회사 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감사 도입시점을 IPO 일정/규모와 연계 · 조사비용 부담주체·상한 명시 · 다수 투자자 조사권 통합 (2/3 결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DA 체결 전문가로 한정. 위반 시 매수청구 사유 → 합리적 범위에는 성실 협조

구분 / 조항	투자자가 통상 요청하는 조건 (국내 관행)	기업이 협의·수용 가능한 범위 / 대안	실무 고려사항
주식매수 선택권 (스톡옵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행주식총수 10% 한도 · 한도 초과 시 사전 동의 · 행사가 ≥ 투자 인수단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 부여분 별도 풀 관리 · 한도 확대 시 투자자 2/3 동의로 갈음 · 임직원/외부전문가 별도 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벤처기업법상 50% 까지 가능하나 실무 표준 10%. 한도 초과 는 매수청구 trigger 위험
Ⅲ. 투자금 관리·주식 처분			
투자금 용도· 제한· 실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 특정·제3자 대여/주식 매입 금지 · 별도계좌·사용기록부 · 의무적 실사(예: 1년 내 1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 대항목화(유연성) · 불가피한 예외(임직원 임대보증금 대여 등) 허용 · 실사 시기·횟수·비용 사전 합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 위반은 매수청구·형사(횡령/배임) 위험. 실사는 펀드 LP 의무라 협의 여지 작음
이해 관계인 주식 처분 제한 / ROFR·Ta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 서면동의 없는 처분 금지 (Lock-up) · 우선매수권(ROFR)·공동매도 참여권(Tag-along) · 위반 시 가중 위약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가피한 처분은 시기·범위 사전 협의 · 통지·행사 기간(예: 20~30 일) 합리화 · 양수인 의무승계 확인서로 동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자 Key-man 통제 취지 → 투자자 양보 어려움. 처분 필요 시 사전 협의가 현실적

구분 / 조항	투자자가 통상 요청하는 조건 (국내 관행)	기업이 협의·수용 가능한 범 위 / 대안	실무 고려사항
투자자 주식 처분 (자유) / 콜옵션· Drag	· 투자자 보유주식 자유처분·명 의개서 협력 · IR자료 제공	· 경쟁사· 적대적 자 처분 시 이해관계인 우선매수권 (Call Option) 협의 · Drag-along은 행사요건 타 당성 확보	· 회수가 본질이므로 자유처분 원칙. 콜옵 션 요구는 투자자도 수용 가능한 사항일 수 있음
IV. 계약 위반 책임 및 회수			
진술과 보장(R&W)	· 광범위한 진술 보장 · 무과실 책임 · Bring-down(거래종결 시 재 확인)	· 중요성 한정(Materiality)· 인식 한정('아는 한') · 공개목록(Disclosure Schedule) 예외 처리 · 창업자는 인식 범위로 책임 분리	· 가장 빈번한 분쟁 원 인. 공개 목록 누락 없이 작성(투자자가 알았어도 책임 면제 는 별개)
선행조건 (CP)	· 폭넓은 선행조건 부가 · 미충족 시 철회권	· 선행조건 범위 최소화 · 투자자 협력 필요사항(의 투신고 등)은 투자자 책임 명시 · Long-stop Date·자동연장 협의	· 기존 투자자 동의·상 법 제418 공고 누락 에 유의(투자 지연 빈 발)
주식 매수청구권 (Put Option)	· 회사·이해관계인 대상 · 발행가+연 12%·직전1년 최고 가·본질가치 중 최고액 · 폭넓은 발생사유	· 발생사유를 '귀책사유 있는 경우'로 한정 · 이해관계인은 고의·중과실 로 제한 · 사유치유기간(30~60일)· 이율 인하·안분/분할지급	· 회사 매수청구는 자 기주식취득(배당가 능이익 한도) 제한. 발생사유 범위가 핵 심 협상점

구분 / 조항	투자자가 통상 요청하는 조건 (국내 관행)	기업이 협의·수용 가능한 범 위 / 대안	실무 고려사항
위약벌· 손해배상· 지연배상금	· 위약벌(투자금 10%~12% 등)+손배+매수청구 병과 · 가중102 위약벌(매매대금 50%) · 지연배상 연 12%	· 위약벌 수용 여부·금액 협의 · 지연배상 연 6~8% 또는 기준금리 연동·단계적 이율	· 위약벌은 법원 직권 감액 불가(공서양속 위반 시 일부무효). 병과 가능성 인지 후 금액 협의
이해관계인 책임(연대 책임 제한)	· 회사 의무에 대한 연대책임 요구 경향:[다만, 최근 법개정 및 투자문화 변화로 요구 사례 축소 경향]	· 포괄적 연대보증 폐지(권고안) · 4개 사유(선행조건·진보위반·용도위반·무단처분)+고의·중과실로 한정 · 고유의무 위반은 별도	· 벤처투자법상 연대보증 원칙적 금지. 매수청구 발생사유 광범위화로 사실상 연대보증화되지 않도록 범위 제한
V. 회수 경로 및 일반 조항			
기업공개 (IPO)의무	· IPO 노력의무+요건 충족 시 추진의무 · M&A 성실협의	· 성실의무(노력의무) 형태로 기재 · IPO 요청권 행사요건 강화·비용 합리화 · '상장' 범위(코넥스 포함 여부) 명확화	· 강제적무보다 성실의무가 기업에 유리. 다수 투자자 간 IPO/M&A 선호 충돌 조정 필요
경업금지· 기술이전 제한	· 기술·영업비밀 이전 금지 · 경업금지(예: 2년) · 핵심인력 퇴사 제한	· 보호대상·사업영역별지 특정 · 기간 단축(1년)·IPO/계약종료 시 자동소멸 · 정상적 사업활동·공개정보 예외	· 투자 전제(핵심기술·인력) 보호 취지 → 양보 어려움. 직업선택 자유 과도제한 방지 위해 합리적 범위로
계약의 종료	· 종료 trigger 지분율 낮게(예: 10% 미만)	· trigger 지분율 상향(예: 25~50%) 또는 회사 발행 주식총수 기준으로 변경	· IPO 시 자동종료 소액지분 투자자에 동일 관리의무 유지되지 않도록 협의

102 투자자 입장에서 계약 준수를 위해 일정 사유의 경우 부득이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 협의의 수용 필요할 경우 있음.

구분 / 조항	투자자가 통상 요청하는 조건 (국내 관행)	기업이 협의·수용 가능한 범 위 / 대안	실무 고려사항
권리·의무 양도/승계	· 투자자 지위/권리의 제3자 승 계 폭넓게	· 양도 대상 제3자 범위 제한 (특수관계인·계열펀드 등) · 승계 비율 기준(예: 30%) 확인	· 지위양도는 3자 합의 원칙. 무제한 승계 시 다수 주주에 대한 의 무이행 부담 → 범위 제한 협의
분쟁 해결· 관할· 준거법	· 벤처투자회사 소재지/서울중 양지법 합의관할 · 상사중재 한정 요구 가능	· 관할 합의는 통상 수용 · 상사중재 단독 한정은 신중 (부제소 합의 효과)	· 준거법 미정 시 국내 법 적용. 중재 한정 시 법원 소송 각하 → 절충적 검토

■ 2018년 해설서 대비 주요 변경사항 요약

- (1) 계약서 체계: 통합형 → 분리형(SPA+SHA)
- (2) 이해관계인 책임: 포괄적 연대보증 → 4가지 사유 + 고의·중과실 제한적 연대책임
- (3) 전환가격 조정: Full Ratchet 관행 → 가중평균방식(Broad-based WA) 표준화
- (4) 투자자 동의: 만장일치 원칙 → 2/3 이상 동의로 전원 동의 같음
- (5) 해설 구조: 일반 해설 → 레이어 체계(주의/유의/점검) + 6단계 구조화 해설

벤처 투자자

표준계약서 모음집

2026년 개정판

투자 계약서(SPA) + 주주 간 계약서(SHA) 분리형 기준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창업자와 투자자를 위한 실전 벤처 투자 계약 가이드북

사전동의권·상환권·전환권·IPO·연대책임 등
주요 계약조항별 중요도 등급 해설



부록

벤처투자
표준계약서 모음집

저작권 및 이용 안내 (Copyright)

본 해설서 및 부록으로 수록된 표준계약서의 저작권은 한국벤처캐피탈협회(KVCA)에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로서, 저작권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단으로 전재, 복제, 배포, 전송하거나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가공·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을 금합니다.

본 저작물은 벤처투자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과 실무 지원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문 및 부록에 수록된 계약서 예시와 해설은 일반적인 참고자료이며, 개별 투자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효과와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계약의 작성·검토·체결 과정에서는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저작물의 내용만을 근거로 이루어진 의사결정이나 계약 체결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한국벤처캐피탈협회(KVCA)는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부록

벤처투자 표준계약서 모음집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들어가며

벤처투자는 미래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불확실성에 대한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투자자는 성공을 보장받지 못한 기업에 자본을 투입하고, 창업자는 실패의 가능성을 안고 새로운 도전에 나섭니다. 벤처투자는 본질적으로 위험을 감수하는 행위이며, 투자계약은 그러한 위험을 어느 한쪽이 아닌 함께 부담하기 위한 약속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벤처투자 시장의 비약적인 성장 속도에 비해, 기존의 계약 관행은 급변하는 글로벌 투자 환경과 선진 제도를 신속하고 유연하게 반영하는 데 한계가 존재했습니다. 이는 시장의 변화에 발맞추어 리스크를 함께 분담하고 성장을 견인하려는 벤처투자 본연의 의지를 온전히 담아내기에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었습니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는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보다 균형 잡힌 벤처투자 계약 문화를 정착하고자 노력해 왔고, 2026년 개정 표준계약서에 그 고민의 결과를 담았습니다. 투자자 보호와 창업자의 도전이라는 두 가치를 조화롭게

반영하고, 글로벌 투자 실무에 부합하는 계약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벤처투자 본연의 정신을 구현하고자 하였습니다.

벤처투자 시장의 성장은 훌륭한 기업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실패를 경험한 창업자가 다시 도전할 수 있고, 투자자가 합리적인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환경이 함께 마련될 때 비로소 시장은 성숙해집니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는 본 표준계약서가 투자자와 기업이 신뢰를 바탕으로 동행하는 기준이 되어, 더 많은 혁신과 더 큰 도전이 이어지는 벤처투자 생태계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 한국벤처캐피탈협회(KVCA)

들어가며	4
1 전환우선주식(분리형) 계약서	7
가. 투자계약서	8
나. 주주 간 계약서	29
2 상환전환우선주식(분리형) 계약서	53
가. 투자계약서	54
나. 주주 간 계약서	76
3 보통주식(분리형) 계약서	99
가. 투자계약서	100
나. 주주 간 계약서	116
4 전환사채 계약서	139
5 신주인수권부사채 계약서	177

1 전환우선주식(분리형)

<2026. 4. 개정본>

(가)

투자계약서

20[] []. []. [].

투자자

1. [투자자명]

2. [투자자명]

회사

[회사명]

이해관계인

[성명]

다 음

제1조 (신주의 발행 사항)

① 회사는 본 계약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신주(이하 "본건 신주")를 발행하고 투자자는 본건 신주를 인수한다.

1. 본건 신주의 종류 및 내용: 별지 1.에 의함
2. 본건 신주의 발행 총수: 00,000주
3. 본건 신주의 1주당 액면가액: 금 000원
4. 본건 신주의 1주당 발행가액: 금 000,000원
5. 본건 신주의 총 인수가액: 금 000,000,000원
6. 본건 신주의 납입기일: 20[]년 []월 []일
7. 각 투자자별 본건 신주의 배정 수량과 인수가액

투자자명	배정 수량	인수 가액
[투자자명]	[]주	금[]원
[투자자명]	[]주	금[]원
합 계	[]주	금[]원

②회사는 납입기일로부터 3영업일 전까지 투자자에게 주금의 납입을 위한 은행의 별단예금 계좌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조 (투자의 선행조건)

본 계약에 따른 투자자의 본건 신주 인수는 인수가액의 납입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조건이 충족되는 것을 선행조건으로 한다.

1. 회사 및 이해관계인이 본 계약에 따라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이행하였을 것
2. 회사 및 이해관계인이 본 계약에서 행한 진술과 보장이 진실되고 정확할 것
3. 본 계약에 따라 투자자가 인수하기로 예정된 본건 신주의 발행을 금지하거나 제

한하는 등 본 계약의 이행을 방해하는 소송 또는 기타의 절차(행정절차, 감사 등 포함)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우려가 없을 것

4. 회사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부의 인허가 등을 획득하였을 것
5. 회사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제3자의 동의 등을 획득하였을 것
6. 회사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관련 법령의 절차(상법 제418조 등) 및 회사 내부 절차(정관 및 내부규칙 변경, 주주총회결의, 이사회결의 등 포함)를 이행하였을 것
7. 회사가 투자자의 동의없이 정관 및 내부규칙을 변경하거나 투자자와 협의 없이 이사회 결의, 주주총회결의를 하지 않았을 것
8. 회사가 본 계약의 체결 이후 자본구조, 경영상태, 재무상황의 통상적이지 않은 변동 내지 부정적 변동, 통상적인 영업활동에서 벗어난 행위가 없을 것

제3조 (진술과 보장)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거래완결일까지 각자 **별지 2**. 진술과 보장 사항이 진실되고 정확함을 진술하고 보장한다.

제4조 (거래의 완결)

- ① 투자자는 납입기일 또는 회사와 투자자가 달리 합의하는 날에 제2조 각 호의 실행조건의 충족을 조건으로 하여 제1조 제2항에 따라 회사가 통지한 계좌에 인수가액 전액을 납입하여야 하며, 인수가액 전액이 납입된 날(이하 "거래완결일")에 거래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
- ② 회사는 거래완결일의 다음날에 본건 신주를 발행하여 주주명부에 변동 사항을 기재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본 계약에 의한 주주권을 표창하는 주권. 단, 주권을 발행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면 주권미발행확인서.
 2. 본건 신주의 인수가액의 납입영수증
 3. 변동사항이 반영된 주주명부 사본

- ③ 회사는 거래완결일로부터 2주 이내에 자본증가의 상업등기를 이행하고, 법인등기부등본, 기타 본 계약상의 주식 인수를 적법, 유효하게 하는 것으로서 투자자가 요청하는 자료를 투자자에게 교부한다.

제5조 (거래완결일 전 해제)

- ① 본 계약은 거래완결일 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귀책사유 없는 당사자에 의하여 해제될 수 있다.
 - 1. 일방 당사자가 본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거나 제3조에 따른 진술과 보장 사항에 허위 또는 오류가 발견되어 상대방으로부터 통보를 받았으나 이를 5일 이내에 이를 치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 2. 선행조건 불충족 기타의 사유로 거래완결이 20[]년 []월 []일까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선행조건이 충족될 수 없는 것이 확실해진 경우
- ② 본 조에 의한 계약 해제 시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이와는 별도로 상대방이 지출한 모든 비용(회계실사 비용, 법률실사 비용 등 전문가 자문료를 포함)을 보전하여야 한다.

제6조 (본 계약의 효력)

- ① 본 계약서의 별지와 첨부서류는 본 계약서와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서 그에 따른 내용은 본 계약 내용의 일부를 구성한다.
- ② 본 계약상의 내용이 본 계약 체결 이전의 당사자들 사이의 어떠한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교섭, 합의 등의 내용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의 내용이 우선한다.
- ③ 본 계약은 투자자, 회사, 이해관계인의 서명날인과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 ④ 본 계약은 전자 또는 수기의 형식을 포함하여 수개의 부분으로 체결될 수 있으며, 각 부분은 모두 원본으로 인정되나 하나의 법률문서를 구성한다.

제7조 (계약의 내용 변경)

- ①당사자는 전원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②투자자가 서면으로 명확한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본 계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이상, 투자자의 어떠한 행위도 투자자가 본 계약상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제8조 (통지)

본 계약에 따른 당사자들에 대한 통지 및 서류 송부는 아래의 주소에 인편, 팩스, 등기우편 또는 택배, 전자우편(이메일) 또는 DocuSign, Adobe Sign 등 당사자가 합의한 전자 계약 플랫폼으로 발송한다.

1. 투자자1에 대한 통지

- 주소: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이메일:

2. 투자자2에 대한 통지

- 주소: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이메일:

3. 회사에 대한 통지

- 주소: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이메일:

4.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

- 주소:
-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 ② 통지처가 변경된 경우 해당 당사자는 변경일로부터 지체없이 본 조에 따른 통지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변경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변경 통지가 도달한 이후에 비로소 변경된 통지처로의 통지가 유효하다. 변경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본 조에 기재된 기존 통지처로의 통지는 유효하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 ③ 전항의 경우 본 계약에 따른 통지처로 발송한 경우 발송일로부터 2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
- ④ 본 계약에서 정한 투자자의 모든 권리 및 사실행위는 본 계약서의 날인 란에 기재된 업무집행조합원이 투자자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투자자를 위하여 재판상 및 재판외에서 행사한다.

제9조 (비밀유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정보는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밀로 하고,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본 조의 의무는 본 계약의 효력이 상실하는 경우에도 2년간 그 효력이 존속된다.

1. 당사자가 공개하기로 합의한 사항
2. 공지된 정보
3. 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제3자로부터 이미 적법하게 취득한 정보
4.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한 법률자문, 소의 제기,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5. 법원 또는 정부기관이 적법하게 공개 또는 제공을 요구한 정보(단, 사전에 상대방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세금)

본 계약의 당사자에게 부과된 조세 공과금은 법령상 부담하여야 할 당사자가 각자

부담한다.

제11조 (일부 무효)

본 계약 또는 이와 관련하여 작성된 서류에 명시된 한 개 또는 수개의 조항이 법령에 따라 무효, 위법 또는 집행불능으로 되더라도 본 계약에 명시된 나머지 조항의 효력, 적법성 및 집행가능성은 그로 인하여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12조 (준거법 및 분쟁해결)

- ① 본 계약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된다.
- ② 본 계약에 따라 발생한 모든 분쟁의 제1심 관할법원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지정한다.

제13조 (특약사항의 효력)

특약사항은 본 투자계약서의 본문의 내용을 수정·삭제·추가하는 사항으로서 본문의 내용이 특약사항의 내용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의 내용이 그 효력에 있어서 우선한다.

제14조 (특약사항의 구체적 내용)

- ①
- ②

[이하 서명 또는 날인을 위하여 여백]

본 계약의 체결 사실을 증거하기 위하여 투자자, 회사, 이해관계인은 대표자 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본 계약서의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 란에 서명 날인하게 하는 방법으로 본 계약을 체결하고, 각 1통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보관하기로 한다.

계약 체결일 : 20[] . [] . [] .

투자자:	[투자자명] [주소] 업무집행조합원 [회사명] 대표이사 [성명] (인) [투자자명] [주소] 업무집행조합원 [회사명] 대표이사 [성명] (인)
회사:	[회사명] [주소] 대표이사 [성명] (인)
이해관계인:	[성명] (인) 0000년 00월 00일 생 [주소]

별지 1.

본건 신주의 종류 및 내용

1. 본건 신주의 종류

전환우선주식(이하 “본건 종류주식”)

2. 1주당 액면가액

금 000원

3. 의결권에 관한 사항

본건 종류주식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본건 종류주식에 불리한 주주총회 결의 등이 있는 때에는 전체 주주총회와 별도로 그 안건에 대하여 본건 종류주식의 종류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4. 존속기간에 관한 사항

본건 종류주식의 존속기간은 효력발생일로부터 []년으로 한다.

본건 종류주식은 존속기간 내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 존속기간 만료 다음날 별도의 절차 없이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5.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본건 종류주식은 보통주식과 동등한 신주인수권이 있으며,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본건 종류주식과 같은 종류의 종류주식으로,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회사가 발행하기로 한 종류의 주식으로 배정받을 권리가 있다.

6. 배당에 있어서 우선권에 관한 사항

- ① 본건 종류주식은 참가적, 누적적 우선주로서,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는 본건 종류주식을 보유하는 동안 1주당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연 []%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누적적으로 우선하여 배당받고, 잔여배당가능이익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로 함께 참가하여 배당받는다.
- ② 주식배당의 경우 종류주식과 보통주식을 합한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같은 종류의 종류주식 주식으로 배당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단,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받는다.
- ③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주주총회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의 승인 및 배당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④ 본건 종류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환권이 행사된 경우, 전환된 주식에 대하여 전환 전까지의 기간 동안 배당결의 되었으나 그 배당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면 동 미지급 배당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사가 당해 주식의 주주에게 별도로 지급하기로 한다.

7. 잔여재산 분배에 있어서 우선권에 관한 사항

- ① 본건 종류주식은 잔여재산 분배에 있어서 우선적 지위가 부여된 종류주식으로,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는 회사가 청산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1주당 발행가액 및 이에 대하여 연 []%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보통주식 주주에 우선하여 분배받는다. 이 경우 청산 이전까지 미지급 배당금이 있는 경우 동 금액에 대하여도 동일하다.
- ②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에 대하여 잔여재산을 우선 분배한 후 보통주식에 대한 주당 분배금액이 본건 종류주식에 대한 주당 분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통주식의 주주와 동일한 비율로 함께 참가하여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다.

8. 전환에 관한 사항

- ①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는 효력발생일로부터 []년이 경과하는 날의 전일까지 본건 종류주식을 언제든지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 ②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는 전환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 및 수, 청구연월일을 기재하여 기명 또는 서명날인한 전환청구서 2통 및 주권이 발행된 경우 주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한다.
 2.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은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가 제1호에 따라 전환청구서 및 전환될 본건 종류주식의 주권이 제출된 날짜의 영업시간 종료 직전에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3.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가 전환에 의하여 보통주식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상기 제2호의 날짜를 기준으로 주주명부상의 주주로 간주된다.
 4. 회사는 전환청구서 또는 전환될 본건 종류주식의 주권을 인도받은 즉시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그가 부여받을 권리가 있는 수만큼의 보통주식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인도하는 등 주식 발행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 ③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 조건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만약 다음 각 호의 전환가격 조정 사유 중 복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순차적으로 중복 적용한다.
 1. 본건 종류주식 1주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보통주식 수(이하 "**전환비율**")는 1주이며, 보통주식의 발행가액(이하 "**전환가격**")은 본건 종류주식의 1주당 발행가액으로 한다.
 2.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 전에 회사가 발행한 신주의 발행가액, 전환사채의 전환가격,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이 그 당시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가격은 다음 산식에 따라 조정한다. 단, (i) 투자자가 동의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신주 발행, (ii) 기존 발행된 전환증권의 전환·행사 및 (iii) M&A에 따른 신주발행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text{조정후 전환가격} = \text{조정전 전환가격} \times (A + B) / (A + C)$$

A: 신주 발행 직전 발행주식 총수

[(i) 발행된 보통주, (ii) 발행된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가정 주식 수, (iii) 전환사채/신주인 수권부사채 등 전환/행사 가능 증권의 전환/행사 가정 주식 수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B: 신주 발행으로 회사에 납입된 주금총액 ÷ 조정전 전환가격

(= 신주발행가액 × 신주발행주식 수 ÷ 조정전 전환가격)

C: 신주 발행주식 수

무상증자, 주식배당 등: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통하여 무상증자를 하거나 주식배당을 통하여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text{조정후 전환가격} = \text{조정전 전환가격} \times (\text{조정전 발행주식 총수}) / (\text{조정후 발행주식 총수})$$

4.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 전에 회사가 주식을 분할 또는 병합하는 경우 전환비율은 그 분할 또는 병합의 비율에 따라 조정된다. 단주의 평가는 주식의 분할 또는 병합 당시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5.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 전에 회사가 무상감자를 하는 경우 전환비율은 그 감자의 비율에 따라 조정한다. 단, 경영과실 등의 사유로 특정 주주에 대해서만 차등적으로 무상감자를 하는 경우에는 전환비율을 조정하지 않는다.
6. 회사의 IPO 공모단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그 당시의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가격을 회사의 IPO 공모단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정한다.
7. 회사가 타사와 합병 시 교환비율 산정을 위한 평가가액이 그 당시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가격을 그 평가가액으로 조정한다.

- ④ 회사는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 전까지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이하 “수권주식”)에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으로 발행가능한 주식 수를 유효하여야 한다. 만약, 회사의 잔여 수권주식 수가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으로 발행가능한 주식 수에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권주식 수를 증가시켜야 한다.
- ⑤ 전환주식의 발행, 전환의 청구, 기타 전환에 관한 사항은 상법 제346조 내지 제351조의 규정에 따른다. 단, 전환권을 행사한 종류주식 및 전환으로 발행된 신주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청구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 ⑥ 단주의 처리는 일반 관례에 따르기로 하며,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1주 미만의 단수주가 발생하는 경우 단수주에 해당하는 주식은 발행하지 아니한다. 단, 이에 대하여는 해당 시점의 전환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 ⑦ 본조에 의한 본건 종류주식의 보통주식으로서의 전환 이후에도 투자자는 본 <별지1>의 본건 종류주식의 내용을 제외하고 회사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가지는 본 계약 상의 권리를 그대로 보유한다.

별지 2.

진술과 보장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본 계약 체결일 현재 및 거래완결일 현재 아래 사항이 진실되고 정확함을 진술하고 보장한다.

제1장 공통사항

제1조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회사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어 유효하게 존속 중인 주식회사로서 회사에 대하여 파산, 회생 등 도산절차와 관련된 어떠한 신청도 제기된 바 없으며, 지급불능, 지급유예, 워크아웃 절차 등 회사의 주주 및 채권자의 권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 없음을 본 계약 체결일 및 거래완결일을 기준으로 진술하고 보장한다. (이하 진술 및 보장 전체에 대한 기준시점은 본 계약 체결일 및 거래완결일이다).

제2조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본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법률적, 사실적인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주주총회 및 이사회 의 승인을 비롯하여 본 계약의 체결 및 유지를 위하여 회사가 이행하여야 하는 모든 조치를 취하였음을 진술하고 보장한다.

제3조 본 계약의 체결 및 신주의 발행은 법률이나 규정 기타 관계법령을 위반하지 아니며, 회사의 정관에 부합하고, 회사 및 이해관계인이 당사자인 계약 또는 기타 의무의 위반을 가져오지 아니함을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진술하고 보장한다.

제4조 본 계약에 의한 회사 및 이해관계인의 의무는 본 계약에서 정한 바 그대로 적

법, 유효하고 구속력이 있으며 회사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집행 가능한 법적 의무를 구성함을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진술하고 보장한다.

제5조 투자자가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하는 주식은 적법하며 유효하게 발행될 것이며, 투자자의 본 계약상의 권리 혹은 주식에 대한 권리 행사를 실질적으로 방해할 만한 행정절차(행정처분, 조사, 감사, 수사 포함), 법령, 또는 보전처분을 포함한 법원의 재판에 의한 어떠한 제한이나 회사와 이해관계인이 당사자이거나 구속을 받는 계약상의 어떠한 제한도 존재하지 아니함을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진술하고 보장한다.

제2장 회사에 관한 사항

제6조 (자본에 관한 사항)

① 회사의 발행주식은 본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1주당 액면가액이 금 []원인 보통주식 []주, 종류주식 []주이고, 그 이외의 발행 주식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주주별 지분율, 전환사채 발행내역, 신주인수권부사채, 주식매수선택권, 주식배당, 기타 장래 회사의 지배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반 권리의 주요 내용 및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내역, 조건부지분인수계약 체결 내역은 아래 주식 등의 현황 기재와 같으며 아래 기재 사항 이외에 회사의 주식 지분율 기타 장래 회사의 지배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떠한 사항도 없다.

1. 주주별 소유주식 수

주주명	주식 수	지분율(%)	기타 (담보권설정여부,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여부)
			대표이사...사내이사 등
합계	[]주	100.0%	

2. 전환사채

회수	총 발행가액	미 전환금액	전환가격	전환기간

3. 신주인수권부사채

회수	총 발행가액	미행사금액	행사가액	행사기간

4.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받은 자	주식 수	행사가액	행사기간	행사방법

5. 조건부지분인수계약, 조건부지분전환계약 및 그 밖에 주식으로 전환 또는 교환 될 수 있는 계약 체결 내역

계약 체결일	투자자	투자금	가치한도	할인율	기타 주요 조건

- ② 회사는 설립 이후 본 계약 체결일 현재까지 주식의 발행에 있어서 가장납입을 한 사실이 없다.
- ③ 회사는 계열회사 또는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통상의 범위에서 벗어날 정도로 회

사에 불리한 매출거래, 보증 또는 담보제공 등을 한 사실이 없다.

제 7조 (자산에 관한 사항)

- ① 회사는 현재 사용중인 부동산, 동산, 기계, 차량, 사무실 기기 및 기타 영업에 필요한 모든 권리, 물건 등은 적법하게 회사의 소유로 되어 있거나, 회사가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을 진술하고 보장한다.
- ② 회사는 현재 보유 사용하고 있는 모든 특허권을 포함한 지식재산권 기타 무형자산은 회사가 적법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제3자로부터 권리를 침해 받고 있지 않음을 진술하고 보장한다.
- ③ 회사는 통상적인 사업경로에 따른 제품의 판매 등을 제외하고 회사의 자산이나 권리를 매매, 교환 또는 기타 방식으로 처분하지 아니하였음을 진술하고 보장한다.

제 8조 (부채에 관한 사항)

- ① 회사의 차입금, 담보제공 및 입보 내역은 아래 기재와 같다.

금융기관 등 (채권자)	채무금액	제공담보		입보내역		비고
		담보종류	설정액 (실현가)	한도	사용액	

- ② 회사의 금융기관 차입, 회사 발행 사채 등과 관련된 계약에는 본 거래로 인하여 당해 계약에서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거나 당해 계약의 상대방이 회사에 대하여 즉각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회사는 진술하고 보장한다.

제9조 (재무제표에 관한 사항)

- ① 투자자에게 제공된 회사의 20[]년 []월 []일 기준 재무제표는 대한민국에서 통

용되는 기업회계기준을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 및 관행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회사의 재무상태 및 영업현황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음을 회사는 진술하고 보장한다.

- ② 투자자에게 서면 고지된 것을 제외하고 상기 재무제표 기준일 이후에, 회사의 재무상태, 자산 및 부채, 영업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변경이나 변동 사항은 없음을 회사는 진술하고 보장한다.
- ③ 회사가 최선의 노력으로 파악한 결과 상기 재무제표에 기재되지 아니한 부외부채(우발채무 포함) 및 부외자산은 실사자료로 제시한 바와 같고, 실사자료에 나타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투자자의 본 계약체결 및 거래완결에 영향을 줄 만한 중대한 부외부채 및 부외자산은 없다.

제10조 (관계회사에 관한 사항)

회사의 관계회사는 아래 기재와 같다. 여기서 “관계회사”란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이 주식 또는 주식연계사채를 보유하고 있거나 기타 추후 주주로 인정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를 말한다.

회사명	소재지	업종	관계	주주 구성

제11조 (법령 위반, 소송 등에 관한 사항)

- ① 회사는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업에 필요한 정부 인허가 등을 모두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으며, 이 인허가 등이 취소될 위험에 처해 있지 않다.
- ② 회사는 회사의 자산(부동산, 설비, 임차물 및 장비 등) 및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지역제한, 안전, 공해 및 환경, 노동,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포함하여 회사와 그 생산과정 및 제품에 적용되는 제반법령, 규정 및 명령을 준수하였으며, 부당하게

임금, 퇴직금 등을 미지급한 사실이 없다.

- ③ 투자자에게 서면 고지된 것을 제외하고, 회사의 사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현재 진행되는 소송(보전소송 포함), 중재 또는 행정절차 기타 분쟁은 없음을 회사는 진술하고 보장한다.
- ④ 회사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소송, 중재 또는 기타 분쟁이 없으며, 추후 분쟁의 위험에 처해 있지 않다.
- ⑤ 회사는 주주총회 및 이사회 관련 제반 서류를 작성 비치하고 있으며, 그와 관련된 법규 위반사항이 없다.

제12조 (세금, 보험 등에 관한 사항)

- ① 회사는 국세, 지방세 등 고지된 납세 의무를 이행하였고,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미납된 세금은 없음을 진술하고 보장한다.
- ② 회사는 회사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제반 보험(4대 보험, 기타 영업 관련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거나 해당 업계에서 회사와 유사한 기업들이 통상적으로 가입하고 있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진술하고 보장한다.

제13조 (기타)

회사는 투자자 또는 그 실사관련 자문사들에게 제공한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정관 및 각종 계약서, 사업계획서 등 일체의 서면, 서류, 정보 기타 자료는 제공일 현재 회사에 관한 사항을 정확히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진실되고 거짓이 없으며, 중요한 사항을 생략하지 않았고, 중대한 면에서 의미를 오도하지 않는다. 회사의 임직원이 실사 과정에서 구두로 답변한 내용에 관하여도 고의 또는 과실로 허위 답변한 사실이 없음을 진술하고 보장한다. 단, 사업계획서 상에 미래에 대한 예측 및 기타 사업관련 계획 사항은 경영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제3장 이해관계인에 관한 사항

제14조 이해관계인은 투자자에 대하여 본 별지의 진술과 보장 사항이 본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서 모두 진실되고 거짓이 없음을 보장하고, 나아가 동 진술과 보장 사항이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 이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이해관계인은 이로 인하여 투자자가 입게 되는 모든 손해, 손실 및 비용을 본 계약에 따라 회사와 함께 배상 또는 보상한다.

제15조 이해관계인은 위 제14조에 추가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진술하고 보장한다.

- ① 이해관계인이 가지고 있는 회사의 주식은 첨부하는 주주명부의 기재와 같고, 이해관계인은 이를 자신의 계산으로 취득하였고 가장납입한 바가 없다.
- ② 위 주주명부는 이해관계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들의 이름, 관계 및 그 소유주식 수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다.
- ③ 이해관계인이 본 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이행함에 있어 법령상 또는 계약상의 제한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 ④ 이해관계인은 본 계약 체결일 현재 회사의 주주 또는 종업원으로서의 지위와 관련하여 제3자와 분쟁을 하고 있지 아니한다.

제16조 이해관계인은 본 진술과 보장 사항에 영향을 미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시 투자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투자자의 요청에 따라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나)

주주 간 계약서

20[] []. []. [].

투자자

- [투자자명]
- [투자자명]
- [투자자명]

회사

[회사명]

이해관계인

[성명]

[이하 투자계약서 각 조항을 위한 여백]

다 음

제1장 총설

제 1조 (목적)

본 계약은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인수한 각 투자자의 경영참여에 관한 사항, 주식 처분에 관한 사항, 본 계약 및 각 투자자가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위하여 회사 및 이해관계인과 체결한 신주인수계약(이하 “각 신주인수계약(서)”) 위반에 관한 책임 등을 정하고, 이와 관련된 투자자, 회사, 이해관계인의 구체적인 법률관계를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본 계약의 효력)

- ① 본 계약은 투자자, 회사, 이해관계인의 서명날인과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 ② 본 계약상의 내용이 본 계약 체결 이전의 당사자들 사이의 어떠한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교섭, 합의 등의 내용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의 내용이 우선한다.
- ③ 본 계약과 각 신주인수계약서에서 정한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 주식의 본질적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은 본 계약이 우선한다.
- ④ 본 계약은 전자 또는 수기의 형식을 포함하여 수개의 부분으로 체결될 수 있으며, 각 부분은 모두 원본으로 인정되나 하나의 법률문서를 구성한다.

제2장 회사 경영에 관한 사항

제3조 (투자금의 용도 및 제한)

- ① 회사는 각 신주인수계약에 의하여 투자자로부터 받은 신주의 인수금액(이하 “**투자금**”)을 **별지 1. 투자금의 사용용도의 기재와 같이 사용하여야 하며**, 특히 투자금으로 제3자에게 자금의 대여 또는 제3자의 주식을 매입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별지 1. 투자금의 사용용도의 기재와 달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로부터 사전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③ 회사는 투자금을 다른 자금과 구분되는 별도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④ 회사는 투자금의 사용기록부를 작성·비치하여 두고 투자자의 열람 및 등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⑤ 투자자는 언제든지 투자금이 사용용도에 맞게 사용되었는지를 투자자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을 통하여 투자금 사용내역에 대한 실사를 진행할 수 있다. 단, 투자 후 1년 이내의 기간에 회사는 의무적으로 1회 이상 투자금 사용내역에 대한 실사를 받아야 한다.

제4조 (기술의 이전, 양도, 겸업 및 신회사 설립 제한)

- ①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투자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현재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또는 개발 중이거나 개발계획이 확정(외부기관에 의뢰하여 개발하는 경우도 포함, 이하 같음)되었거나 도입 예정인 영업비밀, Know-how, 정보, 기술 등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이전 또는 양도, 담보 제공할 수 없다.
- ② 이해관계인은 투자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현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 개발 중이거나 도입하는 기술의 일부 또는 전부와 관련된 신회사를 설립하거나 개인사업을 할 수 없으며, 경쟁업종 종사, 경쟁사 주식취득 또는 회사가 경영하는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법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임원, 기술고문 및 직원으로 참여하는 등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③ 전항에서 정한 이해관계인의 의무는 해당 이해관계인이 회사를 퇴사하거나 본 계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회사의 주식 전체를 처분하였다도 본 계약이 종료되지 않는 한 퇴사일 또는 처분일부터 2년간 유효하다.

제5조 (경영사항에 대한 동의권 및 협의권)

- ①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투자자에게 각 사항의 시행일로부터 2주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한 뒤 각 사항의 시행일의 전일까지 투자자로부터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투자자의 서면동의를 본 계약의 투자자의 의결권 주식 총수의 3분의2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 투자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정관의 변경

2. 자본의 증감, 주식관련사채의 발행,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3. 회생신청, 파산신청, 해산, 청산, 합병, 분할, 분할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 영업양수도, 타회사의 인수, 경영임대차, 위탁경영 기타 회사조직의 근본적인 변경

4.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의함), 임직원, 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의함)과의 거래

5.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의 국내외 회사 설립 또는 다른 회사의 50% 이상 지분 취득

- ②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투자자와 사전에 협의하고 투자자에게 업무처리에 따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2. 건당 전년도 자산총계의 [5% 이상 또는 연간 누계액 기준 전년도 자산총계의

- [10]% 이상의 규모에 해당하는 자산의 취득 및 처분, 투자(주식 및 사채인수 포함), 자금대여, 담보 제공, 보증, 신규 자금차입 또는 채무의 부담
3. 각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가 전년도 급여와 비교하여 [20]%이상 상승하는 경우
 4. 본건 투자 당시 사업계획에 명시한 것과 현저히 다른 사업에 착수하거나, 주요 사업의 중단, 포기
 5.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변경

제6조 (보고 및 자료 제출)

- ① 회사는 투자자의 별도 요청이 없더라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단, 본 계약의 다른 약정에 의한 통지의무와 중복되는 항목에 있어서는 어느 경우든 먼저 도래하는 기일까지 통지 또는 보고되어야 한다.
 1. 회사가 발행, 배서 또는 보증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거래가 정지된 때
 2. 파산, 회생절차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의 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부실징후기업으로 인정되는 때
 3. 소송 내지 중재 절차가 시작된 때
 4. 정부 및 준정부기관에 의한 행정적 제재
 5. 회사의 사업에 필요한 중요 기술인력의 채용 및 퇴직 상황
 6. 회사가 제세공과금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납기전 납부고지를 받은 경우
 7. 회사의 휴업 또는 폐업
- ② 회사는 투자자의 별도 요청이 없더라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해진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연차보고 - 다음 회계연도 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

가.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은 결산 재무제표

나. 연간경영보고서(사업계획서)

다. 주주명부(보고일 기준)

라. 세무조정계산서

2. 분기보고 - 다음 분기 시작일로부터 60일 이내

가. 분기 재무제표

나. 분기 경영보고서

- ③ 회사는 투자자가 요청하는 경영자료를 투자자가 요청하는 양식에 따라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투자자에게 제공하기로 한다.

제7조 (회계 및 업무감사, 시정조치)

- ① 회사는 20[] 회계연도부터 기업공개를 위한 제반 준비절차로서 투자자의 서면 동의를 받은 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지정하여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 ② 투자자는 회사의 경영 및 재산 상태를 확인하고 계획된 사업의 수행에 대해 투자자의 입장에서 선의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신의 직원 또는 외부의 전문가를 파견하여 회사의 회계 및 업무 전반에 관한 조사 및 기타 투자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고,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이에 대하여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 ③ 본 조에 따른 조사 및 감사 등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 ④ 투자자는 회사의 경영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 결과 또는 투자자의 조사 결과에 따라 회사 및 이해관계인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시정을 요구 받은 사항에 대해 정하여진 일정한 기간 내에 시정 조치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회사는 회사 경영 및 기술개발 등 사업 전반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임직원 등에 대해, 본건 거래완결일 전 이미 부여된 것과 제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투자자의 동의 하에 부여된 것을 포함하여 그 행사로 인해 발행될 수 있는 주식 지분을 총계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시점의 발행주식총수의 10% 이내인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제9조 (임원의 지명)

- ① 투자자는 동일 라운드에 동반 투자하는 투자자들과 협의하여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기타비상무이사) [1]인을 지명할 권리를 가지며,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투자자가 지명한 이사(이하 “투자자 지명이사”) 회사의 이사로 선임될 수 있도록 즉시 임시주주총회 개최 등 이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단 투자자들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투자자 지명이사를 지정한다.
- ② 투자자는 언제든지 투자자 지명이사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와 이해관계인은 이에 응하여 투자자 지명이사의 교체를 위한 임시주주총회의 개최 등의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 ③ 투자자 지명이사는 회사의 채무에 대한 보증을 하지 아니하며, 투자자 지명이사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책임을 면제받고,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투자자 지명이사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이 제3자에게 부담, 지급하게 되는 비용을 투자자 지명이사에게 보전해 준다.
- ④ 회사는 본 계약 체결일 현재 회사의 임원에 대한 것과 동일한 수준으로 투자자 지명이사에 대해 임원책임보험을 부보하도록 한다.

제10조 (주주총회 및 이사회 개최 요구)

투자자가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주주총회 개최를 요구하거나, 투자자 지명이가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이사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즉

시 임시주주총회 내지 이사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11조 (기업공개 및 M&A에 관한 사항)

- ①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가능한 이른 시간 내에 회사의 주권이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이하 “**기업공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회사가 기업공개 요건을 사실상 충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및 이해관계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기업공개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투자자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기업공개를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 ②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다른 법인으로부터의 인수·합병의 제의가 있는 경우 투자자와 협의하여 인수·합병의 협의에 최대한의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야 한다.

제3장 주식의 처분에 관한 사항

제12조 (투자자의 주식 처분)

- ① 투자자는 각 신주인수계약서에 의해 인수한 주식(이하 “인수주식”)을 포함하여 각 신주인수계약서의 거래완결일 이후 투자자가 보유하게 된 회사의 주식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다. 회사는 투자자의 요청에 따라 처분 주식의 명의개서 등 처분에 따른 권리이전에 필요한 절차를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 ② 투자자가 제1항에 따라 주식의 처분을 위하여 회사 IR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

제13조 (이해관계인의 주식 처분)

- ① 이해관계인은 투자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양도, 이전, 매각, 담보제공 등) 또는 주식 처분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의 체결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본조에 따라 이해관계인이 투자자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고 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주식을 양수하는 제3자로 하여금 본 계약에 따른 이

해관계인의 권리의무 일체를 승계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 (투자자의 우선매수권 및 공동매도참여권)

- ① 이해관계인이 회사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투자자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우선하여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우선매수권")와 동일한 조건으로 지분비율에 따라 함께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공동매도참여권")를 보장하여야 한다.
- ② 이해관계인이 회사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양도하고자 하는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 양도 또는 이전하고자 한다는 요지의 취지, 당해 제3자의 신원, 양도주식 수, 주당 양도가액, 양도에정일 기타 양도의 주요 조건을 명시하여, 양도에정일로부터 [20]일 이전에 투자자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 ③ 투자자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해관계인에게 제1항의 우선매수권 또는 공동매도참여권 행사 여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기로 한 경우 주식을 매수하려는 자의 정보(투자자 또는 투자자가 지명하는 자), 공동매도참여권을 행사하기로 선택한 경우 공동 매도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량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 ④ 이해관계인은 투자자에게 본 조에 따른 우선매수권과 공동매도참여권이 보장되지 않는 한 회사의 주식을 일부라도 처분하여서는 아니된다.
- ⑤ 투자자가 본 조에 의한 우선매수권 및 공동매도참여권을 행사하지 않고, 전조에 따른 주식 처분을 동의한 경우 이해관계인은 제2항에 따라 통지한 조건 범위 내에서만 주식을 처분할 수 있고,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다시 전조와 본 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⑥ 다수의 투자자가 우선매수권 또는 공동매도참여권을 행사함에 따라 투자자 간에 권리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 및 이해관계인의 지분비율대로 안분하여 거래하기로 한다.

제4장 계약 위반에 따른 책임에 관한 사항

제15조 (주식매수청구권)

① 회사에게 다음 각 호 사유가 발생한 경우 투자자는 회사에게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본건 신주 또는 전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된 보통주식 및 동 주식에 대한 유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 등으로 인하여 투자자가 소유하게 된 주식(이하 통칭하여 “본건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회사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을 갖는다.

1. 각 신주인수계약에서 정한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금을 납입하게 함으로써 투자의 효력을 발생하게 한 경우
2. 각 신주인수계약에서 정한 진술과 보장 사항이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
3. 제3조 및 별지 1. 투자금의 사용용도를 위반한 경우
4. 제4조 기술의 이전, 양도 겸업 및 신회사 설립 제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제5조를 위반하여 투자자의 동의 또는 3회 이상 협의없이 각 호 사항을 진행한 경우
6. 제7조에 따른 회계 및 업무감사 협조 또는 시정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7. 제28조에서 정한 특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② 이해관계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회사에게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 사유가 발생한 경우 투자자는 해당 이해관계인에게 본건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해관계인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를 갖는다.

1. 각 신주인수계약에서 정한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금을 납입하게 함으로써 투자의 효력을 발생하게 한 경우
2. 각 신주인수계약에서 정한 진술과 보장 사항이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
3. 제3조 및 별지 1. 투자금의 사용 용도를 위반한 경우
4. 본 계약에 반하여 이해관계인이 주식을 처분한 경우

5. 기타 본 계약에서 정한 이해관계인 본인의 의무(본 계약에서 회사와는 별도로 이해관계인 스스로 이행할 책임이 있는 본 계약 제4조, 제5조, 제7조제2항, 제9조, 제10조, 제18조제2항 및 제3항, 제21조제3항의 의무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를 위반한 경우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주식매매 대금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다음 각 호 중 높은 금액으로 한다. 단, 인수주식 발행일부터 주식매매 대금 지급일까지 지급된 배당금이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하기로 한다.
1. 주식 인수 당시의 1주당 발행가액 및 이에 대한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주식매매 대금 지급일까지 연 12% 이율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
 2. 주식매수청구일을 기준으로 과거 [1]년간 있었던 회사 발행 주식의 거래 중 가장 높은 매매대금
 3. 당사자 사이에 합의한 주식이치 평가기관에 의하여 평가된 1주당 본질가치(여기서 “본질가치”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5조 내지 제8조의 분석기준에 의하여 평가된 주식의 가치를 말하고, 본질가치의 산정은 투자자가 지정하는 회계법인 및 국내 상위 5개 회계법인 중 하나에 의하여 산출된 2가지 평가 액수의 산술평균으로 한다, 이하 동일)
- ④ 투자자의 회사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는 매수청구 대상주식의 종류 및 수, 거래예정일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며, 투자자의 서면통지가 있는 경우 회사는 상법이 정하고 있는 자기주식취득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 ⑤ 투자자의 이해관계인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는 매수청구 대상주식의 종류 및 수, 거래예정일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며 해당 서면이 이해관계인에게 도달한 때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 ⑥ 투자자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은 투자자의 사전 서면동의를 얻어 제3자를 지정하여 투자자 소유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손해배상 및 위약벌)

- ① 투자자는 본 계약에 따른 각 당사자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회사에게 전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투자자는 회사에게 주식매수 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와는 별도로 투자금의 [(예시)12]%에 해당하는 위약벌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이해관계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회사에게 전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이해관계인에게 전조 제2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투자자는 해당 이해관계인에게 주식매수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와는 별도로 투자금의 [(예시)12]%에 해당하는 위약벌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전항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제13조 및 제14조를 위반하여 주식을 처분한 경우, 투자자는 이해관계인에게 주식매수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와는 별도로 투자금의 [(예시)12]%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해관계인이 주식을 처분하고 지급받은 매매대금의 [(예시)50]%에 해당하는 금액 중 큰 금액을 위약벌로 청구할 수 있다.

제17조 (지연배상금)

본 계약의 당사자가 본 계약에 따라 정해진 지급기일에 금전지급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지체하는 경우, 해당 지급기일 다음날로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연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연배상금으로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

제18조 (이해관계인의 책임)

- ① 이해관계인은 회사가 본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모두 이행할 수 있도록 본인의 권한, 권리,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② 이해관계인은 투자자가 회사에 대하여 인수주식에 관한 주식매수청구를 하면 회사의 대주주 내지 임원으로서 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에

성실히 응할 수 있도록 업무를 집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 ③ 전항의 경우 회사의 배당가능이익이 충분하지 않으면 이해관계인은 회사의 대주주 내지 임원으로서 회사가 상황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준비금 감소 등 법률상 가능한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도록 할 의무를 부담한다.
- ④ 본 계약의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에 따라 이해관계인이 회사가 부담하여야 하는 의무를 연대하여 부담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그 사유 발생에 해당 이해관계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로 제한한다.
 - 1. 각 신주인수계약에서 정한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금을 납입하게 함으로써 투자의 효력을 발생하게 한 경우
 - 2. 각 신주인수계약에서 정한 진술과 보장 사항이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
 - 3. 제3조 및 별지 1. 투자금의 사용 용도를 위반한 경우
 - 4. 본 계약에 반하여 이해관계인이 주식을 처분한 경우

제5장 계약의 일반 사항

제19조 (계약의 종료)

- ① 본 계약은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본건 신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환권을 행사하여 보통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보통주식 지분 포함)이 투자자가 인수한 본건 주식의 [10% 미만]이 된 경우 해당 투자자에 대하여 또는 회사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경우 종료한다. 명확히 하자면, 본건 신주의 보통주식으로의 전환 여부는 본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② 전항의 계약 종료는 그 이전에 이미 발생한 권리·의무 및 손해배상청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0조 (계약의 내용 변경)

- ① 당사자는 전원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② 투자자가 서면으로 명확한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본 계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이상, 투자자의 어떠한 행위도 투자자가 본 계약상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제21조 (권리 및 의무의 양도, 승계)

- ①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투자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에 관한 권리 및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 ② 투자자가 회사의 기업공개 이전에 투자자가 인수한 본건 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제3자(여기서 “제3자”는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및 이들 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될 수 있는 법률상 자격이 있는 자,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함)에게 양도한 경우 및 투자자가 투자조합인 경우 존속기간 만료 등의 이유로 해산되며 투자자의 업무집행조합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수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식 상의 투자자의 본 계약에 따른 권리는 주식매수인에게 승계된다.
- ③ 나머지 투자자,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전항의 계약상 지위 승계를 승인하여야 한다.

제22조 (통지)

- ① 본 계약에 따른 당사자들에 대한 통지 및 서류 송부는 아래의 주소에 인편, 팩스, 등기우편 또는 택배, 전자우편(이메일) 또는 DocuSign, Adobe Sign 등 당사자가 합의한 전자 계약 플랫폼으로 발송한다.

1. 투자자1에 대한 통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2. 투자자2에 대한 통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3. 투자자3에 대한 통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4. 회사에 대한 통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5.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 ② 통지처가 변경된 경우 해당 당사자는 변경일지체 없이로부터 지체 없이 본 조에 따른 통지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변경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변경 통지가 도달한 이후에 비로소 변경된 통지처로의 통지가 유효하다. 변경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본 조에 기재된 기존 통지처로의 통지는 유효하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 ③ 전항의 경우 본 계약에 따른 통지처로 발송한 경우 발송일로부터 2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
- ④ 본 계약에서 정한 투자자의 모든 권리 및 사실행위는 본 계약서의 날인란에 기재

된 업무집행조합원이 투자자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투자자를 위하여 재판상 및 재판외에서 행사한다.

제23조 (비밀유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정보는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밀로 하고,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본 조의 의무는 본 계약의 효력이 상실하는 경우에도 2년간 그 효력이 존속된다.

1. 당사자가 공개하기로 합의한 사항
2. 공지된 정보
3. 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제3자로부터 이미 적법하게 취득한 정보
4.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한 법률자문, 소의 제기,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5. 법원 또는 정부기관이 적법하게 공개 또는 제공을 요구한 정보(단, 사전에 상대방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 (세금)

본 계약의 당사자에게 부과된 조세 공과금은 법령상 부담하여야 할 당사자가 각자 부담한다.

제25조 (일부 무효)

본 계약 또는 이와 관련하여 작성된 서류에 명시된 한 개 또는 수개의 조항이 법령에 따라 무효, 위법 또는 집행불능으로 되더라도 본 계약에 명시된 나머지 조항의 효력, 적법성 및 집행가능성은 그로 인하여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26조 (준거법 및 분쟁해결)

- ① 본 계약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된다.

② 본 계약에 따라 발생한 모든 분쟁의 제1심 관할법원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지정한다.

제6장 특약 사항

제27조 (특약사항의 효력)

특약사항은 본 투자계약서의 본문의 내용을 수정·삭제·추가하는 사항으로서 본문의 내용이 특약사항의 내용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의 내용이 그 효력에 있어서 우선한다.

제28조 (특약사항의 구체적 내용)

①

②

[이하 서명 또는 날인을 위하여 여백]

본 계약의 체결 사실을 증거하기 위하여 투자자, 회사, 이해관계인은 대표자 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본 계약서의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 란에 서명 날인하게 하는 방법으로 본 계약을 체결하고, 각 1통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보관하기로 한다.

계약 체결일 : 20[] . [] . [] .

투자자 :

[투자자명]

[주소]

업무집행조합원 [회사명]

대표이사 [성명]

(인)

[투자자명]

[주소]

업무집행조합원 [회사명]

대표이사 [성명] (인)

[투자자명]

[주소]

업무집행조합원 [회사명]

대표이사 [성명] (인)

회사 :

[회사명]

[주소]

대표이사 [성명] (인)

이해관계인:

[성명]

(인)

0000년 00월 00일 생

[주소]

이해관계인:

[성명]

(인)

0000년 00월 00일 생

[주소]

별지 1.

투자금의 사용용도 및 실사 약정

1. 투자금 사용용도

회사는 본 약정에 의하여 투자자로부터 받은 자금을 다음과 같은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단, 당초 체결한 투자계약서의 투자금 사용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투자자로부터 사전에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용도	금액	비고
합계		

2. 투자기업 투자자금 집행 실사 및 관리체계

투자자는 투자금이 사용용도에 맞게 사용되었는지를 투자자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을 통하여 투자금 사용내역에 대한 실사를 진행할 수 있다. 회사는 투자자금 집행 실사와 관련하여 자금사용내역과 그 증빙을 제출하여야 하며 실사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3. 투자금 사용 제한

회사는 본 투자자금 약정서에 명시된 용도로 자금을 집행하기 이전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의 별도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제3자에 대한 자금대여 및 제3자 주식을 매입한 경우에는 회사의 자금출처 조사 등을 포함한 거래 전반 실사를 실시한다.

4. 위반시 처리

회사가 본 약정서를 위반하는 경우, 투자자는 30일 이내에 원상 회복을 요구하고 회사는 즉시 원상 회복 후 투자자가 요청하는 시기에 재실사를 실시한다. 만약 충실하게

원상 회복이 이루어지는 경우 투자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본 계약서 본문 제4장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있다.

(첨부)

퇴사제한 및 경업금지 약정서

I. 퇴사제한

1. 퇴사가 제한되는 이해관계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퇴사 제한 기간	서명 또는 날인

2. 위반시의 효과

위 퇴사제한 약정을 위반한 이해관계인은 퇴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투자자에게 위약벌 : 금 []원 을 지급하여야 한다.

II.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는 자

1. 투자자 :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란의 서명날인으로 같음
2. 회사 :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란의 서명날인으로 같음
3. 이해관계인 :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란의 서명날인으로 같음
4. 이해관계인 이외의 임직원

성명	생년월일	주소	퇴사 제한 기간	서명 또는 날인

III. 경업금지약정의 내용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경업금지약정은 회사의 이해관계인 및 주요임직원으로 하여금 일정기간 동안 회사의 영업과 동일 또는 유사한 영업을 금지시킴으로써 회사의 영업을 보호함은 물론 투자자의 투자의 실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경업지위의 취임 금지)

① 이해관계인 및 본 계약서에 서명날인한 이해관계인 이외의 임직원(이하 “경업금지외무자”라 한다)은 회사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 투자자 및 회사의 동의 없이는 다른 기업의 무한책임사원, 이사, 피용자가 될 수 없다.

② 경업금지의무자는 회사를 퇴사한 날로부터 [2]년의 기간 동안 투자자 및 회사의 동의 없이는 회사의 영업부류와 동일 또는 유사한 영업부류의 기업의 무한책임사원, 이사, 피용자가 될 수 없다.

제3조 (경업거래의 금지)

경업금지의무자는 회사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 및 회사를 퇴사한 날로부터 [2]년의 기간 동안 투자자 및 회사의 동의 없이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와 동일 또는 유사한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거나 기업을 운영할 수 없다.

제5조 (약정의 종료)

회사가 회사의 주권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거나 코스닥시장에 등록하는 날 본 약정이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본 약정의 종료는 그 이전에 이미 발생한 권리의무 및 손해배상청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6조 (위반의 효과)

① 경업금지의무자가 본 약정을 위반하는 경우 경업을 함으로써 취득한 금원 내

지 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원 내지 증권을 투자자 또는 회사에게 지급 또는 교부하여야 하고, 이러한 금원 내지 증권이 금 [50,000,000]원에 못 미치는 경우 그 차액을, 경업을 함으로써 취득한 금원 내지 증권이 없는 경우에는 금 [50,000,000]원을 투자자 또는 회사에게 위약벌로서 지급하여야 한다.

- ② 투자자 및 회사가 경업금지의무자로부터 전항의 금원 내지 증권을 지급 또는 교부받는 경우 이를 동등하게 분배하기로 한다.

이해관계인 이외의 경업금지의무자가 본 약정을 위반한 경우 위반자는 회사에게 그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상환전환우선주식(분리형)

<2026. 4. 개정본>

(가)

투자계약서

20[] []. []. [].

투자자

- [투자자명]
- [투자자명]

회사

[회사명]

이해관계인

[성명]

본 투자계약서(이하 “**본 계약서**”)는 20[] . [] . [] . (이하 “**본 계약 체결일**”) 아래 당사자들 사이에서 다음과 같이 체결되었다.

투자자 : [투자자명](이하 “**투자자1**”)

[주소]

업무집행조합원 [회사명]

대표이사 [성명]

[투자자명](이하 “**투자자2**”)

[주소]

업무집행조합원 [회사명]

대표이사 [성명]

회사 : [회사명](이하 “**회사**”)

[주소]

대표이사 [성명]

이해관계인 : [성명](이하 “**이해관계인**”)

0000년 00월 00일 생

[주소]

(이하 개별적으로 “**당사자**”, 투자자1과 투자자2를 통칭할 경우 “**투자자**”, 당사자 전부를 통칭할 경우 “**당사자들**”)

[이하 투자계약서 각 조항을 위한 여백]

다음

1. 제1조 (신주의 발행 사항)

- ① 회사는 본 계약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신주(이하 "본건 신주")를 발행하고 투자자는 본건 신주를 인수한다.
1. 본건 신주의 종류 및 내용: **별지 1.**에 의함
 2. 본건 신주의 발행 총수: 00,000주
 3. 본건 신주의 1주당 액면가액: 금 000원
 4. 본건 신주의 1주당 발행가액: 금 000,000원
 5. 본건 신주의 총 인수가액: 금 000,000,000원
 6. 본건 신주의 납입기일: 20[]년 []월 []일
 7. 각 투자자별 본건 신주의 배정 수량과 인수가액

투자자명	배정 수량	인수 가액
[투자자명]	[]주	금[]원
[투자자명]	[]주	금[]원
합계	[]주	금[]원

- ② 회사는 납입기일로부터 3영업일 전까지 투자자에게 주금의 납입을 위한 은행의 별도예금 계좌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조 (투자의 선행조건)

본 계약에 따른 투자자의 본건 신주 인수는 인수가액의 납입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조건이 충족되는 것을 선행조건으로 한다.

1. 회사 및 이해관계인이 본 계약에 따라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이행하였을 것
2. 회사 및 이해관계인이 본 계약에서 행한 진술과 보장이 진실되고 정확할 것
3. 본 계약에 따라 투자자가 인수하기로 예정된 본건 신주의 발행을 금지하거나 제

한하는 등 본 계약의 이행을 방해하는 소송 또는 기타의 절차(행정절차, 감사 등 포함)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우려가 없을 것

4. 회사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부의 인허가 등을 획득하였을 것
5. 회사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제3자의 동의 등을 획득하였을 것
6. 회사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관련 법령의 절차(상법 제418조 등) 및 회사 내부 절차(정관 및 내부규칙 변경, 주주총회결의, 이사회결의 등 포함)를 이행하였을 것
7. 회사가 투자자의 동의없이 정관 및 내부규칙을 변경하거나 투자자와 협의없이 이사회 결의, 주주총회결의를 하지 않았을 것
8. 회사가 본 계약의 체결 이후 자본구조, 경영상태, 재무상황의 통상적이지 않은 변동 내지 부정적 변동, 통상적인 영업활동에서 벗어난 행위가 없을 것

제3조 (진술과 보장)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거래완결일까지 각자 **별지 2**. 진술과 보장 사항이 진실되고 정확함을 진술하고 보장한다.

제4조 (거래의 완결)

- ① 투자자는 납입기일 또는 회사와 투자자가 달리 합의하는 날에 제2조 각 호의 실행조건의 충족을 조건으로 하여 제1조 제2항에 따라 회사가 통지한 계좌에 인수가액 전액을 납입하여야 하며, 인수가액 전액이 납입된 날(이하 "거래완결일")에 거래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
- ② 회사는 거래완결일의 다음날에 본건 신주를 발행하여 주주명부에 변동 사항을 기재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본 계약에 의한 주주권을 표창하는 주권. 단, 주권을 발행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면 주권미발행확인서.
 2. 본건 신주의 인수가액의 납입영수증

3. 변동사항이 반영된 주주명부 사본

- ③ 회사는 거래완결일로부터 2주 이내에 자본증가의 상업등기를 이행하고, 법인등기부등본, 기타 본 계약상의 주식 인수를 적법, 유효하게 하는 것으로서 투자자가 요청하는 자료를 투자자에게 교부한다.

제5조 (거래완결일 전 해제)

- ① 본 계약은 거래완결일 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귀책사유 없는 당사자에 의하여 해제될 수 있다.
 - 1. 일방 당사자가 본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거나 제3조에 따른 진술과 보장 사항에 허위 또는 오류가 발견되어 상대방으로부터 통보를 받았으나 이를 5일 이내에 이를 치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 2. 선행조건 불충족 기타의 사유로 거래완결이 20[]년 []월 []일까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선행조건이 충족될 수 없는 것이 확실해 진 경우
- ② 본 조에 의한 계약 해제 시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이와는 별도로 상대방이 지출한 모든 비용(회계실사 비용, 법률실사 비용 등 전문가 자문료를 포함)을 보전하여야 한다.

제6조 (본 계약의 효력)

- ① 본 계약서의 별지와 첨부서류는 본 계약서와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서 그에 따른 내용은 본 계약의 내용의 일부를 구성한다.
- ② 본 계약상의 내용이 본 계약 체결 이전의 당사자들 사이의 어떠한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교섭, 합의 등의 내용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의 내용이 우선한다.
- ③ 본 계약은 투자자, 회사, 이해관계인의 서명날인과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 ④ 본 계약은 전자 또는 수기의 형식을 포함하여 수개의 부분으로 체결될 수 있으며, 각 부분은 모두 원본으로 인정되나 하나의 법률문서를 구성한다.

제7조 (계약의 내용 변경)

- ① 당사자는 전원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② 투자자가 서면으로 명확한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본 계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이상, 투자자의 어떠한 행위도 투자자가 본 계약상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제8조 (통지)

- ① 본 계약에 따른 당사자들에 대한 통지 및 서류 송부는 아래의 주소에 인편, 팩스, 등기우편 또는 택배, 전자우편(이메일) 또는 DocuSign, Adobe Sign 등 당사자가 합의한 전자 계약 플랫폼으로 발송한다.

1. 투자자1에 대한 통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2. 투자자2에 대한 통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3. 회사에 대한 통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4.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 ② 통지처가 변경된 경우 해당 당사자는 변경일로부터 지체없이 본 조에 따른 통지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변경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변경 통지가 도달한 이후에 비로소 변경된 통지처로의 통지가 유효하다. 변경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본 조에 기재된 기존 통지처로의 통지는 유효하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 ③ 전항의 경우 본 계약에 따른 통지처로 발송한 경우 발송일로부터 2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
- ④ 본 계약에서 정한 투자자의 모든 권리 및 사실행위는 본 계약서의 날인 란에 기재된 업무집행조합원이 투자자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투자자를 위하여 재판상 및 재판외에서 행사한다.

제9조 (비밀유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정보는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밀로 하고,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본 조의 의무는 본 계약의 효력이 상실하는 경우에도 2년간 그 효력이 존속된다.

1. 당사자가 공개하기로 합의한 사항
2. 공지된 정보
3. 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제3자로부터 이미 적법하게 취득한 정보
4.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한 법률자문, 소의 제기,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5. 법원 또는 정부기관이 적법하게 공개 또는 제공을 요구한 정보(단, 사전에 상대방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세금)

본 계약의 당사자에게 부과된 조세 공과금은 법령상 부담하여야 할 당사자가 각자 부담한다.

제11조 (일부 무효)

본 계약 또는 이와 관련하여 작성된 서류에 명시된 한 개 또는 수개의 조항이 법령에 따라 무효, 위법 또는 집행불능으로 되더라도 본 계약에 명시된 나머지 조항의 효력, 적법성 및 집행가능성은 그로 인하여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12조 (준거법 및 분쟁해결)

- ① 본 계약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된다.
- ② 본 계약에 따라 발생한 모든 분쟁의 제1심 관할법원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지정한다.

제13조 (특약사항의 효력)

특약사항은 본 투자계약서의 본문의 내용을 수정·삭제·추가하는 사항으로서 본문의 내용이 특약사항의 내용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의 내용이 그 효력에 있어서 우선한다.

제14조 (특약사항의 구체적 내용)

- ①
- ②

[이하 서명 또는 날인을 위하여 여백]

본 계약의 체결 사실을 증거하기 위하여 투자자, 회사, 이해관계인은 대표자 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본 계약서의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 란에 서명 날인하게 하는 방법으로 본 계약을 체결하고, 각 1통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보관하기로 한다.

계약 체결일 : 20[] . [] . [] .

투자자 : [투자자명]
[주소]
업무집행조합원 [회사명]
대표이사 [성명] (인)
[투자자명]
[주소]
업무집행조합원 [회사명]
대표이사 [성명] (인)

회사 : [회사명]
[주소]
대표이사 [성명] (인)

이해관계인 : [성명] (인)
0000년 00월 00일 생
[주소]

별지 1.

본건 신주의 종류 및 내용

1. 본건 신주의 종류

상환전환우선주식(이하 “본건 종류주식”)

2. 1주당 액면가액

금 000원

3. 의결권에 관한 사항

- ① 본건 종류주식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 ② 본건 종류주식에 불리한 주주총회 결의 등이 있는 때에는 전체 주주총회와 별도로 그 안건에 대하여 본건 종류주식의 종류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4. 존속기간에 관한 사항

- ① 본건 종류주식의 존속기간은 효력발생일로부터 []년으로 한다.
- ② 본건 종류주식은 존속기간내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 존속기간 만료 다음날 별도의 절차 없이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다만, 본건 종류주식의 내용에 따라 상환 청구되었으나 상환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존속기간은 연장된다.

5.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본건 종류주식은 보통주식과 동등한 신주인수권이 있으며,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본건 종류주식과 같은 종류의 종류주식으로,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회사가 발행하기로 한 종류의 주식으로 배정받을 권리가 있다.

6. 배당에 있어서 우선권에 관한 사항

- ① 본건 종류주식은 참가적, 누적적 우선주로서,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는 본건 종류주식을 보유하는 동안 1주당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연 []%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누적적으로 우선하여 배당 받고, 잔여배당가능이익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로 함께 참가하여 배당 받는다.
- ② 주식배당의 경우 종류주식과 보통주식을 합한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같은 종류의 종류주식 주식으로 배당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단,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받는다.
- ③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주주총회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의 승인 및 배당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④ 본건 종류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환권이 행사된 경우, 전환된 주식에 대하여 전환 전까지의 기간 동안 배당결의 되었으나 그 배당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면 동 미지급 배당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사가 당해 주식의 주주에게 별도로 지급하기로 한다.

7. 잔여재산 분배에 있어서 우선권에 관한 사항

- ① 본건 종류주식은 잔여재산 분배에 있어서 우선적 지위가 부여된 종류주식으로,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는 회사가 청산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1주당 발행가액 및 이에 대하여 연 []%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보통주식 주주에 우선하여 분배 받는다. 이 경우 청산 이전까지 미지급 배당금이 있는 경우 동 금액에 대하여도 동일하다.
- ②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에 대하여 잔여재산을 우선 분배한 후 보통주식에 대한 주당 분배금액이 본건 종류주식에 대한 주당 분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통주식의 주주와 동일한 분배율로 함께 참가하여 잔여재산을 분배 받을 권리가 있다.

8. 전환에 관한 사항

- ①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는 효력발생일로부터 []년이 경과하는 날의 전일까지 본건 종류주식을 언제든지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 ②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는 전환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 및 수, 청구연월일을 기재하여 기명 또는 서명날인한 전환청구서 2통 및 주권이 발행된 경우 주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한다.
 2.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은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가 제1호에 따라 전환청구서 및 전환될 본건 종류주식의 주권이 제출된 날짜의 영업시간 종료 직전에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3.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가 전환에 의하여 보통주식을 부여 받게 되는 경우 상기 제2호의 날짜를 기준으로 주주명부상의 주주로 간주된다.
 4. 회사는 전환청구서 또는 전환될 본건 종류주식의 주권을 인도받은 즉시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그가 부여 받을 권리가 있는 수만큼의 보통주식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인도하는 등 주식 발행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 ③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 조건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만약 다음 각 호의 전환가격 조정 사유 중 복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순차적으로 중복 적용한다.
 1. 본건 종류주식 1주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보통주식 수(이하 "**전환비율**")는 1주이며, 보통주식의 발행가액(이하 "**전환가격**")은 본건 종류주식의 1주당 발행가액으로 한다.
 2.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 전에 회사가 발행한 신주의 발행가액, 전환사채의 전환가격,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이 그 당시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가격은 다음 산식에 따라 조정한다. 단, (i) 투자자가 동의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신주 발행, (ii) 기존 발행된 전환증권의 전환·행사 및 (iii) M&A에 따른 신주발행의 경우에

는 예외로 한다.

$$\text{조정후 전환가격} = \text{조정전 전환가격} \times (A + B) / (A + C)$$

A: 신주 발행 직전 발행주식 총수

[(i) 발행된 보통주, (ii) 발행된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가정 주식 수, (iii)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전환/행사 가능 증권의 전환/행사 가정 주식 수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B: 신주 발행으로 회사에 납입된 주금총액 ÷ 조정전 전환가격

(= 신주발행가액 × 신주발행주식 수 ÷ 조정전 전환가격)

C: 신주 발행주식 수

3. 무상증자, 주식배당 등: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통하여 무상증자를 하거나 주식배당을 통하여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text{조정후 전환가격} = \text{조정전 전환가격} \times (\text{조정전 발행주식 총수}) / (\text{조정후 발행주식 총수})$$

4.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 전에 회사가 주식을 분할 또는 병합하는 경우 전환비율은 그 분할 또는 병합의 비율에 따라 조정된다. 단주의 평가는 주식의 분할 또는 병합 당시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5.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 전에 회사가 무상감자를 하는 경우 전환비율은 그 감자의 비율에 따라 조정한다. 단, 경영과실 등의 사유로 특정 주주에 대해서만 차등적으로 무상감자를 하는 경우에는 전환비율을 조정하지 않는다.
6. 회사의 IPO 공모단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그 당시의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가격을 회사의 IPO 공모단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정한다.

7. 회사가 타사와 합병 시 교환비율 산정을 위한 평가가액이 그 당시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가격을 그 평가가액으로 조정한다.
- ④ 회사는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 전까지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이하 “수권주식”)에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으로 발행가능한 주식 수를 유보하여야 한다. 만약, 회사의 잔여 수권주식 수가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으로 발행가능한 주식 수에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권주식 수를 증가시켜야 한다.
- ⑤ 전환주식의 발행, 전환의 청구, 기타 전환에 관한 사항은 상법 제346조 내지 제351조의 규정에 따른다. 단, 전환권을 행사한 종류주식 및 전환으로 발행된 신주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청구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 ⑥ 단주의 처리는 일반 관례에 따르기로 하며,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1주 미만의 단수주가 발생하는 경우 단수주에 해당하는 주식은 발행하지 아니한다. 단, 이에 대하여는 해당 시점의 전환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 ⑦ 본조에 의한 본건 종류주식의 보통주식으로의 전환 이후에도 투자자는 본 <별지1>의 본건 종류주식의 내용을 제외하고 회사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가지는 본 계약 상의 권리를 그대로 보유한다.

9. 상환에 관한 사항

- ①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는 본건 종류주식의 효력발생일로부터 []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본건 종류주식의 존속기간 만료일까지 회사에 대하여 본건 종류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 ② 회사는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로부터 상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상법 제462조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투자자의 상환청구가 있었음에도 상환되지 아니한 경우(배당가능이익이 부족하여 상환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를 포함함)에는 위 상환기한은 상환이 완료될 때

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 ③ 본건 종류주식의 1주당 상환가액은 본건 종류주식의 1주당 발행가액 및 이에 대하여 본건 종류주식의 효력발생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연 []%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에서 이미 지급된 배당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 ④ 회사는 본건 종류주식의 상환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1. 회사는 상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준비금 감소 등 법률상 가능한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여야 한다.
 - 2.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가 상환권을 행사한 이후, 본건 종류주식의 상환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상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제2항의 절차가 가능함에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제1항의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위약벌로서 투자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별지 2.

진술과 보장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본 계약 체결일 현재 및 거래완결일 현재 아래 사항이 진실되고 정확함을 진술하고 보장한다.

제1장 공통사항

제1조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회사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어 유효하게 존속 중인 주식회사로서 회사에 대하여 파산, 회생 등 도산절차와 관련된 어떠한 신청도 제기된 바 없으며, 지급불능, 지급유예, 워크아웃 절차 등 회사의 주주 및 채권자의 권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 없음을 본 계약 체결일 및 거래완결일을 기준으로 진술하고 보장한다. (이하 진술 및 보장 전체에 대한 기준시점은 본 계약 체결일 및 거래완결일이다).

제2조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본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법률적, 사실적인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주주총회 및 이사회 의 승인을 비롯하여 본 계약의 체결 및 유지를 위하여 회사가 이행하여야 하는 모든 조치를 취하였음을 진술하고 보장한다.

제3조 본 계약의 체결 및 신주의 발행은 법률이나 규정 기타 관계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며, 회사의 정관에 부합하고, 회사 및 이해관계인이 당사자인 계약 또는 기타 의무의 위반을 가져오지 아니함을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진술하고 보장한다.

제4조 본 계약에 의한 회사 및 이해관계인의 의무는 본 계약에서 정한 바 그대로 적법, 유효하고 구속력이 있으며 회사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집행 가능한 법적 의무를 구성함을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진술하고 보장한다.

제5조 투자자가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하는 주식은 적법하며 유효하게 발행될 것이며, 투자자의 본 계약상의 권리 혹은 주식에 대한 권리 행사를 실질적으로 방해할 만한 행정절차(행정처분, 조사, 감사, 수사 포함), 법령, 또는 보전처분을 포함한 법원의 재판에 의한 어떠한 제한이나 회사와 이해관계인이 당사자이거나 구속을 받는 계약상의 어떠한 제한도 존재하지 아니함을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진술하고 보장한다.

제2장 회사에 관한 사항

제6조 (자본에 관한 사항)

① 회사의 발행주식은 본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1주당 액면가액이 금 []원인 보통주식 []주, 종류주식 []주이고, 그 이외의 발행 주식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주주별 지분율, 전환사채 발행내역, 신주인수권부사채, 주식매수선택권, 주식배당, 기타 장래 회사의 지배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반 권리의 주요 내용 및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내역, 조건부지분인수계약 체결 내역은 아래 주식 등의 현황 기재와 같으며 아래 기재 사항 이외에 회사의 주식 지분율 기타 장래 회사의 지배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떠한 사항도 없다.

1. 주주별 소유주식 수

주주명	주식 수	지분율(%)	기타 (담보권설정여부,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여부)
			대표이사...사내이사 등

합계	[]주	100.0%	
----	------	--------	--

2. 전환사채

회수	총 발행가액	미 전환금액	전환가격	전환기간

3. 신주인수권부사채

회수	총 발행가액	미행사금액	행사가액	행사기간

4.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받은 자	주식 수	행사가액	행사기간	행사방법

5. 조건부지분인수계약, 조건부지분전환계약 및 그 밖에 주식으로 전환 또는 교환 될 수 있는 계약 체결 내역

계약 체결일	투자자	투자금	가치한도	할인율	기타 주요 조건

- ② 회사는 설립 이후 본 계약 체결일 현재까지 주식의 발행에 있어서 가장납입을 한 사실이 없다.
- ③ 회사는 계열회사 또는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통상의 범위에서 벗어날 정도로 회사에 불리한 매출거래, 보증 또는 담보제공 등을 한 사실이 없다.

제7조 (자산에 관한 사항)

- ① 회사는 현재 사용중인 부동산, 동산, 기계, 차량, 사무실 기기 및 기타 영업에 필요한 모든 권리, 물건 등은 적법하게 회사의 소유로 되어 있거나, 회사가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을 진술하고 보장한다.
- ② 회사는 현재 보유 사용하고 있는 모든 특허권을 포함한 지식재산권 기타 무형자산은 회사가 적법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제3자로부터 권리를 침해 받고 있지 않음을 진술하고 보장한다.
- ③ 회사는 통상적인 사업경로에 따른 제품의 판매 등을 제외하고 회사의 자산이나 권리를 매매, 교환 또는 기타 방식으로 처분하지 아니하였음을 진술하고 보장한다.

제8조 (부채에 관한 사항)

- ① 회사의 차입금, 담보제공 및 입보 내역은 아래 기재와 같다.

금융기관 등 (채권자)	채무금액	제공 담 보		입보내역		비고
		담보종류	설정액 (실현가)	한도	사용액	

- ② 회사의 금융기관 차입, 회사 발행 사채 등과 관련된 계약에는 본 거래로 인하여 당해 계약에서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거나 당해 계약의 상대방이 회사에 대하여 즉각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회사는 진술하고 보장한다.

제9조 (재무제표에 관한 사항)

- ① 투자자에게 제공된 회사의 20[]년 []월 []일 기준 재무제표는 대한민국에서 통용되는 기업회계기준을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 및 관행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회사의 재무상태 및 영업현황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음을 회사는 진술하고 보장한다.

- ② 투자자에게 서면 고지된 것을 제외하고 상기 재무제표 기준일 이후에, 회사의 재무상태, 자산 및 부채, 영업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변경이나 변동 사항은 없음을 회사는 진술하고 보장한다.
- ③ 회사가 최선의 노력으로 파악한 결과 상기 재무제표에 기재되지 아니한 부외부채(우발채무 포함) 및 부외자산은 실사자료로 제시한 바와 같고, 실사자료에 나타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투자자의 본 계약체결 및 거래완결에 영향을 줄 만한 중대한 부외부채 및 부외자산은 없다.

제10조 (관계회사에 관한 사항)

회사의 관계회사는 아래 기재와 같다. 여기서 “관계회사”란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이 주식 또는 주식연계사채를 보유하고 있거나 기타 추후 주주로 인정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를 말한다.

회사명	소재지	업종	관계	주주 구성

제11조 (법령 위반, 소송 등에 관한 사항)

- ① 회사는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업에 필요한 정부 인허가 등을 모두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으며, 이 인허가 등이 취소될 위험에 처해 있지 않다.
- ② 회사는 회사의 자산(부동산, 설비, 임차물 및 장비 등) 및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지역제한, 안전, 공해 및 환경, 노동,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포함하여 회사와 그 생산과정 및 제품에 적용되는 제반법령, 규정 및 명령을 준수하였으며, 부당하게 임금, 퇴직금 등을 미지급한 사실이 없다.
- ③ 투자자에게 서면 고지된 것을 제외하고, 회사의 사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현재 진행되는 소송(보전소송 포함), 중재 또는 행정절차 기타 분쟁은 없음을 회사는 진술하고 보장한다.

- ④ 회사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소송, 중재 또는 기타 분쟁이 없으며, 추후 분쟁의 위험에 처해 있지 않다.
- ⑤ 회사는 주주총회 및 이사회 관련 제반 서류를 작성 비치하고 있으며, 그와 관련된 법규 위반사항이 없다.

제12조 (세금, 보험 등에 관한 사항)

- ① 회사는 국세, 지방세 등 고지된 납세 의무를 이행하였고,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미납된 세금은 없음을 진술하고 보장한다.
- ② 회사는 회사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제반 보험(4대 보험, 기타 영업 관련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거나 해당 업계에서 회사와 유사한 기업들이 통상적으로 가입하고 있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진술하고 보장한다.

제13조 (기타)

회사는 투자자 또는 그 실사관련 자문사들에게 제공한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정관 및 각종 계약서, 사업계획서 등 일체의 서면, 서류, 정보 기타 자료는 제공일 현재 회사에 관한 사항을 정확히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진실되고 거짓이 없으며, 중요한 사항을 생략하지 않았고, 중대한 면에서 의미를 오도하지 않는다. 회사의 임직원이 실사 과정에서 구두로 답변한 내용에 관하여도 고의 또는 과실로 허위 답변한 사실이 없음을 진술하고 보장한다. 단, 사업계획서 상에 미래에 대한 예측 및 기타 사업관련 계획 사항은 경영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제3장 이해관계인에 관한 사항

제14조 이해관계인은 투자자에 대하여 본 별지의 진술과 보장 사항이 본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서 모두 진실되고 거짓이 없음을 보장하고, 나아

가 동 진술과 보장 사항이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 이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이해관계인은 이로 인하여 투자자가 입게 되는 모든 손해, 손실 및 비용을 본 계약에 따라 회사와 함께 배상 또는 보상한다.

제15조 이해관계인은 위 제14조에 추가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진술하고 보장한다.

- ① 이해관계인이 가지고 있는 회사의 주식은 첨부하는 주주명부의 기재와 같고, 이해관계인은 이를 자신의 계산으로 취득하였고 가장납입한 바가 없다.
- ② 위 주주명부는 이해관계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들의 이름, 관계 및 그 소유 주식 수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다.
- ③ 이해관계인이 본 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이행함에 있어 법령상 또는 계약상의 제한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 ④ 이해관계인은 본 계약 체결일 현재 회사의 주주 또는 종업원으로서의 지위와 관련하여 제3자와 분쟁을 하고 있지 아니한다.

제16조 이해관계인은 본 진술과 보장 사항에 영향을 미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시 투자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투자자의 요청에 따라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나)

주주 간 계약서

20[] [] []

투자자

- [투자자명]
- [투자자명]
- [투자자명]

회사

[회사명]

이해관계인

[성명]

본 투자계약서(이하 “**본 계약서**”)는 20[] . [] . [] . (이하 “**본 계약 체결일**”) 아래 당사자들 사이에서 다음과 같이 체결되었다.

투자자 : [투자자명](이하 “**투자자1**”)
 [주소]
 업무집행조합원 [회사명]
 대표이사 [성명]
 [투자자명](이하 “**투자자2**”)
 [주소]
 업무집행조합원 [회사명]
 대표이사 [성명]
 [투자자명](이하 “**투자자3**”)
 [주소]
 업무집행조합원 [회사명]
 대표이사 [성명]

회사 : [회사명](이하 “**회사**”)
 [주소]
 대표이사 [성명]

이해관계인: [성명](이하 “**이해관계인**”)
 0000년 00월 00일 생
 [주소]

(이하 개별적으로 “**당사자**”, 투자자1 내지 투자자3를 각칭할 경우는 “**투자자**”라 하며 통칭할 경우 “**투자자들**”, 당사자 전부를 통칭할 경우 “**당사자들**”)

[이하 투자계약서 각 조항을 위한 여백]

다 음

제1장 총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인수한 각 투자자의 경영참여에 관한 사항, 주식 처분에 관한 사항, 본 계약 및 각 투자자가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위하여 회사 및 이해관계인과 체결한 신주인수계약(이하 "각 신주인수계약(서)") 위반에 관한 책임 등을 정하고, 이와 관련된 투자자, 회사, 이해관계인의 구체적인 법률관계를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본 계약의 효력)

- ① 본 계약은 투자자, 회사, 이해관계인의 서명날인과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 ② 본 계약상의 내용이 본 계약 체결 이전의 당사자들 사이의 어떠한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교섭, 합의 등의 내용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의 내용이 우선한다.
- ③ 본 계약과 각 신주인수계약서에서 정한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 주식의 본질적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은 본 계약이 우선한다.
- ④ 본 계약은 전자 또는 수기의 형식을 포함하여 수개의 부분으로 체결될 수 있으며, 각 부분은 모두 원본으로 인정되나 하나의 법률문서를 구성한다.

제2장 회사 경영에 관한 사항

제3조 (투자금의 용도 및 제한)

- ① 회사는 각 신주인수계약에 의하여 투자자로부터 받은 신주의 인수가액(이하 “**투자금**”)을 **별지 1**, 투자금의 사용용도의 기재와 같이 사용하여야 하며, 특히 투자금으로 제3자에게 자금의 대여 또는 제3자의 주식을 매입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별지 1**, 투자금의 사용용도의 기재와 달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로부터 사전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③ 회사는 투자금을 다른 자금과 구분되는 별도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④ 회사는 투자금의 사용기록부를 작성·비치하여 두고 투자자의 열람 및 등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⑤ 투자자는 언제든지 투자금이 사용용도에 맞게 사용되었는지를 투자자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을 통하여 투자금 사용내역에 대한 실사를 진행할 수 있다. 단, 투자 후 1년 이내의 기간에 회사는 의무적으로 1회 이상 투자금 사용내역에 대한 실사를 받아야 한다.

제4조 (기술의 이전, 양도, 겸업 및 신회사 설립 제한)

- ①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투자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현재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또는 개발 중이거나 개발계획이 확정(외부기관에 의뢰하여 개발하는 경우도 포함, 이하 같음)되었거나 도입 예정인 영업비밀, Know-how, 정보, 기술 등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이전 또는 양도, 담보 제공할 수 없다.
- ② 이해관계인은 투자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현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 개발 중이거나 도입하는 기술의 일부 또는 전부와 관련된 신회사를 설립하거나 개인사업을 할 수 없으며, 경쟁업종 종사, 경쟁사 주식취득 또는 회사가 경영하는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법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임원, 기술고문 및 직원으로 참여하는 등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③ 전항에서 정한 이해관계인의 의무는 해당 이해관계인이 회사를 퇴사하거나 본 계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회사의 주식 전체를 처분하였다더라도 본 계약이 종료되지 않는 한 퇴사일 또는 처분일부터 2년간 유효하다.

제5조 (경영사항에 대한 동의권 및 협의권)

- ①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투자자에게 각 사항의 시행일로부터 2주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한 뒤 각 사항의 시행일의 전일까지 투자자로부터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투자자의 서면동의를 본 계약의 투자자의 의결권 주식 총수의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있는 경우 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있는 것으로 본다.

1. 정관의 변경

2. 자본의 증감, 주식관련사채의 발행,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 3. 회생신청, 파산신청, 해산, 청산, 합병, 분할, 분할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 영업양수도, 타회사의 인수, 경영임대차, 위탁경영 기타 회사조직의 근본적인 변경

- 4.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의함), 임직원, 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의함)과의 거래

- 5.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의 국내외 회사 설립 또는 다른 회사의 50% 이상 지분 취득

- ②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투자자와 사전에 협의하고 투자자에게 업무처리에 따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 2. 건당 전년도 자산총계의 [5%] 이상 또는 연간 누계액 기준 전년도 자산총계의

- [10% 이상의 규모에 해당하는 자산의 취득 및 처분, 투자(주식 및 사채인수 포함), 자금대여, 담보 제공, 보증, 신규 자금차입 또는 채무의 부담
3. 각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가 전년도 급여와 비교하여 [20%이상 상승하는 경우
 4. 본건 투자 당시 사업계획에 명시한 것과 현저히 다른 사업에 착수하거나, 주요 사업의 중단, 포기
 5.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변경

제6조 (보고 및 자료 제출)

- ① 회사는 투자자의 별도 요청이 없더라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단, 본 계약의 다른 약정에 의한 통지의무와 중복되는 항목에 있어서는 어느 경우든 먼저 도래하는 기일까지 통지 또는 보고되어야 한다.
 1. 회사가 발행, 배서 또는 보증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거래가 정지된 때
 2. 파산, 회생절차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의 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부실징후기업으로 인정되는 때
 3. 소송 내지 중재 절차가 시작된 때
 4. 정부 및 준정부기관에 의한 행정적 제재
 5. 회사의 사업에 필요한 중요 기술인력의 채용 및 퇴직 상황
 6. 회사가 제세공과금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납기전 납부고지를 받은 경우
 7. 회사의 휴업 또는 폐업
- ② 회사는 투자자의 별도 요청이 없더라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해진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연차보고 - 다음 회계연도 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

- 가.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은 결산 재무제표
 - 나. 연간경영보고서(사업계획서)
 - 다. 주주명부(보고일 기준)
 - 라. 세무조정계산서
2. 분기보고 - 다음 분기 시작일로부터 60일 이내
- 가. 분기 재무제표
 - 나. 분기 경영보고서
- ③ 회사는 투자자가 요청하는 경영자료를 투자자가 요청하는 양식에 따라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투자자에게 제공하기로 한다.

제7조 (회계 및 업무감사, 시정조치)

- ① 회사는 20 | 회계연도부터 기업공개를 위한 제반 준비절차로서 투자자의 서면 동의를 받은 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지정하여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 ② 투자자는 회사의 경영 및 재산 상태를 확인하고 계획된 사업의 수행에 대해 투자자의 입장에서 선의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신의 직원 또는 외부의 전문가를 파견하여 회사의 회계 및 업무 전반에 관한 조사 및 기타 투자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고,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이에 대하여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 ③ 본 조에 따른 조사 및 감사 등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 ④ 투자자는 회사의 경영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 결과 또는 투자자의 조사 결과에 따라 회사 및 이해관계인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시정을 요구 받은 사항에 대해 정하여진 일정한 기간 내에 시정 조치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회사는 회사 경영 및 기술개발 등 사업 전반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임직원 등에 대해, 본건 거래완결일 전 이미 부여된 것과 제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투자자의 동의 하에 부여된 것을 포함하여 그 행사로 인해 발행될 수 있는 주식 지분을 총계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시점의 발행주식총수의 10% 이내인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제9조 (임원의 지명)

- ① 투자자는 동일 라운드에 동반 투자하는 투자자들과 협의하여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기타비상무이사) [1]인을 지명할 권리를 가지며,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투자자가 지명한 이사(이하 "투자자 지명이사") 회사의 이사로 선임될 수 있도록 즉시 임시주주총회 개최 등 이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단 투자자들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투자자 지명이사를 지정한다.
- ② 투자자는 언제든지 투자자 지명이사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와 이해관계인은 이에 응하여 투자자 지명이사의 교체를 위한 임시주주총회의 개최 등의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 ③ 투자자 지명이사는 회사의 채무에 대한 보증을 하지 아니하며, 투자자 지명이사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책임을 면제받고,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투자자 지명이사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이 제3자에게 부담, 지급하게 되는 비용을 투자자 지명이사에게 보전해 준다.
- ④ 회사는 본 계약 체결일 현재 회사의 임원에 대한 것과 동일한 수준으로 투자자 지명이사에 대해 임원책임보험을 부보하도록 한다.

제10조 (주주총회 및 이사회 개최 요구)

투자자가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주주총회 개최를 요구하거나, 투자자 지명이가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이사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즉

시 임시주주총회 내지 이사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11조 (기업공개 및 M&A에 관한 사항)

- ①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가능한 이른 시간 내에 회사의 주권이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이하 “기업공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회사가 기업공개 요건을 사실상 충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및 이해관계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기업공개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투자자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기업공개를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 ②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다른 법인으로부터의 인수·합병의 제의가 있는 경우 투자자와 협의하여 인수·합병의 협의에 최대한의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야 한다.

제3장 주식의 처분에 관한 사항

제12조 (투자자의 주식 처분)

- ① 투자자는 각 신주인수계약서에 의해 인수한 주식(이하 “**인수주식**”)을 포함하여 각 신주인수계약서의 거래완결일 이후 투자자가 보유하게 된 회사의 주식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다. 회사는 투자자의 요청에 따라 처분 주식의 명의개서 등 처분에 따른 권리이전에 필요한 절차를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 ② 투자자가 제1항에 따라 주식의 처분을 위하여 회사 IR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

제13조 (이해관계인의 주식 처분)

- ① 이해관계인은 투자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주식 처분(양도, 이전, 매각, 담보제공 등) 또는 주식 처분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의 체결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본조에 따라 이해관계인이 투자자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고 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주식을 양수하는 제3자로 하여금 본 계약에 따른 이

해관계인의 권리의무 일체를 승계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 (투자자의 우선매수권 및 공동매도참여권)

- ① 이해관계인이 회사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투자자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우선하여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우선매수권**”)와 동일한 조건으로 지분비율에 따라 함께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공동매도참여권**”)를 보장하여야 한다.
- ② 이해관계인이 회사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양도하고자 하는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 양도 또는 이전하고자 한다는 요지의 취지, 당해 제3자의 신원, 양도주식 수, 주당 양도가액, 양도예정일 기타 양도의 주요 조건을 명시하여, 양도예정일로부터 [20]일 이전에 투자자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 ③ 투자자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해관계인에게 제1항의 우선매수권 또는 공동매도참여권 행사 여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기로 한 경우 주식을 매수하려는 자의 정보(투자자 또는 투자자가 지명하는 자), 공동매도참여권을 행사하기로 선택한 경우 공동 매도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량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 ④ 이해관계인은 투자자에게 본 조에 따른 우선매수권과 공동매도참여권이 보장되지 않는 한 회사의 주식을 일부라도 처분하여서는 아니된다.
- ⑤ 투자자가 본 조에 의한 우선매수권 및 공동매도참여권을 행사하지 않고, 전조에 따른 주식 처분을 동의한 경우 이해관계인은 제2항에 따라 통지한 조건 범위 내에서만 주식을 처분할 수 있고,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다시 전조와 본 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⑥ 다수의 투자자가 우선매수권 또는 공동매도참여권을 행사함에 따라 투자자 간에 권리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 및 이해관계인의 지분비율대로 안분하여 거래하기로 한다.

제4장 계약 위반에 따른 책임에 관한 사항

제15조 (주식매수청구권)

① 회사에게 다음 각 호 사유가 발생한 경우 투자자는 회사에게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본건 신주 또는 전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된 보통주식 및 동 주식에 대한 유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 등으로 인하여 투자자가 소유하게 된 주식(이하 통칭하여 “**본건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회사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을 갖는다.

1. 각 신주인수계약에서 정한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금을 납입하게 함으로써 투자의 효력을 발생하게 한 경우
2. 각 신주인수계약에서 정한 진술과 보장 사항이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
3. 제3조 및 별지 1. 투자금의 사용용도를 위반한 경우
4. 제4조 기술의 이전, 양도 겸업 및 신회사 설립 제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제5조를 위반하여 투자자의 동의 또는 3회 이상 협의없이 각 호 사항을 진행한 경우
6. 제7조에 따른 회계 및 업무감사 협조 또는 시정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7. 제28조에서 정한 특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② 이해관계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회사에게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 사유가 발생한 경우 투자자는 해당 이해관계인에게 본건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해관계인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를 갖는다.

1. 각 신주인수계약에서 정한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금을 납입하게 함으로써 투자의 효력을 발생하게 한 경우
2. 각 신주인수계약에서 정한 진술과 보장 사항이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
3. 제3조 및 별지 1. 투자금의 사용 용도를 위반한 경우
4. 본 계약에 반하여 이해관계인이 주식을 처분한 경우

5. 기타 본 계약에서 정한 이해관계인 본인의 의무(본 계약에서 회사와는 별도로 이해관계인 스스로 이행할 책임이 있는 본 계약 제4조, 제5조, 제7조제2항, 제9조, 제10조, 제18조제2항 및 제3항, 제21조제3항의 의무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를 위반한 경우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주식매매 대금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다음 각 호 중 높은 금액으로 한다. 단, 인수주식 발행일부터 주식매매 대금 지급일까지 지급된 배당금이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하기로 한다.
1. 주식 인수 당시의 1주당 발행가액 및 이에 대한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주식매매 대금 지급일까지 연 12% 이율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
 2. 주식매수청구일을 기준으로 과거 [1]년간 있었던 회사 발행 주식의 거래 중 가장 높은 매매대금
 3. 당사자 사이에 합의한 주식이치 평가기관에 의하여 평가된 1주당 본질가치(여기서 “본질가치”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5조 내지 제8조의 분석기준에 의하여 평가된 주식의 가치를 말하고, 본질가치의 산정은 투자자가 지정하는 회계법인 및 국내 상위 5개 회계법인 중 하나에 의하여 산출된 2가지 평가 액수의 산술평균으로 한다, 이하 동일)
- ④ 투자자의 회사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는 매수청구 대상주식의 종류 및 수, 거래예정일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며, 투자자의 서면통지가 있는 경우 회사는 상법이 정하고 있는 자기주식취득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 ⑤ 투자자의 이해관계인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는 매수청구 대상주식의 종류 및 수, 거래예정일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며 해당 서면이 이해관계인에게 도달한 때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 ⑥ 투자자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은 투자자의 사전 서면동의를 얻어 제3자를 지정하여 투자자 소유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손해배상 및 위약벌)

- ① 투자자는 본 계약에 따른 각 당사자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회사에게 전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투자자는 회사에게 주식매수 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와는 별도로 투자금의 [(예시)12]%에 해당하는 위약벌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이해관계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회사에게 전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이해관계인에게 전조 제2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투자자는 해당 이해관계인에게 주식매수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와는 별도로 투자금의 [(예시)12]%에 해당하는 위약벌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전항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제13조 및 제14조를 위반하여 주식을 처분한 경우, 투자자는 이해관계인에게 주식매수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와는 별도로 투자금의 [(예시)12]%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해관계인이 주식을 처분하고 지급받은 매매대금의 [(예시)50]%에 해당하는 금액 중 큰 금액을 위약벌로 청구할 수 있다.
-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인이 제21조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본건 신주의 상환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있음에도 회사로 하여금금 상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투자자는 그 의무를 위반한 이해관계인에게 주식매수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와는 별도로 상법상 상환의무가 인정되는 금액의 [(예시)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벌로 청구할 수 있다.

제17조 (지연배상금)

본 계약의 당사자가 본 계약에 따라 정해진 지급기일에 금전지급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지체하는 경우, 해당 지급기일 다음날로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연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연배상금으로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

제18조 (이해관계인의 책임)

- ① 이해관계인은 회사가 본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모두 이행할 수 있도록 본인의 권한, 권리,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② 이해관계인은 투자자가 회사에 대하여 인수주식에 관한 상환청구 또는 주식매수청구를 하면 회사의 대주주 내지 임원으로서 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상환 또는 주식매수에 성실히 응할 수 있도록 업무를 집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 ③ 전항의 경우 회사의 배당가능이익이 충분하지 않으면 이해관계인은 회사의 대주주 내지 임원으로서 회사가 상황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준비금 감소 등 법률상 가능한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도록 할 의무를 부담한다.
- ④ 본 계약의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에 따라 이해관계인이 회사가 부담하여야 하는 의무를 연대하여 부담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그 사유 발생에 해당 이해관계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로 제한한다.
 1. 각 신주인수계약에서 정한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금을 납입하게 함으로써 투자의 효력을 발생하게 한 경우
 2. 각 신주인수계약에서 정한 진술과 보장 사항이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
 3. 제3조 및 별지 1. 투자금의 사용 용도를 위반한 경우
 4. 본 계약에 반하여 이해관계인이 주식을 처분한 경우

제5장 계약의 일반 사항

제19조 (계약의 종료)

- ① 본 계약은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본건 신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환권을 행사하여 보통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보통주식 지분 포함)이 투자자가 인수한 본건 주식의 [10% 미만]이 된 경우 해당 투자자에 대하여 또는 회사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경우 종료한다. 명확히 하자면, 본건 신주

의 보통주식으로의 전환 여부는 본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② 전항의 계약 종료는 그 이전에 이미 발생한 권리·의무 및 손해배상청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0조 (계약의 내용 변경)

- ① 당사자는 전원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② 투자자가 서면으로 명확한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본 계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이상, 투자자의 어떠한 행위도 투자자가 본 계약상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제21조 (권리 및 의무의 양도, 승계)

- ①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투자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에 관한 권리 및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 ② 투자자가 회사의 기업공개 이전에 투자자가 인수한 본건 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제3자(여기서 “제3자”는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및 이들 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될 수 있는 법률상 자격이 있는 자,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함)에게 양도한 경우 및 투자자가 투자조합인 경우 존속기간 만료 등의 이유로 해산되며 투자자의 업무집행조합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수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식 상의 투자자의 본 계약에 따른 권리는 주식매수인에게 승계된다.
- ③ 나머지 투자자,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전항의 계약상 지위 승계를 승인하여야 한다.

제22조 (통지)

- ① 본 계약에 따른 당사자들에 대한 통지 및 서류 송부는 아래의 주소에 인편, 팩스, 등기우편 또는 택배, 전자우편(이메일) 또는 DocuSign, Adobe Sign 등 당사자가 합의한 전자 계약 플랫폼으로 발송한다.

1. 투자자1에 대한 통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2. 투자자2에 대한 통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3. 투자자3에 대한 통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4. 회사에 대한 통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5.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 ② 통지처가 변경된 경우 해당 당사자는 변경일로부터 지체없이 본 조에 따른 통지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변경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변경 통지가 도달한 이후에 비로소 변경된 통지처로의 통지가 유효하다. 변경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본

조에 기재된 기존 통지처로의 통지는 유효하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 ③ 전항의 경우 본 계약에 따른 통지처로 발송한 경우 발송일로부터 2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
- ④ 본 계약에서 정한 투자자의 모든 권리 및 사실행위는 본 계약서의 날인란에 기재된 업무집행조합원이 투자자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투자자를 위하여 재판상 및 재판외에서 행사한다.

제23조 (비밀유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정보는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밀로 하고,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본 조의 의무는 본 계약의 효력이 상실하는 경우에도 2년간 그 효력이 존속된다.

- 1. 당사자가 공개하기로 합의한 사항
- 2. 공지된 정보
- 3. 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제3자로부터 이미 적법하게 취득한 정보
- 4.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한 법률자문, 소의 제기,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 5. 법원 또는 정부기관이 적법하게 공개 또는 제공을 요구한 정보(단, 사전에 상대방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 (세금)

본 계약의 당사자에게 부과된 조세 공과금은 법령상 부담하여야 할 당사자가 각자 부담한다.

제25조 (일부 무효)

본 계약 또는 이와 관련하여 작성된 서류에 명시된 한 개 또는 수개의 조항이 법령에 따라 무효, 위법 또는 집행불능으로 되더라도 본 계약에 명시된 나머지 조항의 효

력, 적법성 및 집행가능성은 그로 인하여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26조 (준거법 및 분쟁해결)

- ① 본 계약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된다.
- ② 본 계약에 따라 발생한 모든 분쟁의 제1심 관할법원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지정한다.

제6장 특약 사항

제27조 (특약사항의 효력)

특약사항은 본 투자계약서의 본문의 내용을 수정·삭제·추가하는 사항으로서 본문의 내용이 특약사항의 내용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의 내용이 그 효력에 있어서 우선한다.

제28조 (특약사항의 구체적 내용)

- ①
- ②

[이하 서명 또는 날인을 위하여 여백]

본 계약의 체결 사실을 증거하기 위하여 투자자, 회사, 이해관계인은 대표자 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본 계약서의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 란에 서명 날인하게 하는 방법으로 본 계약을 체결하고, 각 1통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보관하기로 한다.

계약 체결일 : 20[] . [] . [] .

투자자 : [투자자명]
 [주소]
 업무집행조합원 [회사명]
 대표이사 [성명] (인)
 [투자자명]
 [주소]
 업무집행조합원 [회사명]
 대표이사 [성명] (인)
 [투자자명]
 [주소]
 업무집행조합원 [회사명]
 대표이사 [성명] (인)

회사 : [회사명]
 [주소]
 대표이사 [성명] (인)

이해관계인 : [성명] (인)
 0000년 00월 00일 생

[주소]

별지 1.

투자금의 사용용도 및 실사 약정

1. 투자금 사용용도

회사는 본 약정에 의하여 투자자로부터 받은 자금을 다음과 같은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단, 당초 체결한 투자계약서의 투자금 사용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투자자로부터 사전에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용도	금액	비고
합계		

2. 투자기업 투자자금 집행 실사 및 관리체계

투자자는 투자금이 사용용도에 맞게 사용되었는지를 투자자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을 통하여 투자금 사용내역에 대한 실사를 진행할 수 있다. 회사는 투자자금 집행 실사와 관련하여 자금사용내역과 그 증빙을 제출하여야 하며 실사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3. 투자금 사용 제한

회사는 본 투자자금 약정서에 명시된 용도로 자금을 집행하기 이전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의 별도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제3자에 대한 자금대여 및 제3자 주식을 매입한 경우에는 회사의 자금출처 조사 등을 포함한 거래 전반 실사를 실시한다.

4. 위반시 처리

회사가 본 약정서를 위반하는 경우, 투자자는 30일 이내에 원상 회복을 요구하고 회사는 즉시 원상 회복 후 투자자가 요청하는 시기에 재실사를 실시한다. 만약 충실하게

원상 회복이 이루어지는 경우 투자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본 계약서 본문 제4장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있다.

(첨부)

퇴사제한 및 경업금지 약정서

I. 퇴사제한

1. 퇴사가 제한되는 이해관계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퇴사 제한 기간	서명 또는 날인

2. 위반시의 효과

위 퇴사제한 약정을 위반한 이해관계인은 퇴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투자자에게 위약벌 : 금 []원 을 지급하여야 한다.

II.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는 자

1. 투자자 :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란의 서명날인으로 같음
2. 회사 :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란의 서명날인으로 같음
3. 이해관계인 :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란의 서명날인으로 같음
4. 이해관계인 이외의 임직원

성명	생년월일	주소	퇴사 제한 기간	서명 또는 날인

III. 경업금지약정의 내용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경업금지약정은 회사의 이해관계인 및 주요임직원으로 하여금 일정기간 동안 회사의 영업과 동일 또는 유사한 영업을 금지시킴으로써 회사의 영업을 보호함은 물론 투자자의 투자의 실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경업지위의 취업 금지)

- ① 이해관계인 및 본 계약서에 서명날인한 이해관계인 이외의 임직원(이하 “경업금지 의무자”라 한다)은 회사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 투자자 및 회사의 동의 없이는 다른 기업의 무한책임사원, 이사, 피용자가 될 수 없다.
- ② 경업금지 의무자는 회사를 퇴사한 날로부터 [2]년의 기간 동안 투자자 및 회사의 동의 없이는 회사의 영업부류와 동일 또는 유사한 영업부류의 기업의 무한책임사원, 이사, 피용자가 될 수 없다.

제3조 (경업거래의 금지)

경업금지 의무자는 회사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 및 회사를 퇴사한 날로부터 [2]년의 기간 동안 투자자 및 회사의 동의 없이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와 동일 또는 유사한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거나 기업을 운영할 수 없다.

제5조 (약정의 종료)

회사가 회사의 주권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거나 코스닥시장에 등록하는 날 본 약정이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본 약정의 종료는 그 이전에 이미 발생한 권리·의무 및 손해배상청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6조 (위반의 효과)

- ① 경업금지의무자가 본 약정을 위반하는 경우 경업을 함으로써 취득한 금원 내지 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원 내지 증권을 투자자 또는 회사에게 지급 또는 교부하여야 하고, 이러한 금원 내지 증권이 금 [50,000,000]원에 못 미치는 경우 그 차액을, 경업을 함으로써 취득한 금원 내지 증권이 없는 경우에는 금 [50,000,000]원을 투자자 또는 회사에게 위약벌로서 지급하여야 한다.
- ② 투자자 및 회사가 경업금지의무자로부터 전항의 금원 내지 증권을 지급 또는 교부 받는 경우 이를 동등하게 분배하기로 한다.
- ③ 이해관계인 이외의 경업금지의무자가 본 약정을 위반한 경우 위반자는 회사에게 그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보통주식(분리형) 계약서

<2026. 4. 개정본>

(가)

투자계약서

20[] []. []. [].

투자자

- [투자자명]
- [투자자명]

회사

[회사명]

이해관계인

[성명]

본 투자계약서(이하 “**본 계약서**”)는 20[] . [] . [] . (이하 “**본 계약 체결일**”) 아래 당사자들 사이에서 다음과 같이 체결되었다.

투자자 : [투자자명](이하 “**투자자1**”)
[주소]
업무집행조합원 [회사명]
대표이사 [성명]
[투자자명](이하 “**투자자2**”)
[주소]
업무집행조합원 [회사명]
대표이사 [성명]

회사: [회사명](이하 “**회사**”)
[주소]
대표이사 [성명]

이해관계인: [성명](이하 “**이해관계인**”)
0000년 00월 00일 생
[주소]

(이하 개별적으로 “**당사자**”, 투자자1과 투자자2를 통칭할 경우 “**투자자**”, 당사자 전부
를 통칭할 경우 “**당사자들**”)

[이하 투자계약서 각 조항을 위한 여백]

다음

제1조 (신주의 발행 사항)

- ① 회사는 본 계약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신주(이하 “본건 신주”)를 발행하고 투자자는 본건 신주를 인수한다.
1. 본건 신주의 종류 및 내용: 보통주식
 2. 본건 신주의 발행 총수: 00,000주
 3. 본건 신주의 1주당 액면가액: 금 000원
 4. 본건 신주의 1주당 발행가액: 금 000,000원
 5. 본건 신주의 총 인수가액: 금 000,000,000원
 6. 본건 신주의 납입기일: 20[]년 []월 []일
 7. 각 투자자별 본건 신주의 배정 수량과 인수가액

투자자명	배정 수량	인수 가액
[투자자명]	[]주	금[]원
[투자자명]	[]주	금[]원
합계	[]주	금[]원

- ② 회사는 납입기일로부터 3영업일 전까지 투자자에게 주금의 납입을 위한 은행의 별단예금 계좌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조 (투자의 선행조건)

본 계약에 따른 투자자의 본건 신주 인수는 인수가액의 납입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조건이 충족되는 것을 선행조건으로 한다.

1. 회사 및 이해관계인이 본 계약에 따라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이행하였을 것
2. 회사 및 이해관계인이 본 계약에서 행한 진술과 보장이 진실되고 정확할 것
3. 본 계약에 따라 투자자가 인수하기로 예정된 본건 신주의 발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등 본 계약의 이행을 방해하는 소송 또는 기타의 절차(행정절차, 감사 등

- 포함)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우려가 없을 것
4. 회사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부의 인허가 등을 획득하였을 것
 5. 회사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제3자의 동의 등을 획득하였을 것
 6. 회사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관련 법령의 절차(상법 제418조 등) 및 회사 내부 절차(정관 및 내부규칙 변경, 주주총회결의, 이사회결의 등 포함)를 이행하였을 것
 7. 회사가 투자자의 동의없이 정관 및 내부규칙을 변경하거나 투자자와 협의없이 이사회 결의, 주주총회결의를 하지 않았을 것
 8. 회사가 본 계약의 체결 이후 자본구조, 경영상태, 재무상황의 통상적이지 않은 변동 내지 부정적 변동, 통상적인 영업활동에서 벗어난 행위가 없을 것

제3조 (진술과 보장)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거래완결일까지 각자 **별지**. 진술과 보장 사항이 진실되고 정확함을 진술하고 보장한다.

제4조 (거래의 완결)

- ① 투자자는 납입기일 또는 회사와 투자자가 달리 합의하는 날에 제2조 각 호의 선행조건의 충족을 조건으로 하여 제1조 제2항에 따라 회사가 통지한 계좌에 인수가액 전액을 납입하여야 하며, 인수가액 전액이 납입된 날(이하 "**거래완결일**")에 거래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
- ② 회사는 거래완결일의 다음날에 본건 신주를 발행하여 주주명부에 변동 사항을 기재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본 계약에 의한 주주권을 표창하는 주권. 단, 주권을 발행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면 주권미발행확인서.
 2. 본건 신주의 인수가액의 납입영수증
 3. 변동사항이 반영된 주주명부 사본

- ③ 회사는 거래완결일로부터 2주 이내에 자본증가의 상업등기를 이행하고, 법인등기부등본, 기타 본 계약상의 주식 인수를 적법, 유효하게 하는 것으로서 투자자가 요청하는 자료를 투자자에게 교부한다.

제5조 (거래완결일 전 해제)

- ① 본 계약은 거래완결일 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귀책사유 없는 당사자에 의하여 해제될 수 있다.
 - 1. 일방 당사자가 본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거나 제3조에 따른 진술과 보장 사항에 허위 또는 오류가 발견되어 상대방으로부터 통보를 받았으나 이를 5일 이내에 이를 치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 2. 선행조건 불충족 기타의 사유로 거래완결이 20[]년 []월 []일까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선행조건이 충족될 수 없는 것이 확실해 진 경우
- ② 본 조에 의한 계약 해제 시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이와는 별도로 상대방이 지출한 모든 비용(회계실사 비용, 법률실사 비용 등 전문가 자문료를 포함)을 보전하여야 한다.

제6조 (본 계약의 효력)

- ① 본 계약서의 별지와 첨부서류는 본 계약서와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서 그에 따른 내용은 본 계약의 내용의 일부를 구성한다.
- ② 본 계약상의 내용이 본 계약 체결 이전의 당사자들 사이의 어떠한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교섭, 합의 등의 내용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의 내용이 우선한다.
- ③ 본 계약은 투자자, 회사, 이해관계인의 서명날인과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 ④ 본 계약은 전자 또는 수기의 형식을 포함하여 수개의 부분으로 체결될 수 있으며, 각 부분은 모두 원본으로 인정되나 하나의 법률문서를 구성한다.

제7조 (계약의 내용 변경)

- ① 당사자는 전원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② 투자자가 서면으로 명확한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본 계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이상, 투자자의 어떠한 행위도 투자자가 본 계약상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제8조 (통지)

- ① 본 계약에 따른 당사자들에 대한 통지 및 서류 송부는 아래의 주소에 인편, 팩스, 등기우편 또는 택배, 전자우편(이메일) 또는 DocuSign, Adobe Sign 등 당사자가 합의한 전자 계약 플랫폼으로 발송한다.

1. 투자자1에 대한 통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2. 투자자2에 대한 통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3. 회사에 대한 통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4.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 ② 통지처가 변경된 경우 해당 당사자는 변경일로부터 지체없이 본 조에 따른 통지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변경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변경 통지가 도달한 이후에 비로소 변경된 통지처로의 통지가 유효하다. 변경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본 조에 기재된 기존 통지처로의 통지는 유효하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 ③ 전항의 경우 본 계약에 따른 통지처로 발송한 경우 발송일로부터 2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
- ④ 본 계약에서 정한 투자자의 모든 권리 및 사실행위는 본 계약서의 날인 란에 기재된 업무집행조합원이 투자자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투자자를 위하여 재판상 및 재판외에서 행사한다.

제9조 (비밀유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정보는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밀로 하고,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본 조의 의무는 본 계약의 효력이 상실하는 경우에도 2년간 그 효력이 존속된다.

1. 당사자가 공개하기로 합의한 사항
2. 공지된 정보
3. 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제3자로부터 이미 적법하게 취득한 정보
4.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한 법률자문, 소의 제기,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5. 법원 또는 정부기관이 적법하게 공개 또는 제공을 요구한 정보(단, 사전에 상대방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세금)

본 계약의 당사자에게 부과된 조세 공과금은 법령상 부담하여야 할 당사자가 각자 부담한다.

제11조 (일부 무효)

본 계약 또는 이와 관련하여 작성된 서류에 명시된 한 개 또는 수개의 조항이 법령에 따라 무효, 위법 또는 집행불능으로 되더라도 본 계약에 명시된 나머지 조항의 효력, 적법성 및 집행가능성은 그로 인하여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12조 (준거법 및 분쟁해결)

- ① 본 계약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된다.
- ② 본 계약에 따라 발생한 모든 분쟁의 제1심 관할법원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지정한다.

제13조 (특약사항의 효력)

특약사항은 본 투자계약서의 본문의 내용을 수정·삭제·추가하는 사항으로서 본문의 내용이 특약사항의 내용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의 내용이 그 효력에 있어서 우선한다.

제14조 (특약사항의 구체적 내용)

- ①
- ②

[이하 서명 또는 날인을 위하여 여백]

본 계약의 체결 사실을 증거하기 위하여 투자자, 회사, 이해관계인은 대표자 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본 계약서의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 란에 서명 날인하게 하는 방법으로 본 계약을 체결하고, 각 1통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보관하기로 한다.

계약 체결일 : 20[] . [] . [] .

투자자 : [투자자명]
 [주소]
 업무집행조합원 [회사명]
 대표이사 [성명] (인)

 [투자자명]
 [주소]
 업무집행조합원 [회사명]
 대표이사 [성명] (인)

회사 : [회사명]
 [주소]
 대표이사 [성명] (인)

이해관계인 : [성명] (인)
 0000년 00월 00일 생
 [주소]

별지.

진술과 보장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본 계약 체결일 현재 및 거래완결일 현재 아래 사항이 진실되고 정확함을 진술하고 보장한다.

제1장 공통사항

제1조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회사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어 유효하게 존속 중인 주식회사로서 회사에 대하여 파산, 회생 등 도산절차와 관련된 어떠한 신청도 제기된 바 없으며, 지급불능, 지급유예, 워크아웃 절차 등 회사의 주주 및 채권자의 권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 없음을 본 계약 체결일 및 거래완결일을 기준으로 진술하고 보장한다. (이하 진술 및 보장 전체에 대한 기준시점은 본 계약 체결일 및 거래완결일이다).

제2조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본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법률적, 사실적인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주주총회 및 이사회 의 승인을 비롯하여 본 계약의 체결 및 유지를 위하여 회사가 이행하여야 하는 모든 조치를 취하였음을 진술하고 보장한다.

제3조 본 계약의 체결 및 신주의 발행은 법률이나 규정 기타 관계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며, 회사의 정관에 부합하고, 회사 및 이해관계인이 당사자인 계약 또는 기타 의무의 위반을 가져오지 아니함을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진술하고 보장한다.

제4조 본 계약에 의한 회사 및 이해관계인의 의무는 본 계약에서 정한 바 그대로 적법, 유효하고 구속력이 있으며 회사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집행 가능한 법적 의무를 구성함을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진술하고 보장한다.

제5조 투자자가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하는 주식은 적법하며 유효하게 발행될 것이며, 투자자의 본 계약상의 권리 혹은 주식에 대한 권리 행사를 실질적으로 방해할 만한 행정절차(행정처분, 조사, 감사, 수사 포함), 법령, 또는 보전처분을 포함한 법원의 재판에 의한 어떠한 제한이나 회사와 이해관계인이 당사자이거나 구속을 받는 계약상의 어떠한 제한도 존재하지 아니함을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진술하고 보장한다.

제2장 회사에 관한 사항

제6조 (자본에 관한 사항)

① 회사의 발행주식은 본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1주당 액면가액이 금 []원인 보통주식 []주, 종류주식 []주이고, 그 이외의 발행 주식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주주별 지분율, 전환사채 발행내역, 신주인수권부사채, 주식매수선택권, 주식배당, 기타 장래 회사의 지배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반 권리의 주요 내용 및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내역, 조건부지분인수계약 체결 내역은 아래 주식 등의 현황 기재와 같으며 아래 기재 사항 이외에 회사의 주식 지분율 기타 장래 회사의 지배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떠한 사항도 없다.

1. 주주별 소유주식 수

주주명	주식 수	지분율(%)	기타 (담보권설정여부,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여부)
			대표이사...사내이사 등
합계	[]주	100.0%	

2. 전환사채

회수	총 발행가액	미 전환금액	전환가격	전환기간

3. 신주인수권부사채

회수	총 발행가액	미행사금액	행사가액	행사기간

4.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받은 자	주식 수	행사가액	행사기간	행사방법

5. 조건부지분인수계약, 조건부지분전환계약 및 그 밖에 주식으로 전환 또는 교환될 수 있는 계약 체결 내역

계약 체결일	투자자	투자금	가치한도	할인율	기타 주요 조건

- ② 회사는 설립 이후 본 계약 체결일 현재까지 주식의 발행에 있어서 가장납입을 한 사실이 없다.
- ③ 회사는 계열회사 또는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통상의 범위에서 벗어날 정도로 회사에 불리한 매출거래, 보증 또는 담보제공 등을 한 사실이 없다.

제7조 (자산에 관한 사항)

- ① 회사는 현재 사용중인 부동산, 동산, 기계, 차량, 사무실 기기 및 기타 영업에 필요한 모든 권리, 물건 등은 적법하게 회사의 소유로 되어 있거나, 회사가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을 진술하고 보장한다.
- ② 회사는 현재 보유 사용하고 있는 모든 특허권을 포함한 지식재산권 기타 무형자산은 회사가 적법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제3자로부터 권리를 침해 받고 있지 않음을 진술하고 보장한다.
- ③ 회사는 통상적인 사업경로에 따른 제품의 판매 등을 제외하고 회사의 자산이나 권리를 매매, 교환 또는 기타 방식으로 처분하지 아니하였음을 진술하고 보장한다.

제8조 (부채에 관한 사항)

- ① 회사의 차입금, 담보제공 및 입보 내역은 아래 기재와 같다.

금융기관 등 (채권자)	채무금액	제공담보		입보내역		비고
		담보종류	설정액 (실현가)	한도	사용액	

- ② 회사의 금융기관 차입, 회사 발행 사채 등과 관련된 계약에는 본 거래로 인하여 당해 계약에서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거나 당해 계약의 상대방이 회사에 대하여 즉각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회사는 진술하고 보장한다.

제9조 (재무제표에 관한 사항)

- ① 투자자에게 제공된 회사의 20[]년 []월 []일 기준 재무제표는 대한민국에서 통용되는 기업회계기준을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 및 관행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회사의 재무상태 및 영업현황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음을 회사는 진술하고 보장한다.
- ② 투자자에게 서면 고지된 것을 제외하고 상기 재무제표 기준일 이후에, 회사의 재무상태, 자산 및 부채, 영업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변경이나 변동 사항은 없음을 회사는 진술하고 보장한다.
- ③ 회사가 최선의 노력으로 파악한 결과 상기 재무제표에 기재되지 아니한 부외부채(우발채무 포함) 및 부외자산은 실사자료로 제시한 바와 같고, 실사자료에 나타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투자자의 본 계약체결 및 거래완결에 영향을 줄 만한 중대한 부외부채 및 부외자산은 없다.

제10조 (관계회사에 관한 사항)

회사의 관계회사는 아래 기재와 같다. 여기서 “관계회사”란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이 주식 또는 주식연계사채를 보유하고 있거나 기타 추후 주주로 인정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를 말한다.

회사명	소재지	업종	관계	주주 구성

제11조 (법령 위반, 소송 등에 관한 사항)

- ① 회사는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업에 필요한 정부 인허가 등을 모두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으며, 이 인허가 등이 취소될 위험에 처해 있지 않다.
- ② 회사는 회사의 자산(부동산, 설비, 임차물 및 장비 등) 및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지역제한, 안전, 공해 및 환경, 노동,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포함하여 회사와 그

생산과정 및 제품에 적용되는 제반법령, 규정 및 명령을 준수하였으며, 부당하게 임금, 퇴직금 등을 미지급한 사실이 없다.

- ③ 투자자에게 서면 고지된 것을 제외하고, 회사의 사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현재 진행되는 소송(보전소송 포함), 중재 또는 행정절차 기타 분쟁은 없음을 회사는 진술하고 보장한다.
- ④ 회사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소송, 중재 또는 기타 분쟁이 없으며, 추후 분쟁의 위험에 처해 있지 않다.
- ⑤ 회사는 주주총회 및 이사회 관련 제반 서류를 작성 비치하고 있으며, 그와 관련된 법규 위반사항이 없다.

제12조 (세금, 보험 등에 관한 사항)

- ① 회사는 국세, 지방세 등 고지된 납세 의무를 이행하였고,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미납된 세금은 없음을 진술하고 보장한다.
- ② 회사는 회사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제반 보험(4대 보험, 기타 영업 관련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거나 해당 업계에서 회사와 유사한 기업들이 통상적으로 가입하고 있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진술하고 보장한다.

제13조 (기타)

회사는 투자자 또는 그 실사관련 자문사들에게 제공한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정관 및 각종 계약서, 사업계획서 등 일체의 서면, 서류, 정보 기타 자료는 제공일 현재 회사에 관한 사항을 정확히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진실되고 거짓이 없으며, 중요한 사항을 생략하지 않았고, 중대한 면에서 의미를 오도하지 않는다. 회사의 임직원이 실사 과정에서 구두로 답변한 내용에 관하여도 고의 또는 과실로 허위 답변한 사실이 없음을 진술하고 보장한다. 단, 사업계획서 상에 미래에 대한 예측 및 기타 사업관련 계획 사항은 경영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제3장 이해관계인에 관한 사항

제14조 이해관계인은 투자자에 대하여 본 별지의 진술과 보장 사항이 본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서 모두 진실되고 거짓이 없음을 보장하고, 나아가 동 진술과 보장 사항이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 이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이해관계인은 이로 인하여 투자자가 입게 되는 모든 손해, 손실 및 비용을 본 계약에 따라 회사와 함께 배상 또는 보상한다.

제15조 이해관계인은 위 제14조에 추가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진술하고 보장한다.

- ① 이해관계인이 가지고 있는 회사의 주식은 첨부하는 주주명부의 기재와 같고, 이해관계인은 이를 자신의 계산으로 취득하였고 가장납입한 바가 없다.
- ② 위 주주명부는 이해관계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들의 이름, 관계 및 그 소유주식 수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다.
- ③ 이해관계인이 본 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이행함에 있어 법령상 또는 계약상의 제한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 ④ 이해관계인은 본 계약 체결일 현재 회사의 주주 또는 종업원으로서의 지위와 관련하여 제3자와 분쟁을 하고 있지 아니한다.

제16조 이해관계인은 본 진술과 보장 사항에 영향을 미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시 투자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투자자의 요청에 따라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나)

주주 간 계약서

20[] [] []

투자자

- [투자자명]
- [투자자명]
- [투자자명]

회사

[회사명]

이해관계인

[성명]

본 투자계약서(이하 “**본 계약서**”)는 20[] . [] . [] . (이하 “**본 계약 체결일**”) 아래 당사자들 사이에서 다음과 같이 체결되었다.

투자자 : [투자자명](이하 “**투자자1**”)

[주소]

업무집행조합원 [회사명]

대표이사 [성명]

[투자자명](이하 “**투자자2**”)

[주소]

업무집행조합원 [회사명]

대표이사 [성명]

[투자자명](이하 “**투자자3**”)

[주소]

업무집행조합원 [회사명]

대표이사 [성명]

회사 : [회사명](이하 “**회사**”)

[주소]

대표이사 [성명]

이해관계인 : [성명](이하 “**이해관계인**”)

0000년 00월 00일 생

[주소]

(이하 개별적으로 “**당사자**”, 투자자1 내지 투자자3를 각칭할 경우는 “**투자자**”라 하며 통칭할 경우 “**투자자들**”, 당사자 전부를 통칭할 경우 “**당사자들**”)

다 음

제1장 총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인수한 각 투자자의 경영참여에 관한 사항, 주식 처분에 관한 사항, 본 계약 및 각 투자자가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위하여 회사 및 이해관계인과 체결한 신주인수계약(이하 “각 신주인수계약(서)”) 위반에 관한 책임 등을 정하고, 이와 관련된 투자자, 회사, 이해관계인의 구체적인 법률관계를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본 계약의 효력)

- ① 본 계약은 투자자, 회사, 이해관계인의 서명날인과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 ② 본 계약상의 내용이 본 계약 체결 이전의 당사자들 사이의 어떠한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교섭, 합의 등의 내용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의 내용이 우선한다.
- ③ 본 계약과 각 신주인수계약서에서 정한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 주식의 본질적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은 본 계약이 우선한다.
- ④ 본 계약은 전자 또는 수기의 형식을 포함하여 수개의 부분으로 체결될 수 있으며, 각 부분은 모두 원본으로 인정되나 하나의 법률문서를 구성한다.

제2장 회사 경영에 관한 사항

제3조 (투자금의 용도 및 제한)

- ① 회사는 각 신주인수계약에 의하여 투자자로부터 받은 신주의 인수가액(이하 “**투자금**”)을 **별지 1**. 투자금의 사용용도의 기재와 같이 사용하여야 하며, 특히 투자금으로 제3자에게 자금의 대여 또는 제3자의 주식을 매입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별지 1**. 투자금의 사용용도의 기재와 달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로부터 사전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③ 회사는 투자금을 다른 자금과 구분되는 별도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④ 회사는 투자금의 사용기록부를 작성·비치하여 두고 투자자의 열람 및 등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⑤ 투자자는 언제든지 투자금이 사용용도에 맞게 사용되었는지를 투자자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을 통하여 투자금 사용내역에 대한 실사를 진행할 수 있다. 단, 투자 후 1년 이내의 기간에 회사는 의무적으로 1회 이상 투자금 사용내역에 대한 실사를 받아야 한다.

제4조 (기술의 이전, 양도, 겸업 및 신회사 설립 제한)

- ①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투자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현재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또는 개발 중이거나 개발계획이 확정(외부기관에 의뢰하여 개발하는 경우도 포함, 이하 같음)되었거나 도입 예정인 영업비밀, Know-how, 정보, 기술 등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이전 또는 양도, 담보 제공할 수 없다.
- ② 이해관계인은 투자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현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 개발 중이거나 도입하는 기술의 일부 또는 전부와 관련된 신회사를 설립하거나 개인 사업을 할 수 없으며, 경쟁업종 종사, 경쟁사 주식취득 또는 회사가 경영하는 사업

에 직·간접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법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임원, 기술고문 및 직원으로 참여하는 등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③ 전항에서 정한 이해관계인의 의무는 해당 이해관계인이 회사를 퇴사하거나 본 계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회사의 주식 전체를 처분하였다더라도 본 계약이 종료되지 않는 한 퇴사일 또는 처분일부터 2년간 유효하다.

제5조 (경영사항에 대한 동의권 및 협의권)

- ①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투자자에게 각 사항의 시행일로부터 2주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한 뒤 각 사항의 시행일의 전일까지 투자자로부터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투자자의 서면동의를 본 계약의 투자자의 의결권 주식 총수의 3분의2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 투자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정관의 변경

2. 자본의 증감, 주식관련사채의 발행,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3. 회생신청, 파산신청, 해산, 청산, 합병, 분할, 분할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 영업양수도, 타회사의 인수, 경영임대차, 위탁경영 기타 회사조직의 근본적인 변경

4.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의함), 임직원, 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의함)과의 거래

5.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의 국내외 회사 설립 또는 다른 회사의 50% 이상 지분 취득

- ②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투자자와 사전에 협의하고 투자자에게 업무처리에 따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2. 건당 전년도 자산총계의 [5% 이상 또는 연간 누계액 기준 전년도 자산총계의 [10% 이상]의 규모에 해당하는 자산의 취득 및 처분, 투자(주식 및 사채인수

- 포함), 자금대여, 담보 제공, 보증, 신규 자금차입 또는 채무의 부담
3. 각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가 전년도 급여와 비교하여 [20]%이상 상승하는 경우
 4. 본건 투자 당시 사업계획에 명시한 것과 현저히 다른 사업에 착수하거나, 주요 사업의 중단, 포기
 5.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변경

제6조 (보고 및 자료 제출)

- ① 회사는 투자자의 별도 요청이 없더라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단, 본 계약의 다른 약정에 의한 통지의무와 중복되는 항목에 있어서는 어느 경우든 먼저 도래하는 기일까지 통지 또는 보고되어야 한다.
 1. 회사가 발행, 배서 또는 보증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거래가 정지된 때
 2. 파산, 회생절차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의 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부실징후기업으로 인정되는 때
 3. 소송 내지 중재 절차가 시작된 때
 4. 정부 및 준정부기관에 의한 행정적 제재
 5. 회사의 사업에 필요한 중요 기술인력의 채용 및 퇴직 상황
 6. 회사가 제세공과금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납기전 납부고지를 받은 경우
 7. 회사의 휴업 또는 폐업
- ② 회사는 투자자의 별도 요청이 없더라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해진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연차보고 - 다음 회계연도 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
가.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은 결산 재무제표

- 나. 연간경영보고서(사업계획서)
 - 다. 주주명부(보고일 기준)
 - 라. 세무조정계산서
2. 분기보고 - 다음 분기 시작일로부터 60일 이내
- 가. 분기 재무제표
 - 나. 분기 경영보고서
- ③ 회사는 투자자가 요청하는 경영자료를 투자자가 요청하는 양식에 따라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투자자에게 제공하기로 한다.

제7조 (회계 및 업무감사, 시정조치)

- ① 회사는 20[] 회계연도부터 기업공개를 위한 제반 준비절차로서 투자자의 서면 동의를 받은 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지정하여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 ② 투자자는 회사의 경영 및 재산 상태를 확인하고 계획된 사업의 수행에 대해 투자자의 입장에서 선의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신의 직원 또는 외부의 전문가를 파견하여 회사의 회계 및 업무 전반에 관한 조사 및 기타 투자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고,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이에 대하여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 ③ 본 조에 따른 조사 및 감사 등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 ④ 투자자는 회사의 경영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 결과 또는 투자자의 조사 결과에 따라 회사 및 이해관계인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시정을 요구 받은 사항에 대해 정하여진 일정한 기간 내에 시정 조치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회사는 회사 경영 및 기술개발 등 사업 전반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임직원 등에 대해, 본건 거래완결일 전 이미 부여된 것과 제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투자자의 동의 하에 부여된 것을 포함하여 그 행사로 인해 발행될 수 있는 주식 지분을 총계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시점의 발행주식총수의 10% 이내인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제9조 (임원의 지명)

- ① 투자자는 동일 라운드에 동반 투자하는 투자자들과 협의하여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기타비상무이사) [1]인을 지명할 권리를 가지며,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투자자가 지명한 이사(이하 “**투자자 지명이사**”) 회사의 이사로 선임될 수 있도록 즉시 임시주주총회 개최 등 이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단 투자자들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투자자 지명이사를 지정한다.
- ② 투자자는 언제든지 투자자 지명이사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와 이해관계인은 이에 응하여 투자자 지명이사의 교체를 위한 임시주주총회의 개최 등의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 ③ 투자자 지명이사는 회사의 채무에 대한 보증을 하지 아니하며, 투자자 지명이사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책임을 면제받고,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투자자 지명이사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이 제3자에게 부담, 지급하게 되는 비용을 투자자 지명이사에게 보전해 준다.
- ④ 회사는 본 계약 체결일 현재 회사의 임원에 대한 것과 동일한 수준으로 투자자 지명이사에 대해 임원책임보험을 부보하도록 한다.

제10조 (주주총회 및 이사회 개최 요구)

투자자가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주주총회 개최를 요구하거나, 투자자 지명이사가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이사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즉시 임시주주총회 내지 이사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11조 (기업공개 및 M&A에 관한 사항)

- ①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가능한 이른 시간 내에 회사의 주권이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이하 “기업공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회사가 기업공개 요건을 사실상 충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및 이해관계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기업공개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투자자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기업공개를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 ②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다른 법인으로부터의 인수·합병의 제의가 있는 경우 투자자와 협의하여 인수·합병의 협의에 최대한의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야 한다.

제3장 주식의 처분에 관한 사항

제12조 (투자자의 주식 처분)

- ① 투자자는 각 신주인수계약서에 의해 인수한 주식(이하 “인수주식”)을 포함하여 각 신주인수계약서의 거래완결일 이후 투자자가 보유하게 된 회사의 주식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다. 회사는 투자자의 요청에 따라 처분 주식의 명의개서 등 처분에 따른 권리이전에 필요한 절차를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 ② 투자자가 제1항에 따라 주식의 처분을 위하여 회사 IR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

제13조 (이해관계인의 주식 처분)

- ① 이해관계인은 투자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주식 처분(양도, 이전, 매각, 담보제공 등) 또는 주식 처분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의 체결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본조에 따라 이해관계인이 투자자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고 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주식을 양수하는 제3자로 하여금 본 계약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의무 일체를 승계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 (투자자의 우선매수권 및 공동매도참여권)

- ① 이해관계인이 회사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투자자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우선하여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우선매수권”)와 동일한 조건으로 지분비율에 따라 함께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공동매도참여권”)를 보장하여야 한다.
- ② 이해관계인이 회사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양도하고자 하는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 양도 또는 이전하고자 한다는 요지의 취지, 당해 제3자의 신원, 양도주식 수, 주당 양도가액, 양도예정일 기타 양도의 주요 조건을 명시하여, 양도예정일로부터 [20]일 이전에 투자자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 ③ 투자자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해관계인에게 제1항의 우선매수권 또는 공동매도참여권 행사 여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기로 한 경우 주식을 매수하려는 자의 정보(투자자 또는 투자자가 지명하는 자), 공동매도참여권을 행사하기로 선택한 경우 공동 매도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량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 ④ 이해관계인은 투자자에게 본 조에 따른 우선매수권과 공동매도참여권이 보장되지 않는 한 회사의 주식을 일부라도 처분하여서는 아니된다.
- ⑤ 투자자가 본 조에 의한 우선매수권 및 공동매도참여권을 행사하지 않고, 전조에 따른 주식 처분을 동의한 경우 이해관계인은 제2항에 따라 통지한 조건 범위 내에서만 주식을 처분할 수 있고,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다시 전조와 본 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⑥ 다수의 투자자가 우선매수권 또는 공동매도참여권을 행사함에 따라 투자자 간에 권리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 및 이해관계인의 지분비율대로 안분하여 거래하기로 한다.

제4장 계약 위반에 따른 책임에 관한 사항

제15조 (주식매수청구권)

① 회사에게 다음 각 호 사유가 발생한 경우 투자자는 회사에게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본건 신주 또는 전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된 보통주식 및 동 주식에 대한 유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 등으로 인하여 투자자가 소유하게 된 주식(이하 통칭하여 “**본건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회사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을 갖는다.

1. 각 신주인수계약에서 정한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금을 납입하게 함으로써 투자의 효력을 발생하게 한 경우
2. 각 신주인수계약에서 정한 진술과 보장 사항이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
3. 제3조 및 별지 1. 투자금의 사용용도를 위반한 경우
4. 제4조 기술의 이전, 양도 겸업 및 신회사 설립 제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제5조를 위반하여 투자자의 동의 또는 3회 이상 협의없이 각 호 사항을 진행한 경우
6. 제7조에 따른 회계 및 업무감사 협조 또는 시정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7. 제28조에서 정한 특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② 이해관계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회사에게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 사유가 발생한 경우 투자자는 해당 이해관계인에게 본건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해관계인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를 갖는다.

1. 각 신주인수계약에서 정한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금을 납입하게 함으로써 투자의 효력을 발생하게 한 경우
2. 각 신주인수계약에서 정한 진술과 보장 사항이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
3. 제3조 및 별지 1. 투자금의 사용 용도를 위반한 경우
4. 본 계약에 반하여 이해관계인이 주식을 처분한 경우
5. 기타 본 계약에서 정한 이해관계인 본인의 의무(본 계약에서 회사와는 별도

로 이해관계인 스스로 이행할 책임이 있는 본 계약 제4조, 제5조, 제7조제2항, 제9조, 제10조, 제18조제2항 및 제3항, 제21조제3항의 의무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를 위반한 경우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주식매매 대금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다음 각 호 중 높은 금액으로 한다. 단, 인수주식 발행일부터 주식매매 대금 지급일까지 지급된 배당금이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하기로 한다.
 - 1. 주식 인수 당시의 1주당 발행가액 및 이에 대한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주식매매 대금 지급일까지 연 12% 이율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
 - 2. 주식매수청구일을 기준으로 과거 [1]년간 있었던 회사 발행 주식의 거래 중 가장 높은 매매대금
 - 3. 당사자 사이에 합의한 주식가치 평가기관에 의하여 평가된 1주당 본질가치(여기서 “본질가치”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5조 내지 제8조의 분석기준에 의하여 평가된 주식의 가치를 말하고, 본질가치의 산정은 투자자가 지정하는 회계법인 및 국내 상위 5개 회계법인 중 하나에 의하여 산출된 2가지 평가 액수의 산술평균으로 한다, 이하 동일)
- ④ 투자자의 회사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는 매수청구 대상주식의 종류 및 수, 거래예정일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며, 투자자의 서면통지가 있는 경우 회사는 상법이 정하고 있는 자기주식취득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 ⑤ 투자자의 이해관계인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는 매수청구 대상주식의 종류 및 수, 거래예정일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며 해당 서면이 이해관계인에게 도달한 때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 ⑥ 투자자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은 투자자의 사전 서면동의를 얻어 제3자를 지정하여 투자자 소유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손해배상 및 위약벌)

- ① 투자자는 본 계약에 따른 각 당사자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회사에게 전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투자자는 회사에게 주식매수 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와는 별도로 투자금의 [(예시)12]%에 해당하는 위약벌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이해관계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회사에게 전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이해관계인에게 전조 제2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투자자는 해당 이해관계인에게 주식매수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와는 별도로 투자금의 [(예시)12]%에 해당하는 위약벌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전항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제13조 및 제14조를 위반하여 주식을 처분한 경우, 투자자는 이해관계인에게 주식매수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와는 별도로 투자금의 [(예시)12]%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해관계인이 주식을 처분하고 지급받은 매매대금의 [(예시)50]%에 해당하는 금액 중 큰 금액을 위약벌로 청구할 수 있다.
-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인이 제21조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본건 신주의 상환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있음에도 회사로 하여금금 상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투자자는 그 의무를 위반한 이해관계인에게 주식매수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와는 별도로 상법상 상환의무가 인정되는 금액의 [(예시)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벌로 청구할 수 있다.

제17조 (지연배상금)

본 계약의 당사자가 본 계약에 따라 정해진 지급기일에 금전지급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지체하는 경우, 해당 지급기일 다음날로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연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연배상금으로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

제18조 (이해관계인의 책임)

- ① 이해관계인은 회사가 본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모두 이행할 수 있도록 본인의 권한, 권리,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② 이해관계인은 투자자가 회사에 대하여 인수주식에 관한 상환청구 또는 주식매수청구를 하면 회사의 대주주 내지 임원으로서 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상환 또는 주식매수에 성실히 응할 수 있도록 업무를 집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 ③ 전항의 경우 회사의 배당가능이익이 충분하지 않으면 이해관계인은 회사의 대주주 내지 임원으로서 회사가 상황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준비금 감소 등 법률상 가능한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도록 할 의무를 부담한다.
- ④ 본 계약의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에 따라 이해관계인이 회사가 부담하여야 하는 의무를 연대하여 부담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그 사유 발생에 해당 이해관계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로 제한한다.
 1. 각 신주인수계약에서 정한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금을 납입하게 함으로써 투자의 효력을 발생하게 한 경우
 2. 각 신주인수계약에서 정한 진술과 보장 사항이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
 3. 제3조 및 별지 1. 투자금의 사용 용도를 위반한 경우
 4. 본 계약에 반하여 이해관계인이 주식을 처분한 경우

제5장 계약의 일반 사항

제19조 (계약의 종료)

- ① 본 계약은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본건 신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환권을 행사하여 보통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보통주식 지분 포함)이 투자자가 인수한 본건 주식의 [10% 미만]이 된 경우 해당 투자자에 대하여 또는 회사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경우 종료한다. 명확히 하자면, 본건 신주

의 보통주식으로의 전환 여부는 본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② 전항의 계약 종료는 그 이전에 이미 발생한 권리·의무 및 손해배상청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0조 (계약의 내용 변경)

- ① 당사자는 전원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② 투자자가 서면으로 명확한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본 계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이상, 투자자의 어떠한 행위도 투자자가 본 계약상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제21조 (권리 및 의무의 양도, 승계)

- ①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투자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에 관한 권리 및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 ② 투자자가 회사의 기업공개 이전에 투자자가 인수한 본건 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제3자(여기서 “제3자”는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및 이들 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될 수 있는 법률상 자격이 있는 자, 기관전용 사모집합 투자기구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함)에게 양도한 경우 및 투자자가 투자조합인 경우 존속기간 만료 등의 이유로 해산되며 투자자의 업무집행조합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수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식 상의 투자자의 본 계약에 따른 권리는 주식매수인에게 승계된다.
- ③ 나머지 투자자,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전항의 계약상 지위 승계를 승인하여야 한다.

제22조 (통지)

- ① 본 계약에 따른 당사자들에 대한 통지 및 서류 송부는 아래의 주소에 인편, 팩스, 등기우편 또는 택배, 전자우편(이메일) 또는 DocuSign, Adobe Sign 등 당사자가 합의한 전자 계약 플랫폼으로 발송한다.

1. 투자자1에 대한 통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2. 투자자2에 대한 통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3. 투자자3에 대한 통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4. 회사에 대한 통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5.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② 통지처가 변경된 경우 해당 당사자는 변경일로부터 지체없이 본 조에 따른 통지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변경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변경 통지가 도달한 이후에 비로소 변경된 통지처로의 통지가 유효하다. 변경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본 조에 기재된 기존 통지처로의 통지는 유효하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 ③ 전항의 경우 본 계약에 따른 통지처로 발송한 경우 발송일로부터 2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
- ④ 본 계약에서 정한 투자자의 모든 권리 및 사실행위는 본 계약서의 날인란에 기재된 업무집행조합원이 투자자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투자자를 위하여 재판상 및 재판외에서 행사한다.

제23조 (비밀유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정보는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밀로 하고,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본 조의 의무는 본 계약의 효력이 상실하는 경우에도 2년간 그 효력이 존속된다.

- 1. 당사자가 공개하기로 합의한 사항
- 2. 공지된 정보
- 3. 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제3자로부터 이미 적법하게 취득한 정보
- 4.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한 법률자문, 소의 제기,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 5. 법원 또는 정부기관이 적법하게 공개 또는 제공을 요구한 정보(단, 사전에 상대방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 (세금)

본 계약의 당사자에게 부과된 조세 공과금은 법령상 부담하여야 할 당사자가 각자 부담한다.

제25조 (일부 무효)

본 계약 또는 이와 관련하여 작성된 서류에 명시된 한 개 또는 수개의 조항이 법령에 따라 무효, 위법 또는 집행불능으로 되더라도 본 계약에 명시된 나머지 조항의 효력, 적법성 및 집행가능성은 그로 인하여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26조 (준거법 및 분쟁해결)

- ① 본 계약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된다.
- ② 본 계약에 따라 발생한 모든 분쟁의 제1심 관할법원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지정한다.

제6장 특약 사항

제27조 (특약사항의 효력)

특약사항은 본 투자계약서의 본문의 내용을 수정·삭제·추가하는 사항으로서 본문의 내용이 특약사항의 내용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의 내용이 그 효력에 있어서 우선한다.

제28조 (특약사항의 구체적 내용)

- ①
- ②

[이하 서명 또는 날인을 위하여 여백]

본 계약의 체결 사실을 증거하기 위하여 투자자, 회사, 이해관계인은 대표자 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본 계약서의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 란에 서명 날인하게 하는 방법으로 본 계약을 체결하고, 각 1통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보관하기로 한다.

계약 체결일 : 20[] . [] . [] .

투자자 : [투자자명]
[주소]
업무집행조합원 [회사명]
대표이사 [성명] (인)

[투자자명]
[주소]
업무집행조합원 [회사명]
대표이사 [성명] (인)

[투자자명]
[주소]
업무집행조합원 [회사명]
대표이사 [성명] (인)

회사 : [회사명]
[주소]
대표이사 [성명] (인)

이해관계인 : [성명] (인)
0000년 00월 00일 생
[주소]

별지 1.

투자금의 사용용도 및 실사 약정

1. 투자금 사용용도

회사는 본 약정에 의하여 투자자로부터 받은 자금을 다음과 같은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단, 당초 체결한 투자계약서의 투자금 사용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투자자로부터 사전에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용도	금액	비고
합계		

2. 투자기업 투자자금 집행 실사 및 관리체계

투자자는 투자금이 사용용도에 맞게 사용되었는지를 투자자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을 통하여 투자금 사용내역에 대한 실사를 진행할 수 있다. 회사는 투자자금 집행 실사와 관련하여 자금사용내역과 그 증빙을 제출하여야 하며 실사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3. 투자금 사용 제한

회사는 본 투자자금 약정서에 명시된 용도로 자금을 집행하기 이전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의 별도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제3자에 대한 자금대여 및 제3자 주식을 매입한 경우에는 회사의 자금출처 조사 등을 포함한 거래 전반 실사를 실시한다.

4. 위반시 처리

회사가 본 약정서를 위반하는 경우, 투자자는 30일 이내에 원상 회복을 요구하고 회사는 즉시 원상 회복 후 투자자가 요청하는 시기에 재실사를 실시한다. 만약 충실하게 원상 회복이 이루어지는 경우 투자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본 계약서 본문 제4장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있다.

(첨부)

퇴사제한 및 경업금지 약정서

I. 퇴사제한

1. 퇴사가 제한되는 이해관계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퇴사 제한 기간	서명 또는 날인

2. 위반시의 효과

위 퇴사제한 약정을 위반한 이해관계인은 퇴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투자자에게 위약벌 : 금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II.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는 자

1. 투자자 :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란의 서명날인으로 같음
2. 회사 :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란의 서명날인으로 같음
3. 이해관계인 :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란의 서명날인으로 같음
4. 이해관계인 이외의 임직원

성명	생년월일	주소	퇴사 제한 기간	서명 또는 날인

III. 경업금지약정의 내용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경업금지약정은 회사의 이해관계인 및 주요임직원으로 하여금 일정기간 동안 회사의 영업과 동일 또는 유사한 영업을 금지시킴으로써 회사의 영업을 보호함은 물론 투자자의 투자의 실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경업지위의 취임 금지)

- ① 이해관계인 및 본 계약서에 서명날인한 이해관계인 이외의 임직원(이하 “경업금지 의무자”라 한다)은 회사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 투자자 및 회사의 동의 없이는 다른 기업의 무한책임사원, 이사, 피용자가 될 수 없다.
- ② 경업금지의무자는 회사를 퇴사한 날로부터 [2]년의 기간 동안 투자자 및 회사의 동의 없이는 회사의 영업부류와 동일 또는 유사한 영업부류의 기업의 무한책임사원, 이사, 피용자가 될 수 없다.

제3조 (경업거래의 금지)

경업금지의무자는 회사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 및 회사를 퇴사한 날로부터 [2]년의 기간 동안 투자자 및 회사의 동의 없이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와 동일 또는 유사한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거나 기업을 운영할 수 없다.

제5조 (약정의 종료)

회사가 회사의 주권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거나 코스닥시장에 등록하는 날 본 약정이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본 약정의 종료는 그 이전에 이미 발생한 권리·의무 및 손해배상청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6조 (위반의 효과)

- ① 경업금지의무자가 본 약정을 위반하는 경우 경업을 함으로써 취득한 금원 내지 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원 내지 증권을 투자자 또는 회사에게 지급 또는 교부하여야 하고, 이러한 금원 내지 증권이 금 [50,000,000]원에 못 미치는 경우 그 차액을, 경업을 함으로써 취득한 금원 내지 증권이 없는 경우에는 금 [50,000,000]원을 투자자 또는 회사에게 위약벌로서 지급하여야 한다.
- ② 투자자 및 회사가 경업금지의무자로부터 전항의 금원 내지 증권을 지급 또는 교부 받는 경우 이를 동등하게 분배하기로 한다.
- ③ 이해관계인 이외의 경업금지의무자가 본 약정을 위반한 경우 위반자는 회사에게 그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4 전환사채 계약서

< 2026. 4. 개정본 >

투자계약서

20[] []. []. [].

투자자

- [투자자명]
- [투자자명]

회사

[회사명]

이해관계인

[성명]

본 투자계약서(이하 “**본 계약서**”)는 20[] . [] . [] . (이하 “**본 계약 체결일**”) 아래 당사자들 사이에서 다음과 같이 체결되었다.

투자자 : [투자자명](이하 “**투자자1**”)
 [주소]
 업무집행조합원 [회사명]
 대표이사 [성명]
 [투자자명](이하 “**투자자2**”)
 [주소]
 업무집행조합원 [회사명]
 대표이사 [성명]

회사 : [회사명](이하 “**회사**”)
 [주소]
 대표이사 [성명]

이해관계인 : [성명](이하 “**이해관계인**”)
 0000년 00월 00일 생
 [주소]

(이하 개별적으로 “**당사자**”, 투자자1과 투자자2를 통칭할 경우 “**투자자**”, 당사자 전부를 통칭할 경우 “**당사자들**”)

[이하 투자계약서 각 조항을 위한 여백]

다 음

제1장 사채의 인수에 관한 사항

제1조 (사채의 발행 사항)

- ① 회사는 본 계약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전환사채(이하 "본건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투자자는 본건 전환사채를 인수한다.
1. 회사의 상호: [회사명]
 2. 본건 전환사채의 명칭: 제[]회 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3. 본건 전환사채의 종류: 기명식 전환사채
 4. 본건 전환사채의 권면총액: 금 000,000,000원
 5. 본건 전환사채의 권면금액 및 권종수: 금 []억원권 []매, 금 []천만원권 []매
 6.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가액: 본건 전환사채의 권면총액 100%
 7.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조건: 별지 1.에 의함
 8. 각 투자자별 본건 전환사채의 배정 수량과 인수가액

투자자명	권면금액 및 권종수	인수 가액
[투자자명]	금 []억원권 []매 금 []천만원권 []매	금 []원
[투자자명]	금 []억원권 []매 금 []천만원권 []매	금 []원
합 계	금 []억원권 []매 금 []천만원권 []매	금 []원

- ② 회사는 납입기일로부터 3영업일 전까지 투자자에게 본건 전환사채의 인수가액 납입을 위한 은행의 별단예금 계좌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조 (투자의 선행조건)

본 계약에 따른 투자자의 본건 전환사채 인수는 인수가액의 납입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조건이 충족되는 것을 선행조건으로 한다.

1. 회사 및 이해관계인이 본 계약에 따라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이행하였을 것
2. 회사 및 이해관계인이 본 계약에서 행한 진술과 보장이 진실되고 정확할 것
3. 본 계약에 따라 투자자가 인수하기로 예정된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등 본 계약의 이행을 방해하는 소송 또는 기타의 절차(행정절차, 감사 등 포함)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우려가 없을 것
4. 회사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부의 인허가 등을 획득하였을 것
5. 회사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제3자의 동의 등을 획득하였을 것
6. 회사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관련 법령의 절차(상법 제418조 등) 및 회사 내부 절차(정관 및 내부규칙 변경, 주주총회결의, 이사회결의 등 포함)를 이행하였을 것
7. 회사가 투자자의 동의없이 정관 및 내부규칙을 변경하거나 투자자와 협의없이 이사회 결의, 주주총회결의를 하지 않았을 것
8. 회사가 본 계약의 체결 이후 자본구조, 경영상태, 재무상황의 통상적이지 않은 변동 내지 부정적 변동, 통상적인 영업활동에서 벗어난 행위가 없을 것
9. 회사가 이해관계인 및 이해관계인이 아닌 경업금지의무자로부터 (첨부) 퇴사 제한 및 경업금지 약정서에 서명날인을 받아 투자자에게 교부할 것

제3조 (진술과 보장)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거래완결일까지 각자 **별지 2**. 진술과 보장 사항이 진실되고 정확함을 진술하고 보장한다.

제4조 (거래의 완결)

- ① 투자자는 납입기일 또는 회사와 투자자가 달리 합의하는 날에 제2조 각 호의 선행조건의 충족을 조건으로 하여 제1조 제2항에 따라 회사가 통지한 계좌에 인수가액 전액을 납입하여야 하며, 인수가액 전액이 납입된 날(이하 "거래완결일")에

거래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

- ② 회사는 거래완결일의 다음날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1. 본건 전환사채의 사채권. 단, 사채권 발행 교부 전까지 사채권은 사채납입보 관증명서 또는 사채권미발행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
 - 2. 본건 전환사채의 인수가액의 납입영수증
- ③ 회사는 거래완결일로부터 2주 이내에 본건 전환사채와 관련된 상업등기 등 제반 절차를 완료하고, 법인등기부등본, 사채원부 사본, 기타 본 계약상의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 및 인수를 적법, 유효하게 하는 것으로서 투자자가 요청하는 자료를 투자자에게 교부한다.

제5조 (거래완결일 전 해제)

- ① 본 계약은 거래완결일 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귀책사유 없는 당사자에 의하여 해제될 수 있다.
 - 1. 일방 당사자가 본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거나 제3조에 따른 진술과 보장 사항에 허위 또는 오류가 발견되어 상대방으로부터 통보를 받았으나 이를 5일 이내에 이를 치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 2. 선행조건 불충족 기타의 사유로 거래완결이 20[]년 []월 []일까지 이루어 지지 아니하거나 선행조건이 충족될 수 없는 것이 확실해 진 경우
- ② 본 조에 의한 계약 해제 시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이와는 별도로 상대방이 지출한 모든 비용(회계실사 비용, 법률실사 비용 등 전문가 자문료를 포함)을 보전하여야 한다.

제2장 회사 경영에 관한 사항

제6조 (투자금의 용도 및 제한)

- ① 회사는 본 계약에 의하여 투자자로부터 받은 본건 전환사채의 인수가액(이하 “투

자금")을 별지 3. 투자금의 사용용도의 기재와 같이 사용하여야 하며, 특히 투자금으로 제3자에게 자금의 대여 또는 제3자의 주식을 매입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별지 3.** 투자금의 사용용도의 기재와 달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로부터 사전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③ 회사는 투자금을 다른 자금과 구분되는 별도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④ 회사는 투자금의 사용기록부를 작성·비치하여 두고 투자자의 열람 및 등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⑤ 투자자는 언제든지 투자금이 사용용도에 맞게 사용되었는지를 투자자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을 통하여 투자금 사용내역에 대한 실사를 진행할 수 있다. 단, 투자 후 1년 이내의 기간에 회사는 의무적으로 1회 이상 투자금 사용내역에 대한 실사를 받아야 한다.

제7조 (기술의 이전, 양도, 겸업 및 신회사 설립 제한)

- ①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투자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현재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또는 개발 중이거나 개발계획이 확정(외부기관에 의뢰하여 개발하는 경우도 포함, 이하 같음)되었거나 도입 예정인 영업비밀, Know-how, 정보, 기술 등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이전 또는 양도, 담보 제공할 수 없다.
- ② 이해관계인은 투자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현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 개발 중이거나 도입하는 기술의 일부 또는 전부와 관련된 신회사를 설립하거나 개인사업을 할 수 없으며, 경쟁업종 종사, 경쟁사 주식취득 또는 회사가 경영하는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법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임원, 기술고문 및 직원으로 참여하는 등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③ 전항에서 정한 이해관계인의 의무는 해당 이해관계인이 회사를 퇴사하거나 본

계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회사의 주식 전체를 처분하였다더라도 본 계약이 종료되지 않는 한 퇴사일 또는 처분일부터 2년간 유효하다.

제8조 (경영사항에 대한 동의권 및 협의권)

①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투자자에게 각 사항의 시행일로부터 2주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한 뒤 각 사항의 시행일의 전일까지 투자자로부터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투자자의 서면동의를 본 계약의 투자자의 사채권면총액의 3분의2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 투자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정관의 변경
2. 자본의 증감, 주식관련사채의 발행,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3. 회생신청, 파산신청, 해산, 청산, 합병, 분할, 분할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 영업양수도, 타회사의 인수, 경영임대차, 위탁경영 기타 회사조직의 근본적인 변경
4.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의함), 임직원, 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의함)과의 거래
5.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의 국내외 회사 설립 또는 다른 회사의 50% 이상 지분 취득

②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투자자와 사전에 협의하고 투자자에게 업무처리에 따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2. 건당 전년도 자산총계의 [5]% 이상 또는 연간 누계액 기준 전년도 자산총계의 [10]% 이상의 규모에 해당하는 자산의 취득 및 처분, 투자(주식 및 사채인수 포함), 자금대여, 담보 제공, 보증, 신규 자금차입 또는 채무의 부담
3. 각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가 전년도 급여와 비교하여 [20]%이상 상승하는 경우

4. 본건 투자 당시 사업계획에 명시한 것과 현저히 다른 사업에 착수하거나, 주요 사업의 중단, 포기
5.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변경

제9조 (보고 및 자료 제출)

- ① 회사는 투자자의 별도 요청이 없더라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단, 본 계약의 다른 약정에 의한 통지의무와 중복되는 항목에 있어서는 어느 경우든 먼저 도래하는 기일까지 통지 또는 보고되어야 한다.
 1. 회사가 발행, 배서 또는 보증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거래가 정지된 때
 2. 파산, 회생절차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의 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부실정후기업으로 인정되는 때
 3. 소송 내지 중재 절차가 시작된 때
 4. 정부 및 준정부기관에 의한 행정적 제재
 5. 회사의 사업에 필요한 중요 기술인력의 채용 및 퇴직 상황
- ② 회사는 투자자의 별도 요청이 없더라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해진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연차보고 - 다음 회계연도 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
 - 가.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은 결산 재무제표
 - 나. 연간경영보고서(사업계획서)
 - 다. 주주명부(보고일 기준)
 - 라. 세무조정계산서
 2. 분기보고 - 다음 분기 시작일로부터 60일 이내
 - 가. 분기 재무제표
 - 나. 분기 경영보고서

- ③ 회사는 투자자가 요청하는 경영자료를 투자자가 요청하는 양식에 따라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투자자에게 제공하기로 한다.

제10조 (회계 및 업무감사, 시정조치)

- ① 회사는 20[] 회계연도부터 기업공개에 위한 제반 준비절차로서 투자자의 서면 동의를 받은 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지정하여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 ② 투자자는 회사의 경영 및 재산 상태를 확인하고 계획된 사업의 수행에 대해 투자자의 입장에서 선의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신의 직원 또는 외부의 전문가를 파견하여 회사의 회계 및 업무 전반에 관한 조사 및 기타 투자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고,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이에 대하여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 ③ 본 조에 따른 조사 및 감사 등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 ④ 투자자는 회사의 경영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 결과 또는 투자자의 조사 결과에 따라 회사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시정을 요구 받은 사항에 대해 정하여진 일정한 기간 내에 시정 조치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회사는 회사 경영 및 기술개발 등 사업 전반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임직원에게, 본 건 거래완결일 전 이미 부여되었거나 발행된 것과 제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투자자의 동의 하에 발행된 것을 포함하여 그 행사로 인해 발행될 수 있는 주식 지분을 총계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시점의 발행주식총수의 10% 이내인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제12조 (임원의 지명)

- ① 투자자는 동일 라운드에 동반 투자하는 투자자들과 협의하여 회사의 상무에 중

사하지 아니하는 이사(기타비상무이사) [1]인을 지명할 권리를 가지며,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투자자가 지명한 이사(이하 “**투자자 지명이사**”) 회사의 이사로 선임될 수 있도록 즉시 임시주주총회 개최 등 이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단 투자자들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투자자 지명이사를 지정한다.

- ② 투자자는 언제든지 투자자 지명이사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와 이해관계인은 이에 응하여 투자자 지명이사의 교체를 위한 임시주주총회의 개최 등의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 ③ 투자자 지명이사는 회사의 채무에 대한 보증을 하지 아니하며, 투자자 지명이사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책임을 면제받고,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투자자 지명이사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이 제3자에게 부담, 지급하게 되는 비용을 투자자 지명이사에게 보전해 준다.
- ④ 회사는 본 계약 체결일 현재 회사의 임원에 대한 것과 동일한 수준으로 투자자 지명이사에 대해 임원책임보험을 부보하도록 한다.

제13조 (주주총회 및 이사회 개최 요구)

투자자가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주주총회 개최를 요구하거나, 투자자 지명이사가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이사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즉시 임시주주총회 내지 이사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14조 (기업공개 및 M&A에 관한 사항)

- ①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가능한 이른 시간 내에 회사의 주권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이하 “**기업공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회사가 기업공개 요건을 사실상 충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및 이해관계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기업공개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투자자는 구

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기업공개를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 ②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다른 법인으로부터의 인수·합병의 제의가 있는 경우 투자자와 협의하여 인수·합병의 협의에 최대한의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야 한다.

제3장 거래완결일 후 지분의 처분에 관한 사항

제15조 (투자자의 지분 처분)

- ① 투자자는 본건 전환사채를 포함하여 거래완결일 이후 투자자가 보유하게 된 회사의 주식(이하 상환되지 아니한 전환사채와 전환권을 행사하여 회사로부터 인수받은 주식을 통칭하여 “지분”이라 한다)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다. 회사는 투자자의 요청에 따라 지분 처분에 따른 권리이전에 필요한 절차를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 ② 투자자가 제1항에 따라 지분의 처분을 위하여 회사 IR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

제16조 (이해관계인의 주식 처분)

- ① 이해관계인은 투자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주식 처분(양도, 이전, 매각, 담보제공 등) 또는 주식 처분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의 체결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본조에 따라 이해관계인이 투자자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고 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주식을 양수하는 제3자로 하여금 본 계약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의무 일체를 승계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 (투자자의 우선매수권 및 공동매도참여권)

- ① 전조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인이 회사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투자자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우선하여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우선매수권”)와 동일한 조건으로 지분비율에 따라 함께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공동매도참여권”)를 보장하여야 한다.

- ② 이해관계인이 회사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양도하고자 하는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 양도 또는 이전하고자 한다는 요지의 취지, 당해 제3자의 신원, 양도주식 수, 주당 양도가액, 양도예정일 기타 양도의 주요 조건을 명시하여, 양도예정일로부터 [20]일 이전에 투자자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 ③ 투자자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해관계인에게 제1항의 우선매수권 또는 공동매도참여권 행사 여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기로 한 경우 주식을 매수하려는 자의 정보(투자자 또는 투자자가 지명하는 자), 공동매도참여권을 행사하기로 선택한 경우 공동 매도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량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 ④ 이해관계인은 투자자에게 본 조에 따른 우선매수권과 공동매도참여권이 보장되지 않는 한 회사의 주식을 일부라도 처분하여서는 아니된다.
- ⑤ 투자자가 본 조에 의한 우선매수권 및 공동매도참여권을 행사하지 않고, 전조에 따른 주식 처분을 동의한 경우 이해관계인은 제2항에 따라 통지한 조건 범위 내에서만 주식을 처분할 수 있고,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다시 전조와 본 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⑥ 다수의 투자자가 우선매수권 또는 공동매도참여권을 행사함에 따라 투자자 간에 권리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 및 이해관계인의 지분비율대로 안분하여 거래하기로 한다.

제4장 계약 위반에 따른 책임에 관한 사항

제18조 (기한이익의 상실 등)

- ① 거래완결일 후 회사에게 다음 각 호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투자자는 회사에 대하여 본건 전환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조의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금을 납입하게 함으로써 투자의 효력을 발생하게 한 경우
 2. 제3조 및 **별지 2**. 진술과 보장 사항이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
 3. 제6조 및 **별지 3**. 투자금의 사용용도를 위반한 경우
 4. 제7조 기술의 이전, 양도 겸업 및 신회사 설립 제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제8조를 위반하여 투자자의 동의 또는 3회 이상 협의없이 각 호 사항을 진행한 경우
 6. 제10조에 따른 회계 및 업무감사 협조 또는 시정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7. 제32조에서 정한 특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8. 기타 본 계약에 따른 회사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② 이해관계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회사에게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 사유가 발생한 경우 투자자는 해당 이해관계인에게 본건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1. 제2조의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금을 납입하게 함으로써 투자의 효력을 발생하게 한 경우
 2. 제3조 및 **별지 2**.의 진술과 보장 사항이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
 3. 제6조 및 **별지 3**. 투자금의 사용용도를 위반한 경우
 4. 본 계약에 반하여 이해관계인이 주식을 처분한 경우
 5. 기타 본 계약에서 정한 이해관계인 본인의 의무(본 계약에서 회사와는 별도로 이해관계인 스스로 이행할 책임이 있는 본 계약 제7조, 제8조, 제10조제2항, 제12조, 제13조, 제25조제3항의 의무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를 위반한 경우
- ③ 제1항에 따른 회사의 상환원리금은 기한이익 상실 당시 남아있는 본건 전환사채 인수가액 및 이에 대하여 납입기일부터 만기일까지의 만기보장수익률에 의한 금액과 연 [(예시)12]%에 의한 금액 중 큰 금액을 합산한 액수로 한다.
- ④ 제2항에 따른 지분매매 대금 중 전환사채로 남아있는 부분은 전환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하고, 주식으로 전환되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부분은 1주당 매매대금

을 다음 각 호 중 높은 금액으로 한다. 단, 해당 주식 발행일부터 대금 지급일까지 지급된 배당금이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하기로 한다.

1. 전환 당시의 1주당 전환가격 및 이에 대한 본권 전환사채 인수가격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대금 지급일까지 연 12% 이율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
 2. 지분매수청구일을 기준으로 과거 [1]년간 있었던 회사 발행 주식의 거래 증가 높은 1주당 매매대금
 3. 당사자 사이에 합의한 주식가치 평가기관에 의하여 평가된 1주당 본질가치(여기서 “본질가치”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5조 내지 제8조의 분석기준에 의하여 평가된 주식의 가치를 말하고, 본질가치의 산정은 투자자가 지정하는 회계법인 및 국내 상위 5개 회계법인 중 하나에 의하여 산출된 2가지 평가 액수의 산술평균으로 한다, 이하 동일)
- ⑤ 투자자의 이해관계인에 대한 제2항의 지분매수청구권 행사는 매수청구 대상 지분의 형태 및 수, 매매대금, 거래예정일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며 해당 서면이 이해관계인에게 도달한 때 지분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제19조 (손해배상 및 위약벌)

- ① 투자자는 본 계약에 따른 각 당사자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회사에게 전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투자자는 회사에게 제18조제1항에 의한 청구 및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와는 별도로 투자금의 [(예시)10]%에 해당하는 위약벌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이해관계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회사에게 전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이해관계인에게 전조 제2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투자자는 해당 이해관계인에게 지분매수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와는 별도로 투자금의 [(예시)10]%에 해당하는 위약벌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전항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인이 제16조 및 제17조를 위반하여 주식을 처분한 경우, 투자자는 이해관계인에게 지분매수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와는

별도로 투자금의 [(예시)10]%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해관계인이 주식을 처분하고 지급받은 매매대금의 [(예시)*]%에 해당하는 금액 중 큰 금액을 위약벌로 청구할 수 있다.

제20조 (지연배상금)

본 계약의 당사자가 본 계약에 따라 정해진 지급기일에 금전지급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지체하는 경우, 해당 지급기일 다음날로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연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연배상금으로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

제21조 (이해관계인의 책임)

① 이해관계인은 회사가 본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모두 이행할 수 있도록 본인의 권한, 권리,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의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에 따라 이해관계인이 회사가 부담하여야 하는 의무를 연대하여 부담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그 사유 발생에 해당 이해관계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로 제한한다.

1. 제2조의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금을 납입하게 함으로써 투자의 효력을 발생하게 한 경우
2. 제3조 및 별지 2.의 진술과 보장 사항이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
3. 제6조 및 별지 3. 투자금의 사용 용도를 위반한 경우
4. 본 계약에 반하여 이해관계인이 주식을 처분한 경우

제5장 계약의 일반 사항

제22조 (본 계약의 효력)

① 본 계약서의 별지와 첨부서류는 본 계약서와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서 그에 따른 내용은 본 계약의 내용의 일부를 구성한다.

- ② 본 계약상의 내용이 본 계약 체결 이전의 당사자들 사이의 어떠한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교섭, 합의 등의 내용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의 내용이 우선한다.
- ③ 본 계약은 투자자, 회사, 이해관계인의 서명날인과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 ④ 본 계약은 전자 또는 수기의 형식을 포함하여 수개의 부분으로 체결될 수 있으며, 각 부분은 모두 원본으로 인정되나 하나의 법률문서를 구성한다.

제23조 (계약의 종료)

- ① 투자자가 본건 전환사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전환권을 행사하여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에도 투자자의 본 계약 상 지위는 동일하게 유지된다. 단, 본 계약 제2장 및 제3장의 규정은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이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지분 대비 [10] % 미만인 경우 또는 회사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경우 종료한다.
- ② 전항의 계약 종료는 그 이전에 이미 발생한 권리·의무 및 손해배상청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4조 (계약의 내용 변경)

- ① 당사자는 전원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② 투자자가 서면으로 명확한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본 계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이상, 투자자의 어떠한 행위도 투자자가 본 계약상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제25조 (권리 및 의무의 양도, 승계)

- ①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거래완결일 전후를 불문하고 투자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에 관한 권리 및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 ② 투자자가 회사의 기업공개 이전에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지분 대비의 [30] % 이상을 제3자(여기서 “제3자”는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및 이들 투자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될 수 있는 법률상 자격이 있는 자, 기관전용 사모집합 투자기구를 말함)에게 양도한 경우 및 투자자가 투자조합인 경우 존속기간 만료 등의 이유로 해산되며 투자자의 업무집행조합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지분 상 투자자의 본 계약에 따른 권리는 지분매수인에게 승계된다.

③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전항의 계약상 지위 승계를 수인하여야 한다.

제26조 (통지)

① 본 계약에 따른 당사자들에 대한 통지 및 서류 송부는 아래의 주소에 인편, 팩스, 등기우편 또는 택배, 전자우편(이메일) 또는 DocuSign, Adobe Sign 등 당사자가 합의한 전자 계약 플랫폼으로 발송한다.

1. 투자자1에 대한 통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2. 투자자2에 대한 통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3. 회사에 대한 통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4.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 ② 통지처가 변경된 경우 해당 당사자는 변경일로부터 지체없이 본 조에 따른 통지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변경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변경 통지가 도달한 이후에 비로소 변경된 통지처로의 통지가 유효하다. 변경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본 조에 기재된 기존 통지처로의 통지는 유효하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 ③ 전항의 경우 본 계약에 따른 통지처로 발송한 경우 발송일로부터 2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
- ④ 본 계약에서 정한 투자자의 모든 권리 및 사실행위는 본 계약서의 날인 란에 기재된 업무집행조합원이 투자자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투자자를 위하여 재판상 및 재판외에서 행사한다.

제27조 (비밀유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정보는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밀로 하고,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본 조의 의무는 본 계약의 효력이 상실하는 경우에도 2년간 그 효력이 존속된다.

1. 당사자가 공개하기로 합의한 사항
2. 공지된 정보
3. 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제3자로부터 이미 적법하게 취득한 정보
4.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한 법률자문, 소의 제기,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5. 법원 또는 정부기관이 적법하게 공개 또는 제공을 요구한 정보(단, 사전에 상대방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 (세금)

본 계약의 당사자에게 부과된 조세 공과금은 법령상 부담하여야 할 당사자가 각자 부담한다.

제29조 (일부 무효)

본 계약 또는 이와 관련하여 작성된 서류에 명시된 한 개 또는 수개의 조항이 법령에 따라 무효, 위법 또는 집행불능으로 되더라도 본 계약에 명시된 나머지 조항의 효력, 적법성 및 집행가능성은 그로 인하여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30조 (준거법 및 분쟁해결)

- ① 본 계약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된다.
- ② 본 계약에 따라 발생한 모든 분쟁의 제1심 관할법원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지정한다.

제6장 특약 사항

제31조 (특약사항의 효력)

특약사항은 본 투자계약서의 본문의 내용을 수정·삭제·추가하는 사항으로서 본문의 내용이 특약사항의 내용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의 내용이 그 효력에 있어서 우선한다.

제32조 (특약사항의 구체적 내용)

- ①
- ②

[이하 서명 또는 날인을 위하여 여백]

본 계약의 체결 사실을 증거하기 위하여 투자자, 회사, 이해관계인은 대표자 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본 계약서의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 란에 서명 날인하게 하는 방법으로 본 계약을 체결하고, 각 1통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보관하기로 한다.

계약 체결일 : 20[] . [] . [] .

투자자 : [투자자명]
 [주소]
 업무집행조합원 [회사명]
 대표이사 [성명] (인)
 [투자자명]
 [주소]
 업무집행조합원 [회사명]
 대표이사 [성명] (인)

회사 : [회사명]
 [주소]
 대표이사 [성명] (인)

이해관계인 : [성명] (인)
 0000년 00월 00일 생
 [주소]

별지 1.

본건 전환사채의 종류 및 내용

1. 본건 전환사채의 표면이율

연 []%

2. 본건 전환사채의 만기보장수익률

연 []%

3. 본건 전환사채의 납입기일

20[]년 []월 []일

4.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일

20[]년 []월 []일

5. 본건 전환사채의 만기일

20[]년 []월 []일

6. 본건 전환사채의 원리금 지급 장소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상환 수탁기관의 계좌 또는 은행지점

7. 본건 전환사채의 분할 및 병합

본건 전환사채권은 기명식으로만 발행하고 그 권면의 매수가 50매 미만이어야 하

며, 본건 전환사채권은 발행 후 1년 이내 권면 분할이 금지되고 그 특약이 권면에 기재되어야 한다.

8.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

사채권자는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년이 되는 날 및 이후 매 []개월마다 본건 전환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때 조기상환수익률은 연 []%로 하고, 회사는 조기상환을 청구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후의 날 이내 중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날까지 조기상환을 완료하여야 한다.

9. 본건 전환사채의 상환에 관한 사항

회사는 본건 전환사채 원금 및 이자지급을 다음과 같이 이행한다.

① 원금상환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은 본건 전환사채 액면금액에 대하여는 원금에 만기보장수익률과 표면이율과의 차이를 본건 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 동안 복리(복리이자 산정단위 []개월)로 계산한 금액과 합산한 금액을 만기일에 일시 상환하기로 한다.

② 이자지급

이자의 지급은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원금 상환기일까지 미상환잔액에 대하여 아래 도표의 상환계획에 따라 년 []회 지급한다. 단,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의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로 한다. 이자지급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1년을 365일로 보며 1년 중 전체 일수에서 실제 경과한 일수 비율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이자지급금액으로 한다.

납입기일	표면이자	보장이자	원금	계
합계				

10.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에 관한 사항

- ① 사채권자는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개월이 경과하는 날부터 만기일의 전일까지 본건 전환사채를 언제든지 회사의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 ②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사채권자는 본건 전환사채를 보통주식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전환사채 전환 청구서에 전환하고자 하는 사채의 범위, 청구연월일을 기재하여 기명 또는 서명날인하고 사채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한다.
 2. 전환청구를 한 경우 전환은, 사채권자가 전환될 본건 전환사채의 사채권을 제출한 날짜의 영업시간 종료 직전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3. 사채권자가 전환에 의하여 보통주식을 부여 받게 되는 경우 상기 제2호의 날짜를 기준으로 주주명부상의 주주로 간주된다.
 4. 회사는 사채권자로부터 본건 전환사채의 사채권을 인도받은 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사채권자에게 그가 부여 받을 권리가 있는 수만큼의 보통주식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인도하여야 한다.
 5. 전환과 관련된 절차의 진행 등 모든 사항은 회사가 담당하고 이를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결과를 사채권자에게 신속히 통보하도록 한다. 또한 변경된 내용은 사채원부에 기입한다.
- ③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 조건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본건 전환사채의 보통주식으로의 전환비율은 본건 전환사채 권면금액의 100%으로 하고,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보통주식의 1주 당 발행가액(이하 “**전환가격(전환가격)**”)은 금 []원으로 한다. 1주 미만의 단주에 해당하는 금액은 전환권 행사로 인한 주식 교부시 현금으로 지급하며, 단주 대금에 대한 미지급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2. 회사의 IPO 공모단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그 당시의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는 그 공모단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환가격으로 조정한다. 본 호의 경우 조정일은 공모청약일로 하고, 회사는 조정이 발생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사채권자에게 통보한다.
3. 회사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에 상장된 기업과의 합병, 주식교환 등을 통해 상장을 위한 심사나 공모주 청약 등의 절차를 밟지 않고 곧바로 상장되는 등의 이른바 ‘우회상장’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먼저 아래 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따라 전환가격을 조정한 후 우회상장의 효과가 발생한 당시 시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위 조정된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 당시 시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환가격으로 조정한다. 그 때로부터 3년간 매 6개월마다 전환가격을 조정하되, 우회상장의 효과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전환 시 발행될 주식과 동일한 종류의 구주의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최근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직전 전환가격을 비교하여 둘 중 낮은 가격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4.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 전에 회사가 본건 전환사채의 조정전 전환가격보다 낮은 발행가액(이하 “**신주발행가액**”이라 한다)으로 보통주식, 종류주식,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기타 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증권(이하 총칭하여 “**신주등**”이라 한다.)을 발행하는 경우,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가격은 아래 산식에 따라 조정한다. 단, (i) 투자자가 동의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신주 발행, (ii) 기존 발행된 전환증권의 전환·행사 및 (iii) M&A에 따른 신주발행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text{조정후 전환가격} = \text{조정전 전환가격} \times (A + B) / (A + C)$$

A = 신주등 발행 직전일 현재 회사가 발행한 보통주식의 총수에, (i) 발행된 종류 주식이 모두 보통주식으로 전환되었다고 가정하였을 때의 보통주식 수, (ii) 발행된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교환사채 등이 모두 전환·행사되었다고 가정하였을 때의 보통주식 수, (iii)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 및 기타 주식연계 증권이 모두 행사되었다고 가정하였을 때의 보통주식 수를 합산한 주식 수

B = 신주등 발행으로 회사에 납입되는 총 발행가액 ÷ 조정전 전환가격
 (= 신주발행가액 × 신주등 발행주식 수 ÷ 조정전 전환가격)

C = 신주등 발행주식 수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경우 전액 전환·행사 시 발행될 보통주식 수를 기준으로 한다)

-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 이후 주식배당, 무상증자 등으로 인해 발행주식 수가 증가하는 경우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가격은 아래의 수식에 따라 조정한다.

$$\text{조정후 전환가격} = \text{조정전 전환가격} \times (\text{조정전 발행주식총수}) / (\text{조정후 발행주식총수})$$

-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 전에 회사가 합병, 주식의 분할 또는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주식의 분할 또는 병합 직전에 전환사채가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전환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 수를 그 가치 또는 그 이상으로 보장하는 방법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 조정 후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액 미만으로 되는 경우,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는 주주총회결의 및 법원의 인가 등 액면가액 미만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하여 신주를 발행할 수 있도록 모든 절차를 취하여야 하

며, 액면가액 미만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하는 것이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격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단, 전환가격을 액면가액으로 하는 경우, 추후 관련법규의 변경으로 액면가액 미만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할 경우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8. 본건 전환사채의 인수 이후 후행 투자자의 전환가격 조정이 본건 전환사채 보다 유리한 경우 후행 투자자의 전환가격에 따라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전환가격 조정은 해당 신주등의 납입기일(또는 효력발생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회사는 조정 사유 발생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조정 내역(조정 전·후 전환가격, 산정 근거, 적용 산식, 효력발생일 포함)을 투자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⑤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청구기간 만료시까지 회사가 발행할 수권주식의 총수에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발행 가능한 주식 수를 유보한다.
- ⑥ 회사는 전환청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주 이내에 상법에 의한 증자 등기를 행한다.
- ⑦ 전환사채의 발행, 전환의 청구, 기타 전환에 관한 사항은 상법 제513조 내지 제 516조의 규정을 따른다.

별지 2.

진술과 보장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본 계약 체결일 현재 및 거래완결일 현재 아래 사항이 진실되고 정확함을 진술하고 보장한다.

제1장 공통사항

제1조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회사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어 유효하게 존속 중인 주식회사로서 회사에 대하여 파산, 회생 등 도산절차와 관련된 어떠한 신청도 제기된 바 없으며, 지급불능, 지급유예, 워크아웃 절차 등 회사의 주주 및 채권자의 권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 없음을 본 계약 체결일 및 거래완결일을 기준으로 진술하고 보장한다. (이하 진술 및 보장 전체에 대한 기준시점은 본 계약 체결일 및 거래완결일이다).

제2조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본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법률적, 사실적인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주주총회 및 이사회 의 승인을 비롯하여 본 계약의 체결 및 유지를 위하여 회사가 이행하여야 하는 모든 조치를 취하였음을 진술하고 보장한다.

제3조 본 계약의 체결 및 신주의 발행은 법률이나 규정 기타 관계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며, 회사의 정관에 부합하고, 회사 및 이해관계인이 당사자인 계약 또는 기타 의무의 위반을 가져오지 아니함을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진술하고 보장한다.

제4조 본 계약에 의한 회사 및 이해관계인의 의무는 본 계약에서 정한 바 그대로 적법, 유효하고 구속력이 있으며 회사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집행 가능한 법적 의무를 구성함을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진술하고 보장한다.

제5조 투자자가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하는 주식은 적법하며 유효하게 발행될 것이며, 투자자의 본 계약상의 권리 혹은 주식에 대한 권리 행사를 실질적으로 방해할 만한 행정절차(행정처분, 조사, 감사, 수사 포함), 법령, 또는 보전처분을 포함한 법원의 재판에 의한 어떠한 제한이나 회사와 이해관계인이 당사자이거나 구속을 받는 계약상의 어떠한 제한도 존재하지 아니함을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진술하고 보장한다.

제2장 회사에 관한 사항

제6조 (자본에 관한 사항)

① 회사의 발행주식은 본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1주당 액면가액이 금 []원인 보통주식 []주, 종류주식 []주이고, 그 이외의 발행 주식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주주별 지분율, 전환사채 발행내역, 신주인수권부사채, 주식매수선택권, 주식배당, 기타 장래 회사의 지배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반 권리의 주요 내용 및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내역, 조건부지분인수계약 체결 내역은 아래 주식 등의 현황 기재와 같으며 아래 기재 사항 이외에 회사의 주식 지분율 기타 장래 회사의 지배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떠한 사항도 없다.

1. 주주별 소유주식 수

주주명	주식 수	지분율(%)	기 타 (담보권설정여부,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여부)
			대표이사...사내이사 등
합계	[]주	100.0%	

2. 전환사채

회수	총 발행가액	미 전환금액	전환가격	전환기간

3. 신주인수권부사채

회수	총 발행가액	미행사금액	행사가액	행사기간

4.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받은 자	주식 수	행사가액	행사기간	행사방법

5. 조건부지분인수계약 체결 내역

계약 체결일	투자자	투자금	가치한도	할인율	기타 주요 조건

- ② 회사는 설립 이후 본 계약 체결일 현재까지 주식의 발행에 있어서 가장납입을 한 사실이 없으며 이해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주식은 전항 기재와 같고 회사는 이를 자신의 계산으로 취득하였고 가장납입 한 사실이 없다.
- ③ 회사는 계열회사 또는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통상의 범위에서 벗어날 정도로 회사에 불리한 매출거래, 보증 또는 담보제공 등을 한 사실이 없다.

제7조 (자산에 관한 사항)

- ① 회사는 현재 사용중인 부동산, 동산, 기계, 차량, 사무실 기기 및 기타 영업에 필

요한 모든 권리, 물건 등은 적법하게 회사의 소유로 되어 있거나, 회사가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을 진술하고 보장한다.

- ② 회사는 현재 보유 사용하고 있는 모든 특허권을 포함한 지식재산권 기타 무형자산은 회사가 적법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제3자로부터 권리를 침해 받고 있지 않음을 진술하고 보장한다.
- ③ 회사는 통상적인 사업경로에 따른 제품의 판매 등을 제외하고 회사의 자산이나 권리를 매매, 교환 또는 기타 방식으로 처분하지 아니하였음을 진술하고 보장한다.

제8조 (부채에 관한 사항)

- ① 회사의 담보제공 및 입보 내역은 아래 기재와 같다.

금융기관	제공담보		입보내역		비고
	담보종류	설정액 (실현가)	한도	사용액	

- ② 회사의 금융기관 차입, 회사 발행 사채 등과 관련된 계약에는 본 거래로 인하여 당해 계약에서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거나 당해 계약의 상대방이 회사에 대하여 즉각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회사는 진술하고 보장한다.

제9조 (재무제표에 관한 사항)

- ① 투자자에게 제공된 회사의 20[]년 []월 []일 기준 재무제표는 대한민국에서 통용되는 기업회계기준을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 및 관행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회사의 재무상태 및 영업현황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음을 회사는 진술하고 보장한다.
- ② 투자자에게 서면 고지된 것을 제외하고 상기 재무제표 기준일 이후에, 회사의 재무상태, 자산 및 부채, 영업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변경이나 변동

사항은 없음을 회사는 진술하고 보장한다.

- ③ 회사가 최선의 노력으로 파악한 결과 상기 재무제표에 기재되지 아니한 부외부채(우발채무 포함) 및 부외자산은 실사자료로 제시한 바와 같고, 실사자료에 나타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투자자의 본 계약체결 및 거래완결에 영향을 줄 만한 증대한 부외부채 및 부외자산은 없다.

제10조 (관계회사에 관한 사항)

회사의 관계회사는 아래 기재와 같다. 여기서 “관계회사”란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이 주식 또는 주식연계사채를 보유하고 있거나 기타 추후 주주로 인정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를 말한다.

회사명	소재지	업종	관계	주주 구성

제11조 (법령 위반, 소송 등에 관한 사항)

- ① 회사는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업에 필요한 정부 인허가 등을 모두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으며, 이 인허가 등이 취소될 위험에 처해 있지 않다.
- ② 회사는 회사의 자산(부동산, 설비, 임차물 및 장비 등) 및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지역제한, 안전, 공해 및 환경, 노동,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포함하여 회사와 그 생산과정 및 제품에 적용되는 제반법령, 규정 및 명령을 준수하였으며, 부당하게 임금, 퇴직금 등을 미지급한 사실이 없다.
- ③ 투자자에게 서면 고지된 것을 제외하고, 회사의 사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현재 진행되는 소송(보전소송 포함), 중재 또는 행정절차 기타 분쟁은 없음을 회사는 진술하고 보장한다.
- ④ 회사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소송, 중재 또는 기타 분쟁이 없으며, 추후 분쟁의 위험에 처해 있지 않다.
- ⑤ 회사는 주주총회 및 이사회 관련 제반 서류를 작성 비치하고 있으며, 그와 관련

된 법규 위반사항이 없다.

제12조 (세금, 보험 등에 관한 사항)

- ① 회사는 국세, 지방세 등 고지된 납세 의무를 이행하였고,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미납된 세금은 없음을 진술하고 보장한다.
- ② 회사는 회사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제반 보험(4대 보험, 기타 영업 관련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거나 해당 업계에서 회사와 유사한 기업들이 통상적으로 가입하고 있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진술하고 보장한다.

제13조 (기타)

회사는 투자자 또는 그 실사관련 자문사들에게 제공한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정관 및 각종 계약서, 사업계획서 등 일체의 서면, 서류, 정보 기타 자료는 제공일 현재 회사에 관한 사항을 정확히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진실되고 거짓이 없으며, 중요한 사항을 생략하지 않았고, 중대한 면에서 의미를 오도하지 않는다. 회사의 임직원이 실사 과정에서 구두로 답변한 내용에 관하여도 고의 또는 과실로 허위 답변한 사실이 없음을 진술하고 보장한다. 단, 사업계획서 상에 미래에 대한 예측 및 기타 사업관련 계획 사항은 경영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제3장 이해관계인에 관한 사항

제14조 이해관계인은 투자자에 대하여 본 별지의 진술과 보장 사항이 본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서 모두 진실되고 거짓이 없음을 보장하고, 나아가 동 진술과 보장 사항이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 이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이해관계인은 이로 인하여 투자자가 입게 되는 모든 손해, 손실 및 비용을 본 계약에 따라 회사와 함께 배상 또는 보상한다.

제15조 이해관계인은 위 제14조에 추가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진술하고 보장한다.

- ① 이해관계인이 가지고 있는 회사의 주식은 첨부하는 주주명부의 기재와 같고, 이해관계인은 이를 자신의 계산으로 취득하였고 가장납입한 바가 없다.
- ② 위 주주명부는 이해관계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들의 이름, 관계 및 그 소유주식 수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다.
- ③ 이해관계인이 본 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이행함에 있어 법령상 또는 계약상의 제한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 ④ 이해관계인은 본 계약 체결일 현재 회사의 주주 또는 종업원으로서의 지위와 관련하여 제3자와 분쟁을 하고 있지 아니한다.

제16조 이해관계인은 본 진술과 보장 사항에 영향을 미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시 투자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투자자의 요청에 따라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별지 3.

투자금의 사용용도 및 실사 약정

1. 투자금 사용용도

회사는 본 약정에 의하여 투자자로부터 받은 자금을 다음과 같은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단, 당초 체결한 투자계약서의 투자금 사용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투자자로부터 사전에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용도	금액	비고
합계		

2. 투자기업 투자자금 집행 실사 및 관리체계

투자자는 투자금이 사용용도에 맞게 사용되었는지를 투자자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을 통하여 투자금 사용내역에 대한 실사를 진행할 수 있다. 회사는 투자자금 집행 실사와 관련하여 자금사용내역과 그 증빙을 제출하여야 하며 실사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3. 투자금 사용 제한

회사는 본 투자자금 약정서에 명시된 용도로 자금을 집행하기 이전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의 별도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제3자에 대한 자금대여 및 제3자 주식을 매입한 경우에는 회사의 자금출처 조사 등을 포함한 거래 전반 실사를 실시한다.

4. 위반시 처리

회사가 본 약정서를 위반하는 경우, 투자자는 30일 이내에 원상 회복을 요구하고 회사는 즉시 원상 회복 후 투자자가 요청하는 시기에 재실사를 실시한다. 만약 충실하게 원상 회복이 이루어지는 경우 투자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본 계약서 본문 제4장 계

약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있다.

(첨부)

퇴사제한 및 경업금지 약정서

I. 퇴사제한

1. 퇴사가 제한되는 이해관계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퇴사 제한 기간	서명 또는 날인

2. 위반시의 효과

위 퇴사제한 약정을 위반한 이해관계인은 퇴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투자자에게 위약벌 : 금 []원 을 지급하여야 한다.

II.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는 자

1. 투자자 :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란의 서명날인으로 같음
2. 회사 :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란의 서명날인으로 같음
3. 이해관계인 :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란의 서명날인으로 같음
4. 이해관계인 이외의 임직원

성명	생년월일	주소	퇴사 제한 기간	서명 또는 날인

III. 경업금지약정의 내용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경업금지약정은 회사의 이해관계인 및 주요임직원으로 하여금 일정기간 동안 회사의 영업과 동일 또는 유사한 영업을 금지시킴으로써 회사의 영업을 보호함은 물론 투자자의 투자의 실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경업지위의 취임 금지)

- ① 이해관계인 및 본 계약서에 서명날인한 이해관계인 이외의 임직원(이하 “경업금지 의무자”)은 회사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 투자자 및 회사의 동의 없이는 다른 기업의 무한책임사원, 이사, 피용자가 될 수 없다.
- ② 경업금지의무자는 회사를 퇴사한 날로부터 [2]년의 기간 동안 투자자 및 회사의 동의 없이는 회사의 영업부류와 동일 또는 유사한 영업부류의 기업의 무한책임사원, 이사, 피용자가 될 수 없다.

제3조 (경업거래의 금지)

경업금지의무자는 회사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 및 회사를 퇴사한 날로부터 [2]년의 기간 동안 투자자 및 회사의 동의 없이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와 동일 또는 유사한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거나 기업을 운영할 수 없다.

제5조 (약정의 종료)

회사가 회사의 주권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거나 코스닥시장에 등록하는 날 본 약정이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제6조 (위반의 효과)

- ① 경업금지의무자가 본 약정을 위반하는 경우 경업을 함으로써 취득한 금원 내

지 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원 내지 증권을 투자자 또는 회사에게 지급 또는 교부하여야 하고, 이러한 금원 내지 증권이 금 [50,000,000]원에 못 미치는 경우 그 차액을, 경업을 함으로써 취득한 금원 내지 증권이 없는 경우에는 금 [50,000,000]원을 투자자 또는 회사에게 위약벌로서 지급하여야 한다.

- ② 투자자 및 회사가 경업금지의무자로부터 전항의 금원 내지 증권을 지급 또는 교부 받는 경우 이를 동등하게 분배하기로 한다.
- ③ 이해관계인 이외의 경업금지의무자가 본 약정을 위반한 경우 위반자는 회사에게 그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5 신주인수권부사채

<2026. 4. 개정본>

투자계약서

20[] []. []. [].

투자자

- [투자자명]
- [투자자명]

회사

[회사명]

이해관계인

[성명]

본 투자계약서(이하 “**본 계약서**”)는 20[] . [] . [] . (이하 “**본 계약 체결일**”) 아래 당사자들 사이에서 다음과 같이 체결되었다.

투자자 : [투자자명](이하 “**투자자1**”)
 [주소]
 업무집행조합원 [회사명]
 대표이사 [성명]
 [투자자명](이하 “**투자자2**”)
 [주소]
 업무집행조합원 [회사명]
 대표이사 [성명]

회사 : [회사명](이하 “**회사**”)
 [주소]
 대표이사 [성명]

이해관계인 : [성명](이하 “**이해관계인**”)
 0000년 00월 00일 생
 [주소]

(이하 개별적으로 “**당사자**”, 투자자1과 투자자2를 통칭할 경우 “**투자자**”, 당사자 전부를 통칭할 경우 “**당사자들**”)

[이하 투자계약서 각 조항을 위한 여백]

다 음

제1장 사채의 인수에 관한 사항

제1조 (사채의 발행 사항)

- ① 회사는 본 계약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고 투자자는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다.
1. 회사의 상호: [회사명]
 2.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명칭: 제[]회 기명식 무보증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3.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종류: 기명식 신주인수권부사채(분리형)
 4.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권면총액: 금 000,000,000원
 5.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권면금액 및 권종수: 금 []억원권 []매, 금 []천만원권 []매
 6.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가액: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권면총액 100%
 7.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조건: **별지 1**에 의함
 8. 각 투자자별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배정 수량과 인수가액

투자자명	권면금액 및 권종수	인수가액
[투자자명]	금 []억원권 []매 금 []천만원권 []매	금 []원
[투자자명]	금 []억원권 []매 금 []천만원권 []매	금 []원
합 계	금 []억원권 []매 금 []천만원권 []매	금 []원

- ② 회사는 납입기일로부터 3영업일 전까지 투자자에게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가액 납입을 위한 은행의 별단예금 계좌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조 (투자의 선행조건)

본 계약에 따른 투자자의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는 인수가액의 납입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조건이 충족되는 것을 선행조건으로 한다.

1. 회사 및 이해관계인이 본 계약에 따라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이행하였을 것
2. 회사 및 이해관계인이 본 계약에서 행한 진술과 보장이 진실되고 정확할 것
3. 본 계약에 따라 투자자가 인수하기로 예정된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등 본 계약의 이행을 방해하는 소송 또는 기타의 절차(행정절차, 감사 등 포함)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우려가 없을 것
4. 회사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부의 인허가 등을 획득하였을 것
5. 회사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제3자의 동의 등을 획득하였을 것
6. 회사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관련 법령의 절차(상법 제418조 등) 및 회사 내부 절차(정관 및 내부규칙 변경, 주주총회결의, 이사회결의 등 포함)를 이행하였을 것
7. 회사가 투자자의 동의없이 정관 및 내부규칙을 변경하거나 투자자와 협의없이 이사회 결의, 주주총회결의를 하지 않았을 것
8. 회사가 본 계약의 체결 이후 자본구조, 경영상태, 재무상황의 통상적이지 않은 변동 내지 부정적 변동, 통상적인 영업활동에서 벗어난 행위가 없을 것
9. 회사가 이해관계인 및 이해관계인이 아닌 경업금지의무자로부터 (첨부) 퇴사 제한 및 경업금지 약정서에 서명날인을 받아 투자자에게 교부할 것

제3조 (진술과 보장)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거래완결일까지 각자 **별지 2**. 진술과 보장 사항이 진실되고 정확함을 진술하고 보장한다.

제4조 (거래의 완결)

- ① 투자자는 납입기일 또는 회사와 투자자가 달리 합의하는 날에 제2조 각 호의 선행조건이 충족을 조건으로 하여 제1조 제2항에 따라 회사가 통지한 계좌에 인수가액 전액을 납입하여야 하며, 인수가액 전액이 납입된 날(이하 "거래완결일")에

거래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

- ② 회사는 거래완결일의 다음날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1.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사채권. 단, 사채권 발행 교부 전까지 사채권은 사채납입보관증명서 또는 사채권미발행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
 - 2.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가액의 납입영수증
- ③ 회사는 거래완결일로부터 2주 이내에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와 관련된 상업등기 등 제반 절차를 완료하고, 법인등기부등본, 사채원부 사본, 기타 본 계약상의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및 인수를 적법, 유효하게 하는 것으로서 투자자가 요청하는 자료를 투자자에게 교부한다.

제5조 (거래완결일 전 해제)

- ① 본 계약은 거래완결일 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귀책사유 없는 당사자에 의하여 해제될 수 있다.
 - 1. 일방 당사자가 본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거나 제3조에 따른 진술과 보장 사항에 허위 또는 오류가 발견되어 상대방으로부터 통보를 받았으나 이를 5일 이내에 이를 치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 2. 선행조건 불충족 기타의 사유로 거래완결이 20[]년 []월 []일까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선행조건이 충족될 수 없는 것이 확실해 진 경우
- ② 본 조에 의한 계약 해제 시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이와는 별도로 상대방이 지출한 모든 비용(회계실사 비용, 법률실사 비용 등 전문가 자문료를 포함)을 보전하여야 한다.

제2장 회사 경영에 관한 사항

제6조 (투자금의 용도 및 제한)

- ① 회사는 본 계약에 의하여 투자자로부터 받은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가액

(이하 “**투자금**”)을 **별지 3**. 투자금의 사용용도의 기재와 같이 사용하여야 하며, 특히 투자금으로 제3자에게 자금의 대여 또는 제3자의 주식을 매입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별지 3**. 투자금의 사용용도의 기재와 달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로부터 사전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③ 회사는 투자금을 다른 자금과 구분되는 별도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④ 회사는 투자금의 사용기록부를 작성·비치하여 두고 투자자의 열람 및 등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⑤ 투자자는 언제든지 투자금이 사용용도에 맞게 사용되었는지를 투자자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을 통하여 투자금 사용내역에 대한 실사를 진행할 수 있다. 단, 투자 후 1년 이내의 기간에 회사는 의무적으로 1회 이상 투자금 사용내역에 대한 실사를 받아야 한다.

제7조 (기술의 이전, 양도, 겸업 및 신회사 설립 제한)

- ①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투자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현재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또는 개발 중이거나 개발계획이 확정(외부기관에 의뢰하여 개발하는 경우도 포함, 이하 같음)되었거나 도입 예정인 영업비밀, Know-how, 정보, 기술 등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이전 또는 양도, 담보 제공할 수 없다.
- ② 이해관계인은 투자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현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 개발 중이거나 도입하는 기술의 일부 또는 전부와 관련된 신회사를 설립하거나 개인사업을 할 수 없으며, 경쟁업종 종사, 경쟁사 주식취득 또는 회사가 경영하는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법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임원, 기술고문 및 직원으로 참여하는 등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③ 전항에서 정한 이해관계인의 의무는 해당 이해관계인이 회사를 퇴사하거나 본

계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회사의 주식 전체를 처분하였다라도 본 계약이 종료되지 않는 한 퇴사일 또는 처분일부터 2년간 유효하다.

제8조 (경영사항에 대한 동의권 및 협의권)

①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투자자에게 각 사항의 시행일로부터 2주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한 뒤 각 사항의 시행일의 전일까지 투자자로부터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투자자의 서면동의를 본 계약의 투자자의 사채권면총액의 3분의2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 투자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정관의 변경

2. 자본의 증감, 주식관련사채의 발행,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3. 회생신청, 파산신청, 해산, 청산, 합병, 분할, 분할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 영업양수도, 타회사의 인수, 경영임대차, 위탁경영 기타 회사조직의 근본적인 변경

4.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의함), 임직원, 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의함)과의 거래

5.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의 국내의 회사 설립 또는 다른 회사의 50% 이상 지분 취득

②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투자자와 사전에 협의하고 투자자에게 업무처리에 따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2. 건당 전년도 자산총계의 [5%] 이상 또는 연간 누계액 기준 전년도 자산총계의 [10%] 이상의 규모에 해당하는 자산의 취득 및 처분, 투자(주식 및 사채인수 포함), 자금대여, 담보 제공, 보증, 신규 자금차입 또는 채무의 부담

3. 각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가 전년도 급여와 비교하여 [20%] 이상 상승하는 경우

4. 본건 투자 당시 사업계획에 명시한 것과 현저히 다른 사업에 착수하거나, 주요사업의 중단, 포기
5.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변경

제9조 (보고 및 자료 제출)

- ① 회사는 투자자의 별도 요청이 없더라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단, 본 계약의 다른 약정에 의한 통지의무와 중복되는 항목에 있어서는 어느 경우든 먼저 도래하는 기일까지 통지 또는 보고되어야 한다.
 1. 회사가 발행, 배서 또는 보증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거래가 정지된 때
 2. 파산, 회생절차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의 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부실정후기업으로 인정되는 때
 3. 소송 내지 중재 절차가 시작된 때
 4. 정부 및 준정부기관에 의한 행정적 제재
 5. 회사의 사업에 필요한 중요 기술인력의 채용 및 퇴직 상황
- ② 회사는 투자자의 별도 요청이 없더라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해진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연차보고 - 다음 회계연도 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
 - 가.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은 결산 재무제표
 - 나. 연간경영보고서(사업계획서)
 - 다. 주주명부(보고일 기준)
 - 라. 세무조정계산서
 2. 분기보고 - 다음 분기 시작일로부터 60일 이내
 - 가. 분기 재무제표
 - 나. 분기 경영보고서

- ③ 회사는 투자자가 요청하는 경영자료를 투자자가 요청하는 양식에 따라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투자자에게 제공하기로 한다.

제10조 (회계 및 업무감사, 시정조치)

- ① 회사는 20[] 회계연도부터 기업공개에 위한 제반 준비절차로서 투자자의 서면 동의를 받은 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지정하여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 ② 투자자는 회사의 경영 및 재산 상태를 확인하고 계획된 사업의 수행에 대해 투자자의 입장에서 선의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신의 직원 또는 외부의 전문가를 파견하여 회사의 회계 및 업무 전반에 관한 조사 및 기타 투자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고,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이에 대하여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 ③ 본 조에 따른 조사 및 감사 등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 ④ 투자자는 회사의 경영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 결과 또는 투자자의 조사 결과에 따라 회사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시정을 요구 받은 사항에 대해 정하여진 일정한 기간 내에 시정 조치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회사는 회사 경영 및 기술개발 등 사업 전반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임직원에게, 본건 거래완결일 전 이미 부여되었거나 발행된 것과 제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투자자의 동의 하에 발행된 것을 포함하여 그 행사로 인해 발행될 수 있는 주식 지분을 총계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시점의 발행주식총수의 10% 이내인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제12조 (임원의 지명)

- ① 투자자는 동일 라운드에 동반 투자하는 투자자들과 협의하여 회사의 상무에 중

사하지 아니하는 이사(기타비상무이사) [1]인을 지명할 권리를 가지며,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투자자가 지명한 이사(이하 “**투자자 지명이사**”) 회사의 이사로 선임될 수 있도록 즉시 임시주주총회 개최 등 이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단 투자자들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투자자 지명이사를 지정한다.

- ② 투자자는 언제든지 투자자 지명이사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와 이해관계인은 이에 응하여 투자자 지명이사의 교체를 위한 임시주주총회의 개최 등의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 ③ 투자자 지명이사는 회사의 채무에 대한 보증을 하지 아니하며, 투자자 지명이사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책임을 면제받고,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투자자 지명이사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이 제3자에게 부담, 지급하게 되는 비용을 투자자 지명이사에 보전해 준다.
- ④ 회사는 본 계약 체결일 현재 회사의 임원에 대한 것과 동일한 수준으로 투자자 지명이사에 대해 임원책임보험을 부보하도록 한다.

제13조 (주주총회 및 이사회 개최 요구)

투자자가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주주총회 개최를 요구하거나, 투자자 지명이사가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이사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즉시 임시주주총회 내지 이사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14조 (기업공개 및 M&A에 관한 사항)

- ①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가능한 이른 시간 내에 회사의 주권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이하 “**기업공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회사가 기업공개 요건을 사실상 충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및 이해관계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기업공개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투자자는 구

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기업공개를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②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다른 법으로부터의 인수·합병의 제의가 있는 경우 투자자와 협의하여 인수·합병의 협의에 최대한의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야 한다.

제3장 거래완결일 후 지분의 처분에 관한 사항

제15조 (투자자의 지분 처분)

- ① 투자자는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포함하여 거래완결일 이후 투자자가 보유하게 된 회사의 주식(이하 상환되지 아니한 신주인수권부사채와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회사로부터 인수받은 주식을 통칭하여 “지분”이라 한다)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다. 회사는 투자자의 요청에 따라 지분 처분에 따른 권리이전에 필요한 절차를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 ② 투자자가 제1항에 따라 지분의 처분을 위하여 회사 IR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

제16조 (이해관계인의 주식 처분)

- ① 이해관계인은 투자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주식 처분(양도, 이전, 매각, 담보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본 조에 따라 이해관계인이 투자자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고 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주식을 양수하는 제3자로 하여금 본 계약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의무 일체를 승계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 (투자자의 우선매수권 및 공동매도참여권)

- ① 전조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인이 회사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투자자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우선하여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우선매수권”)와 동일한 조건으로 지분비율에 따라 함께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공동매도참여권**”)를 보장하여야 한다.

- ② 이해관계인이 회사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양도하고자 하는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 양도 또는 이전하고자 한다는 요지의 취지, 당해 제3자의 신원, 양도주식 수, 주당 양도가액, 양도에정일 기타 양도의 주요 조건을 명시하여, 양도에정일로부터 [20]일 이전에 투자자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 ③ 투자자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해관계인에게 제1항의 우선매수권 또는 공동매도참여권 행사 여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기로 한 경우 주식을 매수하려는 자의 정보(투자자 또는 투자자가 지명하는 자), 공동매도참여권을 행사하기로 선택한 경우 공동 매도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량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 ④ 이해관계인은 투자자에게 본 조에 따른 우선매수권과 공동매도참여권이 보장되지 않는 한 회사의 주식을 일부라도 처분하여서는 아니된다.
- ⑤ 투자자가 본 조에 의한 우선매수권 및 공동매도참여권을 행사하지 않고, 전조에 따른 주식 처분을 동의한 경우 이해관계인은 제2항에 따라 통지한 조건 범위 내에서만 주식을 처분할 수 있고,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다시 전조와 본 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⑥ 다수의 투자자가 우선매수권 또는 공동매도참여권을 행사함에 따라 투자자 간에 권리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 및 이해관계인의 지분비율대로 안분하여 거래하기로 한다.

제4장 계약 위반에 따른 책임에 관한 사항

제18조 (기한이익의 상실 등)

- ① 거래완결일 후 회사에게 다음 각 호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투자자는 회사에 대하여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조의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금을 납입하게 함으로써 투자의 효력을 발생하게 한 경우
 2. 제3조 및 **별지 2**. 진술과 보장 사항이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
 3. 제6조 및 **별지 3**. 투자금의 사용용도를 위반한 경우
 4. 제7조 기술의 이전, 양도 겸업 및 신회사 설립 제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제8조를 위반하여 투자자의 동의 또는 3회 이상 협의없이 각 호 사항을 진행한 경우
 6. 제10조에 따른 회계 및 업무감사 협조 또는 시정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7. 제32조에서 정한 특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8. 기타 본 계약에 따른 회사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② 이해관계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회사에게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 사유가 발생한 경우 투자자는 해당 이해관계인에게 본건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1. 제2조의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금을 납입하게 함으로써 투자의 효력을 발생하게 한 경우
 2. 제3조 및 **별지 2**.의 진술과 보장 사항이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
 3. 제6조 및 **별지 3**. 투자금의 사용용도를 위반한 경우
 4. 본 계약에 반하여 이해관계인이 주식을 처분한 경우
 5. 기타 본 계약에서 정한 이해관계인 본인의 의무(본 계약에서 회사와는 별도로 이해관계인 스스로 이행할 책임이 있는 본 계약 제7조, 제8조, 제10조제2항, 제12조, 제13조, 제25조제3항의 의무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를 위반한 경우
- ③ 제1항에 따른 회사의 상황원리금은 기한이익 상실 당시 남아있는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가액 및 이에 대하여 납입기일부터 만기일까지의 만기보장수익률에 의한 금액과 연[(예시)12] %에 의한 금액 중 큰 금액을 합산한 액수로 한다.
- ④ 제2항에 따른 지분매매 대금 중 신주인수권부사채로 남아있는 부분은 전항과 같

은 방법으로 산정하고,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주식 부분은 1주당 매매대금을 다음 각 호 중 높은 금액으로 한다. 단, 해당 주식 발행일부터 대금 지급일까지 지급된 배당금이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하기로 한다.

1. 신주인수권 행사 당시의 1주당 행사가격 및 이에 대한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가액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대금 지급일까지 연 12% 이율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
 2. 지분매수청구일을 기준으로 과거 [1]년간 있었던 회사 발행 주식의 거래 중 가장 높은 1주당 매매대금
 3. 당사자 사이에 합의한 주식가치 평가기관에 의하여 평가된 1주당 본질가치(여기서 “본질가치”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5조 내지 제8조의 분석기준에 의하여 평가된 주식의 가치를 말하고, 본질가치의 산정은 투자자가 지정하는 회계법인 및 국내 상위 5개 회계법인 중 하나에 의하여 산출된 2가지 평가 액수의 산술평균으로 한다, 이하 동일)
- ⑤ 투자자의 이해관계인에 대한 제2항의 지분매수청구권 행사는 매수청구 대상 지분의 형태 및 수, 매매대금, 거래예정일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며 해당 서면이 이해관계인에게 도달한 때 지분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제19조 (손해배상 및 위약벌)

- ① 투자자는 본 계약에 따른 각 당사자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회사에게 전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투자자는 회사에게 제18조제1항에 의한 청구 및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와는 별도로 투자금의 [(예시)10]%에 해당하는 위약벌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이해관계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회사에게 전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이해관계인에게 전조 제2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투자자는 해당 이해관계인에게 지분매수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와는 별도로 투자금의 [(예시)10]%에 해당하는 위약벌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전항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인이 제16조 및 제17조를 위반하여 주식을 처분한 경우, 투자자는 이해관계인에게 지분매수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와는 별도로 투자금의 [(예시)10]%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해관계인이 주식을 처분하고 지급받은 매매대금의 [(예시)*]%에 해당하는 금액 중 큰 금액을 위약별로 청구할 수 있다.

제20조 (지연배상금)

본 계약의 당사자가 본 계약에 따라 정해진 지급기일에 금전지급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지체하는 경우, 해당 지급기일 다음날로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연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연배상금으로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

제21조 (이해관계인의 책임)

- ① 이해관계인은 회사가 본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모두 이행할 수 있도록 본인의 권한, 권리,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② 본 계약의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에 따라 이해관계인이 회사가 부담하여야 하는 의무를 연대하여 부담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그 사유 발생에 해당 이해관계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로 제한한다.
1. 제2조의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금을 납입하게 함으로써 투자의 효력을 발생하게 한 경우
 2. 제3조 및 별지 2.의 진술과 보장 사항이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
 3. 제6조 및 별지 3. 투자금의 사용 용도를 위반한 경우
 4. 본 계약에 반하여 이해관계인이 주식을 처분한 경우

제5장 계약의 일반 사항

제22조 (본 계약의 효력)

- ① 본 계약서의 별지와 첨부서류는 본 계약서와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서 그에 따른 내용은 본 계약의 내용의 일부를 구성한다.
- ② 본 계약상의 내용이 본 계약 체결 이전의 당사자들 사이의 어떠한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교섭, 합의 등의 내용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의 내용이 우선한다.
- ③ 본 계약은 투자자, 회사, 이해관계인의 서명날인과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 ④ 본 계약은 전자 또는 수기의 형식을 포함하여 수개의 부분으로 체결될 수 있으며, 각 부분은 모두 원본으로 인정되나 하나의 법률문서를 구성한다.

제23조 (계약의 종료)

- ① 투자자가 신주인수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행사하여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에도 투자자의 본 계약 상 지위는 동일하게 유지된다. 단, 본 계약 제2장 및 제3장의 규정은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이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지분 대비 [10% 미만인 경우 또는 회사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경우 종료한다.
- ② 전항의 계약 종료는 그 이전에 이미 발생한 권리·의무 및 손해배상청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4조 (계약의 내용 변경)

- ① 당사자는 전원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② 투자자가 서면으로 명확한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본 계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이상, 투자자의 어떠한 행위도 투자자가 본 계약상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제25조 (권리 및 의무의 양도, 승계)

- ①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거래완결일 전후를 불문하고 투자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

이 본 계약에 관한 권리 및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 ② 투자자가 회사의 기업공개 이전에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지분 대비의 [30]% 이상을 제3자(여기서 “제3자”는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및 이들 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될 수 있는 법률상 자격이 있는 자, 기관전용 사모집합 투자기구를 말함)에게 양도한 경우 및 투자자가 투자조합인 경우 존속기간 만료 등의 이유로 해산되며 투자자의 업무집행조합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지분 상 투자자의 본 계약에 따른 권리는 지분매수인에게 승계된다.
- ③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전항의 계약상 지위 승계를 수인하여야 한다.

제26조 (통지)

- ① 본 계약에 따른 당사자들에 대한 통지 및 서류 송부는 아래의 주소에 인편, 팩스, 등기우편 또는 택배, 전자우편(이메일) 또는 DocuSign, Adobe Sign 등 당사자가 합의한 전자 계약 플랫폼으로 발송한다.

1. 투자자1에 대한 통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2. 투자자2에 대한 통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3. 회사에 대한 통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4.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 ② 통지처가 변경된 경우 해당 당사자는 변경일로부터 지체없이 본 조에 따른 통지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변경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변경 통지가 도달한 이후에 비로소 변경된 통지처로의 통지가 유효하다. 변경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본 조에 기재된 기존 통지처로의 통지는 유효하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 ③ 전항의 경우 본 계약에 따른 통지처로 발송한 경우 발송일로부터 2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
- ④ 본 계약에서 정한 투자자의 모든 권리 및 사실행위는 본 계약서의 날인 란에 기재된 업무집행조합원이 투자자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투자자를 위하여 재판상 및 재판외에서 행사한다.

제27조 (비밀유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정보는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밀로 하고,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본 조의 의무는 본 계약의 효력이 상실하는 경우에도 2년간 그 효력이 존속된다.

- 1. 당사자가 공개하기로 합의한 사항
- 2. 공지된 정보
- 3. 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제3자로부터 이미 적법하게 취득한 정보
- 4.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한 법률자문, 소의 제기,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5. 법원 또는 정부기관이 적법하게 공개 또는 제공을 요구한 정보(단, 사전에 상대방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 (세금)

본 계약의 당사자에게 부과된 조세 공과금은 법령상 부담하여야 할 당사자가 각자 부담한다.

제29조 (일부 무효)

본 계약 또는 이와 관련하여 작성된 서류에 명시된 한 개 또는 수개의 조항이 법령에 따라 무효, 위법 또는 집행불능으로 되더라도 본 계약에 명시된 나머지 조항의 효력, 적법성 및 집행가능성은 그로 인하여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30조 (준거법 및 분쟁해결)

- ① 본 계약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된다.
- ② 본 계약에 따라 발생한 모든 분쟁의 제1심 관할법원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지정한다.

제6장 특약 사항

제31조 (특약사항의 효력)

특약사항은 본 투자계약서의 본문의 내용을 수정·삭제·추가하는 사항으로서 본문의 내용이 특약사항의 내용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의 내용이 그 효력에 있어서 우선한다.

제32조 (특약사항의 구체적 내용)

- ①
- ②

[이하 서명 또는 날인을 위하여 여백]

본 계약의 체결 사실을 증거하기 위하여 투자자, 회사, 이해관계인은 대표자 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본 계약서의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 란에 서명 날인하게 하는 방법으로 본 계약을 체결하고, 각 1통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보관하기로 한다.

계약 체결일 : 20[] . [] . [] .

투자자 : [투자자명]
 [주소]
 업무집행조합원 [회사명]
 대표이사 [성명] (인)
 [투자자명]
 [주소]
 업무집행조합원 [회사명]
 대표이사 [성명] (인)

회사 : [회사명]
 [주소]
 대표이사 [성명] (인)

이해관계인 : [성명] (인)
 0000년 00월 00일 생
 [주소]

별지 1.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종류 및 내용

1.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표면이율

연 []%

2.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만기보장수익률

연 []%

3.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납입기일

20[]년 []월 []일

4.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

20[]년 []월 []일

5.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만기일

20[]년 []월 []일

6.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원리금 지급 장소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상환 수탁기관의 계좌 또는 은행지점

7.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분할 및 병합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권은 기명식으로만 발행하고 그 권면의 매수가 50매 미만이어야 하며,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권은 발행 후 1년 이내 권면 분할이 금지되고 그 특

약이 권면에 기재되어야 한다.

8. 신주인수권의 분리 양도 거부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권의 신주인수권은 분리하여 양도될 수 있다.

9.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

사채권자는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권의 발행일로부터 []년이 되는 날 및 이후 매 []개월마다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때 조기상환수익률은 연 []%로 하고, 회사는 조기상환을 청구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후의 날 이내 중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날 까지 조기상환을 완료하여야 한다.

10.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상환에 관한 사항

회사는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 원금 및 이자지급을 다음과 같이 이행한다.

① 원금상환

투자자가 사채권을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주금납입으로 갚음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채의 액면금액에 대하여는 원금에 만기보장수익률과 표면이율과의 차이를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 동안 복리(복리이자 산정단위 []개월)로 계산한 금액과 합산한 금액을 만기일에 일시 상환하기로 한다.

② 이자지급

이자의 지급은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부터 원금 상환기일까지 미상환 잔액에 대하여 아래 도표의 상환계획에 따라 년 []회 지급한다. 단,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의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로 한다. 이자지급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1년을 365일로 보며 1년 중 전체 일수에서 실제 경과한 일수 비율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이자지급금액으로 한다.

납입기일	표면이자	보장이자	원금	계
합계				

11.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①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자는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부터 []개월이 경과하는 날부터 만기일의 전일까지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언제든지 회사의 보통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 ② 신주인수권 행사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신주인수권자는 신주인수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신주인수권 행사 청구서에 신주인수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범위, 청구연월일을 기재하여 기명 또는 서명 날인하고 신주인수권증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한다. 단, 주금납입을 사채권에 기한 상계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채권도 함께 제출한다.
 2.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주금 납입은 현금으로 하거나 이에 갈음하여 사채권으로 대용 납입할 수 있다. 단, 회사는 대용납입의 경우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일로부터 신주인수권 행사 청구일까지의 만기보장수익률로 하여 계산된 미지급이자를 지급한다.
 3. 투자자는 신주 인수대금을 전액 납입한 때에 회사의 주주가 된다. 단, 신주인수권의 행사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의 배당기산일은 그 청구를 한 때가 속하는 사업년도 초로 보아 배당의 효력을 가진다.
 4. 회사는 본건 신주인수권증권 제출과 주금 납입이 모두 이루어진 후, 지체없이 신주인수권자에게 그가 인수한 보통주식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인도하여야 하고, 해당 신주인수권자를 주주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5. 신주인수권 행사와 신주 발행과 관련된 절차의 진행 등 모든 사항은 회사가 담당하고 이를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결과를 신주인수권자에게 신속히 통보하도록 한다. 또한 변경된 내용은 사채원부에 기입한다.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 조건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신주인수권의 행사비용은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 권면금액의 100%로 하고, 행사가격은 보통주식의 1주(액면금액 []원)당 사채 금액 []원으로 한다. 1주 미만의 단주에 해당하는 금액은 주식 교부시 현금으로 지급하며, 단주 대금에 대한 미지급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2. 회사의 IPO 공모단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그 당시의 본건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을 하회하는 경우는 그 공모단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행사가격으로 조정한다. 본 호의 경우 조정일은 공모청약일로 하고, 회사는 조정이 발생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투자자에게 통보한다.
3. 회사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에 상장된 기업과의 합병, 주식 교환 등을 통해 상장을 위한 심사나 공모주청약 등의 절차를 밟지 않고 곧바로 상장되는 등의 이른바 ‘우회상장’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먼저 아래 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따라 행사가격을 조정한 후 우회상장의 효과가 발생한 당시 시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위 조정된 행사가격을 하회하는 경우 당시 시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행사가격으로 조정한다. 그 때로부터 3년간 매 6개월마다 행사가격을 조정하되, 우회상장의 효과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행사시 발행될 주식과 동일한 종류의 구주의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최근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직전 행사가격을 비교하여 둘 중 낮은 가격으로 행사가격을 조정한다.
4.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의 행사 전에 회사가 본건 신주인수권의 조정전 행사가액보다 낮은 발행가액(이하 “신주발행가액”이라 한다)으로 보통주식, 종류주식,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기타 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증권(이하 총칭하여 “신주등”이라 한다.)을 발

행하는 경우, 본건 신주인수권의 조정 후 행사가액은 아래 산식에 따라 조정한다. 단, (i) 투자자가 동의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신주 발행, (ii) 기존 발행된 전환증권의 전환·행사 및 (iii) M&A에 따른 신주발행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text{조정후 행사가액} = \text{조정전 행사가액} \times (A + B) / (A + C)$$

A = 신주등 발행 직전일 현재 회사가 발행한 보통주식의 총수에, (i) 발행된 종류주식이 모두 보통주식으로 전환되었다고 가정하였을 때의 보통주식 수, (ii) 발행된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교환사채 등이 모두 전환·행사되었다고 가정하였을 때의 보통주식 수, (iii)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 및 기타 주식연계증권이 모두 행사되었다고 가정하였을 때의 보통주식 수를 합산한 주식 수

B = 신주등 발행으로 회사에 납입되는 총 발행가액 ÷ 조정전 행사가액
(= 신주발행가액 × 신주등 발행주식 수 ÷ 조정전 행사가액)

C = 신주등 발행주식 수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경우 전액 전환·행사시 발행될 보통주식 수를 기준으로 한다)

5.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이후 주식배당, 무상증자 등으로 인해 발행주식 수가 증가하는 경우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은 아래의 수식에 따라 조정한다.

$$\text{조정후 행사가액} = \text{조정전 행사가액} \times (\text{조정전 발행주식총수}) / (\text{조정후 발행주식총수})$$

6. 신주인수권의 행사 전에 회사가 합병, 주식의 분할 또는 병합 등에 의하여 행사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주식의 분할 또는 병합 직전에 신주인수권이 모두 행사되었더라면 신주인수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 수

- 를 그 가치 또는 그 이상으로 보장하는 방법으로 행사가격을 조정한다.
7. 조정 후 행사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미만으로 되는 경우,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는 주주총회결의 및 법원의 인가 등 액면가 미만으로 행사가격을 조정하여 신주를 발행할 수 있도록 모든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액면가 미만으로 행사가액을 조정하는 것이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조정 후 행사가액은 액면가격으로 한다. 단, 행사가격을 액면가격으로 하는 경우, 추후 관련법규의 변경으로 액면가격 미만으로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할 경우 행사가격을 조정한다.
 8.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 이후 후행 투자자의 행사가격(내지 전환가격) 조정이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보다 유리한 경우 후행 투자자의 행사가격(내지 전환가격)에 따라 행사가격을 조정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행사가액 조정은 해당 신주등의 납입기일(또는 효력발생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회사는 조정 사유 발생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조정 내역(조정 전·후 전환가격, 산정 근거, 적용 산식, 효력발생일 포함)을 투자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⑤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기간 만료시까지 회사가 발행할 수권 주식의 총수에 신주인수권 행사에 의한 발행 가능한 주식 수를 유보한다.
 - ⑥ 회사는 신주인수권 행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주 이내에 상법에 의한 증자 등기를 행한다.
 - ⑦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신주인수권의 행사 등 사항은 상법 제513조 내지 제516조의 2 내지 제516조의 11의 규정을 따른다.

별지 2.

진술과 보장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본 계약 체결일 현재 및 거래완결일 현재 아래 사항이 진실되고 정확함을 진술하고 보장한다.

제1장 공통사항

제1조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회사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어 유효하게 존속 중인 주식회사로서 회사에 대하여 파산, 회생 등 도산절차와 관련된 어떠한 신청도 제기된 바 없으며, 지급불능, 지급유예, 워크아웃 절차 등 회사의 주주 및 채권자의 권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 없음을 본 계약 체결일 및 거래완결일을 기준으로 진술하고 보장한다. (이하 진술 및 보장 전체에 대한 기준시점은 본 계약 체결일 및 거래완결일이다).

제2조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본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법률적, 사실적인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주주총회 및 이사회 의 승인을 비롯하여 본 계약의 체결 및 유지를 위하여 회사가 이행하여야 하는 모든 조치를 취하였음을 진술하고 보장한다.

제3조 본 계약의 체결 및 신주의 발행은 법률이나 규정 기타 관계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며, 회사의 정관에 부합하고, 회사 및 이해관계인이 당사자인 계약 또는 기타 의무의 위반을 가져오지 아니함을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진술하고 보장한다.

제4조 본 계약에 의한 회사 및 이해관계인의 의무는 본 계약에서 정한 바 그대로 적법, 유효하고 구속력이 있으며 회사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집행 가능한 법적 의무를 구성함을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진술하고 보장한다.

제5조 투자자가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하는 주식은 적법하며 유효하게 발행될 것이며, 투자자의 본 계약상의 권리 혹은 주식에 대한 권리 행사를 실질적으로 방해할 만한 행정절차(행정처분, 조사, 감사, 수사 포함), 법령, 또는 보전처분을 포함한 법원의 재판에 의한 어떠한 제한이나 회사와 이해관계인이 당사자이거나 구속을 받는 계약상의 어떠한 제한도 존재하지 아니함을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진술하고 보장한다.

제2장 회사에 관한 사항

제6조 (자본에 관한 사항)

① 회사의 발행주식은 본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1주당 액면가액이 금 []원인 보통주식 []주, 종류주식 []주이고, 그 이외의 발행 주식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주주별 지분율, 전환사채 발행내역, 신주인수권부사채, 주식매수선택권, 주식배당, 기타 장래 회사의 지배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반 권리의 주요 내용 및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내역, 조건부지분인수계약 체결 내역은 아래 주식 등의 현황 기재와 같으며 아래 기재 사항 이외에 회사의 주식 지분율 기타 장래 회사의 지배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떠한 사항도 없다.

1. 주주별 소유주식 수

주주명	주식 수	지분율(%)	기 타 (담보권설정여부,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여부)
			대표이사...사내이사 등
합계	[]주	100.0%	

2. 전환사채

회수	총 발행가액	미 전환금액	전환가격	전환기간

3. 신주인수권부사채

회수	총 발행가액	미행사금액	행사가액	행사기간

4.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받은 자	주식 수	행사가액	행사기간	행사방법

5. 조건부지분인수계약 체결 내역

계약 체결일	투자자	투자금	가치한도	할인율	기타 주요 조건

② 회사는 설립 이후 본 계약 체결일 현재까지 주식의 발행에 있어서 가장납입을 한 사실이 없으며 이해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주식은 전항 기재와 같고 회

사는 이를 자신의 계산으로 취득하였고 가장납입 한 사실이 없다.

- ③ 회사는 계열회사 또는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통상의 범위에서 벗어날 정도로 회사에 불리한 매출거래, 보증 또는 담보제공 등을 한 사실이 없다.

제7조 (자산에 관한 사항)

- ① 회사는 현재 사용중인 부동산, 동산, 기계, 차량, 사무실 기기 및 기타 영업에 필요한 모든 권리, 물건 등은 적법하게 회사의 소유로 되어 있거나, 회사가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을 진술하고 보장한다.
- ② 회사는 현재 보유 사용하고 있는 모든 특허권을 포함한 지식재산권 기타 무형자산은 회사가 적법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제3자로부터 권리를 침해 받고 있지 않음을 진술하고 보장한다.
- ③ 회사는 통상적인 사업경로에 따른 제품의 판매 등을 제외하고 회사의 자산이나 권리를 매매, 교환 또는 기타 방식으로 처분하지 아니하였음을 진술하고 보장한다.

제8조 (부채에 관한 사항)

- ① 회사의 담보제공 및 입보 내역은 아래 기재와 같다.

금융기관	제공담보		입보내역		비고
	담보종류	설정액 (실현가)	한도	사용액	

- ② 회사의 금융기관 차입, 회사 발행 사채 등과 관련된 계약에는 본 거래로 인하여 당해 계약에서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거나 당해 계약의 상대방이 회사에 대하여 즉각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회사는 진술하고 보장한다.

제9조 (재무제표에 관한 사항)

- ① 투자자에게 제공된 회사의 20[]년 []월 []일 기준 재무제표는 대한민국에서 통용되는 기업회계기준을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 및 관행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회사의 재무상태 및 영업현황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음을 회사는 진술하고 보장한다.
- ② 투자자에게 서면 고지된 것을 제외하고 상기 재무제표 기준일 이후에, 회사의 재무상태, 자산 및 부채, 영업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변경이나 변동 사항은 없음을 회사는 진술하고 보장한다.
- ③ 회사가 최선의 노력으로 파악한 결과 상기 재무제표에 기재되지 아니한 부외부채(우발채무 포함) 및 부외자산은 실사자료로 제시한 바와 같고, 실사자료에 나타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투자자의 본 계약체결 및 거래완결에 영향을 줄 만한 중대한 부외부채 및 부외자산은 없다.

제10조 (관계회사에 관한 사항)

회사의 관계회사는 아래 기재와 같다. 여기서 “관계회사”란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이 주식 또는 주식연계사채를 보유하고 있거나 기타 추후 주주로 인정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를 말한다.

회사명	소재지	업종	관계	주주 구성

제11조 (법령 위반, 소송 등에 관한 사항)

- ① 회사는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업에 필요한 정부 인허가 등을 모두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으며, 이 인허가 등이 취소될 위험에 처해 있지 않다.
- ② 회사는 회사의 자산(부동산, 설비, 임차물 및 장비 등) 및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지역제한, 안전, 공해 및 환경, 노동,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포함하여 회사와 그

생산과정 및 제품에 적용되는 제반법령, 규정 및 명령을 준수하였으며, 부당하게 임금, 퇴직금 등을 미지급한 사실이 없다.

- ③ 투자자에게 서면 고지된 것을 제외하고, 회사의 사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현재 진행되는 소송(보전소송 포함), 중재 또는 행정절차 기타 분쟁은 없음을 회사는 진술하고 보장한다.
- ④ 회사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소송, 중재 또는 기타 분쟁이 없으며, 추후 분쟁의 위험에 처해 있지 않다.
- ⑤ 회사는 주주총회 및 이사회 관련 제반 서류를 작성 비치하고 있으며, 그와 관련된 법규 위반사항이 없다.

제12조 (세금, 보험 등에 관한 사항)

- ① 회사는 국세, 지방세 등 고지된 납세 의무를 이행하였고,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미납된 세금은 없음을 진술하고 보장한다.
- ② 회사는 회사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제반 보험(4대 보험, 기타 영업 관련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거나 해당 업계에서 회사와 유사한 기업들이 통상적으로 가입하고 있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진술하고 보장한다.

제13조 (기타)

회사는 투자자 또는 그 실사관련 자문사들에게 제공한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정관 및 각종 계약서, 사업계획서 등 일체의 서면, 서류, 정보 기타 자료는 제공일 현재 회사에 관한 사항을 정확히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진실되고 거짓이 없으며, 중요한 사항을 생략하지 않았고, 중대한 면에서 의미를 오도하지 않는다. 회사의 임직원이 실사 과정에서 구두로 답변한 내용에 관하여도 고의 또는 과실로 허위 답변한 사실이 없음을 진술하고 보장한다. 단, 사업계획서 상에 미래에 대한 예측 및 기타 사업관련 계획 사항은 경영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제3장 이해관계인에 관한 사항

제14조 이해관계인은 투자자에 대하여 본 별지의 진술과 보장 사항이 본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서 모두 진실되고 거짓이 없음을 보장하고, 나아가 동 진술과 보장 사항이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 이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이해관계인은 이로 인하여 투자자가 입게 되는 모든 손해, 손실 및 비용을 본 계약에 따라 회사와 함께 배상 또는 보상한다.

제15조 이해관계인은 위 제14조에 추가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진술하고 보장한다.

- ① 이해관계인이 가지고 있는 회사의 주식은 첨부하는 주주명부의 기재와 같고, 이해관계인은 이를 자신의 계산으로 취득하였고 가장납입한 바가 없다.
- ② 위 주주명부는 이해관계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들의 이름, 관계 및 그 소유주식 수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다.
- ③ 이해관계인이 본 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이행함에 있어 법령상 또는 계약상의 제한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 ④ 이해관계인은 본 계약 체결일 현재 회사의 주주 또는 종업원으로서의 지위와 관련하여 제3자와 분쟁을 하고 있지 아니한다.

제16조 이해관계인은 본 진술과 보장 사항에 영향을 미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시 투자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투자자의 요청에 따라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별지 3.

투자금의 사용용도 및 실사 약정

1. 투자금 사용용도

회사는 본 약정에 의하여 투자자로부터 받은 자금을 다음과 같은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단, 당초 체결한 투자계약서의 투자금 사용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투자자로부터 사전에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용도	금액	비고
합계		

2. 투자기업 투자자금 집행 실사 및 관리체계

투자자는 투자금이 사용용도에 맞게 사용되었는지를 투자자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을 통하여 투자금 사용내역에 대한 실사를 진행할 수 있다. 회사는 투자자금 집행 실사와 관련하여 자금사용내역과 그 증빙을 제출하여야 하며 실사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3. 투자금 사용 제한

회사는 본 투자자금 약정서에 명시된 용도로 자금을 집행하기 이전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의 별도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제3자에 대한 자금대여 및 제3자 주식을 매입한 경우에는 회사의 자금출처 조사 등을 포함한 거래 전반 실사를 실시한다.

4. 위반시 처리

회사가 본 약정서를 위반하는 경우, 투자자는 30일 이내에 원상 회복을 요구하고 회사는 즉시 원상 회복 후 투자자가 요청하는 시기에 재실사를 실시한다. 만약 충실하게 원상 회복이 이루어지는 경우 투자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본 계약서 본문 제4장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있다.

(첨부)

퇴사제한 및 경업금지 약정서

I. 퇴사제한

1. 퇴사가 제한되는 이해관계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퇴사 제한 기간	서명 또는 날인

2. 위반시의 효과

위 퇴사제한 약정을 위반한 이해관계인은 퇴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투자자에게 위약벌 : 금 []원 을 지급하여야 한다.

II.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는 자

1. 투자자 :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란의 서명날인으로 같음
2. 회사 :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란의 서명날인으로 같음
3. 이해관계인 :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란의 서명날인으로 같음

4. 이해관계인 이외의 임직원

성명	생년월일	주소	퇴사 제한 기간	서명 또는 날인

III. 경업금지약정의 내용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경업금지약정은 회사의 이해관계인 및 주요임직원으로 하여금 일정기간 동안 회사의 영업과 동일 또는 유사한 영업을 금지시킴으로써 회사의 영업을 보호함은 물론 투자자의 투자의 실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경업지위의 취임 금지)

① 이해관계인 및 본 계약서에 서명날인한 이해관계인 이외의 임직원(이하 “**경업금지 의무자**”)은 회사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 투자자 및 회사의 동의 없이는 다른 기업의 무한책임사원, 이사, 피용자가 될 수 없다.

② 경업금지 의무자는 회사를 퇴사한 날로부터 [2]년의 기간 동안 투자자 및 회사의 동의 없이는 회사의 영업부류와 동일 또는 유사한 영업부류의 기업의 무한책임사원, 이사, 피용자가 될 수 없다.

제3조 (경업거래의 금지)

경업금지 의무자는 회사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 및 회사를 퇴사한 날로부터 [2]년의 기간 동안 투자자 및 회사의 동의 없이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와 동일 또는 유사한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거나 기업을 운영할 수 없다.

제5조 (약정의 종료)

회사가 회사의 주권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거나 코스닥시장에 등록하는 날 본 약정이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제6조 (위반의 효과)

- ① 경업금지의무자가 본 약정을 위반하는 경우 경업을 함으로써 취득한 금원 내지 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원 내지 증권을 투자자 또는 회사에게 지급 또는 교부하여야 하고, 이러한 금원 내지 증권이 금 [50,000,000]원에 못 미치는 경우 그 차액을, 경업을 함으로써 취득한 금원 내지 증권이 없는 경우에는 금 [50,000,000]원을 투자자 또는 회사에게 위약벌로서 지급하여야 한다.
- ② 투자자 및 회사가 경업금지의무자로부터 전항의 금원 내지 증권을 지급 또는 교부 받는 경우 이를 동등하게 분배하기로 한다.
- ③ 이해관계인 이외의 경업금지의무자가 본 약정을 위반한 경우 위반자는 회사에게 그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